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11호

2024. 10. 4.(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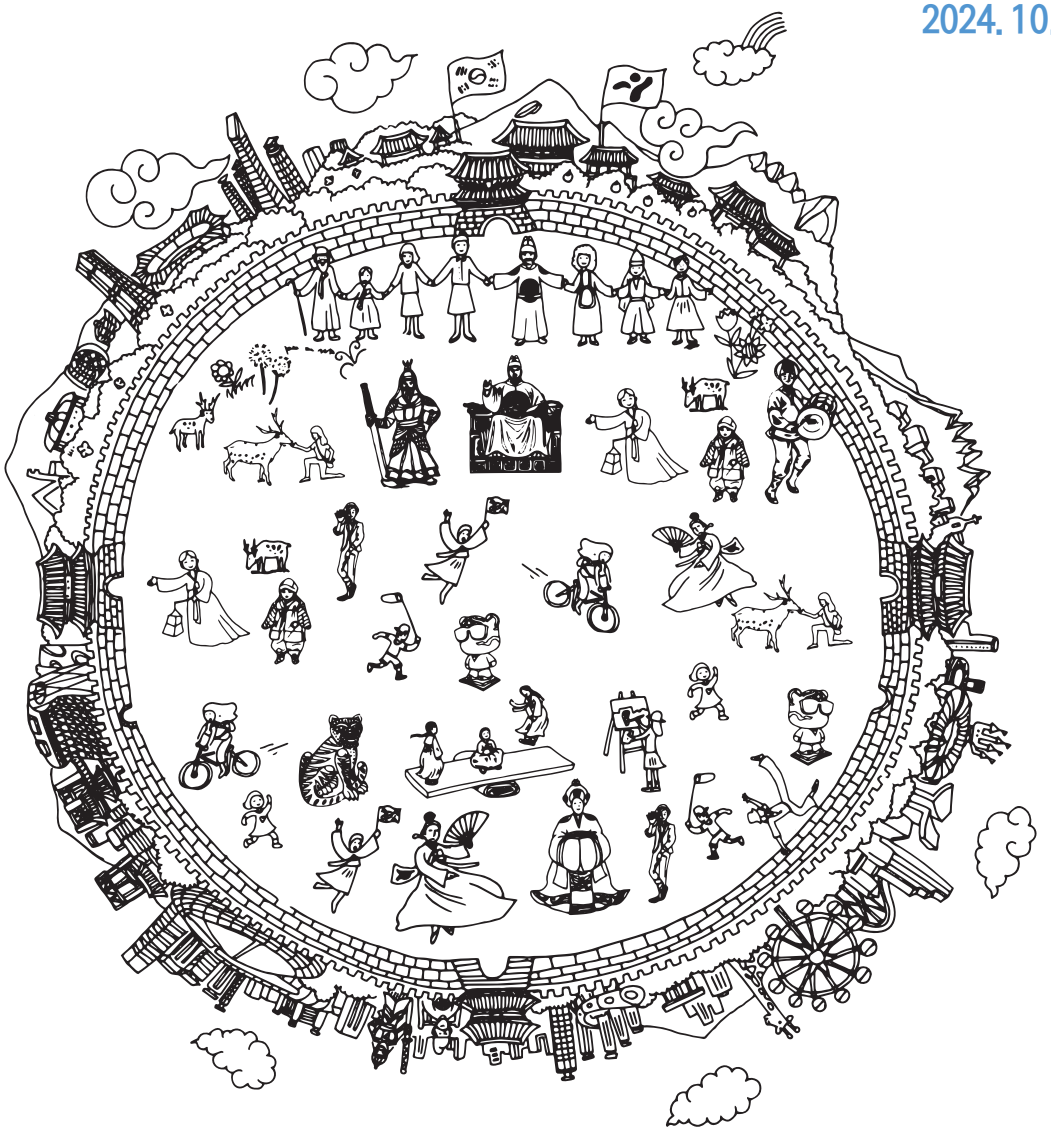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목 차

◈ 고 시

제2024-463호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
제2024-46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82
제2024-467호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길음1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 85
제2024-468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고시 ····· 100
제2024-469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3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04
제2024-471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142
제2024-472호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45
제2024-473호 동작구 신대방동 351-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 148
제2024-474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1
제2024-475호 성북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60

◈ 공 고

제2024-267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 195
제2024-2698호 측량업 등록 공고 ····· 196
제2024-2703호 도시계획시설(공공도서관) 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실시계획(안) 열람 공고 ····· 197
제2024-271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주)지정이앤씨] ····· 198
제2024-2713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207
제2024-2714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208
제2024-2715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211
제2024-2716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214
제2024-2717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16
제2024-2723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공고 ····· 226
제2024-272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227

제2024-2728호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 229
제2024-2729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234
제2024-2730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235
제2024-2734호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237
제2024-2736호 측량업 등록 공고 …… 264
제2024-2737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공고 …… 265
제2024-2739호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공유재산사용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271
제2024-274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 273
제2024-2744호 행정심판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 275

◈ 구 고 시

제2024-116호 꿈나무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꿈나무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용산구) …… 276
제2024-117호 이촌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이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용산구) …… 287
제2024-1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성동구) …… 298
제2024-191호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 302
제2024-15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동구) …… 304

◈ 구 공 고

제2024-1240호 도시관리계획(부암동 지구단위계획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종로구) …… 306
제2024-948호 도시관리계획(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공고(중구) …… 312
제2024-1737호 도시계획시설 시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 316
제2024-1716호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BY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영등포구) …… 320
제2024-2104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경부고속도로변 녹지)(서초구) …… 366
제2024-1762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송파구) …… 390
제2024-1934호 도시공원(고덕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강동구) …… 391

제2024-1950호 「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강동구) ····· 392

◈ 사업소고시

제2024-2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93
제2024-2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94
제2024-2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95
제2024-2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96
제2024-2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97
제2024-2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98
제2024-2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99
제2024-2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00
제2024-2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01
제2024-26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02
제2024-26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03

◈ 기 타

제2024-38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04

◈ 정 정

제2024-80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송파구) ····· 405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3호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93호(2021.07.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2024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산28-6 일대
3. 공원면적: 1,259,273.8㎡ (북서울꿈의숲 면적 : 684,156.6㎡)
4.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및 도면: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 (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74),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2289-4063)

조성계획도[변경전]

오동근린공원(전체)

SCALE=1/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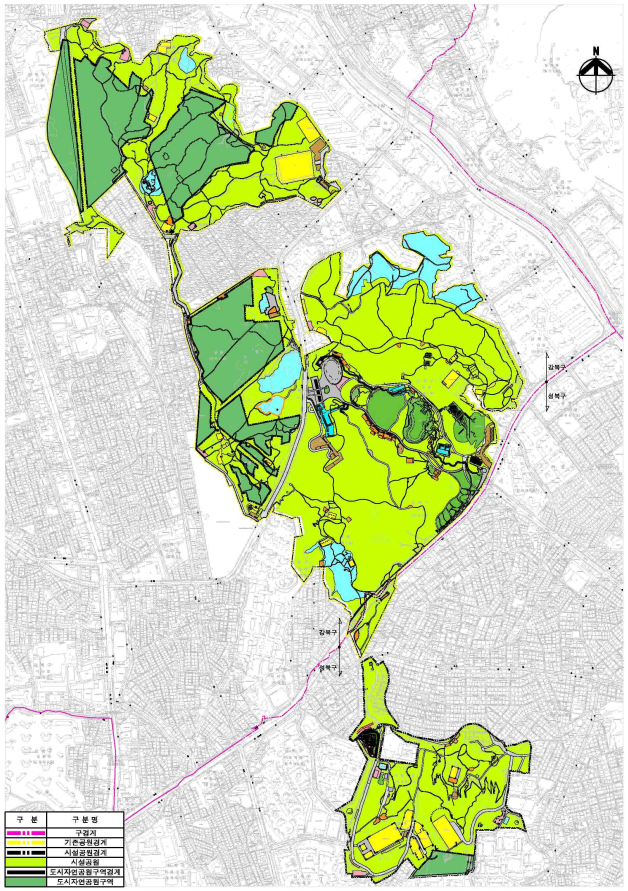

구 분	구분명
	구경계
	기존공원경계
	시설공원경계
	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도시자연공원구역

■ 범 례 ("가"지구) -1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	*		684,158.6	195,013	68	
기반시설	소 계		52,572	52,572		
	도 로		37,490	37,490		
	오동교		200	200		
	광장	가	14,882	14,882		
		가-1	2,873	2,873		
		가-2	33	33		
		가-3	14	14		
		가-4	300	300		
		가-5	11,316	11,316		
		가-6	127	127		
		가-7	54	54		
		가-8	79	79		
		가-9	58	58		
		가-10	28	28		
조경시설	소 계		57,322	57,322	34	
	월영연못	나	12,526	12,526		
	계 류	다	3,971	3,971		
		다-1	2,829	2,829		
		다-2	1,142	1,142		
	월폭연못	라	3,998	3,998		
	미러폰드	푸	2,400	2,400		
	침투분수	저	386	386		
	저류지	마	467	467		
	야생초화원	9	11,070	11,070		
	전디이당	사	21,664	21,664		
		사-1	13,228	13,228		
		사-2	8,436	8,436		
	참포원	아	1,167	1,167		
	낙수대	누	73	73		
	햇광폭포	⑥			1	
	월광대	⑤			1	
	월영대	⑥			1	
	전용정자	⑦			2	
		⑦-1			1	
		⑦-2			1	
	파고라	⑧			13	
	조형파고라	⑧			1	
	원경조형물	⑨			10	
	조형화분	⑩			4	
	정 자	⑪			1	
		⑪-1			1	
휴양시설	소 계		13,658	13,658		
	휴게소	자	2,821	2,821		
		자-1	364	364		
		자-2	303	303		
		자-3	126	126		
		자-4	215	215		
		자-5	188	188		
		자-6	333	333		
		자-7	137	137		
		자-8	545	545		
		자-9	200	200		
		자-10	80	80		
		자-11	130	130		
	데크쉼터	카	10,408	10,408		
		카-1	780	780		
		카-2	146	146		
		카-3	72	72		
		카-4	419	419		
		카-5	7,735	7,735		
		카-6	966	966		
		카-7	79	79		
		카-8	92	92		
		카-9	119	119		
	수변쉼터	타	629	629		
		타-1	49	49		
		타-2	268	268		
		타-3	41	41		
		타-4	195	195		
		타-5	76	76		
유희시설	소 계		1,655	1,655		
	어린이 놀이터	파	1,655	1,655		
		파-1	482	482		
		파-2	458	458		
		파-3	715	715		
운동시설	소 계		6,186	6,756	31	
	체력단련장	하	310	310		
		하-1	310	310		
	다목적운동장	거	1,068	1,068		
		거-1	491	491		
		거-2	577	577		

■ 범 례 ("가"지구) -2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운동시설	테드민턴장	너	2,330	2,330		
		너-2	537	537		
		너-4	519	519		
		너-5	426	426		
		너-6	848	848		
	축구장	더	561	561		
		더-1	561	561		
	테니스장	러	1,759	1,759		
		러-1	1,759	1,759		
	체력단련 시설	⑭	2,158	728	31	
교양시설	소 계		51,508	51,508	1	
	구현포	1	800	800		
	문화센터	2	4,108	4,108		
	미술관	3	1,187	1,187		
	민속식물원	더	33,610	33,610		
	화목원	머	11,803	11,803		
	무대조형물	⑭			1	
편익시설	소 계		9,713	9,713	1	
	주차장	머	3,026	3,026		
	주차장	버	125	125		
	주차장	서	226	226		
	전망대	4	2,169	2,169		
	리스토랑	5	3,082	3,082		
	글래스 파빌리온	6	446	446		
	화장실	7	558	558		
		7-1	81	81		
	경사형엘리베이터	⑭			1	
관리시설	소 계	"	1,829	1,829	1	
	방문자센터	8	1,829	1,829		
	관리사무소	10	(18)	(18)	1	
녹지및기타	소 계		467,758.6			
	녹 지		467,173.6			
	동물놀이터	동-1	585			

조성계획도[변경전]

오동근린공원(전체)

■ 범 례 ("나"지구)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관 작 물(기)	비 고
* *			115,490.2	33,658	31	
기반시설	소 계		17,308	8,748		
	도 로	㊡	14,297	5,737 (5,660)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공장	가	3,011	3,011		
		가-1	1,813	1,813		
		가-2	217	217		
		가-3	91	91		
		가-4	890	890		
조경시설	소 계		408	408	17	
	파고라	①			13	
	연못	파	408	408		
	정 자	②			4	
		②-1			1	
		②-2			1	
		②-3			1	
		②-4			1	
휴양시설	소 계		1,417	1,417		
	휴게소	나	1,417	1,417		
		나-1	364	364		
		나-4	68	68		
		나-5	12	12		
		나-6	433	433		
		나-7	453	453		
		나-8	37	37		
		나-9	50	50		
유희시설	소 계		1,446	1,446		
	어린이 놀이터	다	1,446	1,446		
		다-1	446	446		
		다-2	1,000	1,000		
운동시설	소 계		2,336	2,336	14	
	체력단련장	라	1,459	1,459		
		라-1	250	250		
		라-2	441	441		
		라-3	708	708		
		라-4	60	60		
	다목적운동장	마	515	515		
	게이트볼장	거	362	362		
	체력단련시설				14	
교양시설	소 계		18,467	18,467		
	도서관	1	1,720	1,720		
	자연학습장	아	129	129		
	모테닉가든	자	3,888	3,888		
	생태습지원	차	12,730	12,730		
환락시설	소 계		836	836		
	주차장	타	836	836		
		타-2	307	307		5면
		타-3	529	529		40면
녹지및기타	소 계		73,272.2			
	녹 지		73,272.2			

■ 범 례 ("다"지구)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관 작 물(기)	비 고
* *			238,748.7	53,561	72	
기반시설	소 계		22,117	19,166		
	도 로	㊡	20,309	17,358 (2,951)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공장	가	1,808	1,808		
		가-1	250	250		
		가-2	352	352		
		가-3	124	124		
		가-4	379	379		
		가-5	472	472		
		가-6	199	199		
조경시설	소 계				10	
	파고라	①			3	
		①-1			1	
		①-2			1	
		①-3			1	
	정 자	②			7	
		②-1			1	
		②-2			1	
		②-3			1	
		②-4			1	
		②-5			2	
		②-6			1	
휴양시설	소 계		864	864		
	휴게소	나	864	864		
		나-1	552	552		
		나-4	107	107		
		나-6	107	107		
		나-7	8	8		
		나-8	8	8		
		나-9	58	58		
		나-10	8	8		
		나-11	8	8		
		나-12	8	8		
유희시설	소 계		3,093	3,093		
	어린이 놀이터	다	3,093	3,093		
		다-1	494	494		
		다-2	733	733		
		다-3	1,085	1,085		
		다-4	422	422		
		다-5	359	359		
운동시설	소 계		18,515	18,515	39	
	체력단련장	라	621	621		
	다목적 운동장	마	12,543	12,543	4	
		마-1	11,732	11,732	4	
		마-2	266	266		
		마-3	545	545		
	축구장	마	243	243		
	종합운동장	사	3,688	3,688		
	실내배드민턴장	10	1,420	1,420		
	체력단련시설				35	
교양시설	소 계		18,000	8,066	23	
	유아숲체험원	파	18,000	8,066	23	
		파-1	8,000	3,048	3	
		파-2	10,000	5,018	20	
환락시설	소 계		4,124	3,857		
	악수터	자	282	282		
		자-2	205	205		
		자-3	57	57		
	주차장	차	3,291	3,024		
		차-1	2,037	1,770		77면
		차-2	282	282		12면
		차-3	604	604		32면
		차-4	368	368		43면
	화장실	11	371	371		
	테크쉼터	터	200	200		
		터-1	100	100		
		터-2	100	100		
녹지및기타	소 계		172,035.7			
	녹 지		172,035.7			

■ 범 례 ("라"지구)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관 작 물(기)	비 고
* *			220,878.3	62,579	9	
기반시설	소 계		31,184	26,973		
	도 로	㊡	28,685	24,474 (4,211)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전망광장	나	2,499	2,499		
		나-2	76	76		
		나-3	2,423	2,423		
조경시설	소 계		532	532	8	
	파고라	①			4	
		①-1			1	
		①-2			1	
		①-3			1	
		①-4			1	
	정자	②			4	
		②-1			1	
		②-2			1	
		②-3			1	
		②-4			1	
	아생화단지	가	532	532		
휴양시설	소 계		2,701	2,701		
	쉼공원	다	274	274		
	노인정	1	540	540		
	휴게소	라	1,887	1,887		
		라-1	418	418		
		라-4	468	468		
		라-10	710	710		
		라-11	125	125		
		라-14	166	166		
유희시설	소 계		7,070	7,070	1	
	어린이 놀이터	다	7,070	7,070	1	
		다-1	866	866	1	
		다-2	705	705		
		다-3	993	993		
		다-5	4,506	4,506		
운동시설	소 계		21,204	21,204		
	체육관	2	3,985	3,985		
	테니스장	사	2,622	2,622		
		사-1	1,953	1,953		
		사-2	669	669		
	베드민턴장	아	343	343		
		아-4	343	343		
	축구장	자	11,880	11,880		
		자-1	5,441	5,441		
		자-2	6,439	6,439		
	농구장	차	547	547		
	실내배드민턴장	12	1,827	1,827		
교양시설	소 계		1,707	1,707		
	장난백배틀터 체험장	8	1,046	1,046		
	론심어린이집	9	661	661		
환락시설	소 계		1,672	1,672		
	전망대	4	545	545		
	주차장	타	968	968		
		타-1	54	54		
		타-2	337	337		
		타-3	203	203		
		타-4	374	374		
	화장실	5	159	159		
		5-1	24	24		
		5-2	135	135		
관리시설	소 계		720	720		
	관리사무실	6	684	684		
		6-1	540	540		
		6-2	108	108		
		6-3	36	36		
	창고	7	36	36		
녹지및기타	소 계		154,088.3			
	녹 지		154,088.3			

조성계획도[변경후]

오동근린공원(전체)

SCALE=1/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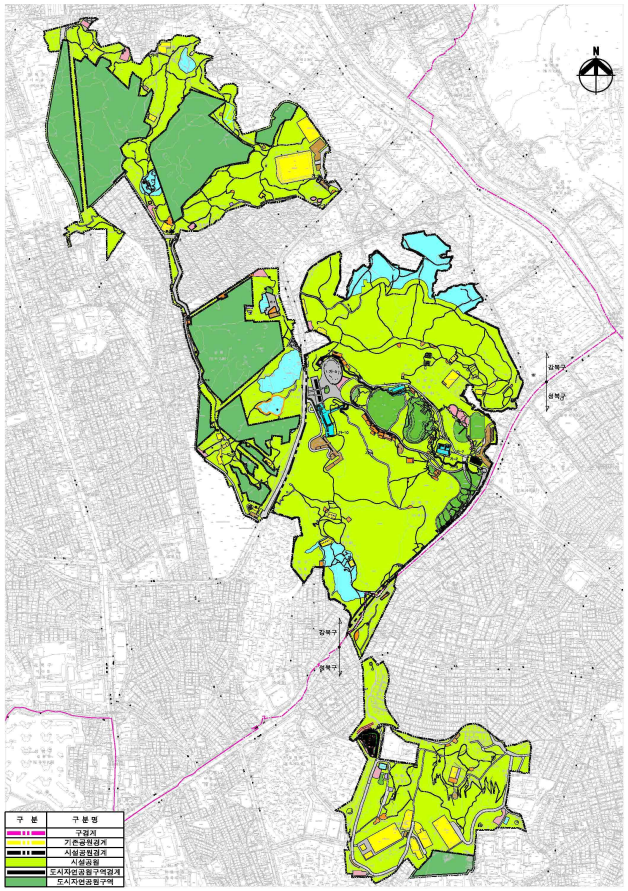

구 분	구분명
	구경계
	기존공원경계
	시설공원경계
	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도시자연공원구역

■ 범 례 ("가"지구) -2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유희시설	어린이 놀이터	파-6	138	138	2	
		파-7	1,353	1,353	7	
		파-8	806	806	2	
운동시설	소 계		8,186	6,756	31	
	체력단련장	하	310	310		
		하-1	310	310		
	다목적운동장	거	1,068	1,068		
		거-1	491	491		
		거-2	577	577		
	테드민턴장	너	2,330	2,330		
		너-2	537	537		
		너-4	519	519		
		너-5	426	426		
		너-6	848	848		
	육구장	더	561	561		
		더-1	561	561		
	테니스장	러	1,759	1,759		
		러-1	1,759	1,759		
	체력단련 시설	⑭	2,158	728	31	
교양시설	소 계		51,508	51,508	1	
	구현로	1	800	800		
	문화센터	2	4,108	4,108		
	미술관	3	1,187	1,187		
	민중식당원	더	33,610	33,610		
	화목원	머	11,803	11,603		
	무대조형물	⑭			1	
편익시설	소 계		9,713	9,713	1	
	주차장	머	3,026	3,026		
	주차장	버	125	125		
	주차장	서	226	226		
	전망대	4	2,169	2,169		
	레스토랑	5	3,082	3,082		
	글래스 파빌리온	6	446	446		
	화장실	7	558	558		
		7-1	81	81		
	겸시형밀리베이터	⑭			1	
관리시설	소 계		1,829	1,829		
	방문자센터	8	1,829	1,829		
	관리사무소	10	(18)	(18)		
녹지및기타	소 계		488,201.6			
	녹 지		488,661.6			
	동물놀이터	동-1	540	540		

■ 범 례 ("가"지구) -1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684,158.6	195,065	80	
기반시설	소 계		52,743	52,743		
	도 로		37,661	37,661		
	오동교		200	200		
	광장	가	14,882	14,882		
		가-1	2,873	2,873		
		가-2	33	33		
		가-3	14	14		
		가-4	300	300		
		가-5	11,316	11,316		
		가-6	127	127		
		가-7	54	54		
		가-8	79	79		
		가-9	58	58		
		가-10	28	28		
조경시설	소 계		54,045	54,045	29	
	월영연못	나	12,526	12,526		
	계 류	다	3,971	3,971		
		다-1	2,829	2,829		
		다-2	1,142	1,142		
	월폭연못	라	3,998	3,998		
	미러폰드	푸	2,400	2,400		
	침등분수	저	386	386		
	저류지	마	467	467		
	야생초화원	9	7,793	7,793		
	전디이당	사	21,664	21,664		
		사-1	13,228	13,228		
		사-2	8,436	8,436		
	참포원	아	1,167	1,167		
	낙수대	누	73	73		
	월광폭포	⑥			1	
	월광대	⑤			1	
	월영대	⑧			1	
	전용정자	①			2	
		①-1			1	
		①-2			1	
	파고라	⑤			12	
	환경조형물	⑩			6	
	조형화분	⑪			4	
	정 자	⑫			1	
		⑫-1			1	
	상징조형물	(1)			1	
휴양시설	소 계		13,772	13,772	5	
	휴게소	자	2,700	2,700	3	
		자-1	384	384		
		자-2	303	303		
		자-3	126	126		
		자-4	215	215		
		자-5	188	188		
		자-6	333	333		
		자-7	137	137		
		자-8	545	545		
		자-9	200	200		
		자-10	80	80		
		자-11	130	130		
		자-12	24	24	2	
		자-13	55	55	1	
	데크쉼터	카	10,443	10,443	2	
		카-1	780	780		
		카-2	146	146		
		카-3	72	72		
		카-4	419	419		
		카-5	7,735	7,735		
		카-6	966	966		
		카-7	79	79		
		카-8	92	92		
		카-9	119	119		
		카-10	35	35	2	
	수변쉼터	타	629	629		
		타-1	49	49		
		타-2	268	268		
		타-3	41	41		
		타-4	195	195		
		타-5	76	76		
유희시설	소 계		4,159	4,159	13	
	어린이 놀이터	파	4,159	4,159		
		파-1	482	482		
		파-2	458	458		
		파-3	715	715		
		파-4	61	61	1	
		파-5	146	146	1	

조성계획도[변경후]

오동근린공원(전체)

■ 범 례 ("나"지구)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관 작 물(기)	비 고
* *			115,490.2	33,989	31	
기반시설	소 계		17,308	8,748		
	도 로	㊡	14,297	5,737 (5,660)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공장	가	3,011	3,011		
		가-1	1,813	1,813		
		가-2	217	217		
		가-3	91	91		
		가-4	890	890		
조경시설	소 계		408	408	17	
	파고라	①			13	
	면옷	파	408	408		
	정 자	②			4	
		②-1			1	
		②-2			1	
		②-3			1	
		②-4			1	
휴양시설	소 계		1,417	1,417		
	휴게소	나	1,417	1,417		
		나-1	364	364		
		나-4	68	68		
		나-5	12	12		
		나-6	433	433		
		나-7	453	453		
		나-8	37	37		
		나-9	50	50		
유희시설	소 계		1,446	1,446		
	어린이 놀이터	다	1,446	1,446		
		다-1	446	446		
		다-2	1,000	1,000		
운동시설	소 계		2,336	2,336	14	
	체력단련장	라	1,459	1,459		
		라-1	250	250		
		라-2	441	441		
		라-3	708	708		
		라-4	60	60		
	다목적운동장	마	515	515		
	게이트볼장	가	362	362		
	체력단련시설				14	
교양시설	소 계		18,467	18,467		
	도서관	1	1,720	1,720		
	자연학습장	아	129	129		
	포테닉가든	자	3,888	3,888		
	생태습지원	차	12,730	12,730		
편익시설	소 계		847	847		
	주차장	타	836	836		
		타-2	307	307		5면
		타-3	529	529		40면
	화장실	2	11	11		
관리시설	소 계		320	320		
	창고	3	210	210		
		3-1	150	150		
		3-2	30	30		
		3-3	30	30		
	화장실	4	30	30		
	사무실	5	80	80		
녹지및기타	소 계		72,941.2			
	녹 지		72,941.2			

■ 범 례 ("다"지구)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관 작 물(기)	비 고
* *			238,748.7	54,374	80	
기반시설	소 계		22,616	19,665		
	도 로	㊡	20,603	17,652 (2,951)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공장	가	2,013	2,013		
		가-1	250	250		
		가-2	352	352		
		가-3	124	124		
		가-4	379	379		
		가-5	472	472		
		가-6	231	231		
		가-7	205	205		
조경시설	소 계				10	
	파고라	①			3	
		①-1			1	
		①-2			1	
		①-3			1	
	정 자	②			7	
		②-1			1	
		②-2			1	
		②-3			1	
		②-4			1	
		②-5			2	
		②-6			1	
휴양시설	소 계		1,010	1,010		
	휴게소	나	864	864		
		나-1	552	552		
		나-4	107	107		
		나-6	107	107		
		나-7	8	8		
		나-8	8	8		
		나-9	58	58		
		나-10	8	8		
		나-11	8	8		
		나-12	8	8		
	아외휴게소	바	146	146		
		바-1	83	83		
		바-2	63	63		
유희시설	소 계		3,093	3,093		
	어린이 놀이터	다	3,093	3,093		
		다-1	494	494		
		다-2	733	733		
		다-3	1,085	1,085		
		다-4	422	422		
		다-5	359	359		
운동시설	소 계		18,515	18,515	47	
	체력단련장	라	621	621		
	다목적 운동장	마	12,543	12,543	4	
		마-1	11,732	11,732	4	
		마-2	266	266		
		마-3	545	545		
	족구장	마	243	243		
	종합운동장	사	3,688	3,688		
	실내배드민턴장	10	1,420	1,420		
	체력단련시설				43	
교양시설	소 계		18,000	8,066	23	
	유아숲체험원	파	18,000	8,066	23	
		파-1	8,000	3,048	3	
		파-2	10,000	5,018	20	
편익시설	소 계		4,180	3,913		
	약수터	자	282	282		
		자-2	205	205		
		자-3	57	57		
	주차장	차	3,291	3,024		
		차-1	2,037	1,770		77면
		차-2	282	282		12면
		차-3	604	604		32면
		차-4	368	368		43면
	화장실	11	427	427		
		11-1	371	371		
		11-2	22	22		
		11-3	17	17		
		11-4	17	17		
	테크쉼터	터	200	200		
		터-1	100	100		
		터-2	100	100		
관리시설	소 계		112	112		
	창고	10	112	112		
녹지및기타	소 계		171,222.7			
	녹 지		171,222.7			

■ 범 례 ("라"지구)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관 작 물(기)	비 고
* *			220,878.3	62,579	9	
기반시설	소 계		31,184	26,973		
	도 로	㊡	28,685	24,474 (4,211)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전망광장	나	2,499	2,499		
		나-2	76	76		
		나-3	2,423	2,423		
조경시설	소 계		532	532	8	
	파고라	①			4	
		①-1			1	
		①-2			1	
		①-3			1	
		①-4			1	
	정자	②			4	
		②-1			1	
		②-2			1	
		②-3			1	
		②-4			1	
	아생화단지	가	532	532		
휴양시설	소 계		2,701	2,701		
	쉼공원	다	274	274		
	노인정	1	540	540		
	휴게소	라	1,887	1,887		
		라-1	418	418		
		라-4	468	468		
		라-10	710	710		
		라-11	125	125		
		라-14	166	166		
유희시설	소 계		7,070	7,070	1	
	어린이 놀이터	마	7,070	7,070	1	
		마-1	866	866	1	
		마-2	705	705		
		마-3	993	993		
		마-5	4,506	4,506		
운동시설	소 계		21,204	21,204		
	체육관	2	3,985	3,985		
	테니스장	사	2,622	2,622		
		사-1	1,953	1,953		
		사-2	669	669		
	배드민턴장	아	343	343		
		아-4	343	343		
	축구장	자	11,880	11,880		
		자-1	5,441	5,441		
		자-2	6,439	6,439		
	농구장	차	547	547		
	실내배드민턴장	12	1,827	1,827		
교양시설	소 계		1,707	1,707		
	장난백배등의 표배장	8	1,046	1,046		
	론성어련어힘	9	661	661		
편익시설	소 계		1,672	1,672		
	전망대	4	545	545		
	주차장	타	968	968		
		타-1	54	54		
		타-2	337	337		
		타-3	203	203		
		타-4	374	374		
	화장실	5	159	159		
		5-1	24	24		
		5-2	135	135		
관리시설	소 계		720	720		
	관리사무실	6	684	684		
		6-1	540	540		
		6-2	108	108		
		6-3	36	36		
	창고	7	36	36		
녹지및기타	소 계		154,088.3			
	녹 지		154,088.3			

조성계획도[변경전]-가

SCALE=1/3,000

오동근린공원("가"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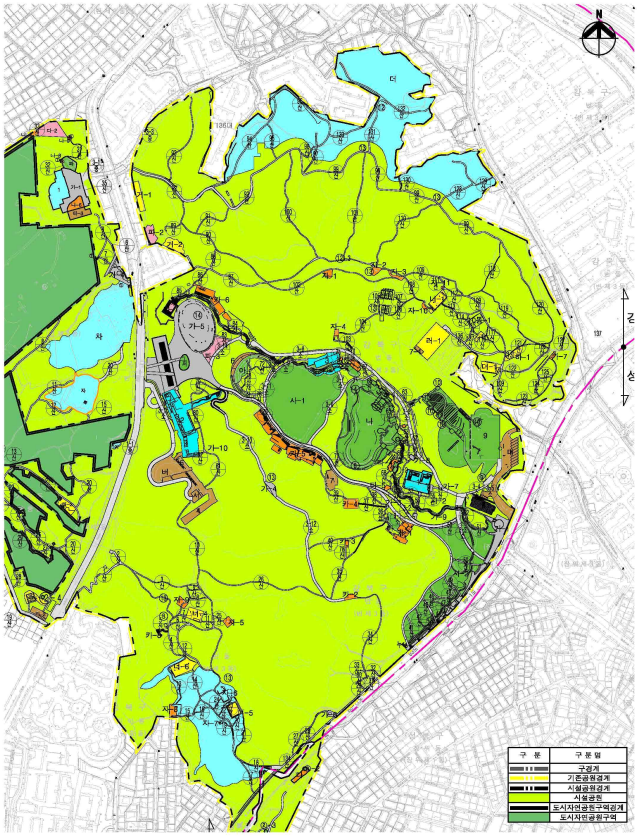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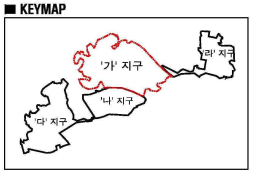

■ 범 례 ("가"지구) -1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684,156.6	195,013	68	
기반시설	소 계		52,572	52,572		
	도 로		37,490	37,490		
	오동교		200	200		
	광장		14,882	14,882		
		가	14,882	14,882		
		가-1	2,873	2,873		
		가-2	33	33		
		가-3	14	14		
		가-4	300	300		
		가-5	11,316	11,316		
		가-6	127	127		
		가-7	54	54		
		가-8	79	79		
		가-9	58	58		
		가-10	28	28		
조경시설	소 계		57,322	57,322	34	
	둘업연못	나	12,526	12,526		
	계 류	다	3,971	3,971		
		다-1	2,829	2,829		
		다-2	1,142	1,142		
	활쪽연못	라	3,598	3,598		
	미러폰드	푸	2,400	2,400		
	점등분수	지	386	386		
	저류지	마	467	467		
	아생초화원	9	11,070	11,070		
	전디메당	시	21,664	21,664		
		시-1	13,228	13,228		
		시-2	8,436	8,436		
	참포원	아	1,167	1,167		
	낙우대	누	73	73		
	튬광폭포	ⓒ			1	
	월광대	ⓢ			1	
	월영대	ⓔ			1	
	전출명자	ⓘ			2	
		ⓘ-1			1	
		ⓘ-2			1	
	파고라	ⓚ			13	
	조형파고라	ⓛ			1	
	환경조형물	ⓜ			10	
	조명위문	ⓝ			4	
	정 자	ⓞ			1	
		ⓞ-1			1	
휴양시설	소 계		13,658	13,658		
	휴게소	자	2,621	2,621		
		자-1	364	364		
		자-2	303	303		
		자-3	126	126		
		자-4	215	215		
		자-5	188	188		
		자-6	333	333		
		자-7	137	137		
		자-8	545	545		
		자-9	200	200		
		자-10	80	80		
		자-11	130	130		
	데크쉼터	카	10,408	10,408		
		카-1	780	780		
		카-2	146	146		
		카-3	72	72		
		카-4	419	419		
		카-5	7,735	7,735		
		카-6	966	966		
		카-7	79	79		
		카-8	92	92		
		카-9	119	119		
	수변쉼터	타	629	629		
		타-1	49	49		
		타-2	268	268		
		타-3	41	41		
		타-4	195	195		
		타-5	76	76		
유희시설	소 계		1,655	1,655		
	어린이 놀이터	파	1,655	1,655		
		파-1	482	482		
		파-2	458	458		
		파-3	715	715		
운동시설	소 계		8,186	6,756	31	
	체력단련장	하	310	310		
		하-1	310	310		
	다목적운동장	거	1,068	1,068		
		거-1	491	491		
		거-2	577	577		

■ 범 례 ("가"지구) -2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운동시설	테드턴턴장	디	2,330	2,330		
		디-2	537	537		
		디-4	519	519		
		디-5	426	426		
		디-6	848	848		
	족구장	머	561	561		
		머-1	561	561		
	테니스장	러	1,759	1,759		
		러-1	1,759	1,759		
	체력단련 시설	ⓑ	2,158	728	31	
공양시설	소 계		51,508	51,508	1	
	구천목	1	800	800		
	문화센터	2	4,108	4,108		
	미술관	3	1,187	1,187		
	단풍식물원	디	33,610	33,610		
	화목원	머	11,803	11,803		
	무대조형물	ⓐ			1	
편익시설	소 계		9,713	9,713	1	
	주차장	머	3,026	3,026		
	주차장	버	125	125		
	주차장	사	226	226		
	전망대	4	2,169	2,169		
	리스토랑	5	3,082	3,082		
	글래스 파밀리온	6	446	446		
	화장실	7	558	558	1	
		7-1	81	81		
	정시창릴리에이대	ⓚ			1	
관리시설	소 계		1,829	1,829	1	
	방문자센터	8	1,829	1,829		
	관리사무소	10	(18)	(18)	1	
녹지및기타	소 계		487,768.6			
	녹 지		487,173.6			
	동물놀이터	동-1	595			

조성계획도[변경후]-가

오동근린공원("가"지구)

SCALE=1/3,000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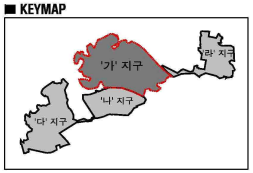

■ 범 례 ("가"지구) -1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684,156.6	185,065	80	
기반시설	소 계		52,743	52,743		
	도 로		37,661	37,661		
	오동교		200	200		
	광장	가	14,882	14,882		
		가-1	2,873	2,873		
		가-2	33	33		
		가-3	14	14		
		가-4	300	300		
		가-5	11,316	11,316		
		가-6	127	127		
		가-7	54	54		
		가-8	79	79		
		가-9	58	58		
		가-10	26	26		
조경시설	소 계		54,045	54,045	29	
	철명연못	나	12,526	12,526		
	계 류	다	3,971	3,971		
		다-1	2,829	2,829		
		다-2	1,142	1,142		
	철폭연못	라	3,598	3,598		
	바위폭포	바	2,400	2,400		
	원통분수	저	386	386		
	저류지	마	467	467		
	아쉐조화원	9	7,793	7,793		
	전이마당	사	21,664	21,664		
		사-1	13,228	13,228		
		사-2	8,436	8,436		
	창포원	아	1,167	1,167		
	낙수대	누	73	73		
	철광폭포	④			1	
	월령대	⑤			1	
	철명대	⑥			1	
	전통정자	⑦			2	
		⑦-1			1	
		⑦-2			1	
	파고라	⑧			12	
	환경조형물	⑨			6	
	조형차분	⑩			4	
	성 사	⑫			1	
		⑫-1			1	
	상징조형물	(1)			1	
휴양시설	소 계		13,772	13,772	5	
	휴게소	자	2,700	2,700	3	
		자-1	364	364		
		자-2	303	303		
		자-3	126	126		
		자-4	215	215		
		자-5	188	188		
		자-6	333	333		
		자-7	137	137		
		자-8	545	545		
		자-9	200	200		
		자-10	80	80		
		자-11	130	130		
		자-12	24	24	2	
		자-13	55	55	1	
	데크쉼터	카	10,443	10,443	2	
		카-1	780	780		
		카-2	146	146		
		카-3	72	72		
		카-4	419	419		
		카-5	7,735	7,735		
		카-6	966	966		
		카-7	79	79		
		카-8	92	92		
		카-9	119	119		
		카-10	35	35	2	
	수변쉼터	타	629	629		
		타-1	49	49		
		타-2	268	268		
		타-3	41	41		
		타-4	195	195		
		타-5	76	76		
유희시설	소 계		4,159	4,159	13	
	어린이 놀이터	파	4,159	4,159		
		파-1	482	482		
		파-2	458	458		
		파-3	715	715		
		파-4	61	61	1	
		파-5	146	146	1	

■ 범 례 ("가"지구) -2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유희시설	어린이 놀이터	파-6	138	138	2	
		파-7	1,353	1,353	7	
		파-8	806	806	2	
운동시설	소 계		8,186	6,756	31	
	체력단련장	하	310	310		
		하-1	310	310		
	다목적운동장	거	1,068	1,068		
		거-1	491	491		
		거-2	577	577		
	배드민턴장	너	2,330	2,330		
		너-2	537	537		
		너-4	519	519		
		너-5	426	426		
		너-6	848	848		
	족구장	더	561	561		
		더-1	561	561		
	테니스장	러	1,759	1,759		
		러-1	1,759	1,759		
	체력단련 시설	⑭	2,159	728	31	
공공시설	소 계		51,508	51,508	1	
	구판욕	1	800	800		
	문화센터	2	4,108	4,108		
	미술관	3	1,187	1,187		
	다종식물원	다	33,610	33,610		
	파쇄원	머	11,803	11,803		
	안내조형물	⑪			1	
편익시설	소 계		9,713	9,713	1	
	주차장	머	3,026	3,026		
	주차장	버	125	125		
	주차장	서	226	226		
	전망대	4	2,169	2,169		
	미스트원	5	3,082	3,082		
	글래스 파빌리온	6	446	446		
	화장실	7	558	558		
		7-1	81	81		
	경사철물리에이터	⑬			1	
관리시설	소 계		1,829	1,829		
	발문자센터	8	1,829	1,829		
	관리사무소	10	(18)	(18)		
녹지및기타	소 계		488,201.6			
	녹 지		488,661.6			
	동물놀이터	동-1	540	540		

서울특별시
2024. 10. 4. (금)

조성계획도[변경부분]-가

SCALE=1/1,000

오동근린공원("가"지구)

□ 변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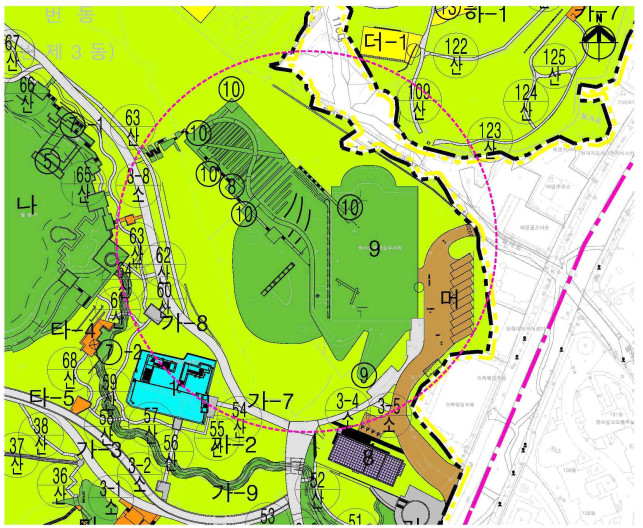

0 10 20 40 60 100(m)

■ 변경전

구분	시설명	부호	면적(㎡)	공작물(기)
기반시설	도로		37,490	
조경시설	야생초화원	9	11,070	
	피고라	⑧	-	13
	초월퍼고라	⑥	-	1
	환경조형물	⑩	-	10
휴양시설	휴게소		-	
	데크쉼터		-	
유희시설	어린이 놀이터	파	1,655	
녹지및기타	녹지		487,173.6	

□ 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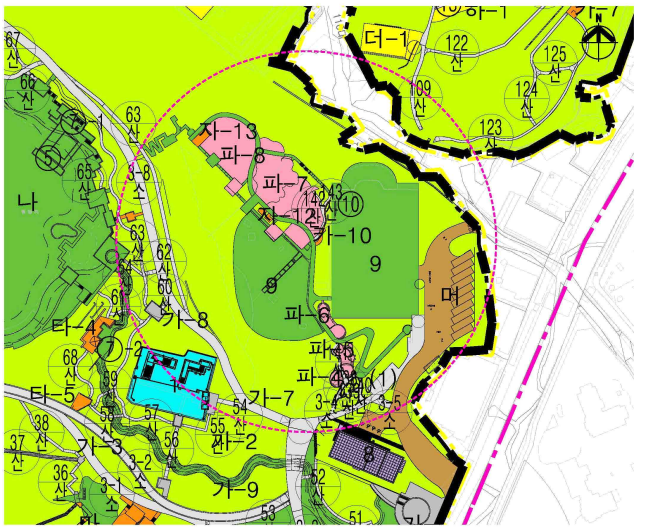

0 10 20 40 60 100(m)

■ 변경후

구분	시설명	부호	면적(㎡)	공작물(기)
기반시설	도로		37,661	
조경시설	야생초화원	9	7,793	
	피고라	⑧	-	12
	초월퍼고라	⑥	-	-
	환경조형물	⑩	-	6
휴양시설	휴게소	자-12	24	2
		자-13	55	1
	데크쉼터	카-10	35	2
유희시설	어린이 놀이터	파-4	61	1
		파-5	146	1
		파-6	138	2
		파-7	1,353	7
		파-8	806	2
녹지및기타	녹지		468,661.6	

조성계획도[변경전]-나

오동근린공원("나"지구)

SCALE=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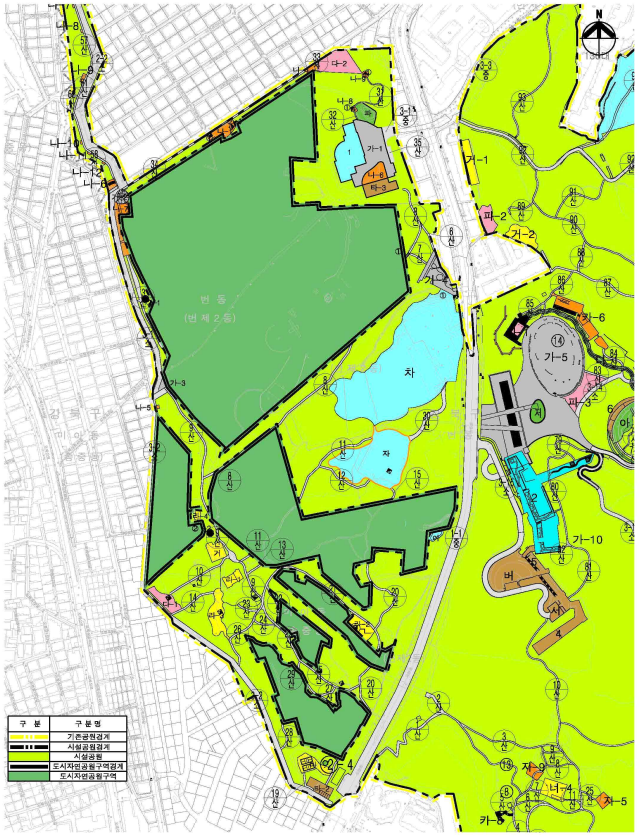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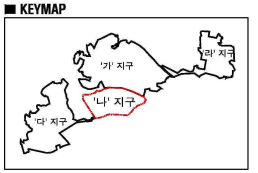

■ 범 례 ("나"지구)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115,490.2	33,658	31	
기반시설	소 계		17,358	8,748		
	도 로	㉮	14,297	5,737 (8,560)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제외함
	광장	가	3,011	3,011		
		가-1	1,813	1,813		
		가-2	217	217		
		가-3	91	91		
		가-4	890	890		
조경시설	소 계		408	408	17	
	파고라	①			13	
	팔각정	팔	408	408		
	정 자	⑦			4	
		⑦-1			1	
		⑦-2			1	
		⑦-3			1	
		⑦-4			1	
휴양시설	소 계		1,417	1,417		
	휴게소	나	1,417	1,417		
		나-1	364	364		
		나-4	68	68		
		나-5	12	12		
		나-6	433	433		
		나-7	453	453		
		나-8	37	37		
		나-9	50	50		
유희시설	소 계		1,446	1,446		
	어린이 놀이터	다	1,446	1,446		
		다-1	446	446		
		다-2	1,000	1,000		
운동시설	소 계		2,336	2,336	14	
	체력단련장	라	1,459	1,459		
		라-1	250	250		
		라-2	441	441		
		라-3	708	708		
		라-4	60	60		
	다목적운동장	마	515	515		
	게이트볼장	거	362	362		
	체력단련시설				14	
교양시설	소 계		18,467	18,467		
	도서관	1	1,720	1,720		
	자연학습장	아	129	129		
	보석너가든	자	3,888	3,888		
	생태습지원	차	12,730	12,730		
편익시설	소 계		836	836		
	주차장	타	836	836		
		타-2	307	307		5면
		타-3	529	529		40면
녹지및기타	소 계		73,272.2			
	녹 지		73,272.2			

조성계획도[변경후]-나

오동근린공원("나"지구)

SCALE=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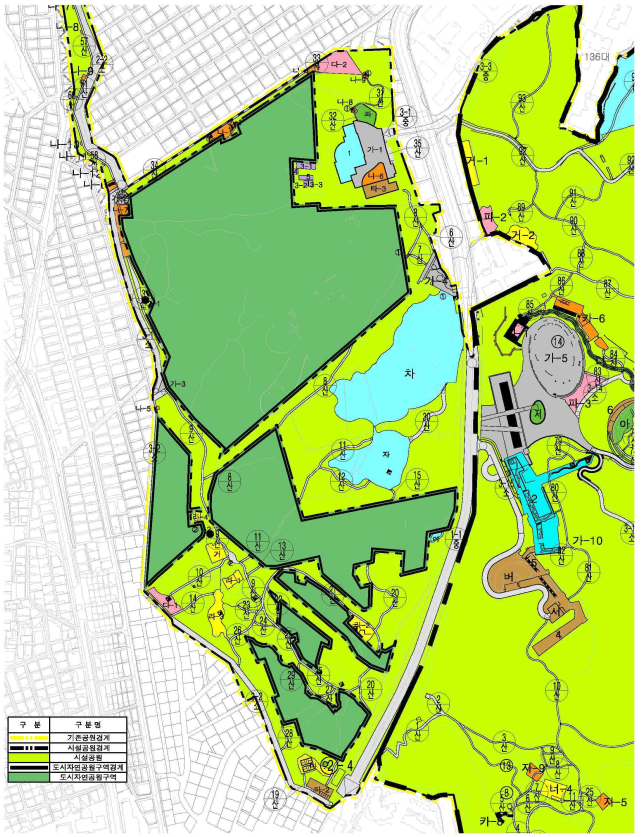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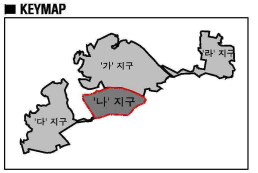

■ 범 례 ("나"지구)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115,490.2	33,989	31	
기반시설	소 계		17,308	8,748		
	도 로	㉮	14,297	5,737 (8,560)		도시계획도로 시설변적 이외분
	광장	가	3,011	3,011		
		가-1	1,813	1,813		
		가-2	217	217		
		가-3	91	91		
		가-4	890	890		
조경시설	소 계		408	408	17	
	파고라	①			13	
	연못	파	408	408		
	정 자	②			4	
		②-1			1	
		②-2			1	
		②-3			1	
		②-4			1	
휴양시설	소 계		1,417	1,417		
	휴게소	나	1,417	1,417		
		나-1	364	364		
		나-4	68	68		
		나-5	12	12		
		나-6	433	433		
		나-7	453	453		
		나-8	37	37		
		나-9	50	50		
유희시설	소 계		1,446	1,446		
	어린이 놀이터	다	1,446	1,446		
		다-1	446	446		
		다-2	1,000	1,000		
운동시설	소 계		2,336	2,336	14	
	체력단련장	라	1,459	1,459		
		라-1	250	250		
		라-2	441	441		
		라-3	708	708		
		라-4	60	60		
	다목적운동장	마	515	515		
	게이트볼장	거	362	362		
	체력단련시설				14	
교양시설	소 계		18,467	18,467		
	도서관	1	1,720	1,720		
	자연학습장	아	129	129		
	보육시간원	자	3,888	3,888		
	생태습지원	지	12,730	12,730		
편의시설	소 계		847	847		
	주차장	바	836	836		
		타-2	307	307		5면
		타-3	529	529		40면
	화장실	2	11	11		
관리시설	소 계		320	320		
	창고	3	210	210		
		3-1	150	150		
		3-2	30	30		
		3-3	30	30		
	화장실	4	30	30		
	사무실	5	80	80		
녹지및기타	소 계		72,941.2			
	녹 지		72,941.2			

조성계획도[변경부분]-나

SCALE=1/400

오동근린공원("나"지구)

□ 변경전

□ 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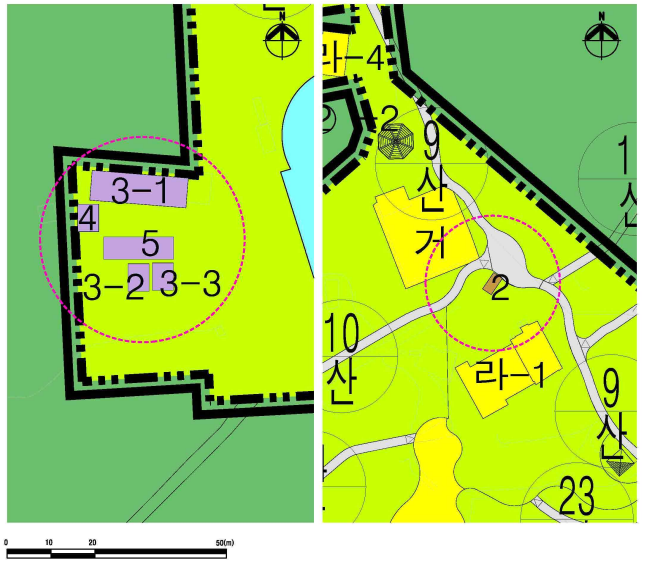

■ 변경전

구분	시설명	부호	면적(㎡)	공작물(기)
편익시설	화장실		-	
관리시설	창고		-	
	화장실		-	
	사무실		-	
녹지및기타	녹지		73,272.2	

■ 변경후

구분	시설명	부호	면적(㎡)	공작물(기)
편익시설	화장실	2	11	
관리시설	창고	3	210	
		3-1	150	
		3-2	30	
		3-3	30	
	화장실	4	30	
	사무실	5	80	
녹지및기타	녹지		72,941.2	

조성계획도[변경전]-다

오동근린공원("다"지구)

SCALE=1/3,000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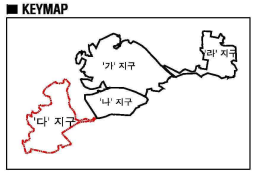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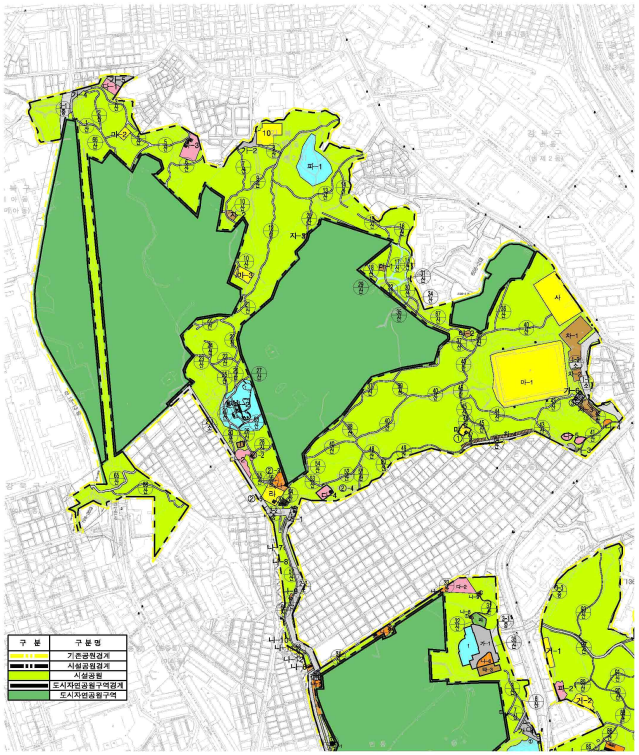

■ 범 례 ("다"지구)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적 률(기)	비 고
합	계		238,748.7	53,561	72	
기반시설	소 계		22,117	19,166		
	도 로	㊢	20,309	17,358 (2,951)		도시계획도로 시설연락 지표함
	광장	가	1,808	1,808		
		가-1	250	250		
		가-2	352	352		
		가-3	124	124		
		가-4	379	379		
		가-5	472	472		
		가-6	199	199		
조경시설	소 계				10	
	파고라	⑨			3	
		⑨-1			1	
		⑨-2			1	
		⑨-3			1	
	정 자	⑦			7	
		⑦-1			1	
		⑦-2			1	
		⑦-3			1	
		⑦-4			1	
		⑦-5			2	
		⑦-6			1	
휴양시설	소 계		864	864		
	휴게소	나	864	864		
		나-1	552	552		
		나-4	107	107		
		나-6	107	107		
		나-7	8	8		
		나-8	8	8		
		나-9	58	58		
		나-10	8	8		
		나-11	8	8		
		나-12	8	8		
유희시설	소 계		3,093	3,093		
	어린이 놀이터	다	3,093	3,093		
		다-1	494	494		
		다-2	733	733		
		다-3	1,085	1,085		
		다-4	422	422		
		다-5	359	359		
운동시설	소 계		18,515	18,515	39	
	체력단련장	라	621	621		
	다목적 운동장	마	12,543	12,543	4	
		마-1	11,732	11,732	4	
		마-2	266	266		
		마-3	545	545		
	족구장	바	243	243		
	종합운동장	사	3,688	3,688		
	실내배드민턴장	10	1,420	1,420		
	체력단련시설				35	
교양시설	소 계		18,000	8,066	23	
	유아숲체험원	파	18,000	8,066	23	
		파-1	8,000	3,046	3	
		파-2	10,000	5,018	20	
편익시설	소 계		4,124	3,857		
	약수터	자	262	262		
		자-2	205	205		
		자-3	57	57		
	주차장	차	3,291	3,024		
		차-1	2,037	1,770		77면
		차-2	282	282		12면
		차-3	604	604		32면
		차-4	368	368		43면
	화장실	11	371	371		
	데크쉼터	터	200	200		
		터-1	100	100		
		터-2	100	100		
녹지및기타	소 계		172,035.7			
	녹 지		172,035.7			

조성계획도[변경후]-다

SCALE=1/3,000

오동근린공원("다"지구)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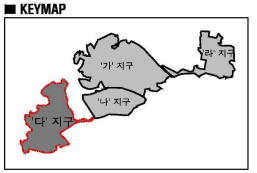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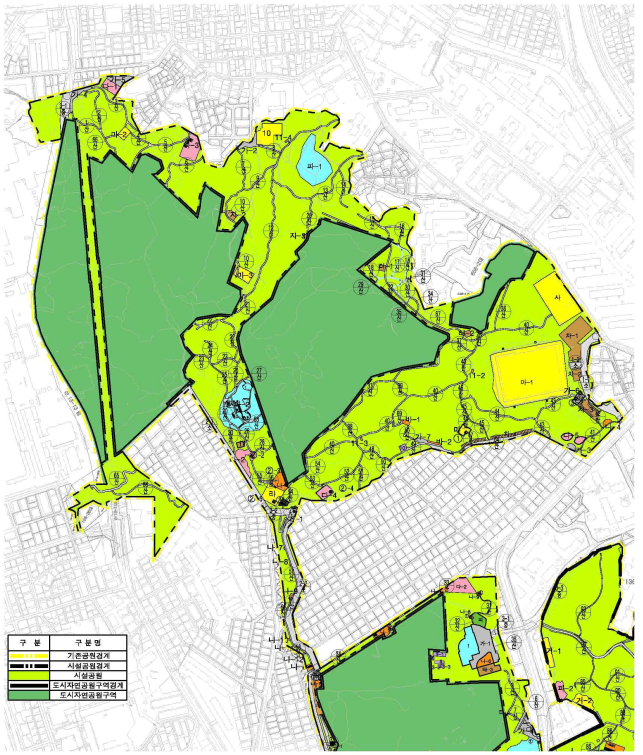

■ 범 례 ("다"지구)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	*		238,748.7	54,374	80	
기반시설	소 계		22,616	19,665		
	도 로	㉮	20,603	17,652 (2,951)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시설함
	광장	가	2,013	2,013		
		가-1	250	250		
		가-2	352	352		
		가-3	124	124		
		가-4	379	379		
		가-5	472	472		
		가-6	231	231		
		가-7	205	205		
조경시설	소 계				10	
	파고라	⑧			3	
		⑧-1			1	
		⑧-2			1	
		⑧-3			1	
	정 자	⑦			7	
		⑦-1			1	
		⑦-2			1	
		⑦-3			1	
		⑦-4			1	
		⑦-5			2	
		⑦-6			1	
휴양시설	소 계		1,010	1,010		
	휴게소	나	864	864		
		나-1	552	552		
		나-4	107	107		
		나-6	107	107		
		나-7	8	8		
		나-8	8	8		
		나-9	58	58		
		나-10	8	8		
		나-11	8	8		
		나-12	8	8		
	이의휴게소	바	146	146		
		바-1	83	83		
		바-2	63	63		
유희시설	소 계		3,093	3,093		
	어린이 놀이터	다	3,093	3,093		
		다-1	494	494		
		다-2	733	733		
		다-3	1,085	1,085		
		다-4	422	422		
		다-5	359	359		
운동시설	소 계		18,515	18,515	47	
	체력단련장	피	621	621		
	다목적 운동장	마	12,543	12,543	4	
		마-1	11,732	11,732	4	
		마-2	266	266		
		마-3	545	545		
	족구장	마	243	243		
	종합운동장	사	3,688	3,688		
	실내배드민턴장	10	1,420	1,420		
	체력단련시설				43	
교양시설	소 계		18,000	8,066	23	
	유아숲체험원	파	18,000	8,066	23	
		파-1	8,000	3,048	3	
		파-2	10,000	5,018	20	
편익시설	소 계		4,180	3,913		
	약수터	자	262	262		
		자-2	205	205		
		자-3	57	57		
	주차장	차	3,291	3,024		
		차-1	2,037	1,770		77면
		차-2	282	282		12면
		차-3	604	604		32면
		차-4	368	368		43면
	화장실	11	427	427		
		11-1	371	371		
		11-2	22	22		
		11-3	17	17		
		11-4	17	17		
	데크쉼터	테	200	200		
		테-1	100	100		
		테-2	100	100		
관리시설	소 계		112	112		
	창고	10	112	112		
녹지및기타	소 계		171,222.7			
	녹 지		171,222.7			

조성계획도[변경부분]-다

SCALE=1/1,000

오동근린공원("다"지구)

□ 변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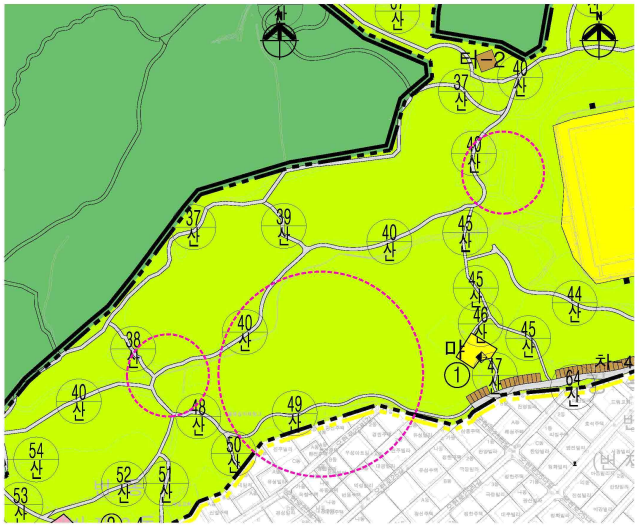

■ 변경전

구분	시설명	부호	면적(㎡)	공작물(기)
기반시설	도로	㉮	20,309	
	광장		-	
휴양시설	야외휴게소		-	
문화시설	화장실		-	
관리시설	창고		-	
녹지및기타	녹지		172,035.7	

□ 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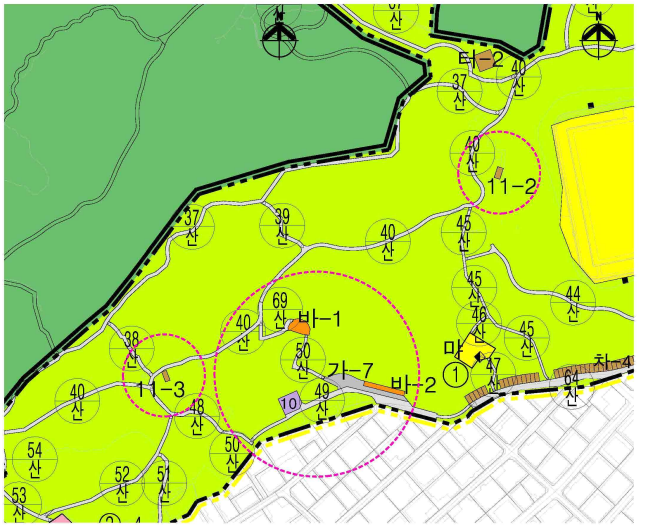

■ 변경후

구분	시설명	부호	면적(㎡)	공작물(기)
기반시설	도로	㉮	20,603	
	광장	가-7	205	
휴양시설	야외휴게소	바	146	
		바-1	83	
		바-2	63	
문화시설	화장실	11-2	22	
		11-3	17	
		11-4	17	
관리시설	창고	10	112	
녹지및기타	녹지		171,222.7	

조성계획도[변경전]-라

오동근린공원("라"지구)

SCALE=1/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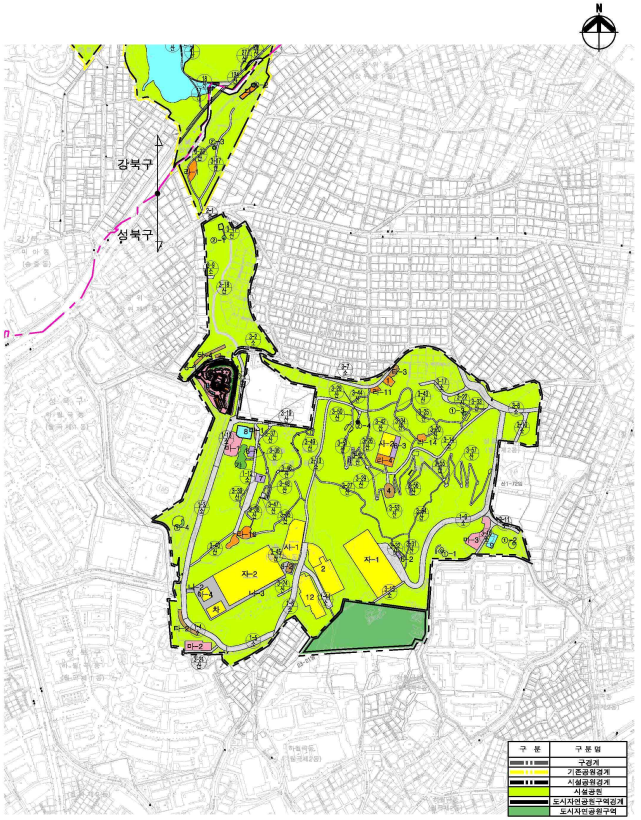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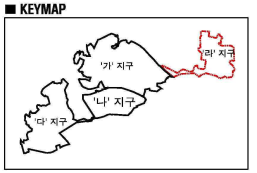

■ 범 례 ("라"지구)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220,878.3	62,579	9	
기반시설	소 계		31,184	26,973		
	도 로	㉮	28,685	24,474 (4,211)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지표함
	진입광장	나	2,499	2,499		
		나-2	76	76		
		나-3	2,423	2,423		
조경시설	소 계		532	532	8	
	파고라	①			4	
		①-1			1	
		①-2			1	
		①-3			1	
		①-4			1	
	정자	②			4	
		②-1			1	
		②-2			1	
		②-3			1	
		②-4			1	
	아생화단지	가	532	532		
휴양시설	소 계		2,701	2,701		
	소공원	다	274	274		
	노인정	1	540	540		
	휴게소	라	1,887	1,887		
		라-1	418	418		
		라-4	468	468		
		라-10	710	710		
		라-11	125	125		
		라-14	166	166		
유희시설	소 계		7,070	7,070	1	
	어린이 놀이터	마	7,070	7,070	1	
		마-1	866	866	1	
		마-2	705	705		
		마-3	993	993		
		마-5	4,506	4,506		
운동시설	소 계		21,204	21,204		
	체육관	2	3,985	3,985		
	테니스장	사	2,622	2,622		
		사-1	1,853	1,853		
		사-2	669	669		
	배드민턴장	아	343	343		
		아-4	343	343		
	축구장	자	11,880	11,880		
		자-1	5,441	5,441		
		자-2	6,439	6,439		
	농구장	차	547	547		
	실내배드민턴장	12	1,827	1,827		
교양시설	소 계		1,707	1,707		
	청년 만해문학 경해원	8	1,046	1,046		
	문실어린이집	9	661	661		
편익시설	소 계		1,672	1,672		
	전망대	4	545	545		
	주차장	타	968	968		
		타-1	54	54		
		타-2	337	337		
		타-3	203	203		
		타-4	374	374		
	화장실	5	159	159		
		5-1	24	24		
		5-2	135	135		
공리시설	소 계		720	720		
	관리사무실	6	684	684		
		6-1	540	540		
		6-2	108	108		
		6-3	36	36		
	창고	7	36	36		
녹지및기타	소 계		154,088.3			
	녹 지		154,088.3			

조성계획도[변경후]-라

오동근린공원("라"지구)

SCALE=1/3,000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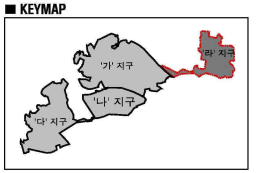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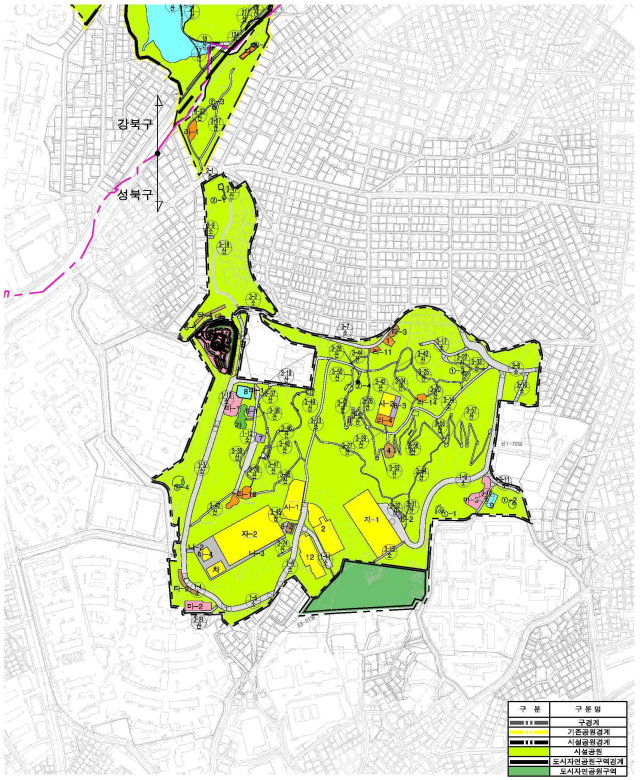

■ 범 례 ("라"지구)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	-		220,878.3	62,579	9	
기반시설	소 계		31,184	26,973		
	도 로	㉮	28,685	24,474 (4,211)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제외
	진입광장	나	2,499	2,499		
		나-2	76	76		
		나-3	2,423	2,423		
조경시설	소 계		532	532	8	
	파고라	①			4	
		①-1			1	
		①-2			1	
		①-3			1	
		①-4			1	
	정자	②			4	
		②-1			1	
		②-2			1	
		②-3			1	
		②-4			1	
	아생화단지	가	532	532		
휴양시설	소 계		2,701	2,701		
	소공원	다	274	274		
	노인정	1	540	540		
	휴게소	라	1,887	1,887		
		라-1	418	418		
		라-4	468	468		
		라-10	710	710		
		라-11	125	125		
		라-14	166	166		
유희시설	소 계		7,070	7,070	1	
	어린이 놀이터	마	7,070	7,070	1	
		마-1	866	866	1	
		마-2	705	705		
		마-3	993	993		
		마-5	4,506	4,506		
운동시설	소 계		21,204	21,204		
	체육관	2	3,985	3,985		
	테니스장	사	2,622	2,622		
		사-1	1,853	1,853		
		사-2	669	669		
	배드민턴장	아	343	343		
		아-4	343	343		
	축구장	자	11,880	11,880		
		자-1	5,441	5,441		
		자-2	6,439	6,439		
	농구장	차	547	547		
	실내배드민턴장	12	1,827	1,827		
교양시설	소 계		1,707	1,707		
	청소년해양안전체험	8	1,046	1,046		
	은실어린이집	9	661	661		
편익시설	소 계		1,672	1,672		
	전망대	4	545	545		
	주차장	타	968	968		
		타-1	54	54		
		타-2	337	337		
		타-3	203	203		
		타-4	374	374		
	화장실	5	159	159		
		5-1	24	24		
		5-2	135	135		
관리시설	소 계		720	720		
	관리사무실	6	684	684		
		6-1	540	540		
		6-2	108	108		
		6-3	36	36		
	창고	7	36	36		
녹지및기타	소 계		154,088.3			
	녹 지		154,088.3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위치 : 서울시 강북구 번동 90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합 계		1,259,273.8	344,811	28	19,253.97	44,258.24	179	1,259,273.8	346,007	28	19,253.97	44,258.24	200	
기반시설	소 계	123,206	107,459					123,851	108,129					증) 670.0㎡
	도 로	100,781	85,059 (15,722)					101,246	85,524 (15,722)					증) 465.0㎡
	오동교	200	200					200	200					
	광 장	22,200	22,200					22,405	22,405					증) 205.0㎡
조경시설		58,262	58,262	1	3,786.05	9,726.01	69	54,985	54,985	1	3,786.05	9,726.01	64	감) 3,277.0㎡
휴양시설		18,640	18,640	2	244.80	244.80		18,900	18,900	2	244.80	244.80	5	증) 260.0㎡
유희시설		13,264	13,264		300.00	300.00	1	15,768	15,768		300.00	300.00	14	증) 2,504.0㎡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운동시설	50,241	48,811	4	6,275.76	13,039.68	84	50,241	48,811	4	6,275.76	13,039.68	92	
교양시설	89,682	79,748	7	5,235.76	16,208.5	24	89,682	79,748	7	5,235.76	16,208.50	24	
편익시설	16,345	16,078	9	2,454.20	2,956.92	1	16,412	16,145	9	2,454.20	2,956.92	1	증) 67.0㎡
관리시설	2,549	2,549	5	957.40	1,782.33		2,981	2,981	5	957.40	1,782.33		증) 432.0㎡
녹지 및 기타	887,109.8						886,453.8	540					감) 656.0㎡
공원시설율 (법정40%)	(344,811㎡ / 1,259,273.8㎡) × 100% = 27.38%						(346,007㎡ / 1,259,273.8㎡) × 100% = 27.47%						
건폐율(10%)	(19,253.97㎡ / 1,259,273.8㎡) × 100% = 1.53%						(19,253.97㎡ / 1,259,273.8㎡) × 100% = 1.53%						

※ 총괄표(지구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계	1,259,273.8	344,811	28	19,253.97	44,258.24	179	1,259,273.8	346,007.00	28	19,253.97	44,258.24	200	
“가” 지구	684,156.6	195,013	12	9,851.81	22,313.80	67	684,156.6	195,065	12	9,851.81	22,313.80	80	
“나” 지구	115,490.2	33,658	1	1,249.0	5,574.0	31	115,490.2	33,989	1	1,249	5,574	31	
“다” 지구	238,748.7	53,561	3	3,121.0	9,239.91	72	238,748.7	54,374	3	3,121.00	9,239.91	80	
“라” 지구	220,878.3	62,579	12	5,032.16	7,130.53	9	220,878.3	62,579	12	5,032.16	7,130.53	9	

1. “가” 지구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684,156.6	195,013	12	9,851.81	22,313.80	67	684,156.6	195,065	12	9,851.81	22,313.80	80	
기반시설	소 계	52,572	52,572					52,743	52,743					증) 171.0㎡
	도 로	37,490	37,490					37,661	37,661					증) 171.0㎡
	오동교	200	200					200	200					
	광 장	14,882	14,882					14,882	14,882					
조경시설		57,322	57,322	1	3,786.05	9,726.01	34	54,045	54,045	1	3,786.05	9,726.01	29	감) 3,277.0㎡
휴양시설		13,658	13,658	1	44.80	44.80		13,772	13,772	1	44.8	44.8	5	증) 114.0㎡
유희시설		1,655	1,655					4,159	4,159				13	증) 2,504.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운 동 시 설	8,186	6,756				31	8,186	6,756				31	
교 양 시 설	51,508	51,508	4	3,284.59	8,674.97	1	51,508	51,508	4	3,284.59	8,674.97	1	
편 익 시 설	9,713	9,713	5	2,188.97	2,495.69	1	9,713	9,713	5	2,188.97	2,495.69	1	
관 리 시 설	1,829	1,829	1	547.40	1,372.33		1,829	1,829	1	547.4	1,372.33		
녹지 / 기타	487,713.6						488,201.60	540					증) 488.0㎡
공원시설율 (법정40%)	(195,013㎡ / 684,156.6㎡) × 100% = 28.50%						(195,065㎡ / 684,156.6㎡) × 100% = 28.51%						
건폐율(10%)	(9,851.81㎡ / 684,156.6㎡) × 100% = 1.44%						(9,851.81㎡ / 684,156.6㎡) × 100% = 1.44%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 계				684,156.6	195,013		12	9,851.81	22,313.8	67			684,156.6	195,065		12	9,851.81	22,313.8	80	
기반시설	소 계			52,572	52,572								52,743	52,743						증) 171㎡
	도 로		전지역	37,490	37,490							전지역	37,661	37,661						증) 171㎡
	오동교		미아4동 산35-1, 25-1	200	200							미아4동 산35-1, 25-1	200	200						
	광 장	가	10개소	14,882	14,882						가	10개소	14,882	14,882						
		가-1	번동 산28-6, 산28-9, 29,87, 87-189, 89-3, 95-7,627-1	2,873	2,873						가-1	번동 산28-6, 산28-9, 29,87, 87-189, 89-3, 95-7,627-1	2,873	2,873						
		가-2	번동 92,93-2	33	33						가-2	번동 92,93-2	33	33						
		가-3	번동 산28-6	14	14						가-3	번동 산28-6	14	14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가-4	번동 산28-6	300	300						가-4	번동 산28-6	300	300						
		가-5	번동 산28-6, 산28-3, 120-1, 120-6,121	11,316	11,316						가-5	번동 산28-6, 산28-3, 120-1, 120-6,121	11,316	11,316						
		가-6	번동 916	127	127						가-6	번동 916	127	127						
		가-7	번동 93	54	54						가-7	번동 93	54	54						
		가-8	번동 산28-6	79	79						가-8	번동 산28-6	79	79						
		가-9	번동 92,628	58	58						가-9	번동 92,628	58	58						
		가-10	번동 산28-6	28	28						가-10	번동 산28-6	28	28						
조경	소 계			57,322	57,322		1	3,786.05	9,726.01	34			54,045	54,045		1	3,786.05	9,726.01	29	감) 3.277㎡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시설	월영연못	나	번동 산28-6	12,526	12,526						나	번동 산28-6	12,526	12,526						
	계류	다	2개소	3,971	3,971						다	2개소	3,971	3,971						
		다-1	번동 산28-6, 28-3	2,829	2,829						다-1	번동 산28-6, 28-3	2,829	2,829						
		다-2	번동 산28-6 외 5필지	1,142	1,142						다-2	번동 산28-6 외 5필지	1,142	1,142						
	칠폭연못	라	번동 산28-6 외 5필지	3,598	3,598						라	번동 산28-6 외 5필지	3,598	3,598						
	미러폰드	무	번동 120-1 외 3필지	2,400	2,400						무	번동 120-1 외 3필지	2,400	2,400						
	점핑분수	저	번동 산28-3	386	386						저	번동 산28-3	386	386						
	저류지	마	번동 산28-6	467	467						마	번동 산28-6	467	467						
	야생초화원	9	번동 산28-6 산28-7	11,070	11,070		지하2층 지상2층	3,786.05	9,726.01		9	번동 산28-6 산28-7	7,793	7,793		지하2층 지상2층	3,786.05	9,726.01		감)3,277.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잔디마당	사	2개소	21,664	21,664						사	2개소	21,664	21,664						
		사-1	번동 산28-6	13,228	13,228						사-1	번동 산28-6	13,228	13,228						
		사-2	번동 산28-6 외 6필지	8,436	8,436						사-2	번동 산28-6 외6필지	8,436	8,436						
	창포원	아	번동 산28-6 120-1	1,167	1,167						아	번동 산28-6 120-1	1,167	1,167						
	낙수대	누	번동 산28-6	73	73						누	번동 산28-6	73	73						
	월광폭포	④	번동 산28-6	-	-	철골인공암				1	④	번동 산28-6	-	-	지하2층 지상2층				1	
	월광대	⑤	번동 산28-6	-	-	철골석재				1	⑤	번동 산28-6	-	-	철골석재				1	
	월영대	⑥	번동 산28-6	-	-	철골석재				1	⑥	번동 산28-6	-	-	철골석재				1	
	전통정자	⑦	번동 산28-6	-	-					2	⑦	번동 산28-6	-	-					2	
		⑦-1	번동 산28-6	-	-	목재				1	⑦-1	번동 산28-6	-	-	목재				1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⑦-2	번동 산28-6	-	-	목재				1	⑦-2	번동 산28-6	-	-	목재					
	파고라	⑧	번동 산28-6	-	-	목재				13	⑧	번동 산28-6	-	-	목재				12	수량변경
	조형 파고라	⑨	번동 산28-6	-	-	막구조				1										항목삭제
	환경 조형물	⑩	번동 산28-7	-	-					10	⑩	번동 산28-7	-	-					6	수량변경
	조형화분	⑪	번동 산28-10	-	-					4	⑪	번동 산28-10	-	-					4	
	정자	⑫	전지역	-	-					1	⑫	전지역	-	-					1	
		⑫-1	번3동 산28-10일대			목재(팔각)				1	⑫-1	번3동 산28-10일대			목재(팔각)				1	
	상징조형물										(1)	번동 90							1	
휴양시설	소계			13,658	13,658		1	44.8	44.8				13,772	13,772		1	44.8	44.8	5	증) 114.0㎡
	휴게소	자	11개소	2,621	2,621						자	13개소	2,700	2,700					3	증) 79.0㎡
		자-1	번동 산28-6	364	364						자-1	번동 산28-6	364	364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자-2	번동 산28-6	303	303						자-2	번동 산28-6	303	303						
		자-3	번동 산28-6	126	126						자-3	번동 산28-6	126	126						
		자-4	번동 산28-10	215	215						자-4	번동 산28-10	215	215						
		자-5	번동 산28-10	188	188						자-5	번동 산28-10	188	188						
		자-6	번동 산28-10	333	333						자-6	번동 산28-10	333	333						
		자-7	번동 산28-10	137	137						자-7	번동 산28-10	137	137						
		자-8	번동 산28-10	545	545						자-8	번동 산28-10	545	545						
		자-9	번동 산28-10	200	200						자-9	번동 산28-10	200	200						
		자-10	번동 산28-10	80	80						자-10	번동 산28-10	80	80						
		자-11	번동 산28-10	130	130						자-11	번동 산28-10	130	130						
											자-12	번동 산28-10	24	24					2	증) 24.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자-13	번동 산28-10	55	55					1	증) 55.0㎡
	데크쉼터	카	9개소	10,408	10,408						카	10개소	10,443	10,443					2	증) 35.0㎡
		카-1	번동 산28-6	780	780						카-1	번동 산28-6	780	780						
		카-2	번동 산28-6	146	146						카-2	번동 산28-6	146	146						
		카-3	번동 산28-6	72	72						카-3	번동 산28-6	72	72						
		카-4	번동 산28-6	419	419						카-4	번동 산28-6	419	419						
		카-5	번동 산28-6	7,735	7,735		지상 1층	44.80	44.80		카-5	번동 산28-6	7,735	7,735		지상 1층	44.80	44.80		
		카-6	번동 산28-6 산28-3	966	966						카-6	번동 산28-6 산28-3	966	966						
		카-7	번동 산28-10	79	79						카-7	번동 산28-10	79	79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수변쉼터	카-8	번동 산35-64	92	92						카-8	번동 산35-64	92	92						
		카-9	번동 산28-3	119	119						카-9	번동 산28-3	119	119						
											카-10	번동 90	35	35					2	증) 35.0㎡
		타	5개소	629	629						타	5개소	629	629						
		타-1	번동 산28-6	49	49						타-1	번동 산28-6	49	49						
		타-2	번동 산28-6	268	268						타-2	번동 산28-6	268	268						
		타-3	번동 산28-6	41	41						타-3	번동 산28-6	41	41						
		타-4	번동 산28-6, 92	195	195						타-4	번동 산28-6, 92	195	195						
		타-5	번동 산28-6,	76	76						타-5	번동 산28-6, 628	76	76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야외시설	소계			628	1,655	1,655			-	-				4,159	4,159			-	-	13	지) 2,504.0㎡
	어린이 놀이터		파	3개소	1,655	1,655			-	-		파	8개소	4,159	4,159					13	지) 2,504.0㎡
			파-1	번동 산28-6	482	482						파-1	번동 산28-6	482	482						
			파-2	번동 산28-1	458	458						파-2	번동 산28-1	458	458						
			파-3	번동 산28-10	715	715						파-3	번동 산28-10	715	715						
												파-4	번동 90	61	61					1	지) 61.0㎡
												파-5	번동 90	146	146					1	지) 146.0㎡
												파-6	번동 90	138	138					2	지) 138.0㎡
												파-7	번동 90	1353	1353					7	지) 1,353.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파-8	번동 90	806	806					2	옹벽 806.0㎡
시설물	소계			8,186	6,756					31			8,186	6,756					31	
	체력단련장	하	1개소	310	310						하	1개소	310	310						
		하-1	번동 산28-10	310	310						하-1	번동 산28-10	310	310						
	다목적운동장	거	2개소	1,068	1,068						거	2개소	1,068	1,068						
		거-1	번동 산28-1	491	491						거-1	번동 산28-1	491	491						
		거-2	번동 산28-1	577	577						거-2	번동 산28-1	577	577						
	배드민턴장	너	5개소	2,330	2,330						너	4개소	2,330	2,330						
		너-2	번동 산28-10	537	537						너-2	번동 산28-10	537	537						
		너-4	번3동	519	519						너-4	번3동	519	519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산28-87									산28-87								
		너-5	번3동 산28-8 산28-71	426	426						너-5	번3동 산28-8 산28-71	426	426						
		너-6	번3동 산35-65 산28-88	848	848						너-6	번3동 산35-65 산28-88	848	848						
	족구장	더	1개소	561	561						더	1개소	561	561						
		더-1	번동 산28-68	561	561						더-1	번동 산28-68	561	561						
	테니스장	러	1개소	1,759	1,759						러	1개소	1,759	1,759						
		러-1	번동 115-10	1,759	1,759						러-1	번동 115-10	1,759	1,759						
	체력단련시설	⑬	전지역	2,158	728					31	⑬	전지역	2,158	728					31	
교양시	소 계			51,508	51,508		4	3,284.59	8,674,97	1			51,508	51,508		4	3,284.59	8,674,97	1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시설	구한옥	1	번동 93-1일대	800	800	목조	2	204.96	204.96		1	번동 93-1일대	800	800	목조	2	204.96	204.96		
	문화센터	2	번동 산28-6	4,108	4,108	철근조	지하2층 지상3층	2,707.85	7,525,64		2	번동 산28-6	4,108	4,108	철근조	지하2층 지상3층	2,707.85	7,525,64		
	미술관	3	번동 산28-6	1,187	1,187	철근조	지하1층 지상2층	371.78	944.37		3	번동 산28-6	1,187	1,187	철근조	지하1층 지상2층	371.78	944.37		
	단풍 식물원	더	번동 산28-10일대	33,610	33,610						더	번동 산28-10일대	33,610	33,610						
	화목원	머	번3동 산28-8	11,803	11,803						머	번3동 산28-8	11,803	11,803						
	무대 조형물	⑭	번동 산28-6	-	-					1	⑭	번동 산28-6	-	-					1	
편의시설	소계			9,713	9,713		5	2,188.97	2,495.69	1			9,713	9,713		5	2,188.97	2,495.69	1	
	주차장	머	번동 산28-6	3,026	3,026						머	번동 산28-6	3,026	3,026						
	주차장	버	번동 산28-6	125	125						버	번동 산28-6	125	125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주차장	서	번동 산28-6	226	226						서	번동 산28-6	226	226						
	전망대	4	번동 산28-6	2,169	2,169	철골철근조	지상3층	852.79	1,075.03		4	번동 산28-6	2,169	2,169	철골철근조	지상3층	852.79	1,075.03		
	레스토랑	5	번동 산28-6	3,082	3,082	철근조	지상1층	667.39	667.39		5	번동 산28-6	3,082	3,082	철근조	지상1층	667.39	667.39		
	글래스 파빌리온	6	번동 산28-6 120-1	446	446	철근조	지하1층 지상3층	381.95	466.43		6	번동 산28-6 120-1	446	446	철근조	지하1층 지상3층	381.95	466.43		
	야외 화장실	7	번동 산28-6	558	558	철근조	지상1층	206.28	206.28		7	번동 산28-6	558	558	철근조	지상1층	206.28	206.28		
	야외 화장실	7-1	번동 115-10	81	81	철근조	지상1층	80.56	80.56		7-1	번동 115-10	81	81	철근조	지상1층	80.56	80.56		
	1층								80.56									80.56		
	경사형 엘리베이터	⑮	번동 산28-6							1	⑮	번동 산28-6							1	
관리시	소 계			1,829	1,829		1	547.40	1,372.33				1,829	1,829		1	547.40	1,372.33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설	방문자센터	8	번동 산28-9임	1,829	1,829	철근조	지하1층 지상2층	547.40	1,372.33		8	번동 산28-9임	1,829	1,829	철근조	지하1층 지상2층	547.40	1,372.33		
녹지 및 기타	소계			487,713.60									488,201.60	540						증) 488.0㎡
	녹지			487,713.60									487,661.60							신) 488.0㎡
	동물놀이터	동-1		540	540					동-1			540	540					동-1	

2. “나” 지구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합 계		115,490.2	33,658	1	1,249.0	5,574.0	31	115,490.2	33,989	1	1,249.0	5,574.0	31	증) 331㎡
기반시설	소 계	17,308	8,748					17,308	8,748					
	도 로	14,297	5,737 (8,560)					14,297	5,737 (8,560)					
	광 장	3,011	3,011					3,011	3,011					
조경시설		408	408				17	408	408				17	
휴양시설		1,417	1,417					1,417	1,417					
유희시설		1,446	1,446					1,446	1,446					
운동시설		2,336	2,336				14	2,336	2,336				14	
교양시설		18,467	18,467	1	1,249.0	5,574.0		18,467	18,467	1	1,249.0	5,574.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편 익 시 설	836	836					847	847					증) 11㎡
관 리 시 설	-	-					320	320					증) 320㎡
녹지 / 기타	73,272.2						72,941.20						감) 331㎡
공원시설율 (법정40%)	(33,658㎡ / 115,490.2㎡) x 100% = 29.14%						(33,989㎡ / 115,490.2㎡) x 100% = 29.43%						
건폐율(10%)	(1,249.0㎡ / 115,490.2㎡) × 100% = 1.08%						(1,249.0㎡ / 115,490.2㎡) × 100% = 1.08%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115,490.2	33,658		1	1,249.0	5,574.0	31			115,490.2	33,989		1	1,249.0	5,574.0	31	
기반시설	소 계			17,308	8,748								17,308	8,748						
	도 로			14,297	5,737 (8,560)								14,297	5,737 (8,560)						
	광 장		4개소	3,011	3,011							4개소	3,011	3,011						
			번2동 산27-108일대	1,813	1,813							번2동 산27-108일대	1,813	1,813						
			번2동 산27-117일대	217	217							번2동 산27-117일대	217	217						
			미아동 산25-80일대	91	91							미아동 산25-80일대	91	91						
			번2동 산27-122일대	890	890							번2동 산27-122일대	890	890						
조경시설	소 계			408	408					17			408	408					17	
	파고라		전지역							13		전지역							13	
	연못		번2동 산27-108일대	408	408							번2동 산27-108일대	408	408						
	정 자		4개소			목재				4		4개소			목재				4	
			미아9동 산25-50일대			목재 (팔각)				1		미아9동 산25-50일대			목재 (팔각)				1	
			미아9동 산25-1일대			목재 (육각)				1		미아9동 산25-1일대			목재 (육각)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번2동 산27-120일대			목재(사각)				1		번2동 산27-120일대			목재(사각)				1	
			미아9동 산25-46일대							1		미아9동 산25-46일대							1	
휴양시설	소 계			1,417	1,417								1,417	1,417						
	휴게소	나	7개소	1,417	1,417						나	7개소	1,417	1,417						
		나-1	번2동 산27-120일대	364	364						나-1	번2동 산27-120일대	364	364						
		나-4	번2동 산27-108일대	68	68						나-4	번2동 산27-108일대	68	68						
		나-5	번2동 산27-8일대	12	12						나-5	번2동 산27-8일대	12	12						
		나-6	번2동 산27-108일대	433	433						나-6	번2동 산27-108일대	433	433						
		나-7	번2동 산27-5일대	453	453						나-7	번2동 산27-5일대	453	453						
		나-8	번2동 산27-108일대	37	37						나-8	번2동 산27-108일대	37	37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운영시설		나-9	번2동 산27-108일대	50	50						나-9	번2동 산27-108일대	50	50						
운영시설	소 계			1,446	1,446								1,446	1,446						
운영시설	어린이 놀이터	다	2개소	1,446	1,446							2개소	1,446	1,446						
운영시설	어린이 놀이터	다-1	미아9동 산25-43일대	446	446							미아9동 산25-43일대	446	446						
운영시설	어린이 놀이터	다-2	번2동 산27-108일대	1,000	1,000							번2동 산27-108일대	1,000	1,000						
운영시설	소 계			2,336	2,336					14			2,336	2,336					14	
운영시설	체력단련장	라	4개소	1,459	1,459							4개소	1,459	1,459						
운영시설	체력단련장	라-1	미아동 산25-52	250	250							미아동 산25-52	250	250						
운영시설	체력단련장	라-2	미아동 산34-9	441	441							미아동 산34-9	441	441						
운영시설	체력단련장	라-3	미아동 산25-52	708	708							미아동 산25-52	708	708						
운영시설	체력단련장	라-4	미아동 산25-52	60	60							미아동 산25-52	60	6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근린시설	게이트볼장	거	미아동 산25-52	362	362							미아동 산25-52	362	362						
	다목적 운동장	마	미아9동 산25-46일대	515	515							미아9동 산25-46일대	515	515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전지역							14		전지역							14	
	소계			18,467	18,467		1	1,249	5,574				18,467	18,467		1	1,249	5,574		
	도서관	1	번2동 산27-108일대	1,720	1,720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하1층 지상4층	1,249	5,574			번2동 산27-108일대	1,720	1,720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하1층 지상4층	1,249	5,574		
	관목원																			
	자연학습장	아	번동 산27-126	129	129							번동 산27-126	129	129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편의시설	보태닉 가든	차	번동 122	3,888	3,888							번동 122	3,888	3,888						
	생태 습지원	차	번2동 122-10일대	12,730	12,730							번2동 122-10일대	12,730	12,730						증) 11㎡
	소계			836	836								847	847						
	약수터																			
	주차장	타	2개소	836	836						타	2개소	836	836						
		타-2	미아9동 산25-46일대	307	307						타-2	미아9동 산25-46일대	307	307						5면
		타-3	번2동 산27-108일대	529	529						타-3	번2동 산27-108일대	529	529						40면
	화장실										2	미아동 산25-52	11	11						증) 11㎡
관리시설	소계												320	320						증) 320㎡
	창고										3	3개소	210	210						증) 21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녹지 및 기타	화장실										3-1	번동 산27-121	150	150						증) 150㎡
											3-2	번동 산27-121	30	30						증) 30㎡
											3-3	번동 산27-121	30	30						증) 30㎡
											4	번동 산27-121	30	30						증) 30㎡
	사무실										5	번동 산27-121	80	80						증) 80㎡
				73,272.2									72,941.2							감) 331㎡

3. “다” 지구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계		238,748.7	53,561	3	3,121.0	9,239.91	72	238,748.7	54,374	3	3,121.0	9,239.91	80	지) 813㎡
기반시설	소 계	22,117	19,166					22,616	19,665					지) 499㎡
	도 로	20,309	17,358 (2,951)					20,603	17,652 (2,951)					지) 294㎡
	광 장	1,808	1,808					2,013	2,013					지) 205㎡
조경시설							10						10	
휴양시설		864	864					1,010	1,010					지) 146㎡
유희시설		3,093	3,093					3,093	3,093					
운동시설		18,515	18,515	2	3,027.77	9,146.68	39	18,515	18,515	2	3,027.77	9,146.68	47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교 양 시 설	18,000	8,066				23	18,000	8,066				23	
편 익 시 설	4,124	3,857	1	93.23	93.23		4,180	3,913	1	93.23	93.23		증) 56㎡
관 리 시 설							112	112					증) 112㎡
녹지 / 기타	172,035.7						171,222.7						감) 813㎡
공원시설율 (법정40%)	(53,561㎡ / 238,748.7㎡) × 100% = 22.43 %						(54,374㎡ / 238,748.7㎡) × 100% = 22.77 %						
건폐율(10%)	(3,121.0㎡ / 238.748.8㎡) × 100% = 1.31 %						(3,121.0㎡ / 238.748.8㎡) × 100% = 1.31 %						

나. 시 설 조 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238,748.7	53,561		3	3,121.0	9,239.91	72			238,748.7	54,374		3	3,121.0	9,239.91	80	주) 813㎡
기반시설	소 계			22,117	19,166								22,616	19,665						주) 499㎡
	도 로			20,309	17,358 (2,951)								20,603	17,652 (2,951)						주) 294㎡
	광 장	가	6개소	1,808	1,808						가	6개소	1,808	2,013						주) 205㎡
		가-1	번2동 148-383일대	250	250						가-1	번2동 148-383일대	250	250						
		가-2	번2동 산12일대	352	352						가-2	번2동 산12일대	352	352						
		가-3	번2동 산25-2일대	124	124						가-3	번2동 산25-2일대	124	124						
		가-4	미아동 산1-5일대	379	379						가-4	미아동 산1-5일대	379	379						
		가-5	번2동 산5일대	472	472						가-5	번2동 산5일대	472	472						
		가-6	번2동 314일대	231	231						가-6	번2동 314일대	231	231						
		가-7									가-7	번동 산23	205	205						주) 205㎡
	소 계									10									1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조경시설	파고라	③	3개소							3	③	3개소							3	
		③-1	광장 내 (가-6)							1	③-1	광장 내 (가-6)							1	
		③-2	광장 내 (가-6)							1	③-2	광장 내 (가-6)							1	
		③-3	체력단련장내 (라)							1	③-3	체력단련장내 (라)							1	
	정자	②	6개소			목재				7	②	6개소			목재				7	
		②-1	번2동 산16일대			목재 (사각)				1	②-1	번2동 산16일대			목재 (사각)				1	
		②-2	미아3동 산25-44일대			목재 (사각)				1	②-2	미아3동 산25-44일대			목재 (사각)				1	
		②-3	휴게소내 (나-1)			목재 (육각)				1	②-3	휴게소내 (나-1)			목재 (육각)				1	
		②-4	번2동 산23일대			목재 (팔각)				1	②-4	번2동 산23일대			목재 (팔각)				1	
		②-5	체력단련장내 (라)			목재 (사각)				2	②-5	체력단련장내 (라)			목재 (사각)				2	
		②-6	휴게소내 (나-9)			목재 (사각)				1	②-6	휴게소내 (나-9)			목재 (사각)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양시설	소 계			864	864								1,010	1,010						주)146㎡
	휴게소	나	9개소	864	864						나	9개소	864	864						
		나-1	번2동 산20-1일대	552	552						나-1	번2동 산20-1일대	552	552						
		나-4	번2동 산25-2일대	107	107						나-4	번2동 산25-2일대	107	107						
		나-6	미아9동 산25-21일대	107	107						나-6	미아9동 산25-21일대	107	107						
		나-7	미아9동산25-51일대	8	8						나-7	미아9동산25-51일대	8	8						
		나-8	미아9동산25-51일대	8	8						나-8	미아9동산25-51일대	8	8						
		나-9	미아9동산25-51일대	58	58						나-9	미아9동산25-51일대	58	58						
		나-10	미아3동산25-38일대	8	8						나-10	미아3동산25-38일대	8	8						
		나-11	미아3동산25-38일대	8	8						나-11	미아3동산25-38일대	8	8						
		나-12	미아3동산25-38일대	8	8						나-12	미아3동산25-38일대	8	8						
	야외 휴게소										바	2개소	146	146						주)146㎡
											바-1	번동 산23	83	83						주) 83㎡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바-2	번동 산23	63	63						증) 63㎡
유희시설	소 계			3,093	3,093								3,093	3,093						
	어린이 놀이터	다	5개소	3,093	3,093						다	5개소	3,093	3,093						
		다-1	번2동 산5일대	494	494						다-1	번2동 산5일대	494	494						
		다-2	미아3동 산25-44일대	733	733						다-2	미아3동 산25-44일대	733	733						
		다-3	미아9동 산9-3일대	1,085	1,085						다-3	미아9동 산9-3일대	1,085	1,085						
		다-4	번2동 산23일대	422	422						다-4	번2동 산23일대	422	422						
		다-5	번2동 산25-2일대	359	359						다-5	번2동 산25-2일대	359	359						
운동시설	소 계			18,515	18,515		2	3,027.77	9,146.68	39			18,515	18,515		2	3,027.77	9,146.68	47	
	체력단련장	라	미아3동 산25-14일대	621	621						라	미아3동 산25-14일대	621	621						
	다목적 운동장	마	3개소	12,543	12,543			441	441		마	3개소	12,543	12,543			441	441		
		마-1	번2동 산23-1일대	11,732	11,732			441	441	4	마-1	번2동 산23-1일대	11,732	11,732			441	441	4	
		마-2	번2동 산5일대	266	266						마-2	번2동 산5일대	266	266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마-3	번2동 산17일대	545	545						마-3	번2동 산17일대	545	545						
	족구장	먀	번2동 산23일대	243	243						먀	번2동 산23일대	243	243						
	체력단련시설		전지역							35		전지역							43	
	종합운동장	사	번동 318	3,688	3,688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하3층 지상2층	1,778.49	7,141.27		사	번동 318	3,688	3,688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하3층 지상2층	1,778.49	7,141.27		
	실내배드민턴장	10	번2동 산17-8일대	1,420	1,420	SRC조	지하1층 지상2층	1,249.28	2,005.41		10	번2동 산17-8일대	1,420	1,420	SRC조	지하1층 지상2층	1,249.28	2,005.41		
교양시설	소 계			18,000	8,066					23			18,000	8,066					23	
	유아숲체험원	파	2개소	18,000	8,066					23	파	2개소	18,000	8,066					23	
		파-1	번동 산17-13임	8,000	3,048					3	파-1	번동 산17-13임	8,000	3,048					3	
		파-2	번동 산20-6	10,000	5,018					20	파-2	번동 산20-6	10,000	5,018					20	
편의시설	소 계			4,124	3,857		1	93.23	93.23				4,180	3,913		1	93.23	93.23		증)56㎡
	약수터	자	2개소	262	262						자	2개소	262	26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자-2	번2동 산14-1일대	205	205						자-2	번2동 산14-1일대	205	205						
		자-3	번2동 산17-1일대	57	57						자-3	번2동 산17-1일대	57	57						
	주차장	차	4개소	3,291	3,024						차	4개소	3,291	3,024						
		차-1	번2동 317일대	2,037	1,770						차-1	번2동 317일대	2,037	1,770						
		차-2	번2동 315-15일대	282	282						차-2	번2동 315-15일대	282	282						
		차-3	번2동 314일대	604	604						차-3	번2동 314일대	604	604						
		차-4	번2동 23-14일대	368	368						차-4	번2동 23-14일대	368	368						
	화장실	11	미아3동 산25-44일대	371	371	철근조	지상1층	93.23	93.23		11	4개소	427	427						증)56㎡
											11-1	미아3동 산25-44일대	371	371	철근조	지상1층	93.23	93.23		
											11-2	번동 산23-17	22	22						증) 22㎡
											11-3	번동 산23-32	17	17						증) 17㎡
											11-4	번동 산12	17	17						증) 17㎡
	데크쉼터	터	2개소	200	200						터	2개소	200	20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터-1	번동 336-2공	100	100						터-1	번동 336-2공	100	100						
		터-2	번동 336-2공	100	100						터-1	번동 336-2공	100	100						
관리시설	소계												112	112						증) 112㎡
	창고											번동 산23	112	112						증) 112㎡
녹지 및 기타				172,035.7									171,222.7							감) 813㎡

4. “라” 지구(성북지역)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220,878.3	62,579	12	5,032.16	7,130.53	9	220,878.3	62,579	12	5,032.16	7,130.53	9	
기반시설	소 계	31,184	26,973					31,184	26,973					
	도 로	28,685	24,474 (4,211)					28,685	24,474 (4,211)					
	광 장	2,499	2,499					2,499	2,499					
조경시설		532	532				8	532	532				8	
휴양시설		2,701	2,701	1	200.0	200.0		2,701	2,701	1	200.0	200.0		
유희시설		7,070	7,070		300.0	300.0	1	7,070	7,070		300.0	300.0	1	
운동시설		21,204	21,204	2	3,247.99	3,893.00		21,204	21,204	2	3,247.99	3,893.00		
교양시설		1,707	1,707	2	702.17	1,959.53		1,707	1,707	2	702.17	1,959.53		
편익시설		1,672	1,672	3	172.0	368.0		1,672	1,672	3	172.0	368.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관리시설	720	720	4	410.0	410.0		720	720	4	410.0	410.0		
녹지,기타	154,088.3						154,088.3						
공원시설율 (법정40%)	(62,579㎡ / 220,878.3㎡) × 100% = 28.33%						(62,579㎡ / 220,878.3㎡) × 100% = 28.33%						
건폐율(10%)	(5,032.16㎡ / 220,878.3㎡) × 100% = 2.28%						(5,032.16㎡ / 220,878.3㎡) × 100% = 2.28%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 계				220,878.3	62,579		11	4,728.44	6,634.28	9			220,878.3	62,579		11	4,728.44	6,634.28	9	
기반시설	소 계			31,184	26,973								31,184	26,973						
	도 로			28,685	24,474 (4,211)								28,685	24,474 (4,211)						
	휴게광장																			
	진입광장	나	2개소	2,499	2,499						나	2개소	2,499	2,499						
		나-2	하월곡동 산2-1	76	76						나-2	하월곡동 산2-1	76	76						
		나-3	하월곡동 산2-1	2,423	2,423						나-3	하월곡동 산2-1	2,423	2,423						
조경시설	소 계			532	532					8			532	532					8	
	파고라	①	4개소							4	①	4개소							4	
		①-1	상월곡동 101-6							1	①-1	상월곡동 101-6							1	
		①-2	상월곡동 101-8							1	①-2	상월곡동 101-8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①-3	상월곡동 산1-1							1	①-3	상월곡동 산1-1							1	
		①-4	하월곡동 228-4							1	①-4	하월곡동 228-4							1	
	정자	②	4개소							4	②	4개소							4	
		②-1	장위동 산3-86							1	②-1	장위동 산3-86							1	
		②-2	장위동 산3-104							1	②-2	장위동 산3-104							1	
		②-3	장위동 산3-104							1	②-3	장위동 산3-104							1	
		②-4	하월곡동 산2-1							1	②-4	하월곡동 산2-1							1	
	야생화단지	갸	하월곡동 산2-1	532	532						갸	하월곡동 산2-1	532	532						
휴양시설	소 계			2,701	2,701		1	200.0	200.0				2,701	2,701		1	200.0	200.0		
	소공원	다	장위동 산3-104	274	274						다	장위동 산3-104	274	274						
	노인정	1	장위동 산3-92	540	540		1	200.0	200.0		1	장위동 산3-92	540	540		1	200.0	200.0		
	휴게소	라	5개소	1,887	1,887						라	5개소	1,887	1,887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1	장위 산3-104	418	418						라-1	장위 산3-104	418	418						
		라-4	하월곡동 산2-1	468	468						라-4	하월곡동 산2-1	468	468						
		라-10	하월곡동 산2-1	710	710						라-10	하월곡동 산2-1	710	710						
		라-11	장위동 산3-92	125	125						라-11	장위동 산3-92	125	125						
		라-14	장위동 산3-92	166	166						라-14	장위동 산3-92	166	166						
유희시설	소 계			7,070	7,070			300.0	300.0	1			7,070	7,070			300.0	300.0	1	
	어린이 놀이터	마	4개소	7,070	7,070						마	4개소	7,070	7,070						
		마-1	하월곡동 산2-1	866	866			300.0	300.0	1	마-1	하월곡동 산2-1	866	866			300.0	300.0	1	
		마-2	하월곡동 산2-140	705	705						마-2	하월곡동 산2-140	705	705						
		마-3	상월곡동 산1-1	993	993						마-3	상월곡동 산1-1	993	993						
		마-5	하월곡동 228-4	4,506	4,506						마-5	하월곡동 228-4	4,506	4,506						
운동시설	소 계			21,204	21,204		2	3,247.99	3,893.00				21,204	21,204		2	3,247.99	3,893.00		
	체육관	2	하월곡동 산2-1	3,985	3,985	RC	1	1,505.13	2,041.26		2	하월곡동 산2-1	3,985	3,985	RC	1	1,505.13	2,041.26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테니스장	사	2개소	2,622	2,622						사	2개소	2,622	2,622						
		사-1	하월곡동 산2-1	1,953	1,953						사-1	하월곡동 산2-1	1,953	1,953						
		사-2	하월곡동 산2-1	669	669						사-2	하월곡동 산2-1	669	669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아	1개소	343	343						아	1개소	343	343						
		아-4	하월곡동 산2-1	343	343						아-4	하월곡동 산2-1	343	343						
	축구장	자	2개소	11,880	11,880						자	2개소	11,880	11,880						
		자-1	하월곡동 산2-1	5,441	5,441						자-1	하월곡동 산2-1	5,441	5,441						
		자-2	상월곡동 산1-1	6,439	6,439						자-2	상월곡동 산1-1	6,439	6,439						
	농구장	차	하월곡동 산2-1	547	547						차	하월곡동 산2-1	547	547						
	실내배드민턴장	12	하월곡동 산2-86	1,827	1,827	철근철골	1	1,742.86	1,851.74		12	하월곡동 산2-86	1,827	1,827	철근철골	1	1,742.86	1,851.74		
교양시설	소 계			1,707	1,707		2	702.17	1,959.53				1,707	1,707		2	702.17	1,959.53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집)	8	하월곡동 산2-1	1,046	1,046	RC	1	398.45	1,463.28		8	하월곡동 산2-1	1,046	1,046	RC	1	398.45	1,463.28		
	본심 어린이집	9	상월곡동 산1-1	661	661		1	303.72	496.25		9	상월곡동 산1-1	661	661		1	303.72	496.25		
편의시설	소 계			1,672	1,672		3	172.0	368.0				1,672	1,672		3	172.0	368.0		
	전망대	4	상월곡동 산1-1	545	545		1	64.0	128.0		4	상월곡동 산1-1	545	545		1	64.0	128.0		
	주차장	타	4개소	968	968						타	4개소	968	968						
		타-1	하월곡동 산2-1	54	54						타-1	하월곡동 산2-1	54	54						
		타-2	하월곡동 산2-73	337	337						타-2	하월곡동 산2-73	337	337						
		타-3	장위동 산3-92	203	203						타-3	장위동 산3-92	203	203						
		타-4	장위동 산3-113	374	374						타-4	장위동 산3-113	374	374						
	화장실	5	2개소	159	159		2	108.0	240.0		5	2개소	159	159		2	108.0	240.0		
		5-1	장위동 산3-86	24	24		1	24.0	24.0		5-1	장위동 산3-86	24	24		1	24.0	24.0		
		5-2	하월곡동 산2-1	135	135		1	84.0	216.0		5-2	하월곡동 산2-1	135	135		1	84.0	216.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 계			720	720		4	410.0	410.0				720	720		4	410.0	410.0		
	관 리 사무실	6	3개소	684	684		3	374.0	374.0		6	3개소	684	684		3	374.0	374.0		
		6-1	하월곡동 산2-1	540	540		1	264.0	264.0		6-1	하월곡동 산2-1	540	540		1	264.0	264.0		
		6-2	상월곡동 산1-1	108	108		1	74.0	74.0		6-2	상월곡동 산1-1	108	108		1	74.0	74.0		
		6-3	상월곡동 산1-1	36	36		1	36.0	36.0		6-3	상월곡동 산1-1	36	36		1	36.0	36.0		
	창 고	7	하월곡동 산2-1	36	36		1	36.0	36.0		7	하월곡동 산2-1	36	36		1	36.0	36.0		
녹지 및 기타				154,088.3									154,088.3							

다. 도로조서

"가"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계				14,682	37,490 (4,685)				
변경	합계				14,801	37,661 (4,685)				
당초	대로	3류	1	25	445	(3,325)	도시계획도	8-221, 공원경계	83,공원경계	
당초	중로	3류	3	12	175	(1,360)	도시계획도	바-4	광장 가-9	
당초	소로	소계			2,878	13,834				
당초		3	1	5	456	1441	연결로	광장 가-1	산책로 75	
당초		3	2	5	499	2490	연결로	소로 3-3	광장 가-6	
당초		3	3	6	135	924	연결로	녹지	광장 가-1	
당초		3	4	4	94	495	연결로	아생초화원	소로 3-3	
당초		3	5	4	9	37	연결로	주차장 버	소로 3-4	
당초		3	6	4	45	648	연결로	소로 3-2	소로 3-3	
당초		3	7	4	37	152	연결로	소로 3-6	미술관	
당초		3	8	5	494	2502	연결로	소로 3-14	소로 3-3	
당초		3	9	3	81	241	연결로	미술관	소로 3-11	
당초		3	10	3.6	48	116	연결로	소로 3-8	소로 3-11	
당초		3	11	4.5	51	217	연결로	소로 3-9, 10	소로 3-2	
당초		3	12	4	247	982	연결로	휴게소 가-5	휴게소 가-2	
당초		3	13	4	223	878	연결로	광장 가-6	소로 3-1	
당초		3	14	4.5	91	424	진입로	광장 가-6	소로 3-8	
당초		3	15	6	368	2287	진입로	부지경계	주차장 어	
당초	산책로	소 계			11,184	18,971				
변경		소 계			11,303	19,14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1	2.5	270	532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4	
당초			2	2.9	29	9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1	
당초			3	1.5	127	186	산책로	산책로 2	산책로 10	
당초			4	1.5	157	228	산책로	산책로 3	운동시설 너-6	
당초	산책로		5	1.5	3	7	산책로	산책로 4	파고라	
당초			6	1.5	43	60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12	
당초			7	1.5	13	32	산책로	산책로 4	운동시설 너-4	
당초			8	1.2	32	41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10	
당초			9	1.2	21	54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10	
당초			10	1.5	255	387	산책로	산책로 12	전망대	
당초			11	1.5	22	33	산책로	산책로 12	운동시설 너-4	
당초			12	2	289	508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5	
당초			13	1	78	97	산책로	휴게시설 자-8	운동시설 너-6	
당초			14	1.3	54	75	산책로	운동시설 너-6	산책로 15	
당초			15	1.5	110	170	산책로	부지경계	휴게시설 자-6	
당초			16	1.5	40	57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17	
당초			17	1.5	201	344	산책로	산책로 15	부지경계	
당초			18	2	56	111	산책로	산책로 134	산책로 17	
당초			19	1.5	19	38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7	
당초			20	1.2	21	29	산책로	산책로 17	운동시설 너-5	
당초			21	1.2	115	139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6	
당초			22	1.2	38	44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23	2	4	9	산책로	산책로 22	운동시설 너-5	
당초			24	1.2	24	29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6	
당초			25	1.5	20	30	산책로	산책로 10	휴게소 자-5	
당초			26	1.5	230	344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 3-12	
당초			27	1.5	107	160	산책로	광장 가-7	산책로 134	
당초			28	1.5	24	34	산책로	산책로 27	산책로 134	
당초			29	1.5	16	29	산책로	산책로 134	산책로 30	
당초			30	1.5	25	41	산책로	산책로 33	산책로 29	
당초			31	1.5	2	3	산책로	산책로 30	녹지	
당초			32	2	29	48	산책로	산책로 34	부지경계	
당초			33	1.5	7	11	산책로	녹지	산책로 34	
당초			34	1.5	185	265	산책로	데크쉼터 카-2	산책로 31	
당초			35	1.5	172	254	산책로	저류지	소로 3-12	
당초			36	1.5	27	37	산책로	저류지	광장 가-3	
당초			37	2	48	99	산책로	광장 가-3	데크쉼터 카-4	
당초	산책로		38	1.5	49	72	산책로	광장 가-3	소로 3-1	
당초			39	1.5	87	129	산책로	데크쉼터 카-4	데크쉼터 카-5	
당초			40	1.5	100	150	산책로	소로 3-12	산책로 35	
당초			41	1.2	45	90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42	1.2	44	53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43	1.5	18	28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45	
당초			44	2	16	32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4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45	2.8	31	89	산책로	산책로 43, 44	소로 3-1	
당초			46	1.5	21	32	산책로	산책로 48	산책로 45	
당초			47	1.5	33	69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46	
당초			48	2	57	118	산책로	산책로 49	소로 3-1	
당초			49	2	46	92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50	2	52	104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51	2	69	111	산책로	광장 가-1	방문자센터	
당초			52	2	8	15	산책로	산책로 53	소로 3-3	
당초			53	2	49	100	산책로	소로 3-3	소로 3-1	
당초			54	2.5	15	37	산책로	소로 3-8	구한옥	
당초			55	1.2	25	28	산책로	구한옥	광장 가-2	
당초			56	2	33	66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6	
당초			57	1.5	93	141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9	
당초			58	1.5	24	34	산책로	산책로 57	수변쉼터 타-4	
당초	산책로		59	1.5	16	25	산책로	산책로 57	산책로 58	
당초			60	2	5	9	산책로	소로 3-8	광장 가-9	
당초			61	1.5	40	67	산책로	산책로 57	월영연못	
당초			62	2.3	6	15	산책로	소로 3-8	산책로 63	
당초			63	1.5	118	176	산책로	광장 가-9	소로 3-8	
당초			64	1.5	14	20	산책로	산책로 63	월영연못	
당초			65	1.5	12	18	산책로	월영연못	월영연못	
당초			66	2	7	15	산책로	소로 3-6	월영연못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67	1.5	24	39	산책로	수변쉼터 타-2	소로 3-6	
당초			68	1.5	34	51	산책로	수변쉼터 타-4	수변쉼터 타-5	
당초			69	2	17	33	산책로	수변쉼터 타-2	수변쉼터 타-1	
당초			70	1.8	6	10	산책로	소로 3-8	산책로 69	
당초			71	2.4	4	11	산책로	소로 3-8	수변쉼터 타-1	
당초			72	1.2	39	46	산책로	소로 3-10	창포원	
당초			73	1.2	40	48	산책로	창포원	산책로 74	
당초			74	2	52	106	산책로	창포원	소로 3-11	
당초			75	2	198	457	산책로	소로 3-13	광장 가-4	
당초			76	2.6	5	13	산책로	소로 3-11	소로 3-2	
당초			77	1.5	15	36	산책로	소로 3-2	월영연못	
당초			78	2	19	40	산책로	산책로 35	데크쉼터 카-3	
당초			79	1.5	72	107	산책로	문화센터	광장 가-6	
당초			80	1.5	118	177	산책로	광장 가-8	산책로 79	
당초			81	1.5	80	122	산책로	광장 가-8	전망대	
당초			82	1.5	7	10	산책로	광장 가-8	문화센터	
당초			83	2	27	54	산책로	소로 3-14	광장 가-6	
당초			84	2	39	78	산책로	소로 3-14	데크쉼터 카-6	
당초	산책로		85	1.5	32	45	산책로	산책로 86	어린이놀이터 파-1	
당초			86	1.5	67	100	산책로	광장 가-6	산책로 87	
당초			87	2	362	656	산책로	부지경계	휴게소 자-1	
당초			88	2	35	73	산책로	산책로 87	산책로 9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89	1.5	40	57	산책로	산책로 90	다목적 운동장 거-2	
당초			90	1.5	223	335	산책로	산책로 92	산책로 87	
당초			91	1.5	87	129	산책로	산책로 90	산지	
당초			92	2.5	305	619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99	
당초			93	1.5	160	243	산책로	산책로 92	중로 3-1	
당초			94	2	199	401	산책로	산책로 96	산책로 92	
당초			95	1.5	63	95	산책로	산책로 94	산책로 99	
당초			96	2	180	369	산책로	산책로 97	부지경계	
당초			97	2	72	164	산책로	녹지	산책로 99	
당초			98	1.5	38	57	산책로	산책로 98	산책로 97	
당초			99	2	548	1096	산책로	산책로 92	산책로 120	
당초			100	1.5	208	310	산책로	산책로 87	산책로 98	
당초			101	1.3	191	272	산책로	산책로 99	산책로 87	
당초			102	1.5	245	363	산 책 로	산책로 87	휴게소 자-3	
당초			103	2	53	99	산 책 로	휴게소 자-4	산책로 70	
당초			104	1.5	85	127	산 책 로	휴게소 자-4	운동시설 너-8	
당초			105	1.2	35	40	산 책 로	산책로 104	운동시설 너-8	
당초			106	1.2	55	66	산 책 로	운동시설 너-8	산책로 108	
당초			107	1.2	20	28	산 책 로	산책로 106	운동시설 너-8	
당초			108	1.5	120	173	산 책 로	휴게소 자-2	운동시설 너-1	
당초			109	2	332	567	산 책 로	산책로 108	녹지	
당초			110	1.5	173	260	산 책 로	휴게소 자-2	산책로 9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111	1.5	25	38	산 책 로	운동시설 너-1	산책로 109	
당초			112	1.5	37	60	산 책 로	산책로 111	산책로 109	
당초			113	2	73	123	산 책 로	산책로 109	운동시설 너-1	
당초			114	1.2	26	31	산 책 로	산책로 115	산책로 113	
당초			115	1.5	43	65	산 책 로	산책로 113	운동시설 너-2	
당초			116	1	7	10	산 책 로	운동시설 너-2	산책로 117	
당초			117	1	25	25	산 책 로	녹지	산책로 109	
당초			118	1.2	99	115	산 책 로	산책로 109	산책로 120	
당초			119	1.2	143	173	산 책 로	산책로 121	산책로 118	
당초			120	1.8	270	383	산 책 로	녹지	산책로 121	
당초			121	1	48	48	산 책 로	산책로 119	산책로 109	
당초	산책로		122	1.5	104	152	산 책 로	산책로 120	녹지	
당초			123	1.2	132	171	산 책 로	산책로 123	데크쉼터 카-7	
당초			124	1.5	75	111	산 책 로	산책로 123	데크쉼터 카-7	
당초			125	1.5	24	46	산 책 로	산책로 123	산책로 124	
당초			126	1.2	15	19	산 책 로	산책로 122	산책로 121	
당초			127	1	40	40	산 책 로	녹지	부지경계	
당초			128	2	126	256	산 책 로	산책로 99	운동시설 너-7	
당초			129	1.5	38	67	산 책 로	산책로 128	부지경계	
당초			130	1.5	26	38	산 책 로	산책로 99	부지경계	
당초			131	2	77	167	산 책 로	산책로 99	산책로 133	
당초			132	2	186	407	산 책 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133	2	113	227	산 책 로	산책로 132	산책로 96	
당초			134	2.3	341	716	산 책 로	부지경계	산책로 18	
당초			135	2	166	316	산 책 로	소로 3-8	소로 3-8	
당초			136	2.5	125	350	산 책 로	산책로 109	운동시설 러-1	
당초			137	1.5	30	45	산 책 로	산책로 136	산책로 115	
신설			138	1.5	31.4	47.03	산 책 로	소로 3-4	조경시설	
신설			139	1.0	13.32	13.32	산 책 로	산책로138	산책로140	
신설			140	2.8	13.0	28.86	산 책 로	소로 3-4	조경시설	
신설			141	1.5	23.1	34.70	산 책 로	산책로138	조경시설	
신설			142	1.2	31.4	37.68	산 책 로	조경시설	유희시설	
신설			143	1.2	7.5	8.98	산 책 로	조경시설	조경시설	

다. 도로조서

"나"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3,492	5,737 (8,560)				
변경	합 계									
당초	종로	소 계			557	(6,633)				
당초		1류	1	20	544	(6,455)	도시계획도	주차장 타-4	산책로19	
당초		3류	1	12	13	(178)	도시계획도	번동 148-429도	광장 가-1	
당초	소로	소 계			519	661 (1,927)				
당초		3류	1	6	162	661	시설연결로	소로 3-2	휴게소 나-7	
당초		3류	2	6	357	(1,927)	도시계획도	중로 1-1	산책로9	
당초	산책로	소 계			2,429	5,076				
당초			3	4	126	343	산책로	소로3-1	휴게소 나-7	
당초			6	2	58	110	산책로	광장 가-4	산책로8	
당초			7	2	32	66	산책로	광장 가-4	산책로8	
당초			8	2	230	459	산책로	주차장 타-3	산책로9	
당초			9	2	268	590	산책로	소로3-2	산책로26	
당초			10	2	82	164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1	산책로9	
당초			11	2	132	265	산책로	보태닉가든 자	산책로9	
당초			12	2	70	137	산책로	산책로11	보태닉가든 자	
당초			13	2	22	64	산책로	122-59임	산책로9	
당초			14	2	58	112	산책로	소로 3-2	체력단련장 라-4	
당초			15	2	14	30	산책로	도자구역	보태닉가든 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19	2~2.5	57	123	산책로	중로 1-1	다목적운동장 마	
당초			20	2	189	375	산책로	산책로 19	도자구역 산책로 20	
당초			21	2	137	255	산책로	체력단련장 라-2	산책로26	
당초			22	2	48	62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6	
당초			23	2	27	51	산책로	산책로26	산25-52공	
당초			24	2	28	51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6	
당초			25	2	160	326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26	
당초			26	2	137	276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21	
당초			27	2	19	39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9	
당초			28	2	31	64	산책로	소로 3-2	산25-62묘	
당초			29	2	49	78	산책로	산책로27	산책로25	
당초			30	4	88	327	산책로	생태습지원 차	보태닉가든 자	
당초			31	1	73	73	산책로	휴게소 나-9	휴게소 나-8	
당초			32	1	13	13	산책로	광장 가-1	휴게소 나-8	
당초			33	2	5	10	산책로	휴게소 나-4	어린이놀이터 다-2	
당초			34	2	249	498	산책로	광장 가-2	휴게소 나-4	
당초			35		27	115	산책로	중로 3-1	광장 가-1	

다. 도로조서

"다"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6,421	17,358 (2,951)				
변경	합 계					17,652 (2,951)				
당초	종로	소 계			178	(1,297)				
당초		3류	1	12~ 15	144	(864)	도시계획도	산1-4,공원경계	도자구역	
당초		3류	2	12	34	(433)	도시계획도	광장 가-1	소로2-1	
당초	소로	소 계			777	4,655 (1,654)				
당초		1류	1	10	190	1,931	진 입 로	번2동 637-7	번2동 산25-8	
당초		1류	2	11	20	230	진 입 로	소로 1-1	다목적운동장 마-1	
당초		2류	1	6	285	(1,654)	도시계획도	중로 3-2종점	산책로 1종점	
당초		2류	2	8	282	2,494	시설연결로	소로 3-1종점	중로 3-2시점	
당초	산책로	소 계			6,100	12,703				
변경		소 계				12,997				
당초			1	2	109	249	산책로	광장 가-4	도자구역	
당초			2	2	94	185	산책로	광장 가-4	산책로1	
당초			3	2	122	268	산책로	광장 가-4	부지경계	
당초			4	2	37	77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마-2	산책로5	
당초			5	2	148	301	산책로	부지경계	도자구역	
당초			6	2	103	220	산책로	부지경계	도자구역	
당초			7	2	135	394	산책로	광장 가-2	도자구역	
당초			8	1.5	39	83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12	
당초			9	2	74	149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7	
당초			10	2	55	112	산책로	산책로7	다목적운동장 마-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12	2	394	809	산책로	부지경계	도자구역	
당초			13	2	210	418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2	
당초			14	2	72	145	산책로	산책로13	번동 산19-10	
당초			15	2	80	318	산책로	산책로31	번동 산19-10	
당초			16	2	65	127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15	
당초	산책로		17	2	52	113	산책로	산책로18	산책로15	
당초			18	2	73	132	산책로		도자구역	
당초			20	2	177	361	산책로	산책로13	소로 2-1	
당초			21	2	40	99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22	
당초			22	2	136	292	산책로	산책로23	산책로12	
당초			23	2	94	191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1	
당초			24	2	39	75	산책로	산책로23	번동 산 19-11	
당초			25	2	75	132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23	
당초			26	2	64	125	산책로	산책로20	어린이놀이터 다-2	
당초			27	2	33	66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20	
당초			28	2	39	77	산책로	도자구역	어린이놀이터 다-2	
당초			29	2	8	16	산책로	산책로18	도자구역	
당초			30	2	47	92	산책로	산책로31	도자구역	
당초			31	2	13	4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32시점	
당초			32	2	30	69	산책로	산책로31	도자구역	
당초			34	2	37	79	산책로	유아숲체험원 겨	도자구역	
당초			35	2	32	89	산책로	산책로32	도자구역	
당초			36	2	85	168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40	
당초			37	2	378	788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5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38	2	40	81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37	
당초			39	2	38	78	산책로	산책로37	산책로40	
당초			40	2	549	1,098	산책로	강북웰빙 스포츠센터	산책로54	
당초			41	1.5	96	144	산책로	소로 1-1	광장 가-3	
당초			42	1.5	37	58	산책로	소로 1-1	산책로41	
당초			43	2	140	294	산책로	주차장 차-3	대지경계	
당초			44	1.5	149	288	산책로	산책로43	산책로45	
당초			45	1.5	119	179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64	
당초			46	1.5	14	21	산책로	산책로45	족구장 마	
당초	산책로		47	1.5	20	30	산책로	족구장 마	산책로 64	
변경			48	2	72	138	산책로	산책로49	산책로40	
변경			49	2.8	137	382	산책로	산책로64	산책로48	
변경			50	1.8	37	66	산책로	광장 가-7	야외휴게소 바-1	
당초			51	2	44	87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52	
당초			52	2	99	196	산책로	산책로48	산책로53	
당초			53	2	37	75	산책로	산책로54	어린이놀이터 다-4	
당초			54	2	100	175	산책로	산책로37	중로 3-2	
당초			55	2	65	142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2	체력단련장 라	
당초			56	2	19	35	산책로	산책로 55	휴게소 나-1	
당초			57	1.8	191	349	산책로	중로 3-2	휴게소 나-9	
당초			58	2	92	183	산책로	산책로62	휴게소 나-6	
당초			61	2	38	67	산책로	휴게소 나-9	미아3동 산25-38	
당초			62	2	6	12	산책로	285-110 차	산책로 6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63	2	36	82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26	
당초			64	3	121	433	산책로	산책로 49	주차장 차-4	
당초			65	3	110	342	산책로	미아동 258-56	산 19-106	
당초			66	2	22	44	산책로	산책로1	다목적운동장 마-2	
당초			67	2	346	672	산책로	산책로40	유아숲체험원-2	
당초			68	2	156	312	산책로	산책로 65	공원경계	
신설			69	2.5	27	68	산책로	야외휴게소 바-1	산책로40	
신설			70	2	3.5	7	산책로	산책로13	화장실 11-4	

다. 도로조서

"라"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6,715	24,474 (4,211)				
변경	합 계									
당초	중로	소 계		-	39	534				
당초		2	1	15	39	534	간선도로	부지서측	부지동측	
당초	소로	소 계			2,879	15,647 (4,211)				
변경		소 계								
당초		1	3	10	269	(2,434)	주진입로	소1-13종점	소1-4기점	
당초		1	4	10	83	801	주진입로	소1-3종점	소1-5기점	
당초		1	5	10	89	781	주진입로	소1-4	소1-6	
당초		1	6	10	160	1,520	주진입로	부지남측경계	소3-13기점	
당초		1	9	6~10	475	4,481	주진입로	축구장(자-1)	소3-8	
당초		3	2	6	105	(428)	주진입로	부지북측경계	소1-3	도시계획 도로
당초		3	7	6	153	705	주진입로	부지북측경계	부지북측경계	
당초		3	8	6	167	1,702	주진입로	부지북동측경계	부지동측경계	
당초		3	9	6	12	61	주진입로	부지서측경계	산3-18	
당초		3	10	6	54	322	주진입로	부지동측경계	소3-8	
당초		3	11	6	71	379	주진입로	부지동측경계	소1-9	
당초		3	13	4	318	1,112	주진입로	소1-6종점	산3-26	
당초		3	14	4	257	957	주진입로	소3-8	전망대(4)	
당초		3	15	4	64	191	주진입로	소로1-9	도자구역	
당초		3	16	4	67	(264)	주진입로	부지동남측경계	소3-11	도시계획 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1	11	9	104	732	주진입로	소로1-6	도자구역	
당초		1	12	4~12	199	1,460	주진입로	주차장(타-1)	휴게소(라-10)	
당초		1	13	10	136	(1,085)	주진입로	산3-19종점	소1-3기점	도시계획도로
당초		3	17	5	96	443	주진입로	소3-8	장위동 산3-92	
당초		소 계			3,797	8,293				
당초	산책로	3	17	3	187	518	산책로	산3-104공	부지남측경계	
당초		3	18	4	213	746	산책로	부지북측경계	부지경계	
당초		3	19	2	132	434	산책로	소1-13	소3-13	
당초	산책로	3	20	2	33	67	산책로	산3-25	휴게소(라-14)	
당초		3	21	2	62	247	산책로	소1-5	부지남측경계	
당초		3	22	2	61	186	산책로	산3-33	소3-17	
당초		3	23	3	135	244	산책로	산3-17	산3-17	
당초		3	24	3	28	84	산책로	소1-6	주차장 (타-6)	
당초		3	25	2	213	427	산책로	산3-26	산3-33	
당초		3	26	2	168	305	산책로	소3-7	소3-14	
당초		3	27	2	132	261	산책로	산3-31	소3-13	
당초		3	28	2~4	13	46	산책로	정자 (②-4)	소3-13	
당초		3	29	2	13	25	산책로	휴게소(라-4)	산3-14	
당초		3	31	1.5	161	242	산책로	상월곡 산1-1	소1-9	
당초		3	32	1.5	40	60	산책로	산3-31	산3-31	
당초		3	33	2	66	126	산책로	소3-14	소3-14	
당초		3	34	2	100	201	산책로	산3-25	소3-14	
당초		3	35	2	158	324	산책로	산3-20	휴게소(라-10)	
당초		3	36	2	14	27	산책로	소1-12	야생화단지(갸)	
당초		3	37	2	38	82	산책로	주차장(타-1)	소1-12	
당초		3	38	3	66	152	산책로	데크로드(하-1)	휴게소(라-1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3	39	2	55	92	산책로	소1-12	소1-12	
당초		3	40	4	95	257	산책로	소1-12종점	소1-3	
당초		3	41	2	11	17	산책로	체육시설장 (라-9)	정자(②-1)	
당초		3	42	2	23	46	산책로	휴게소(라-14)	소3-14	
당초		3	43	2	15	31	산책로	산3-25	산3-34	
당초		3	44	2	34	69	산책로	산3-26	소3-13	
당초		3	45	2	31	63	산책로	소1-6	진입광장(나-3)	
당초		3	46	2	284	636	산책로	소1-12	산3-49	
당초		3	47	1.5	11	17	산책로	산3-38	산3-46	
당초	산책로	3	48	2	17	38	산책로	산3-46	산3-47	
당초		3	49	2	25	49	산책로	산3-46	산3-46	
당초		3	50	1.8	41	75	산책로	소3-13	산3-51	
당초		3	51	1.8	61	125	산책로	산3-50	산3-52	
당초		3	52	1.8	186	380	산책로	산3-51	산3-53	
당초		3	53	1.8	22	48	산책로	산3-52	전망대(4)	
당초		3	54	1.5	115	173	산책로	산3-56	산3-31	
당초		3	55	1.5	37	56	산책로	산3-56	소3-14	
당초		3	56	1.8	684	1,285	산책로	전망대(4)	산1-1공	
당초		3	57	1.8	17	32	산책로	산1-1공	산3-5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성북구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27,023.76	2024. 10. 4.	모아타운 구역 범위 ※ '24년 제10차 전문가 사전자문 ('24. 9. 12. 의견: 적정)

2. 권리산정기준일: 2024. 10. 4.(구역 범위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

1.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7호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길음1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63호(2008.07.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504호(2009.01.0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11호(2009.03.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28호(2010.04.0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6호(2010.04.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08호(2011.04.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43호(2011.06.0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8호(2011.10.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16호(2011.10.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05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4호(2012.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07호(2012.11.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97호(2014.3.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62호(2014.7.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21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3호(2015.8.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1호(2015.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7호(2016.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5호(2017.10.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0호(2018.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9호(2018.11.8.),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호(2019.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0호(2019.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28호(2021.1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2호(2022.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41호(2023.4.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포함)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 길음동, 624, 971 일대	1,250,264.23	-	1,250,264.23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확장지구(299,451.5㎡)외 기타 촉진계획은 변경사항 없음

나) 확장지구(299,451.5㎡)내 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299,451.5		299,451.5	100.0	
주 거	소 계	224,729.9		224,729.9	75.1	
	주거용지	209,505.9		209,505.9	70.0	존치관리구역 2, 3포함
	복합용지	15,224.0		15,224.0	5.1	
기 반 시 설	소 계	67,417.1	증) 176.7	67,593.8	22.5	
	도 로	30,859.7		30,859.7	10.3	
	공 원	19,004.1		19,004.1	6.3	3개소 (근린공원421내어린이도서관798㎡포함)
	경관녹지	4,942.0		4,942.0	1.7	6개소
	공공공지	11,515.4	감) 1,072.8	10,442.6	3.4	5개소
	공공청사	-	증) 1,249.5	1,249.5	0.4	1개소 신설
	사회복지시설	1,095.9		1,095.9	0.4	1개소
기 타	소 계	7,304.5	감) 176.7	7,127.8	2.4	
	종교시설	7,032.2	감) 176.7	6,855.5	2.3	7개소
	근린생활시설	272.3		272.3	0.1	1개소

※ 1) 공공공지(지하 주차장 중복) 1개소 공공청사로 변경 및 종교시설 용지 1개소 공공공지로 변경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17,152인 / 6,352세대

3) 기반시설 설치계획(공공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기 정	문화·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1개소	1,095.9	-
기 정	공공시설	공공청사	-	-	
변 경	공공시설	공공청사	1개소	1,249.5	도시계획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공청사 신설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기 정	합 계		14개소	35,461.5	-
	공원 시설	소 계	3개소	19,004.1	-
		근린공원	1개소	14,677.4	-
		소공원	2개소	4,326.7	-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녹지 시설	경관녹지	6개소	4,942.0	-
	공공공지 시설	공공공지	5개소	11,515.4	공공공지 1개소 : 주차장 중복결정 공공공지 2개소 : 미래형 공공용지
변 경	합 계		14개소	35,461.5	-
	공원 시설	소 계	3개소	19,004.1	-
		근린공원	1개소	14,677.4	-
		소공원	2개소	4,326.7	-
	녹지 시설	경관녹지	6개소	4,942.0	-
	공공공지 시설	공공공지	5개소	10,442.6	감) 1,072.8㎡ 공공공지(주차장 중복결정) 1개소→공공청사로 변경 종교용지 1개소→공공공지로 변경 공공공지 2개소 : 미래형 공공용지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개발 부문(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길음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가) 기반시설설치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67,417.1	증) 176.7	67,593.8	22.5	
	도 로	30,859.7		30,859.7	10.3	
	공 원	19,004.1		19,004.1	6.3	공원내 도서관 포함 (조성후 기부채납)
	경관녹지	4,942.0		4,942.0	1.7	6개소
	공공공지	11,515.4	감) 1,072.8	10,442.6	3.4	5개소
	공공청사	-	증) 1,249.5	1,249.5	0.4	1개소(공공공지→공공청사 변경)
	사회복지시설	1,095.9		1,095.9	0.4	1개소

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기준 (변경없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기타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특성화계획)(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7) 구역별 재정비촉진계획
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인구 · 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합 계		107,477.7		107,477.7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32,273.8	증) 176.7	32,450.5	30.2	
	도 로	8,698.4		8,698.4	8.1	
	공 원	11,248.6		11,248.6	10.5	
	공공공지	11,230.9	감) 1,072.8	10,158.1	9.5	
	공공청사	-	증) 1,249.5	1,249.5	1.1	공공공지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1,095.9		1,095.9	1.0	
택지(획지)	1-1	70,584.2		70,584.2	65.7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기 타	소 계	4,619.7	감) 176.7	4,443.0	4.1	
	1-2	176.7	감) 176.7	-	0.0	종교용지 → 공공공지
	1-3	895.8		895.8	0.8	종교용지
	1-4	1,476.8		1,476.8	1.4	종교용지
	1-5	533.7		533.7	0.5	종교용지
	1-6	1,536.7		1,536.7	1.4	종교용지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 로(변경없음)
□ 주차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폐지	88	주차장	길음동 1059 일원	1,249.5	감) 1,249.5	0.0	서고 504 (09.1.2.)	지하(공공공지88과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8	주차장	•주차장 폐지	•공공청사 변경 결정에 따른 주차장 폐지

□ 공공공지(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86	공공공지	길음동 509-6 일원	307.6 (300.9)	-	307.6 (300.9)	서고 504 (09.1.2.)	
기정	87	공공공지	길음동 935 일원	8,122.1	-	8,122.1	서고 504 (09.1.2.)	
폐지	88	공공공지	길음동 1059 일원	1,249.5	감) 1,249.5	-	서고 128 (10.4.8.)	지상 (주차장과 중복결정)
기정	92	공공공지	길음동 950 일원	1,558.4	-	1,558.4	서고 504 (09.1.2.)	
신설	94	공공공지	길음동 893-69 일원	-	증) 176.7	176.7	-	

※ 면적의 ( )는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편입면적임.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8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감) 1,249.5㎡	공공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폐지
94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증) 176.7㎡	종교용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공공지 편입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관리청)
				기정	증•감	변경		
신설	88	공공청사	길음동 1059 일원	-	증) 1,249.5	1,249.5	-	성북구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8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증) 1,249.5㎡	도시계획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공청사 신설

□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없음)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층수	최고 층수
기정	길음1 재정비 촉진구역	107,477.7	1-1	70,584.2	길음동 508-16번지 일대	187,356	공동주택	30이하	267.6이하	23이하	37이하
			1-2	176.7	길음동 893-69 일원	건축법규에 따름	종교시설	건축법규에 따름			
			1-3	895.8	길음동 919-29 일원		종교시설				
			1-4	1,476.8	길음동1063 일원		종교시설				
			1-5	533.7	길음동 1050 일원		종교시설				
			1-6	1,536.7	길음동 1021-1 일원		종교시설				
변경	길음1 재정비 촉진구역	107,477.7	1-1	70,584.2	길음동 508-16번지 일대	187,356	공동주택	30이하	267.6이하	23이하	37이하
			1-2 (폐지)	-	-	건축법규에 따름	-	건축법규에 따름			
			1-3	895.8	길음동 919-29 일원		종교시설				
			1-4	1,476.8	길음동1063 일원		종교시설				
			1-5	533.7	길음동 1050 일원		종교시설				
			1-6	1,536.7	길음동 1021-1 일원		종교시설				
주택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없음)			•총세대수 : 2,029세대 (임대주택 : 351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1,141세대 (56.2%) - 전용면적 60㎡~85㎡ 이하 : 810세대 (39.9%) - 전용면적 85㎡ 초과 : 78세대 (3.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나) 길음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없음)

(나) 주차장

□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폐지	88	주차장	길음동 1059 일원	1,249.5	감) 1,249.5	0.0	서고 504 (09.1.2.)	지하(공공공지88과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8	주차장	•주차장 폐지	•공공청사 변경 결정에 따른 주차장 폐지

(2) 공간시설

(가) 공원(변경없음)

(나) 녹지(변경없음)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86	공공공지	길음동 509-6 일원	307.6 (300.9)	-	307.6 (300.9)	서고 504 (09.1.2.)	
기정	87	공공공지	길음동 935 일원	8,122.1	-	8,122.1	서고 504 (09.1.2.)	
폐지	88	공공공지	길음동 1059 일원	1,249.5	감) 1,249.5	-	서고 128 (10.4.8.)	지상 (주차장과 중복결정)
기정	92	공공공지	길음동 950 일원	1,558.4	-	1,558.4	서고 504 (09.1.2.)	
신설	94	공공공지	길음동 893-69 일원	-	증) 176.7	176.7	-	

※ 면적의 ( )는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편입면적임.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8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감) 1,249.5㎡	공공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폐지
94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증) 176.7㎡	종교용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공공지 편입

(라) 공공보행통로(변경없음)

(3) 공공·문화 체육

(가)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나)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관리청)
				기정	증·감	변경		
신설	88	공공청사	길음동 1059 일원	-	증) 1,249.5	1,249.5	-	성북구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8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증) 1,249.5㎡	도시계획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공청사 신설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5. 2024년 제6차(’ 24.7.16.)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심 의 의 견(수정사항)	조 치 계 획	비 고
금회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 반영하여 수정가결	종교용지 기부채납 부분을 공원 대신 공공공지로 기부채납토록 변경	반 영

6.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서」에 명시 : 게재생략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 02-2133-7223)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 02-2241-2855)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기정) : 변경없음

□ 길음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기정)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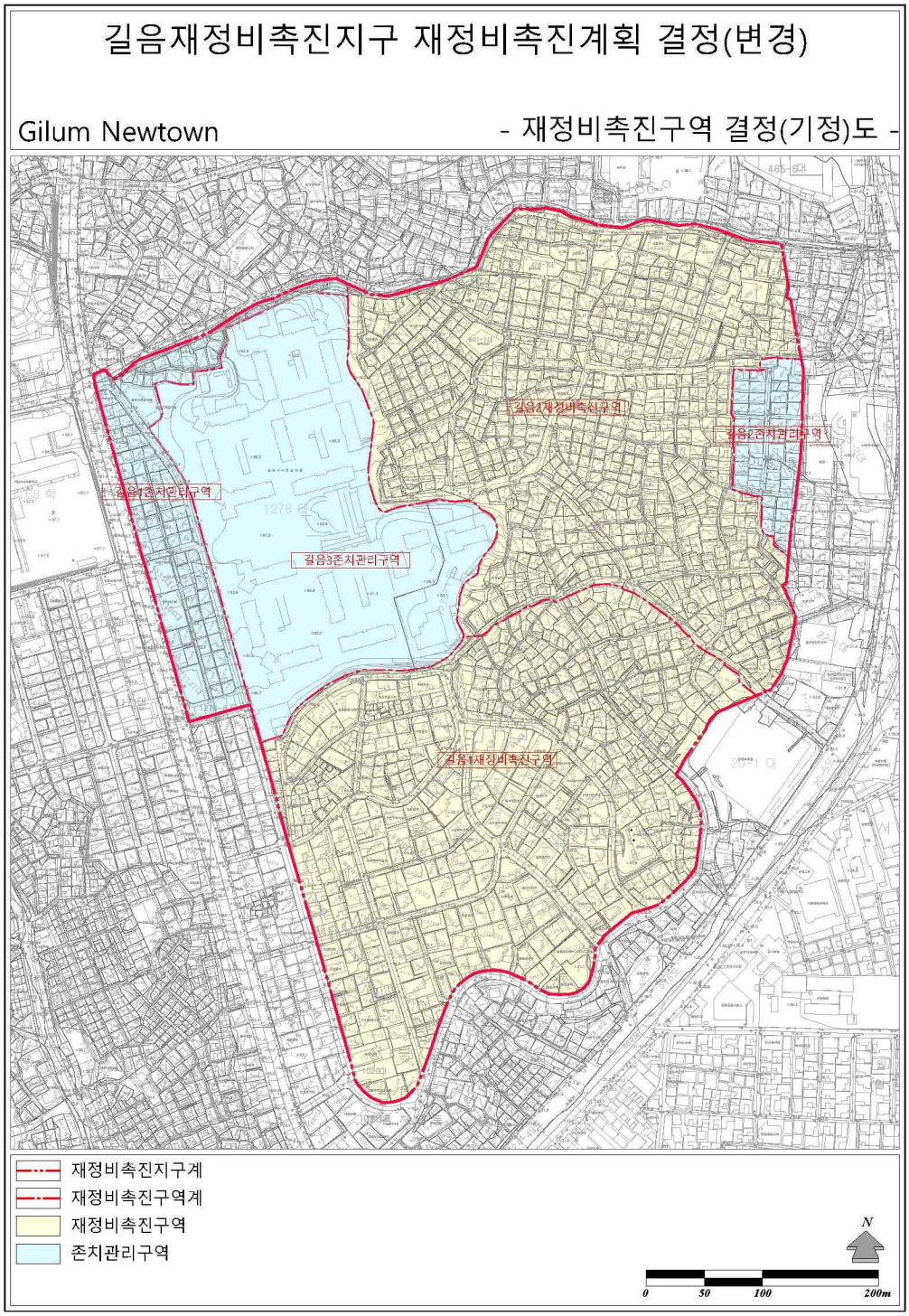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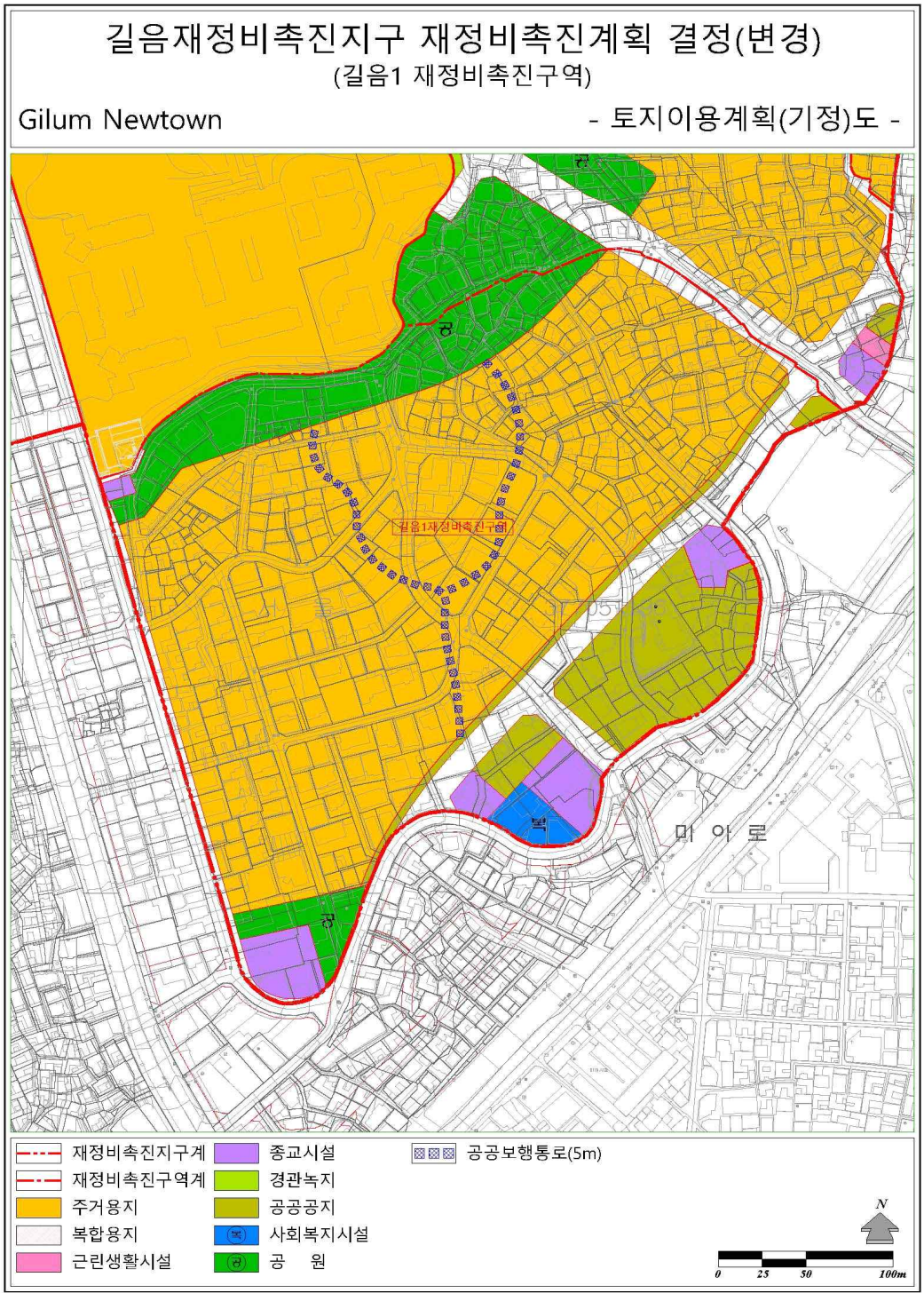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Gilum Newtown
- 토지이용계획(기정)도 -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미 아 로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주거용지
복합용지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경관녹지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공 원
공공보행통로(5m)
N
0 25 50 100m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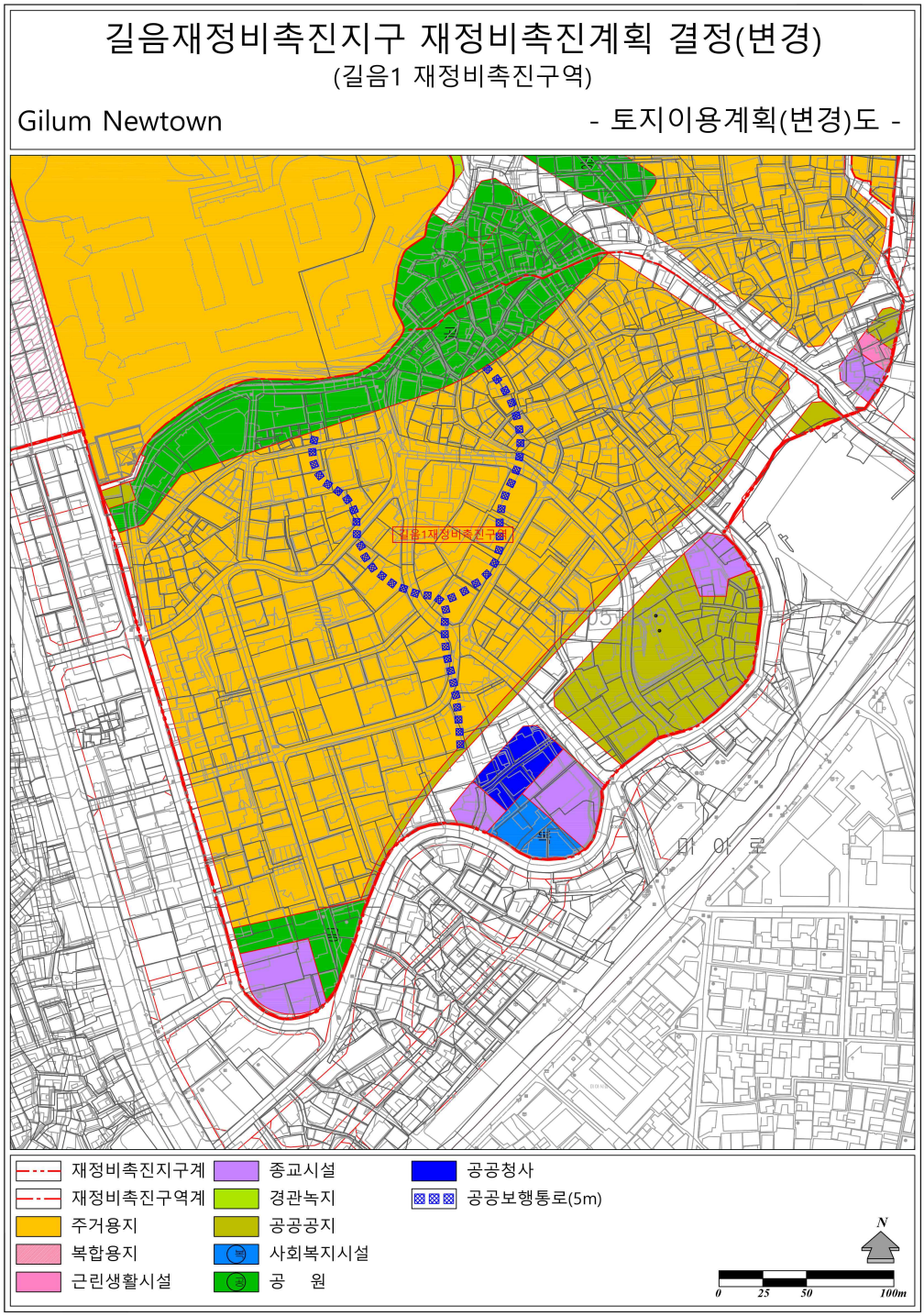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Gilum Newtown
- 토지이용계획(변경)도 -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미 아 로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주거용지
복합용지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경관녹지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공 원
공공청사
공공보행통로(5m)
N
0 25 50 100m

□ 용도지역결정도(기정)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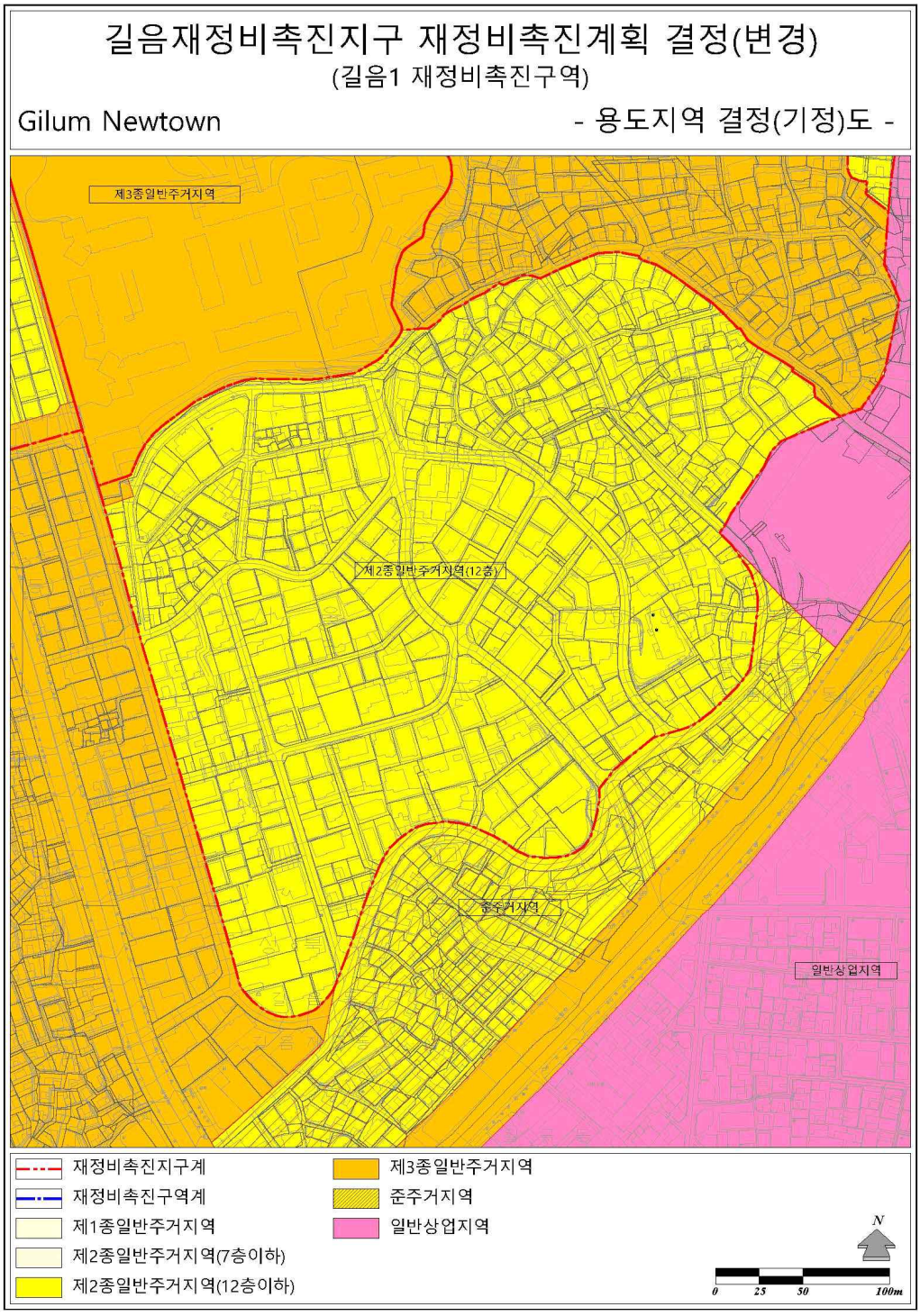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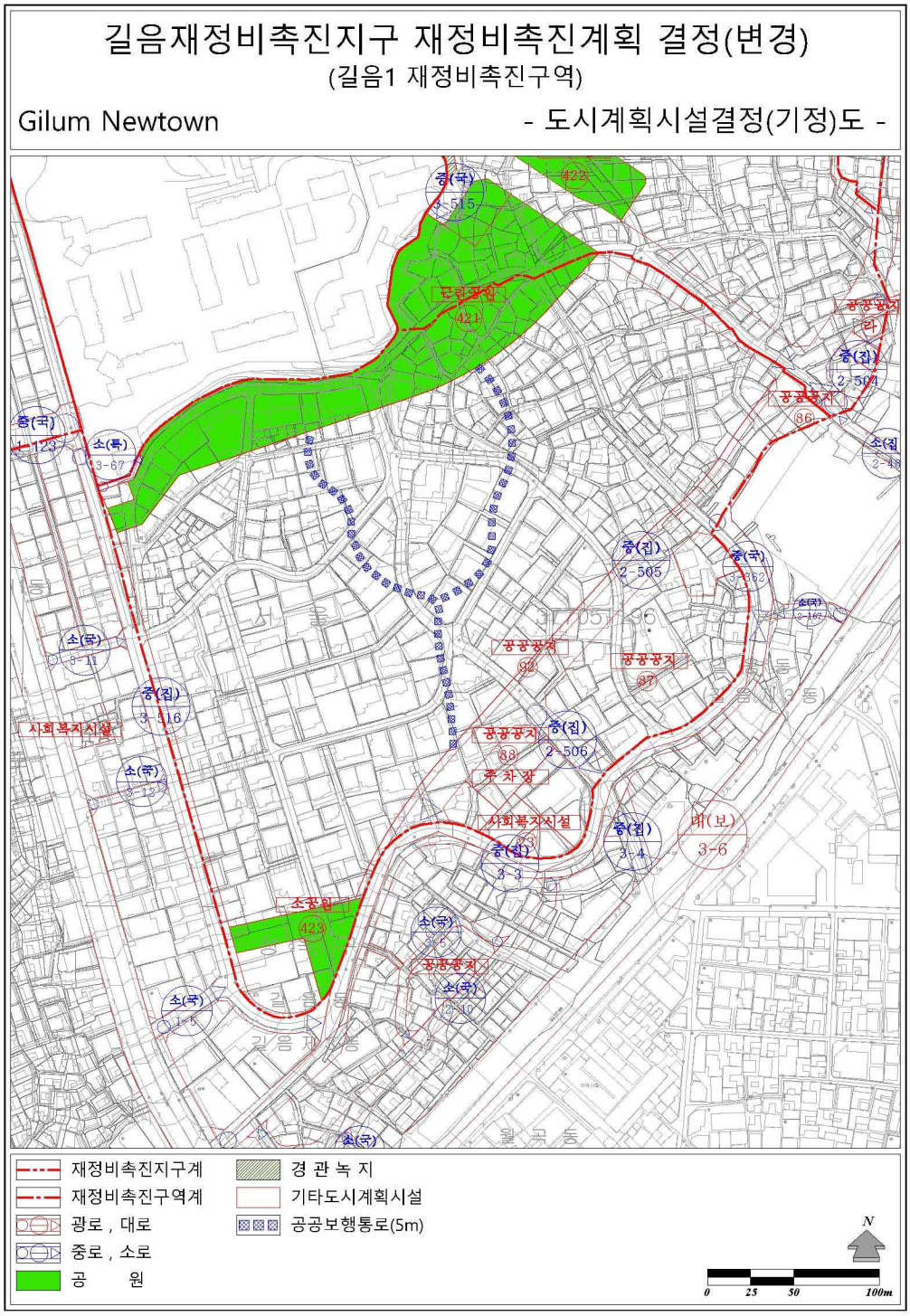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Gilum Newtown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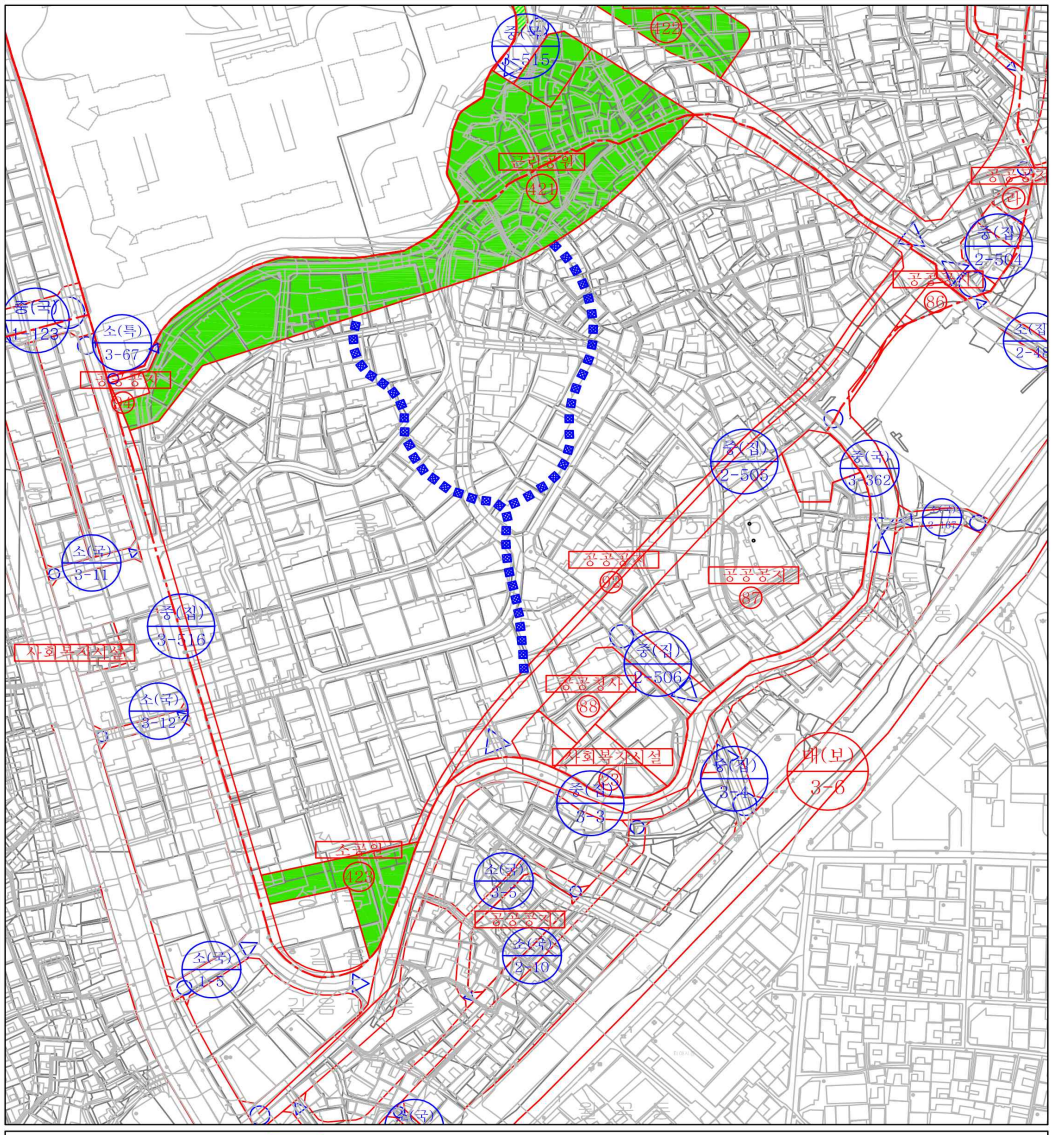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8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조성대상 :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강동구	양재대로91길	5.5~9	130

2. 조성계획 : 따로 붙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광진구 아차산로30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1부

[붙임 1]

양재대로91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위치 : 양재대로91길(연장 130m, 폭 5.5~9m)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12개월)

○ 사업내용

– 보행친화포장(스탬프 포장)

– 보행자우선도로 표지 설치(표지판 및 노면)

– 교통안전시설 개선

○ 사 업 비 : 166백만원

○ 사업지 현황

– 폭 5.5~9m의 양방통행 도로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0면 운영되고 있음

– 성일초등학교 통학로이며 상가, 근린생활시설, 전통시장 등 통행 유발시설이 많아 보행이 활성화됨

– 구시가지로 이면도로 교차지점의 시인성이 낮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

– 규정에 맞지 않는 노면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환경 저해

□ 개선목표 및 범위

○ (경제적 효과) 보행량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 (만족도) 안전성/편리성/쾌적성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

○ (안전성 측면) 차량 감속, 보행자 우선의 도로환경으로 보행안전 확보

○ (편리성 측면) 차량통행량 감소, 주 · 정차 차량 감소, 보행편의 확보

○ (쾌적성 측면) 가로미관 향상, 차량소음 감소

□ 설계안

○ 설계내용

–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 개선

– 교차로 시인성 개선

○ 설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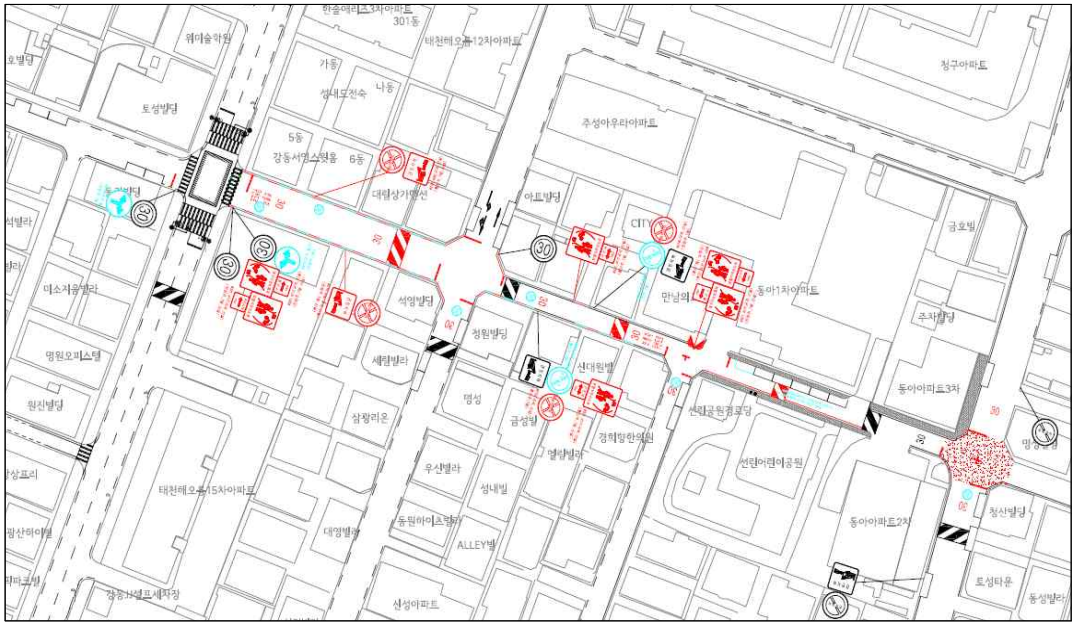

□ 시설협의 및 조치사항

○ 강동경찰서

– 협의내용 : 교통안전심의 시행(‘24.7.17.)

– 조치사항 : 양재대로91길 교통처리계획도 원안 가결

○ 성내3동 주민센터

– 협의내용 : 주민의견조사, 주민설명회 시행

– 조치사항 : 과반수의 찬성표, 별도의 주민의견사항 없음

□ 소요예산 및 일정

○ 소요예산: 166백만원(시비: 130백만원, 구비: 36백만원)

○ 일정계획

– ’24. 9. : 조성계획수립 고시 요청 및 서울시 고시, 조달구매

– ’24. 9. : 착공

– ’24. 10.: 공사 완료 및 모니터링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9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3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 (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3호(2009.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7호(2009.9.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56호(2010.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25호(2010.4.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9호(201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3호(2011.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 (2011.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7호(2011.9.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2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3호(2011.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호(2012.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4호(2012.5.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호(2013.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5호 (2013.4.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3호(2013.5.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6호(2013.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7호(2013.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7호(2013.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7호(2013.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4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1호(2013.11.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47호(2013.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2(2014.8.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3호.(2014.9.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1호(2014.10.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5호.(2015.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4호 (2015.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9호(2016.08.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9호(2017.0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7호(2017.07.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1호(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69호(2018.0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8호(2019.04.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4호(2019.0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8호 (2019.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79호(2019.1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0호(2019.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8호(2019.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62호(2020.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90호(2020.07.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43호(2021.03.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35호(202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22호(2023.06.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68호(2023.12.2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을 고시하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하여 신길13재정비촉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길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구분	명칭	유형	위치	면적(㎡)	개발기간	
					기준연도	목표연도
기정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일대	673,603.4	2006	2023

2.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73,603.4	-	673,603.4	100.00
계획기반시설	소 계	239,729.7	-	239,729.7	35.59
	공공청사	157.2	-	157.2	0.02
	문화/복지	6,217.9	-	6,217.9	0.92
	학교시설	64,485.2	-	64,485.2	9.57
	공원·녹지	77,482.2	-	77,482.2	11.51
	공공공지	839.9	-	839.9	0.12
	도 로	90,514.3	-	90,514.3	13.44
	철 도	33.0	-	33.0	0.01
주거용지	소 계	400,585.9	-	400,585.9	59.47
	공동주택	400,585.9	-	400,585.9	59.47
기타 종교시설 등		33,287.8	-	33,287.8	4.94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인구 · 주택 수용계획(변경)

구 분		계획 세대			계획 인구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존치지역	개별주택	-	-	-	-	-	-	-
	공동주택	482	-	482	1,301	-	1,301	존치지역 등

구 분		계획 세대			계획 인구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 계*	10,152	감) 1	10,151	27,411	감) 3	27,408	-
	40㎡ 이하	681	-	681	1,839	-	1,839	-
	40㎡~60㎡	4,514	감) 4	4,510	12,188	감) 11	12,177	-
	60㎡~85㎡	4,522	증) 3	4,525	12,209	증) 8	12,217	-
	85㎡ 초과	435	-	435	1,175	-	1,175	-
계		10,634	감) 1	10,633	28,712	감) 3	28,709	-

* 세대당 인구수 2.7인 (최초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시 기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사 유
세대수 및 인구수 변경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 세대수 및 인구수 변경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공원 · 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마. 교통계획(변경없음)

바. 경관계획(변경없음)

사.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아.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등에 관한 건축계획(변경없음)

구 역 명	주용도	상한용적률 (%)	건폐율 (%)	높이계획		비고
				공동주택 (평균/최고)	최고높이 (m)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1/32	112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9	94	-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7	97	-

구 역 명	주용도	상한용적률 (%)	건폐율 (%)	높이계획		비고
				공동주택 (평균/최고)	최고높이 (m)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7	91	-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9	103	-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50%이하	- /29	103	-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2%이하	60%이하	19/25	91	-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0/29	103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	450%이하*	60%이하	- /49	170	공공재건축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8	94	-

※ 신길3,5,6,7,8,9,12,14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의 기준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하는 경우임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 라인' (2010.6)에 따름)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의 상한용적률은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의 공공주택을 확보하여 완화받는 법적상한용적률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 6(신설)에 의거하여 공공재건축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건축사업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 상향되는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정할 수 있음

차.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 분	구역면적 (㎡)	기반시설면적(㎡)					비고
		계획기반 시설등면적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8,502.90	7,723.00	1,070.40	1,313.04	-	5,339.56 (13.9%)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6,629.90	17,164.30	207.90	1,576.00	-	15,380.40 (20.1%)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3,728.60	21,524.00	-	3,830.00	4,199.70	13,494.30 (14.4%)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2,287.70	6,652.90	44.00	909.60	-	5,699.30 (17.7%)	

구 분		구역면적(㎡)	기반시설면적(㎡)					비고
			계획기반 시설등면적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4,091.10	20,308.20	4,348.90	7,110.10	-	8,849.20 (11.9%)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32,123.00	6,171.00	13.00	3,172.00	-	2,986.00 (9.3%)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0,759.30	10,996.70	1,493.00	2,564.00	-	6,939.70 (13.7%)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159.00	14,656.40	644.20	4,273.40	-	9,738.80 (18.7%)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기정	15,120.00	2,688.70	56.00	359.60	-	2,273.10 (15.0%)	
	변경	15,120.00	*2,694.90	56.00	359.60	-	2,279.30 (15.1%)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7,844.10	5,002.30	52.00	1,071.00	-	3,879.30 (13.9%)	
계		493,245.60	112,893.70	7,929.40	26,178.74	4,199.70	74,585.86 (15.1%)	

* 유상매입 시설 : 계획 기반시설 중 유상매입 시설 면적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내 계획 기반시설 면적**은 토지(도로, 공원) 외 공공청사 복합화(입체적결정)에 따른 부속토지 및 건축물 환산 면적(278.9㎡), 공공임대업무시설 부속토지 및 건축물 환산 면적(430.3㎡), 공영주차장 부속토지 및 건축물 환산 면적(309.1㎡)포함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공공시설' (공공임대주택(정비계획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기여)) 부속토지 및 건축물 환산면적(827.6㎡)도 포함함**

카.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분	구 분	계획세대수(세대)	분양주택(세대)	임대주택(세대)	비고
기정	합 계	10,152	*8,415	*1,737	-
변경		10,151	8,409	1,742	-
기정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99	649	150	-

구분	구 분	계획세대수(세대)	분양주택(세대)	임대주택(세대)	비고
기정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546	1,260	286	-
기정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722	1,533	189	-
기정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41	522	119	-
기정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476	1,210	266	-
기정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812	734	78	-
기정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49	777	172	-
기정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008	824	184	-
기정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587	405	182	-
변경		586	399	*187	-
기정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12	501	111	-

* 기정 정정 사항(서고 제2023-568호) : 분양주택 세대수 및 임대주택 세대수 합계 오기에 따른 정정
(분양주택 합계 8,146세대 → 8,415세대, 임대주택 합계 1,736세대 → 1,737세대)

* 공공재건축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중 공공에서 인수하여 분양하는 '공공분양' 도 공공에서 활용하는 주택(예:첫 집 주택등)으로 임대주택 항목으로 분류함

▷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사 유
계획세대수 (분양 및 임대) 변경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세대수등 변경

타.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변경없음)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하.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거.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1) 신길3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2) 신길5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3) 신길7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4) 신길8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5) 신길9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6) 신길10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변경없음)
7) 신길11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8) 신길12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9) 신길13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신길동 340-1일대	15,120	-	15,120	-

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변경)

▌기정

추정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종후자산 추정금액 - 추정사업비)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94.81% ⇒ (4,032억 - 2,524억) / 1,590억 X 100% = 94.81% - 종후자산 추정금액 : 4,032억 - 추정 사업비 : 2,524억 - 종전자산 추정금액 : 1,509억
개별종전자산 추정액	•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 공시가격 확인 • 개별 공시지가 : 서울시 일사편리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개별 공시지가 확인 -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 현실화율(0.59)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 - 단독주택 및 토지소유자 : 개별공시지가 ÷ 현실화율(0.58) - 상가소유자 : 개략단가(약 330 ~ 1,100만원/㎡) X 연면적 (※상가 개략단가의 경우 인근 거래시세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토지평가액 포함)
추정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 분담금(a-b)
전용59㎡	6.20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X 추정비례율(94.81%)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84㎡	8.76억		
전용104㎡	10.54억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table>
<tr><td>추정비례율</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종후자산 추정금액 - 추정사업비)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92.84% ⇒ (4,034억 - 2,557억) / 1,590억 X 100% = 92.84%
- 종후자산 추정금액 : 4,034억
- 추정 사업비 : 2,557억
- 종전자산 추정금액 : 1,590억</td></tr>
<tr><td>개별종전자산
추정액</td><td>•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 공시가격 확인
• 개별 공시지가 : 서울시 일사편리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개별 공시지가 확인
-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 현실화율(0.59)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
- 단독주택 및 토지소유자 : 개별공시지가 ÷ 현실화율(0.58)
- 상가소유자 : 개략단가(약 330 ~ 1,100만원/㎡) X 연면적
(※상가 개략단가의 경우 인근 거래시세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토지평가액 포함)</td></tr>
<tr><td>추정분담금
산출</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 분담금(a-b)</th></tr>
<tr><td>전용59㎡</td><td>6.24억</td><td rowspan="3">개별 종전자산 추정액X
추정비례율(92.84%)</td><td rowspan="3">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
<tr><td>전용84㎡</td><td>8.76억</td></tr>
<tr><td>전용104㎡</td><td>10.54억</td></tr>
</table></td></tr>
</table>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사 유
분담금 추산액 변경	계획 세대수(분양 및 임대주택)변경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변경

다)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5,120	-	15,12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849	-	849	5.6	-
	도 로	792	-	792	5.2	기부채납
	공 원	57	-	57	0.4	
택 지 (획 지)	소 계	14,271	-	14,271	94.4	-
	획 지	14,271	-	14,271	94.4	공동주택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71	12	집산도로	472 (145)	신길동 426-3 (신길동 340-1)	신길동 336-2 (신길동 340-4)	일반도로	-	서고105 (83.2.24)	-
기정	소로	2	8	8	집산도로	155 (40)	신길동 424-3 (신길동253-259)	신길동 340-1 (신길동253-254)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

※ 연장 및 위치 내( )는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내 수치임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공영주차장	신길동 340-13일대	800.0 (수평투영면적)	-	800.0 (수평투영면적)	서고568 (23.12.28)	*입체적결정 (선형변경)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주차장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규모)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신길동 340-13일대	수평투영면적(㎡)	800.0	-	800.0	서고568 (23.12.28)	건축물 복합화 (아파트 지하부 지하2층 주차장 복합화)
				높이(층)	지하2층	-	지하2층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1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시설 선형 변경	건축물(복합화) 기부채납 시설로 지하층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선형 변경

(2) 공간시설(변경없음)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신길 공원	근린공원	신길동 426-3 (신길동 425-31)	19,604.9 (57)	-	19,604.9 (57)	건고258 (82.7.12)	촉진지구 내:12,245.1㎡ 촉진지구 외:7,359.8㎡

※ ( )는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	공공청사	-	신길동 253-259일대	420.0 (수평투영 면적)	-	420.0 (수평투영 면적)	서고568 (23.12.28)	*입체적 결정 (치안센터) (선형 변경)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공공청사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규모)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	공공청사	신길동 253-259일대	수평투영 면적(㎡)	420.0	-	420.0	서고568 (23.12.28)	건축물 복합화 (아파트 저층부 지상1층 공공청사 복합화)
				높이(층)	지상1층	-	지상1층		

※ 본 시설은 국유지 일괄교환 대상 시설로 향후 교환 예정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청사6	공공청사 시설 선형 변경	건축물(복합화) 기부채납 시설로 지상층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선형 변경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사무소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일대	105	증) 0.47	105.47	지상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625	감) 15.00	610.00	지하
	지역문화센터		95	-	95.00	지하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105	-	105.00	지하
	작은도서관		160	-	160.00	지하
	보육시설(어린이집)		405	-	405.00	지상
	실내형 어린이놀이터		217	-	217.00	지하
	다함께돌봄센터		70	감) 70.00	-	-
	경로당		230	증) 100.00	330.0	지상
	주민운동시설		252	-	252.0	옥외
	어린이놀이터		610	-	610.0	옥외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바)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없음)

(2) 건축시설계획**(변경)**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3">용적률(%)</th><th rowspan="2">높이(m)
(층수)</th></tr>
<tr><th>명 칭</th><th>면적(㎡)</th><th>명 칭</th><th>면적(㎡)</th><th>기준</th><th>정비계획</th><th>법적상한</th></tr>
<tr><td>기정</td><td rowspan="2">신길13
재정비
촉진구역</td><td rowspan="2">15,120</td><td rowspan="2">획지</td><td rowspan="2">14,271</td><td rowspan="2">신길동
340-1번지일대</td><td rowspan="2">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등</td><td rowspan="2">60</td><td>210</td><td>246.0</td><td>450.0</td><td rowspan="2">170
(49층)</td></tr>
<tr><td>변경</td><td>210</td><td>247.1</td><td>450.0</td></tr>
<tr><td colspan="2" rowspan="2">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기정</td><td colspan="10">
• 주택공급계획 총 587세대
<table>
<tr><th colspan="2">구분(전용면적)</th><th>세대수</th><th>비율(%)</th><th>비고</th></tr>
<tr><td colspan="2">계</td><td>587</td><td>100.0</td><td></td></tr>
<tr><td rowspan="2">85㎡이하</td><td>60㎡이하</td><td>251</td><td>42.8</td><td>(공공주택 138세대)</td></tr>
<tr><td>60~85㎡이하</td><td>303</td><td>51.6</td><td>(공공주택 44세대)</td></tr>
<tr><td colspan="2">85㎡초과</td><td>33</td><td>5.6</td><td></td></tr>
</table>
• 85㎡이하(국민주택규모) 주택 전체세대수의 60%이상 건립(계획 94.4%)
• 주택규모 계획에서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함
-공공주택(촉진사업 의무)건설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름
-공공주택(공공기여)건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름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에 따름
</td></tr>
<tr><td>변경</td><td colspan="10">
• 주택공급계획 총 586세대
<table>
<tr><th colspan="2">구분(전용면적)</th><th>세대수</th><th>비율(%)</th><th>비고</th></tr>
<tr><td colspan="2">계</td><td>586</td><td>100.0</td><td></td></tr>
<tr><td rowspan="2">85㎡이하</td><td>60㎡이하</td><td>247</td><td>42.2</td><td>(공공주택 130세대)</td></tr>
<tr><td>60~85㎡이하</td><td>306</td><td>52.2</td><td>(공공주택 57세대)</td></tr>
<tr><td colspan="2">85㎡초과</td><td>33</td><td>5.6</td><td></td></tr>
</table>
• 85㎡이하(국민주택규모) 주택 전체세대수의 60%이상 건립(계획 94.4%)
• 주택규모 계획에서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함
-공공주택(촉진사업 의무)건설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름
-공공주택(공공기여)건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름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에 따름
</td></tr>
<tr><td colspan="2">심의완화사항</td><td colspan="10">•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 : 법적상한용적률 450.0%</td></tr>
</table>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정비계획	법적상한	
건축물의 건축선등에 관한 계획	• 남서측변 5m, 북측변 3m (※자세한 위치는 도면 참조)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남서측(12m도로)~북측(8m도로) 연계의 공공보행통로 폭원10m 계획 • 차량출입구: 남측 교차부 및 북서측 교차부의 중앙에 차량출입구 계획 (※자세한 위치는 도면 참조)										

(3) 공공시설 기부채납 계획 및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부채납 면적(㎡)		세부용도	관리청	비고
				대지지분	건축물연면적			
1	공공청사 (치안센터)	신길동 253-259 일대	기정	113.7	420.0 (환산 135.7)	치안센터	서울특별시	국유지 일괄교환 예정
			변경	116.3	420.0 (환산 162.6)			
2	공공임대 업무시설	신길동 253-259 일대	기정	227.3	840.0 (환산 271.5)	-	서울특별시	-
			변경	247.7	840.0 (환산 182.6)			
3	주차장	신길동 340-136 일대	기정	116.5	800.0 (환산 76.9)	공용주차장	영등포구	-
			변경	235.9	800.0 (환산 73.2)			

※ 향후 토지평가 및 건축계획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층고, 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됨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사유
기부채납 면적등 변경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 면적 및 선형 변경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대지지분 변경, 부지가액 및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현실화등에 따른 건축물 환산면적 변경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사업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동시행]	현황) 167세대 증) 420세대 변경) 587세대	-	-
변경				현황) 167세대 증) 419세대 변경) 586세대		

▷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사 유
예상 세대수변경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 세대수 변경

자)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차)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카) 공공주택(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1) 재정비촉진사업 증가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 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공급연면적	계약연면적
기정	획 지	14,271	-	6세대	59.98㎡	88.63㎡	124.77㎡	531.78㎡	748.60㎡
변경	획 지	14,271	-	소 계	6세대			556.96㎡	867.53㎡
				4세대	59.98㎡	81.81㎡	127.25㎡	327.22㎡	509.01㎡
				2세대	84.98㎡	114.87㎡	179.26㎡	229.74㎡	358.52㎡
기정	의무면적	• 재정비촉진사업(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 [촉진계획 용적률(정비계획 246.0%) - 기반시설 완화로 인한 용적률(36.0%) - 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적률 199%(가중평균)] × 30% = 3.3% (연면적 470.94㎡) ≦ 계획 3.7% (연면적 531.78㎡)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 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공급연면적	계약연면적
변경		• 재정비촉진사업(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 [촉진계획 용적률(정비계획 247.1%) - 기반시설 완화로 인한 용적률(37.1%) - 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적률 199%(가중평균)] × 30% = 3.3% (연면적 470.94㎡) ≦ 계획 3.7% (연면적 556.96㎡)							

(2) 공공기여 임대주택 (정비계획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 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공급연면적	계약연면적
기정	획지	14,271	-	소 계	24세대			2,496.67㎡	3,561.04㎡
				13세대	59.98㎡	88.63㎡	124.77㎡	1,152.20㎡	1,621.96㎡
				11세대	84.98㎡	122.22㎡	176.28㎡	1,344.47㎡	1,939.08㎡
변경	획지	14,271	-	소 계	22세대			2,130.36㎡	3,319.63㎡
				12세대	59.98㎡	81.81㎡	127.25㎡	981.66㎡	1,527.03㎡
				10세대	84.98㎡	114.87㎡	179.26㎡	1,148.70㎡	1,792.60㎡

(3) 공공재건축사업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도시정비법 101조의6 공공분양, 공공임대)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 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공급연면적	계약연면적
기정	획지	14,271	-	소계		152세대			14,580.44㎡	20,664.42㎡
				공공분양	계	78세대			7,282.71㎡	10,298.42㎡
					67세대	59.98㎡	88.63㎡	124.77㎡	5,938.24㎡	8,359.34㎡
					11세대	84.98㎡	122.22㎡	176.28㎡	1,344.47㎡	1,939.08㎡
				공공임대	계	74세대			7,297.73㎡	10,366.00㎡
					52세대	59.98㎡	88.63㎡	124.77㎡	4,608.79㎡	6,487.85㎡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 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공급연면적	계약연면적
					22세대	84.98㎡	122.22㎡	176.28㎡	2,688.94㎡	3,878.16㎡
변경	획지	14,271`	-	소계		159세대			14,494.93㎡	22,573.46㎡
				공공분양	계	80세대			7,172.64㎡	11,168.33㎡
					61세대	59.98㎡	81.81㎡	127.25㎡	4,990.11㎡	7,762.39㎡
					19세대	84.98㎡	114.87㎡	179.26㎡	2,182.53㎡	3,405.94㎡
				공공임대	계	79세대			7,322.29㎡	11,405.13㎡
					53세대	59.98㎡	81.81㎡	127.25㎡	4,335.67㎡	6,744.37㎡
					26세대	84.98㎡	114.87㎡	179.26㎡	2,986.62㎡	4,660.76㎡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의무면적

▷ 기정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정비계획용적률		• 246.0%	상한 250%
법적상한용적률		• 450.0%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의무기준	용적률 증가분	• 450.0% - 246.0% = 204.0%	-
	의무용적률 (증가된 용적률의 50%)	• 204.0% × 0.5 = 102.0%	-
	의무 연면적	• 102.0% × 14,271.0㎡ = 14,556.42㎡이상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확보 계획		• 152세대 (14,580.44㎡) = 의무면적 14,556.42㎡ < 확보면적 14,580.44㎡	의무이상 확보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제공 방법		• 의무 용적률(102.0%) 중 50% 이상 공공임대 확보 • 공공임대 50.1%, 연면적 7,278.21㎡ 이상 -공공분양 : 78세대(용적률 51.03%, 연면적 7,282.71㎡) -공공임대 : 74세대(용적률 51.14%, 연면적 7,297.73㎡)	공공분양:공공임대=5: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에 따른 공공재건축사업 시 적용

▷ 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정비계획용적률		• 247.1%	상한 250%
법적상한용적률		• 450.0%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의무기준	용적률 증가분	• 450.0% - 247.1% = 202.9%	-
	의무용적률 (증가된 용적률의 50%)	• 202.9% × 0.5 = 101.45%	-
	의무 연면적	• 101.45% × 14,271.0㎡ = 14,477.93㎡이상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확보 계획		• 159세대 (14,494.93㎡) = 의무면적 14,477.93㎡ < 확보면적 14,494.93㎡	의무이상 확보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제공 방법		• 의무 용적률(101.45%) 중 50% 이상 공공임대 확보 • 공공임대 50.5%, 연면적 7,238.96㎡ 이상 -공공분양 : 80세대(용적률 50.26%, 연면적 7,172.64㎡) -공공임대 : 79세대(용적률 51.31%, 연면적 7,322.29㎡)	공공분양:공공임대=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에 따른 공공재건축사업 시 적용

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53	35	간선도로	1,550 (459)	문래동 광장 (신길동 397-2)	신길동 광장 (신길동 426)	일반 도로	-	건고393 (78.12.7)	도림로
기정	대로	2	54	30	간선도로	3,050 (710)	신길동 대로3-28	구로공단 (신길동 347-65)	일반 도로	-	건고393 (78.12.7)	가마산로
기정	대로	3	28	25~30	주간선로	2,780 (786)	영등포동 (신길동 233-71)	신도림동 (신길동 3599-3)	일반 도로	-	건고177 (62.12.8)	신길로
기정	대로	3	134	25~30	간선도로	1,000 (591)	신길동382 (신길동 740)	신길동 235-2	일반 도로	-	서고378 (78.7.31)	가마산로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14	신길동 337-390	신길동 335-17	일반 도로	-	영등포구고시 제2005-22호 (05.4.7)	존치지역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중로	2	2	9~22	집산도로	180 (173)	신길동 1190	신길동 2093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5구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4	15~18	집산도로	110	신길동 335-23	신길동 325-49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11구역
기정	중로	2	34	13.5~15	보조간선	1,650 (390)	신길동 115-1	신길동 2363	일반 도로	-	건고2493 (66.6.21)	존치지역
기정	중로	2	151	15~17	집산도로	571 (63)	신길동 2099 (신길동 3002)	신길동 3517	일반 도로	-	서고156 (91.5.31)	7,8,9,10구역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263	신길동 518	신길동 1673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중로	3	3	12~16	집산도로	280 (257)	신길동 2857 (신길동 2862)	신길동 3187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7,10구역
기정	중로	3	63	12~20	집산도로	268	신길동 335-17	신길동 342-88	일반 도로	-	서고683 (87.9.24)	11,14구역
기정	중로	3	71	12	집산도로	472	신길동 426-3	신길동 336-2	일반 도로	-	서고105 (83.2.24)	12,13구역
기정	중로	3	152	12	집산도로	299	신길동 3183-28	신길동 242-14	일반 도로	-	서고156 (91.5.31)	8,9구역
기정	소로	1	4	10	집산도로	269	신길동 329-57	신길동 263-5	일반 도로	-	서고105 (83.2.24)	11구역
기정	소로	1	65	10	집산도로	28	신길동 252-9	신길동 252-11	일반 도로	-	서고105 (83.2.24)	11구역
기정	소로	2	2	8	집산도로	321	신길동 253-318	신길동 337-255	일반 도로	-	영등포구고시 제2005-22호 (05.4.7)	존치지역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소로	2	6	8~10	집산도로	128	신길동 2372	신길동 2340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7구역
기정	소로	2	7	8~10	집산도로	243	신길동 337-209	신길동 253-330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12구역
기정	소로	2	8	8	집산도로	155	신길동 424-3	신길동 340-1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13구역
기정	소로	2	12	8	집산도로	180	신길동 237	신길동 242	일반 도로	-	서고51 (82.2.4)	9구역
기정	소로	2	69	8~9.5	집산도로	114	신길동 253-69	신길동 329-57	일반 도로	-	서고105 (83.2.24)	11구역
기정	소로	2	153	8	집산도로	162	신길동 341-1	신길동 400-16	일반 도로	-	서고331 (90.9.28)	존치지역
기정	소로	3	5	4	특수도로	165	신길동 541	신길동 1637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445 (07.11.29)	보행자 전용도로

※ 연장 및 위치 내( )는 촉진지구 내 수치임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신풍역)	신길동 3599 일대	6,623.5	-	6,623.5	서고77 (93.3.18)	신풍역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공영주차장	신길동 340-13일대	800.0 (수평투영면적)	-	800.0 (수평투영면적)	서고568 (23.12.28)	*입체적 결정 (선형변경)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 변경사유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내 건축물 기부채납 시설로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선형 변경

▌주차장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규모)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신길동 340-13일대	수평투영면적 (㎡)	800.0	-	800.0	서고568 (23.12.28)	건축물 복합화 (아파트 지하부 지하2층 주차장 복합화)
				높이(층)	지하2층	-	지하2층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1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시설 선형 변경	건축물(복합화) 기부채납 시설로 지하층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선형 변경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메낙골	근린공원	신길동 893 일대	17,229.7 (11,050.6)	-	17,229.7 (11,050.6)	총독부고시208 (40.03.12.)	3구역(4,029.6㎡) 존치지역(7,021.0㎡)
기정	2	신길공원	근린공원	신길동 426-3	19,604.9 (12,245.1)	-	19,604.9 (12,245.1)	건고258 (82.7.12)	13구역(57.0㎡)
기정	4	-	근린공원	신길동 243-58 일대	14,164.0	-	14,164.0	서고445 (07.11.29)	8구역(1,127.6㎡) 9구역(12,166.4㎡) 존치지역(870.0㎡)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신길동 337-88	1,633.0	-	1,633.0	영등포구고시 제2005-22호 (05.4.7)	존치지역 (신길5주택건설사업)
기정	2	-	어린이 공원	신길동 541 일대	1,981.0	-	1,981.0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5	-	소공원	신길동 2296 일대	1,498.1	-	1,498.1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6	-	소공원	신길동 2306 일대	140.4	-	140.4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7	-	소공원	신길동 2135 일대	1,024.1	-	1,024.1	서고445 (07.11.29)	7구역
기정	8	-	소공원	신길동 3584 일대	3,991.3	-	3,991.3	서고445 (07.11.29)	7구역(199.3㎡) 10구역(3,792㎡)
기정	9	-	소공원	신길동 3126 일대	2,348.6	-	2,348.6	서고445 (07.11.29)	8구역
기정	10	-	소공원	신길동 3403 일대	2,133.8	-	2,133.8	서고445 (07.11.29)	9구역
기정	12	-	소공원	신길동 336-317 일대	2,523.2	-	2,523.2	서고445 (07.11.29)	12구역
기정	13	-	소공원	신길동 335-10 일대	1,661.4	-	1,661.4	서고445 (07.11.29)	11구역
기정	14	-	소공원	신길동 335-34 일대	2,001.3	-	2,001.3	서고445 (07.11.29)	14구역

※( )는 촉진지구 내 면적임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2-109 일대	726.3	-	726.3	서고445 (07.11.29)	3구역
기정	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6-18 일대	709.8	-	709.8	서고445 (07.11.29)	3구역
기정	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0-6 일대	1,274.3	-	1,274.3	서고445 (07.11.29)	3구역
기정	1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2-9 일대	735.3	-	735.3	서고445 (07.11.29)	3구역
기정	1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964 일대	2,551.8	-	2,551.8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1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77 일대	29.0	-	29.0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1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560 일대	182.5	-	182.5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1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121 일대	1,226.6	-	1,226.6	서고445 (07.11.29)	7구역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241 일대	1,620.0	-	1,620.0	서고445 (07.11.29)	7구역(962.3㎡) 8구역(657.7㎡)
기정	1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888 일대	1,215.7	-	1,215.7	서고445 (07.11.29)	7구역(1,100.7㎡) 10구역(115㎡)
기정	2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835 일대	314.5	-	314.5	서고445 (07.11.29)	7구역
기정	2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83-156 일대	811.2	-	811.2	서고445 (07.11.29)	8구역
기정	2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516 일대	1,288.4	-	1,288.4	서고445 (07.11.29)	9구역
기정	2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6 일대	298.1	-	298.1	서고445 (07.11.29)	12구역
기정	2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04 일대	1,425.9	-	1,425.9	서고445 (07.11.29)	12구역
기정	2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57 일대	811.7	-	811.7	서고445 (07.11.29)	12구역
기정	2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400 일대	582.1	-	582.1	서고445 (07.11.29)	12구역
기정	3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6-6 일대	170.7	-	170.7	서고445 (07.11.29)	11구역
기정	3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5-43 일대	250.0	-	250.0	서고445 (07.11.29)	11구역
기정	3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6-9 일대	1,250.4	-	1,250.4	서고445 (07.11.29)	14구역
기정	-	녹지1	경관녹지	신길동 142-41 일대	483.0	-	483.0	서고135 (01.5.4)	존치지역
기정	-	녹지2	연결녹지	신길동 1795-29 일대	1,129.0	-	1,129.0	서고29 (06.1.19)	존치지역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공공공지	신길동 253-312 일대	153.0	-	153.0	영등포구고시 제2005-22호 (05.4.7)	존치지역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17	공공공지	신길동 425-28	62.9	-	62.9	서고445 (07.11.29)	존치지역
기정	18	공공공지	신길동 3569 일대	624.0	-	624.0	서고154 (19.5.23)	9구역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	공공청사	-	신길동 253-259일대	420.0 (수평투영 면적)	-	420.0 (수평투영 면적)	서고568 (23.12.28)	치안센터 (입체적 결정*) (선형 변경)
기정	5	공공청사	-	신길동 349-3 일대	157.2	-	157.2	서고445 (07.11.29)	파출소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 변경사유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건축사업) 내 건축물 기부채납 시설로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선형 변경

▌공공청사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규모)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	공공청사	신길동 253-259일대	수평투영 면적(㎡)	420.0	-	420.0	서고568 (23.12.28)	건축물 복합화 (아파트 저층부 지상1층 공공청사 복합화)
				높이(층)	지상1층		지상1층		

※ 본 시설은 국유지 일괄교환 대상 시설로 향후 교환 예정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청사6	공공청사 시설 선형 변경	건축물(복합화) 기부채납 시설로 지상층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선형 변경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신길7동 550 일대	21,598.0	-	21,598.0	서교위76 (88.12.21)	대방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신길5동 341-1	32,888.0	-	32,888.0	서고683 (87.7.10)	대영
	4	학교	중학교	신길5동 342-29	대영초에 포함	-	대영초에 포함	서고4546 (85.7.10)	대영
	5	학교	고등학교	신길5동 342	대영초에 포함	-	대영초에 포함	서고4546 (85.7.10)	대영
기정	7	학교	중학교	신길동 2064 일대	9,999.2	-	9,999.2	서고445 (07.11.29)	-
기정	8	학교	유치원	신길동 339-34 일대	2,890.0	-	2,890.0	서고445 (07.11.29)	사회복지시설②과 중복결정

▌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문화시설	-	신길동 549 일대	1,027.6	-	1,027.6	서고445 (07.11.29)	-

▌도서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도서관	신길동 252-11 일대	2,300.3	-	2,300.3	서고445 (07.11.29)	구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339-34 일대	2,890.0	-	2,890.0	서고445 (07.11.29)	학교⑧(유치원)과 중복결정

더.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머. 방재계획(변경없음)

버. 정보화계획(변경없음)

서. 에너지순환계획(변경없음)

어. 특성화계획(변경없음)

저. 기타(변경없음)

3. 신길13재정비촉진사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신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7조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68호(23.12.28) 및 금회 (경미한)변경 정비계획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조서 신설하며,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 후 영등포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신길13재정비촉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길동 339-34 일대	-	증) 15,120	15,120	-	-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5,120	-	15,12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0	-	50	0.3	-
	제2종일반주거지역	650	-	650	4.3	-
	제3종일반주거지역	149	-	149	1.0	-
	준주거지역	14,271	-	14,271	94.4	-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71	12	집산도로	472 (145)	신길동 426-3 (신길동 340-1)	신길동 336-2 (신길동 340-4)	일반도로	-	서고105 (83.2.24)	-
기정	소로	2	8	8	집산도로	155 (40)	신길동 424-3 (신길동253-259)	신길동 340-1 (신길동253-254)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

※ 연장 및 위치 내( )는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내 수치임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공영주차장	신길동 340-13일대	800.0 (수평투영면적)	-	800.0 (수평투영면적)	서고568 (23.12.28)	*입체적결정 (선형변경)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주차장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규모)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신길동 340-13일대	수평투영면적(㎡)	800.0	-	800.0	서고568 (23.12.28)	건축물 복합화 (아파트 지하부 지하2층 주차장 복합화)
				높이(층)	지하2층	-	지하2층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1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시설 선형 변경	건축물(복합화) 기부채납 시설로 지하층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선형 변경

2) 공간시설(변경없음)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신길 공원	근린공원	신길동 426-3 (신길동 425-31)	19,604.9 (57)	-	19,604.9 (57)	건고258 (82.7.12)	촉진지구 내:12,245.1㎡ 촉진지구 외:7,359.8㎡

※ ( )는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	공공청사	-	신길동 253-259일대	420.0 (수평투영 면적)	-	420.0 (수평투영 면적)	서고568 (23.12.28)	*입체적 결정 (치안센터) (선형 변경)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공공청사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규모)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	공공청사	신길동 253-259일대	수평투영 면적(㎡)	420.0	-	420.0	서고568 (23.12.28)	건축물 복합화 (아파트 저층부 지상1층 공공청사 복합화)
				높이(층)	지상1층	-	지상1층		

※ 본 시설은 국유지 일괄교환 대상 시설로 향후 교환 예정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청사6	공공청사 시설 선형 변경	건축물(복합화) 기부채납 시설로 지상층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선형 변경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번호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신설	1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14,271	공동주택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획지번호	용 도	비 고
신설	허용용도	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지 안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3)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폐율 계획

구분	지 역	용 도	비 고
신설	준주거지역	60% 이하	법정 60% 이하 (준주거지역)

(2) 용적률 계획

구분	용적률			비 고
	기준	상한	법적상한	
신설	210% 이하	247.1% 이하	450.0% 이하	법정 500% 이하 (준주거지역)

(3) 높이 계획

구분	지 역	높이기준	비 고
신설	준주거지역	170m 이하 (49층 이하)	-

마.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건축한계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 고
신설	건축한계선	남서측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도면참조
		북측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2)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 고
신설	공동이용시설	공공보행통로변	획지 중앙부 남측에서 북측을 연결하는 보행통로변 주요시설 보행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배치	-
	근린생활시설	남서측 도로변(8~12m)	생활가로변 근린생활시설 배치를 통한 가로활성화 도모	-

바.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 고
신설	전면공지	• 남서측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5m	-
		• 북측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3m	-
신설	공공보행통로	• 남서측(12m 도로) ~ 북측(8m 도로)	• 공공보행통로 폭원 10m 계획	-

사.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 고
신설	차량진출입구	서남측도로(12m, 신길로23길변)	주출입구를 배치하여 간선도로변에서의 출입을 최소화	-

아.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보전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도 4등급, 개별비오톱평가도 평가제외등급	• 계획지구 내 녹지공간 확보	-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서측으로 신길근린공원이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음	• 구역 내 인접 공원의 녹지계획을 수립	-
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 도심지(대지)로 해당사항 없음	-	-
4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 보전	-	• 해당 사항 없음	-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5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조사	• 주택용지, 도로, 공원을 반영한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6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 발생하지 않음	-	-
7	지형·지질	지형·지질영향 최소화	■	• 표고 16.0~20.0m, 경사도 5° 미만의 평탄지형	• 평지 형태로 지형변화는 경미하며, 건축터파기 공사로 부분적 지형변화 발생	-
8	물순환, 수리·수문	자연물순환 유지	■	• 대부분 건축물 및 도로 등으로 일부 조경수 외 녹지 없음	• 생태면적률 30% 목표, 획지 내 자연·인공지반 녹지 확보 계획	-
9	수질	수질오염 방지	■	• 지표 수질(안양천) 및 지하수질 현황 조사, 공사 중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 공사 중 수질저감 계획 수립 • 우수, 하수 처리방안 계획	-
10	바람	바람길 및 미기후 개선	■	• 서울기상대 기상현황 조사 분석, 주풍향 등 검토	• 향후 세부 계획 시 바람방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녹지 수목 식재 통한 미기후 개선	-
11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5층이상 주거지 및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이하 주거지로 온도가 높은 편	• 향후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
12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장 장비가동 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 영향	• 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저감, 환경정화수종 식재	-
13	악취	악취공해 해결	-	• 해당 사항 없음	-	-
1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계획지구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
15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운영 시 생활 및 분뇨폐기물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	-
16	에너지	에너지절약/ 효율 극대화	■	• 지역 에너지 소비현황 조사, 난방, 취사, 전력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이용량 증가	• 향후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검토 예정	-
17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공사장 소음 유발, 운영 시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	• 공사 중 가설방음판넬,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녹지 완충공간 조성	-
18	경관	주변경관과의 조화	■	• 시가화된 지역으로 인공경관이 주를 이룸	• 인근 주거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해 지상 35층 이하로 계획 • 인접 주거지와 연결되는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9	휴식 및 여가공간	양질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	■	• 서측으로 신길근린공원 위치	• 신길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배치 • 주택용지 내 녹지 확보	-
20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연평균 및 월별, 계절별 일조 시간 검토	• 최고높이 170m이하 규모의 사업계획 수립,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준수	-
21	보행 친화공간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	• 보차혼용도로이며 도로 확폭 필요	• 주택용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주요시설 연계 보행공간 확보 및 생활가로 활성화 도모	-
22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	• 해당 사항 없음	-	-
23	인구	인구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
24	주거	주거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
25	산업	산업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

2)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

가) 모든 공공주택(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미각(처분) 하여야 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라)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마) 공공주택 혼합계획

구분		총 세대수	전체 비율 (%)	조합원 및 일반분양	소계	공공주택					공공주택 비율 (%)
						촉진 사업 의무	공공 기여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계	공공 분양	공공 임대	
합계		586	100.0	399	187	6	22	159	80	79	31.9
85㎡ 이하	60㎡ 이하	247	42.2	117	130	4	12	114	61	53	22.2
	60 ~ 85㎡ 이하	306	52.2	249	57	2	10	45	19	26	9.7
85㎡ 초과		33	5.6	33	-	-	-	-	-	-	-

4. 관계 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 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02)2133-7219) 및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02)2670-358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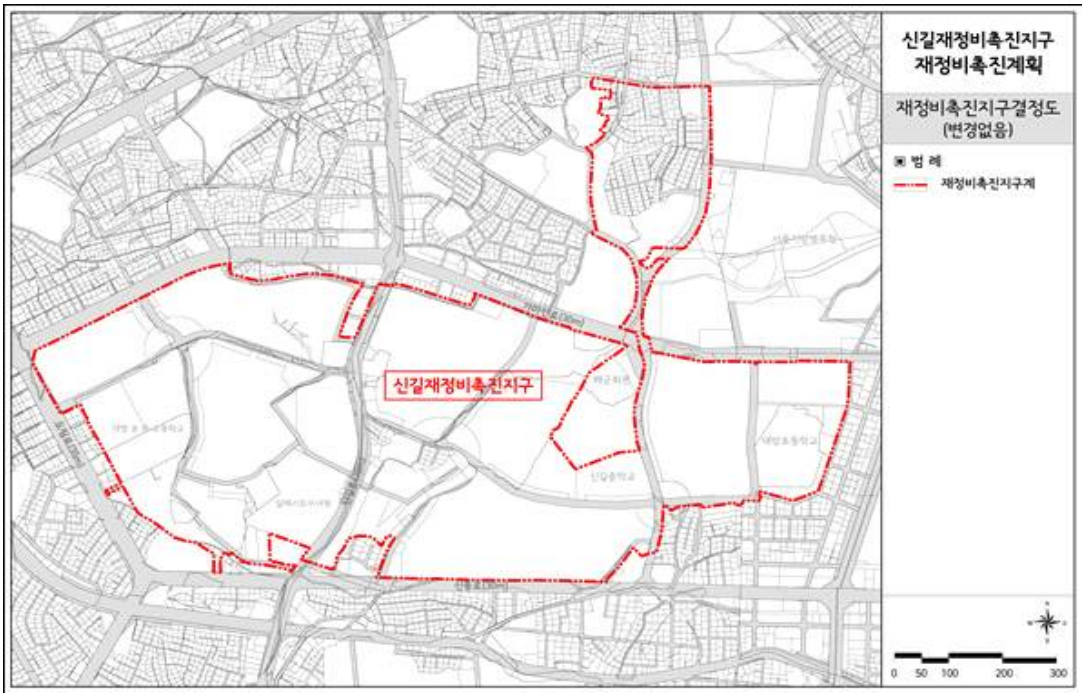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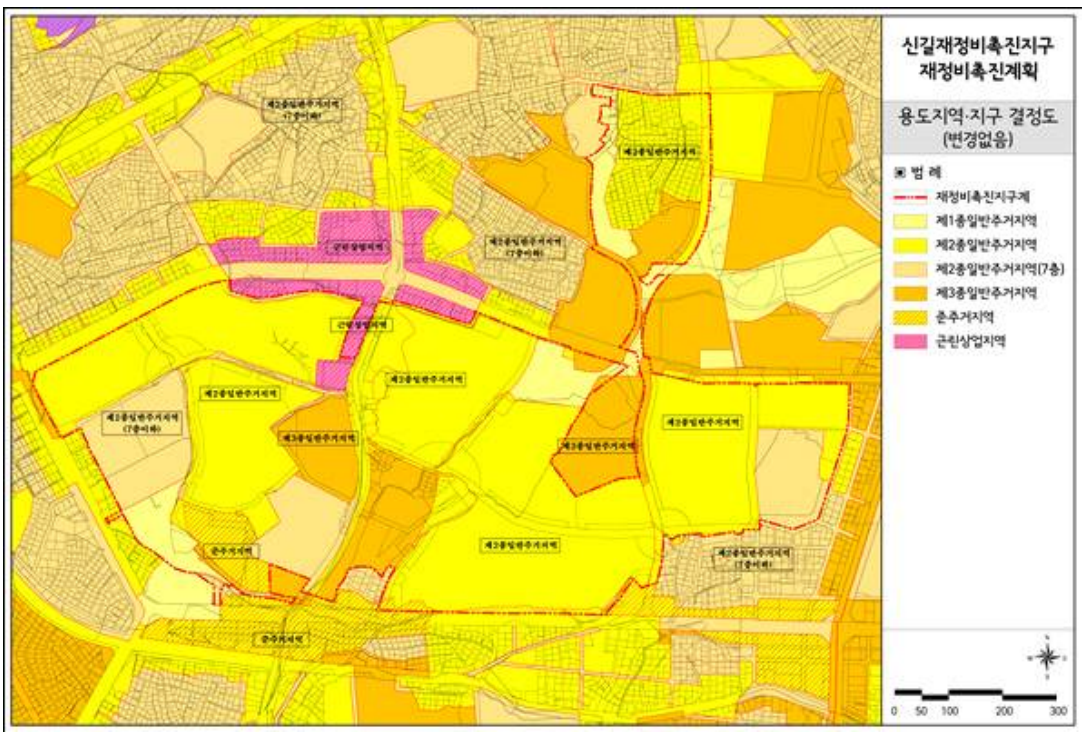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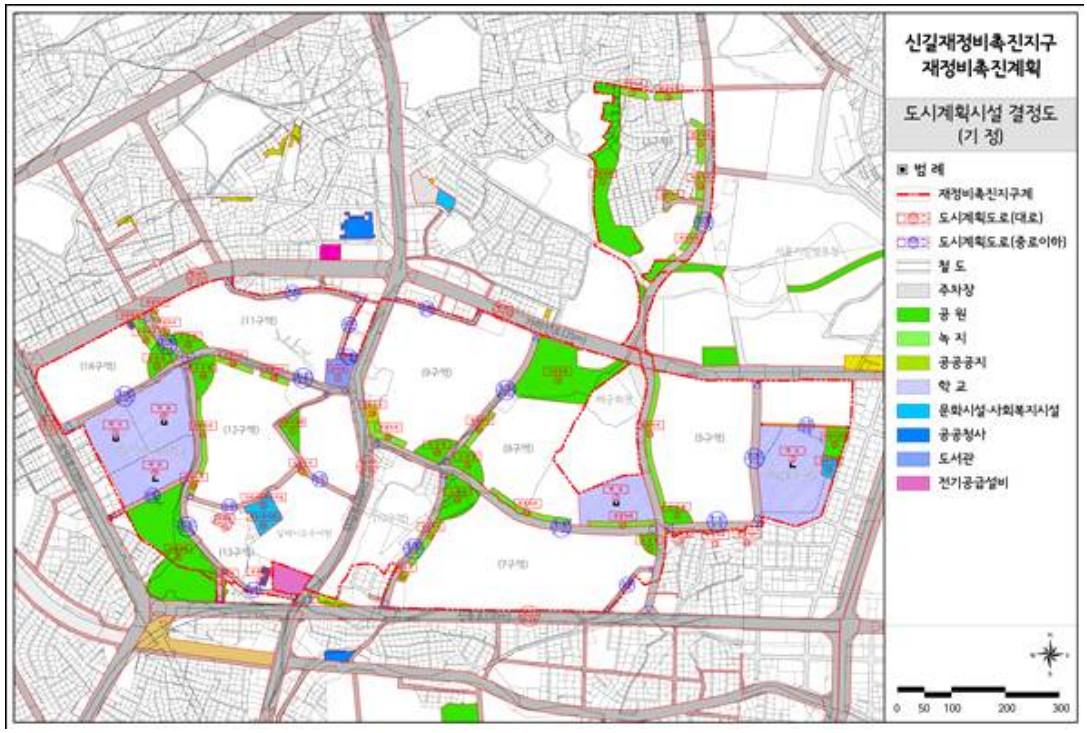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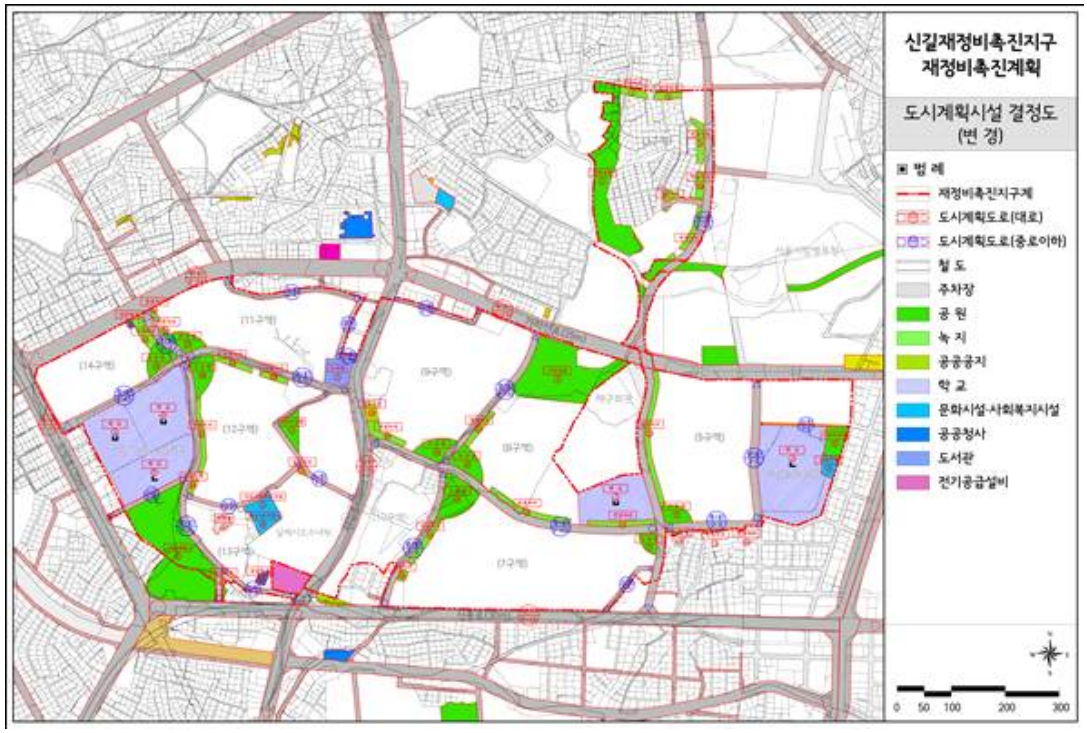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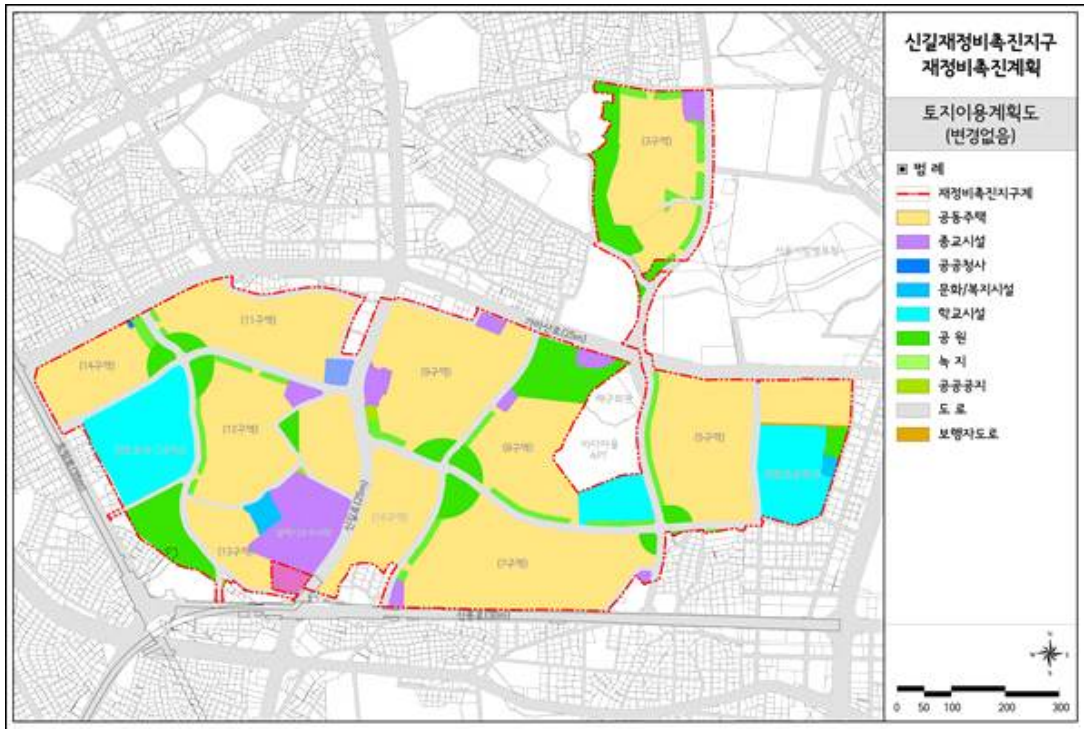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결정도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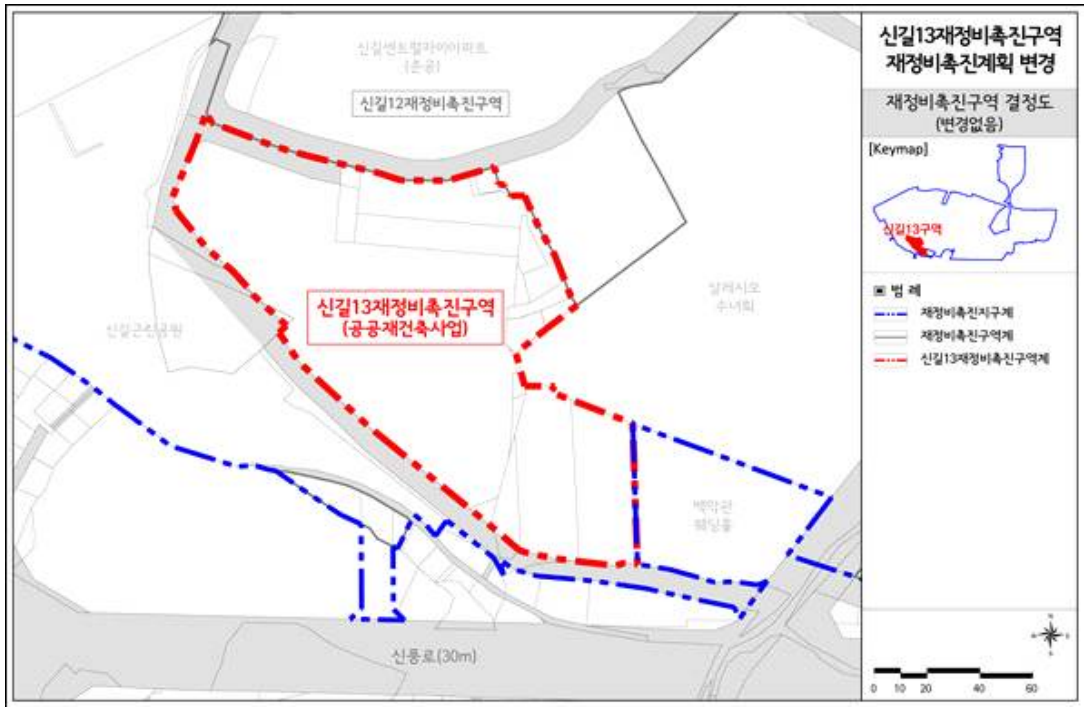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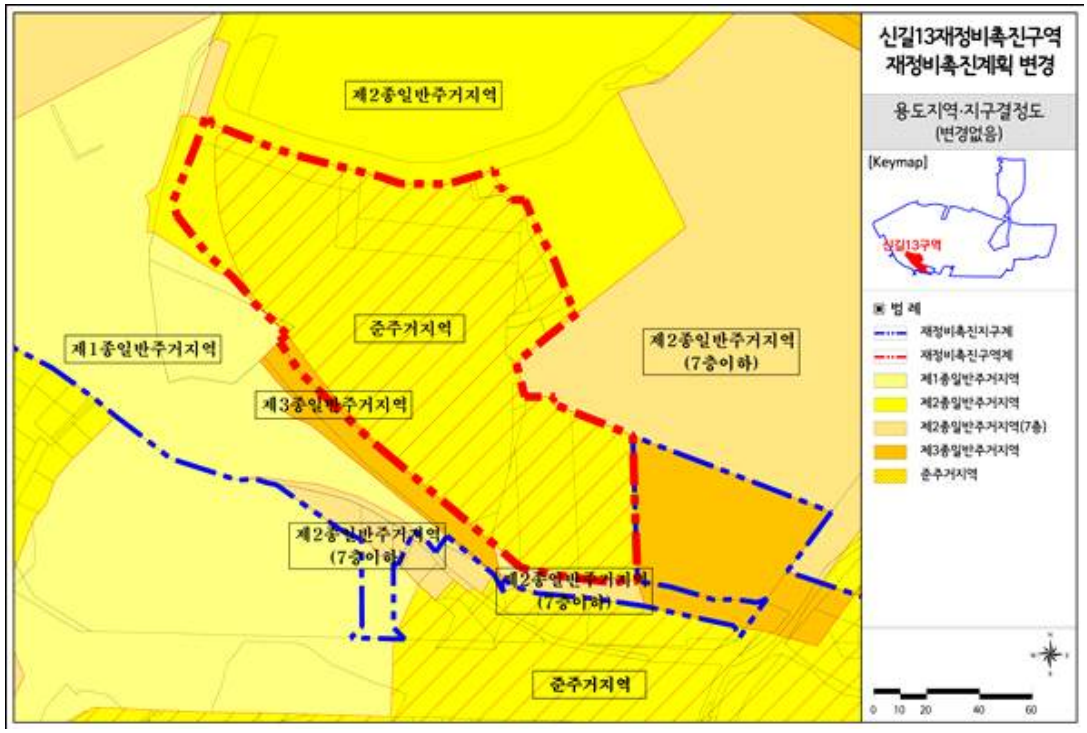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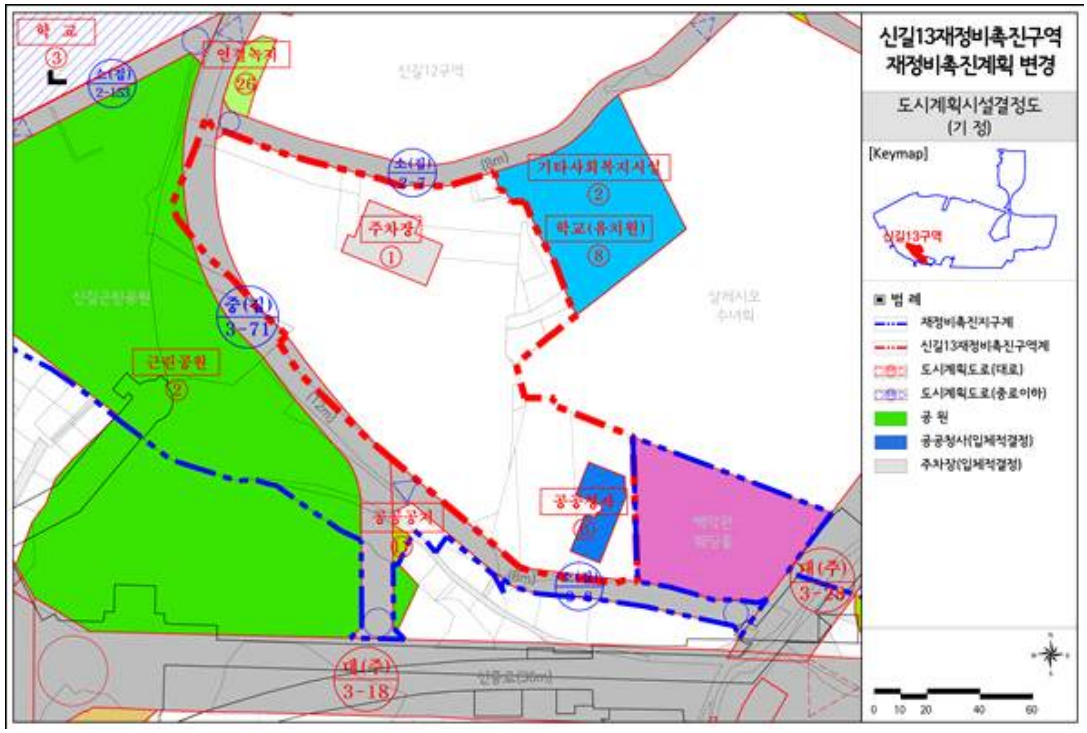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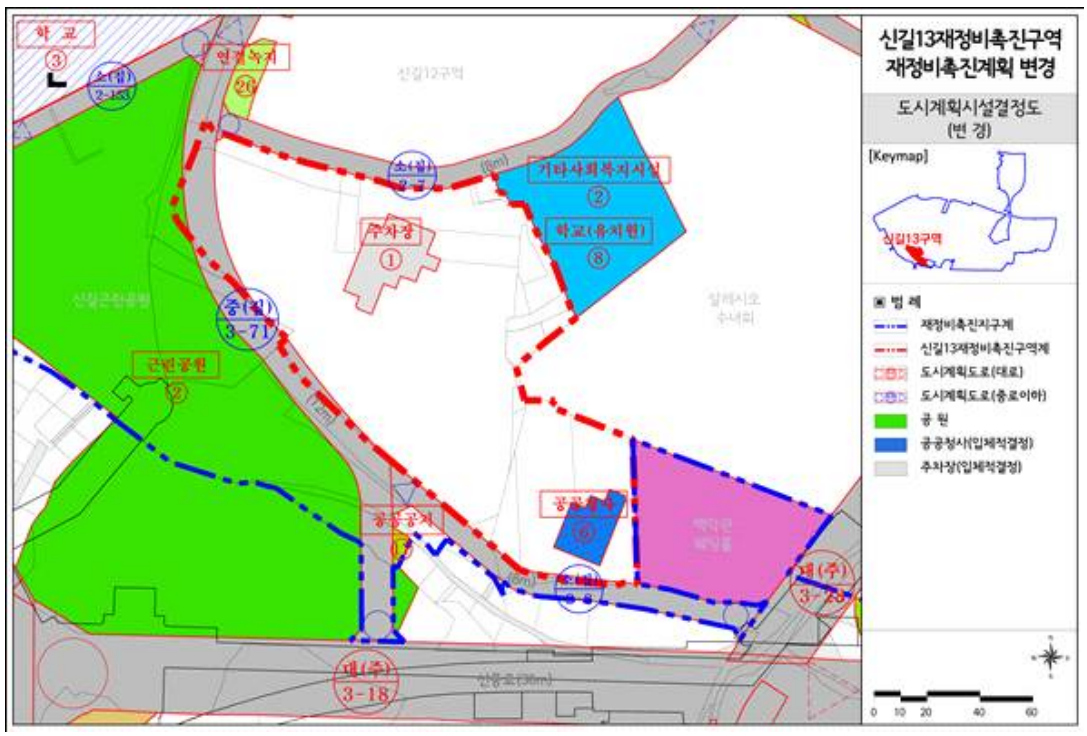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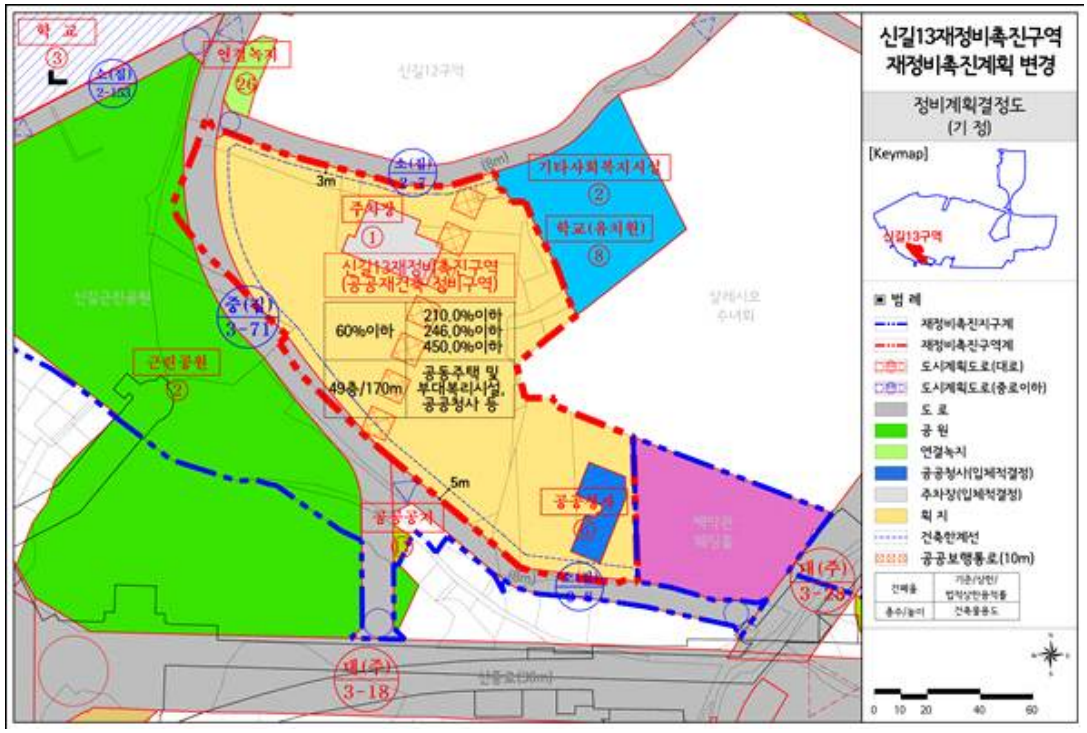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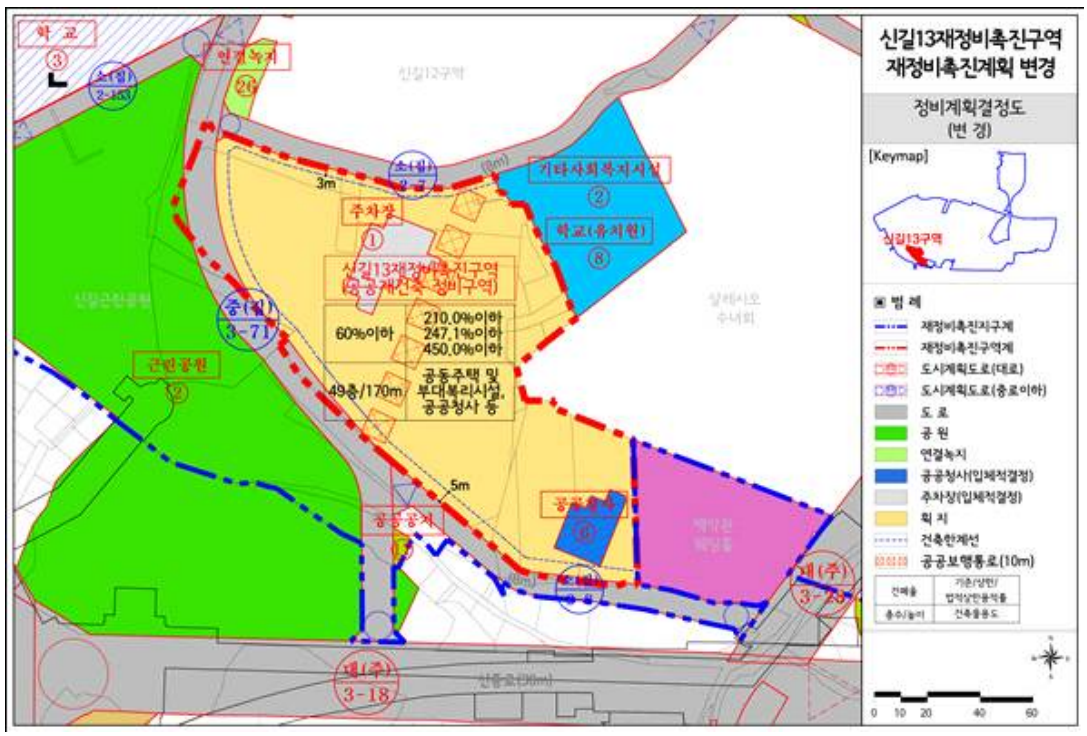

▌신길13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신길13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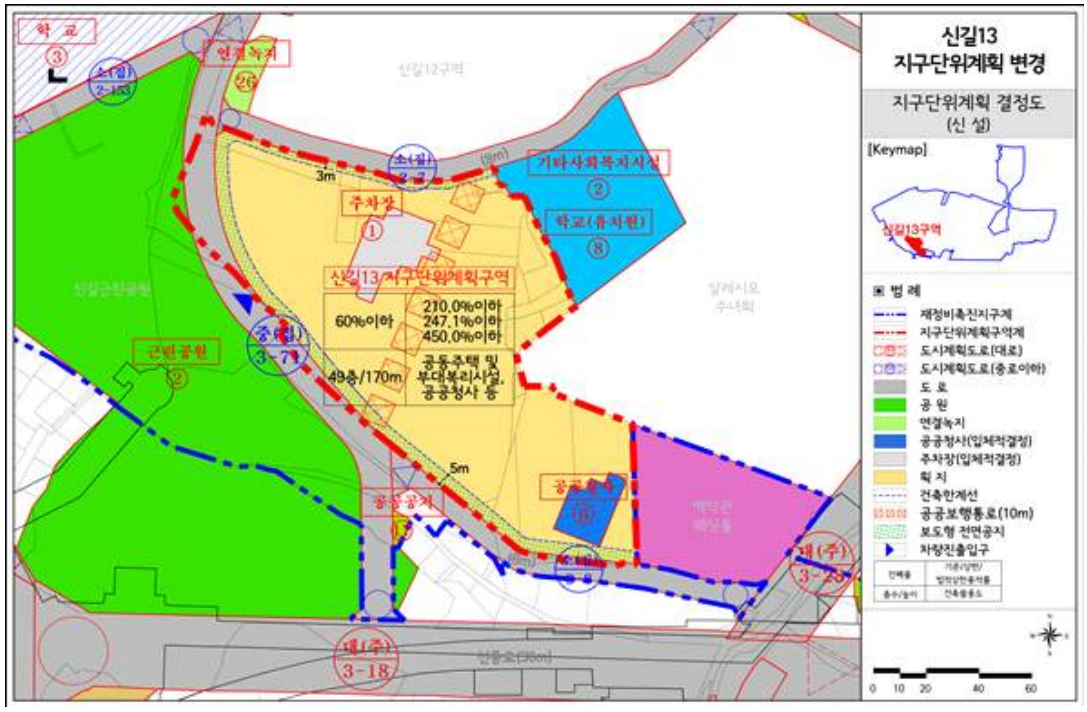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71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일대	합계	87,774.00		
			기존	81,141.51	2023. 09. 27.	
			추가	6,632.49	2024. 10. 04.	구역계 변경 ※ 2024년 제10차 전문가 사전자문 (2024.09.12.)

2. 권리산정기준일: 2024. 10. 04. (구역 확대 6,632.49㎡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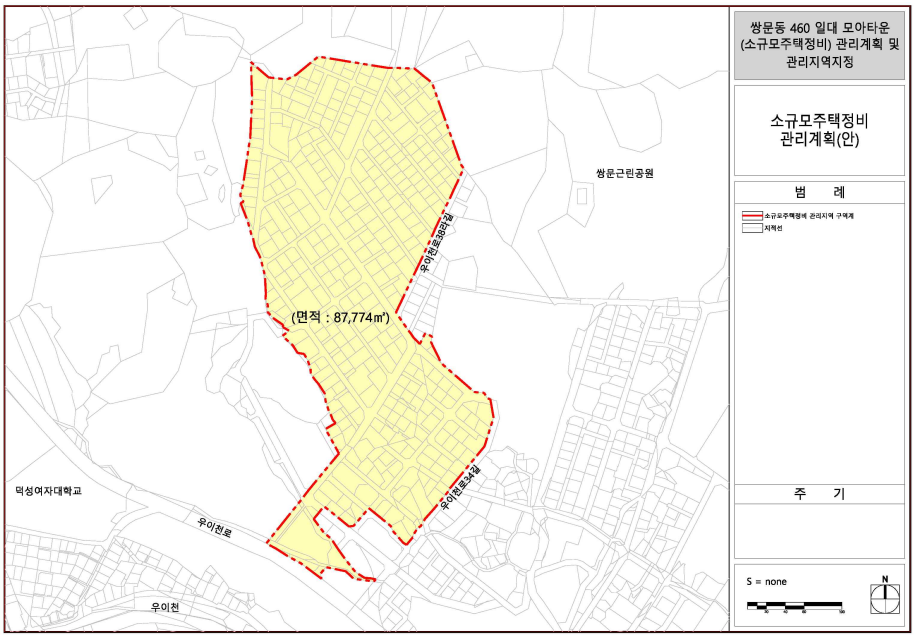
제척·추가구역 구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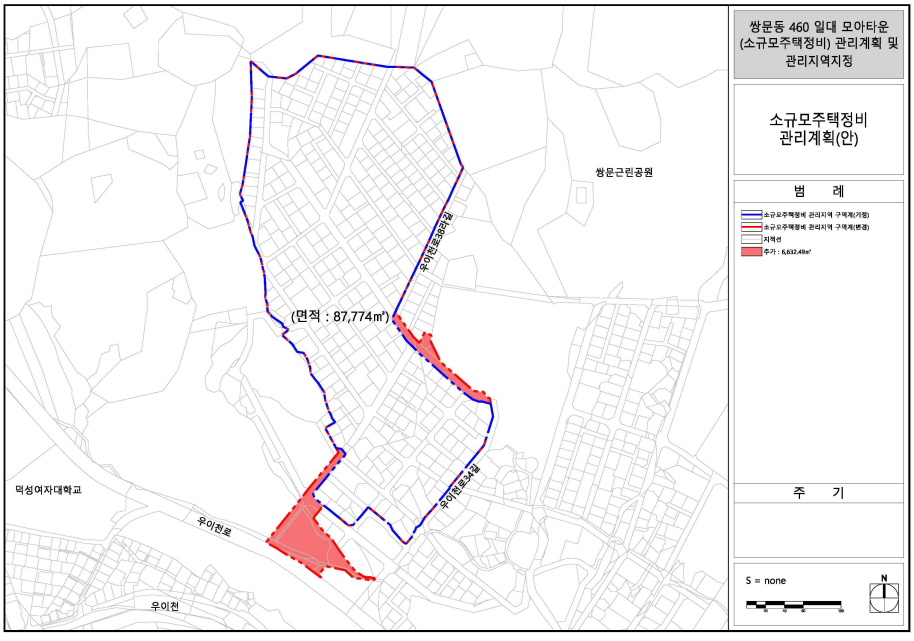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72호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68호(2010.5.6.)로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46호(2010.7.1.)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시장) 실시계획(변경)인가(가락몰)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2133-4465)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계관리팀(☎3435-036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 사업의 명칭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가락몰)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531,830㎡
○ 건축물의 규모

사업단계		1단계 (금회)	2-1단계 (완료)	2-2단계 (완료)	2-4단계 (완료)	2-5단계 (완료)	2-3단계 (설계중)	3-1단계 (철거예정)	3-2단계 (설계중)	2-6단계 (예정)	3-3단계 (예정)
대지면적		531,830.00㎡									
건축면적	기정	29,435.12㎡	33,853.75㎡ (4,418.63㎡)	76,667.07㎡ (42,813.32㎡)	77,387.01㎡ (719.94㎡)	78,399.12㎡ (1,012.11㎡)	105,111.59㎡ (26,712.47㎡)	105,111.59㎡ (0.00㎡)	165,949.15㎡ (60,837.56㎡)	165,949.15㎡ (0.00㎡)	227,130.35㎡ (61,181.20㎡)
	변경	29,435.12㎡	33,853.75㎡ (4,418.63㎡)	76,667.07㎡ (42,813.32㎡)	77,387.01㎡ (719.94㎡)	78,399.12㎡ (1,012.11㎡)	105,111.59㎡ (26,712.47㎡)	105,111.59㎡ (0.00㎡)	165,949.15㎡ (60,837.56㎡)	165,949.15㎡ (0.00㎡)	227,130.35㎡ (61,181.20㎡)
	증감	-	-	-	-	-	-	-	-	-	-

연면적	기정	211,913.35㎡	217,579.48㎡ (5,666.13㎡)	274,646.48㎡ (57,067.00㎡)	277,596.04㎡ (2,949.56㎡)	279,727.83㎡ (2,131.79㎡)	347,742.87㎡ (68,015.04㎡)	347,742.87㎡ (0.00㎡)	438,145.13㎡ (90,402.26㎡)	443,235.13㎡ (5,090.00㎡)	532,951.53㎡ (89,716.40㎡)
	변경	212,592.73㎡	218,258.86㎡ (5,666.13㎡)	275,325.86㎡ (57,067.00㎡)	278,275.42㎡ (2,949.56㎡)	280,407.21㎡ (2,131.79㎡)	348,422.25㎡ (68,015.04㎡)	348,422.25㎡ (0.00㎡)	438,824.51㎡ (90,402.26㎡)	443,945.51㎡ (5,090.00㎡)	533,630.91㎡ (89,716.40㎡)
	증감	증)679.38㎡	-	-	-	-	-	-	-	-	-
층수	기정	지하3층 /지상18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5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하1층/ 지상3층
	변경	지하3층 /지상18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5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하1층/ 지상3층
	증감	-	-	-	-	-	-	-	-	-	-
공사기간	기정	2011년 ~2024년	2013년 ~2014년	2020년 ~2024년	2021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4년 ~2027년	2024년 ~2027년	2024년 ~2027년	2027년 ~2031년	2027년 ~2031년
	변경	2024년 ~2025년	-	-	-	-	-	-	-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대표 문영표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31.12.31까지

○ 1단계(업무동,판매동,물류작업장) : 2011년 ~ 2024년(완료)

- 주차램프 지붕 : 2024년 ~ 2025년(금회)

○ 2-1단계(친환경센터) : 2013년 ~ 2014년(완료)

○ 2-2단계(채소2동) : 2020년 ~ 2024년(완료)

○ 2-3단계(수산동) : 2024년 ~ 2027년(설계중)

○ 2-4단계(합동청사) : 2021년 ~ 2024년(완료)

○ 2-5단계(냉동창고) : 2023년 ~ 2024년(완료)

○ 2-6단계(환경동) : 2027년 ~ 2031년(예정)
○ 3-1단계(금융관리동) : 2024년 ~ 2027년(철거예정)
○ 3-2단계(채소1동) : 2024년 ~ 2027년(설계중)
○ 3-3단계(과일동) : 2027년 ~ 2031년(예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	관계인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	대	542,860	530,621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2	대	60	6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60	전	20	2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61	전	136	136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62	전	73	73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38	도	40	4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39	도	248	248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341-35	구	14	14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814-1	도	618	618	-	서울특별시			
합계				544,069	531,830					

7.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인허가 관련 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나.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이행하고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처리하여야 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2133-4465) 및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계관리팀(☎3435-0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73호

동작구 신대방동 351-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82호(2021.10.21.)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83호(2021.10.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된 동작구 신대방동 351-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동작구 신대방동 351-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촉진지구 지정일 : 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 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변경없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변경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변경없음
○ 사업기간 : (변경없음)
○ 재원조달계획 : (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 : 변경
1) 수용인구 : 405인
2) 주택건설계획 : 330세대

– 기정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 고
공공 임대주택	19 TYPE	89	26.97	89	22.00	역세권 청년주택
	27 TYPE	16	4.85	16	3.95	
	36A TYPE	13	3.94	34	8.51	
	36B TYPE	11	3.33	29	7.20	
	40 TYPE	1	0.30	2	0.49	
	소 계	130	39.39	171	42.16	
공공지원민간 임대 주택	19 TYPE	171	51.82	171	42.26	
	27 TYPE	8	2.42	8	1.98	
	36A TYPE	9	2.73	24	5.90	
	36B TYPE	11	3.33	29	7.21	
	40 TYPE	1	0.30	2	0.49	
	소 계	200	60.61	234	57.84	
합계		330	100.00	405	100.00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서울시 고시 제2021-583호(2021.10.21.)]
5. 사업개요 마. 용도 공동주택(SH선매입 17세대를 포함함)

– 변경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 고
공공임대	19 TYPE	72	21.82	72	17.80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27 TYPE	16	4.85	16	3.95	
	36A TYPE	13	3.94	34	8.51	
	36B TYPE	11	3.33	29	7.20	
	40 TYPE	1	0.30	2	0.49	
	소 계	113	34.24	154	37.96	
SH선매입	19 TYPE	51	15.5	51	12.61	
	소 계	51	15.5	51	12.61	
공공지원 민간임대	19 TYPE	137	41.52	137	33.86	
	27 TYPE	8	2.42	8	1.98	
	36A TYPE	9	2.73	24	5.89	
	36B TYPE	11	3.33	29	7.20	
	40 TYPE	1	0.30	2	0.49	
	소 계	166	50.30	200	49.43	
합 계		330	100.00	405	100.0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	· SH공사 선매입분 31세대(19Tpye) 증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부분 31세대(19Tpye) 감소	· SH공사 선매입분 매입시기 및 비율 조정을 통한 재무여건 개선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 변경없음

8. 관련도면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74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624호(1985.9.2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97호(2001.6.2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호(2015.2.12.)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65호(2022.2.1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72번지 일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 노원구 공릉동 172번지 일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하여 2015년 2월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시[서고 제2015-39호(2015.2.12.)] 건축물배치계획상 신축 예정 건축물인 '기업연구동1'의 건물명 및 건축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7구역 내 '첨단연구동'을 신축하기 위해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변경 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학 교	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72번지 일대	503,528.0	-	503,528.0	서고 제624호 (1985.9.21.)	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2)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구역계획(변경 없음)

구 분	구 역	연 번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관리	일반관리구역	①	60,085	-	60,085	
		②	56,119	-	56,119	

구 분	구 역	연 번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③	5,319	-	5,319	
		④	45,100	-	45,100	
		⑤	23,435	-	23,435	
		⑥	53,559	-	53,559	
		⑦	27,467	-	27,467	
		⑭	4,918	-	4,918	
	소 계		276,002	-	276,002	
유지	상징경관구역	⑧	51,315	-	51,315	
		⑨	5,532	-	5,532	
	소 계		56,847	-	56,847	
	외부활동구역	⑩	9,718	-	9,718	
		⑪	31,753	-	31,753	
	소 계		41,471	-	41,471	
보존	녹지보존구역	⑫	122,900	-	122,900	
		⑬	5,193	-	5,193	
		⑮	1,115	-	1,115	
	소 계		129,208	-	129,208	
합 계			503,528	-	503,528	

(2) 밀도계획

- 건폐율 계획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 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 건폐율(%)	비고
			기 정	변 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415,637	60.00	17.12	17.39	23.00	○ 밀도산정시 제외면적 - 비오톱1등급지 : 21,005㎡ - 도시계획도로 : 17,736㎡ 합계 : 38,741㎡ ○ 산정기준면적 계산 - 503,528㎡-38,741㎡=464,787㎡
자연녹지지역	49,150	20.00	12.32	12.32		
합 계	464,787	55.77	16.61	16.85	23.00	

※ 추후 중대한 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관리건폐율 구분

– 용적률 계획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 용적률(%)	사용용적률(%)		관리 용적률(%)	비고
			기 정	변 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415,637	200	64.72	65.93	82.00	○ 밀도산정시 제외면적 - 비오톱1등급지 : 21,005㎡ - 도시계획도로 : 17,736㎡ 합계 : 38,741㎡ ○ 산정기준면적 계산 - 503,528㎡-38,741㎡=464,787㎡
자연녹지지역	49,150	100	57.94	57.94		
합 계	464,787	189.43	64.00	65.08	82.00	

※ 추후 중대한 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관리용적률 구분

– 구역별 용적률 계획

구역 구분	용적률 (%)						비고
	조례 용적률	사용 용적률		계획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기 정	변 경				
①	200.00	87.25	87.25	112.21	-	115.00	일반관리구역
②	200.00	127.43	127.43	127.43	-	135.00	일반관리구역
③	200.00	135.48	135.48	135.48	-	150.00	일반관리구역
④	182.27	119.22	119.22	119.22	-	182.27	일반관리구역
⑤	151.53	55.20	55.20	55.20	-	60.00	일반관리구역
⑥	200.00	115.87	115.87	115.87	-	135.00	일반관리구역
⑦	200.00	36.00	54.30	54.30	-	85.00	일반관리구역 (금회 첨단연구동 신축)
⑧	200.00	35.44	35.44	35.44	-	40.00	상징경관구역(다산관, 창학관)
⑨	200.00	31.55	31.55	31.55	-	40.00	상징경관구역(대륙관)
⑩	200.00	-	-	-	-	10.00	외부활동구역(붕어방)
⑪	200.00	12.65	12.65	12.65	-	30.00	외부활동구역(대운동장)
⑫	171.10	0.02	0.02	0.02	-	0.02	녹지보존구역
⑬	200.00	-	-	-	-	-	녹지보존구역

구역 구분	용적률 (%)						비고
	조례 용적률	사용 용적률		계획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기 정	변 경				
⑭	100.00	75.58	75.58	75.58	-	100.00	일반관리구역
⑮	200.00	-	-	-	-	-	녹지보존구역

- 높이 계획(변경 없음)

구역 구분	높 이(m)	비 고
①	· 지표에서부터 최대 35~50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②	· 지표에서부터 최대 35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③	· 지표에서부터 최대 35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④	· 지표에서부터 최대 35~45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⑤	· 지표에서부터 최대 20~35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⑥	· 지표에서부터 최대 20~55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⑦	· 지표에서부터 최대 45~50m 이하	일반관리구역 (금회 첨단연구동 신축)
⑧	· 지표에서부터 최대 12~25m 이하	상징경관구역 (다산관, 창학관)
⑨	· 지표에서부터 최대 25m 이하	상징경관구역 (대륙관)
⑩	· 지표에서부터 최대 12m 이하	외부활동구역 (붕어방)
⑪	· 지표에서부터 최대 12~35m 이하	외부활동구역 (대운동장)
⑫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 기존건축물은 현 범위 내 활용	녹지보존구역
⑬		녹지보존구역
⑭	· 지표에서부터 최대 40m 이하 (단, 학교경계부 사선제한(1.5D) 적용 배제)	일반관리구역
⑮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녹지보존구역

(3) 변경 건축물 조서

구역 구분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 (지하)		비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⑦	69	첨단 연구동	-	1,113.26	-	-	-	5,369.47	-	-	-	5,025.88	-	-	-	5(1)	금회 신축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결정도면에 의함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11) 및 노원구 도시관리과(☏2116-386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도시관리계획(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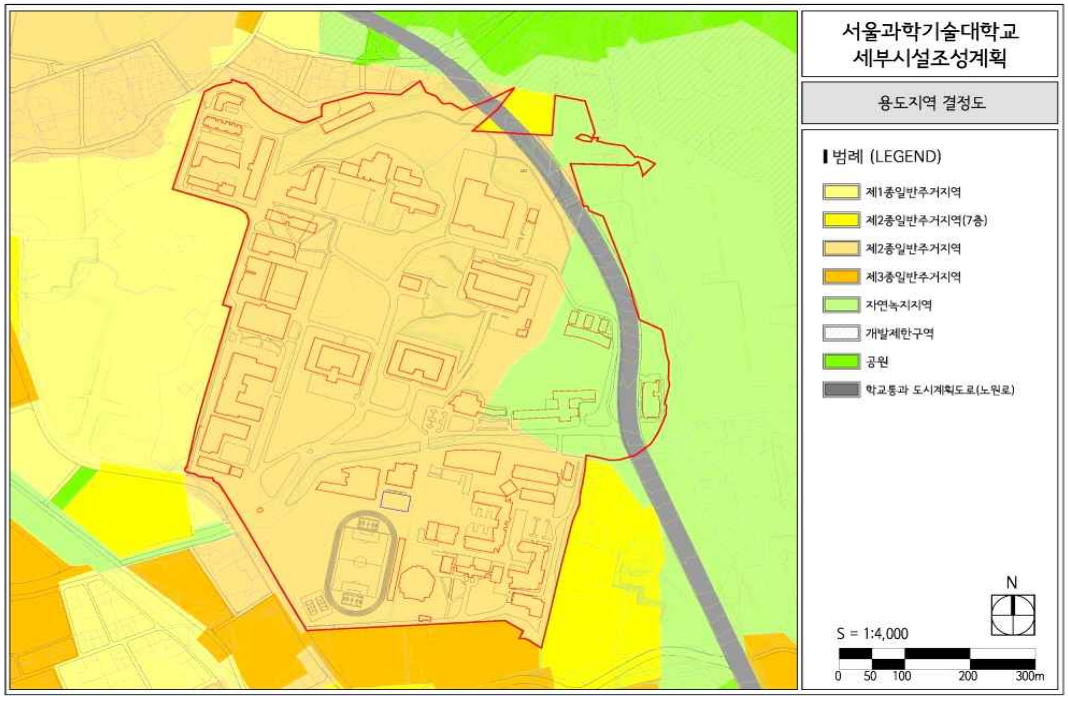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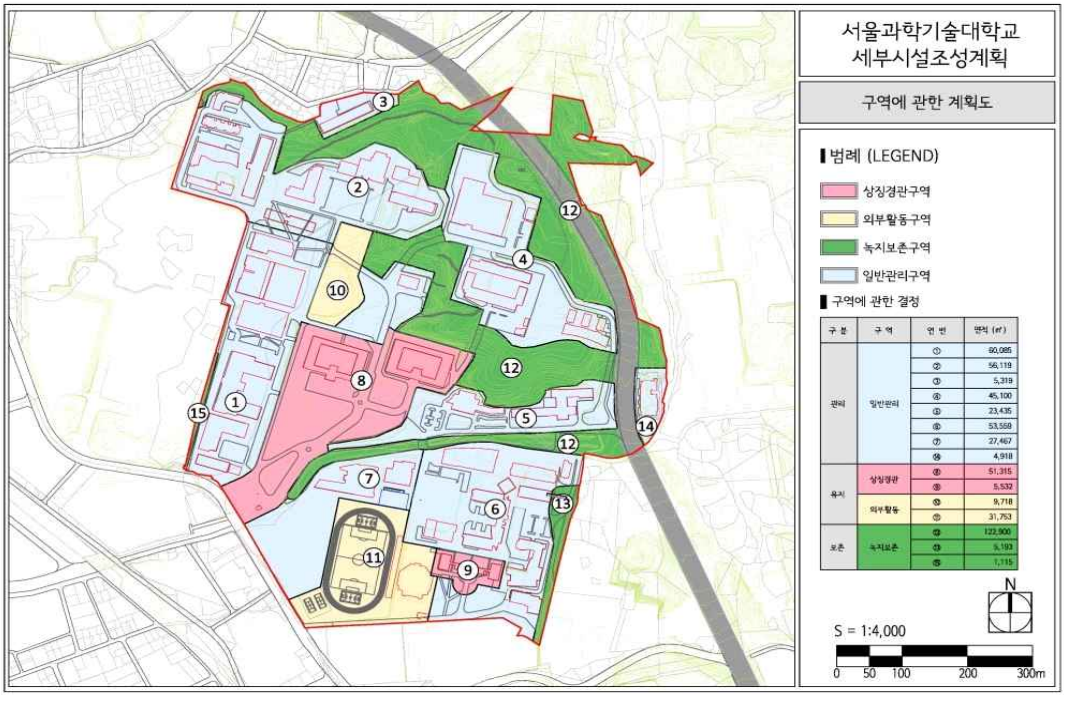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건폐율 · 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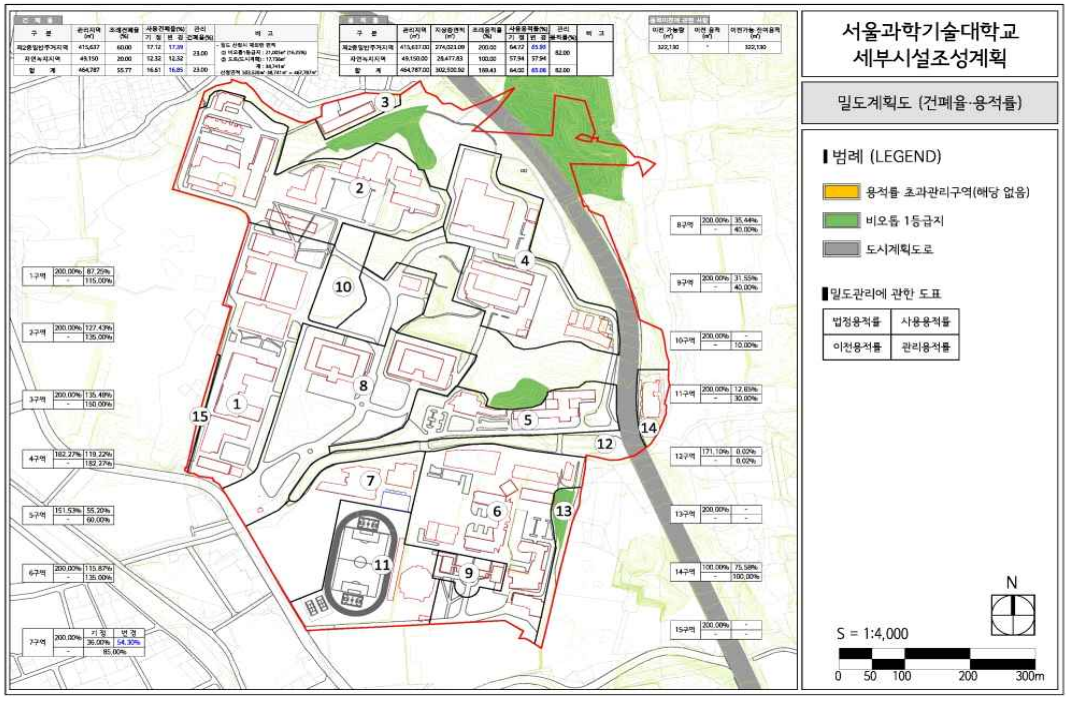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높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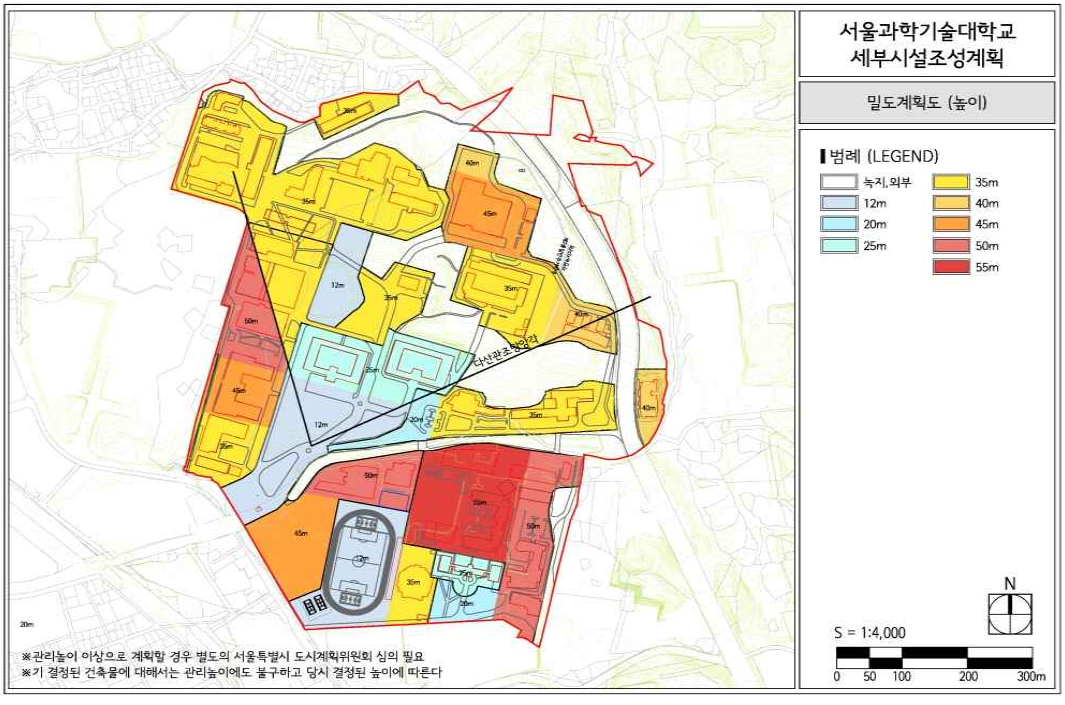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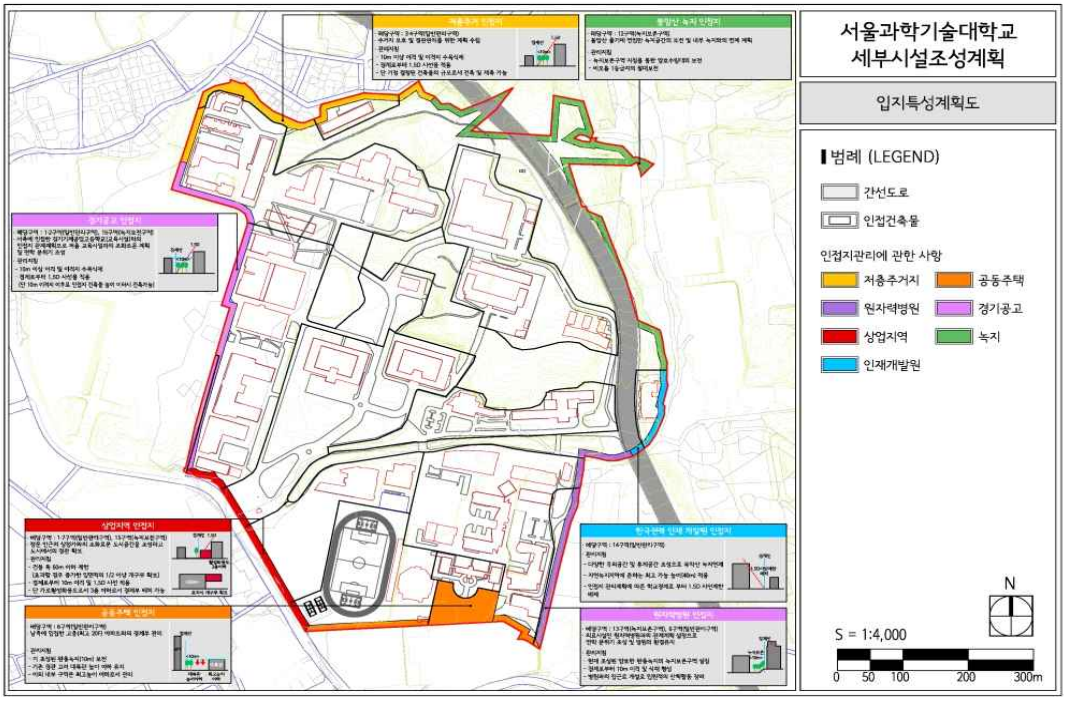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배치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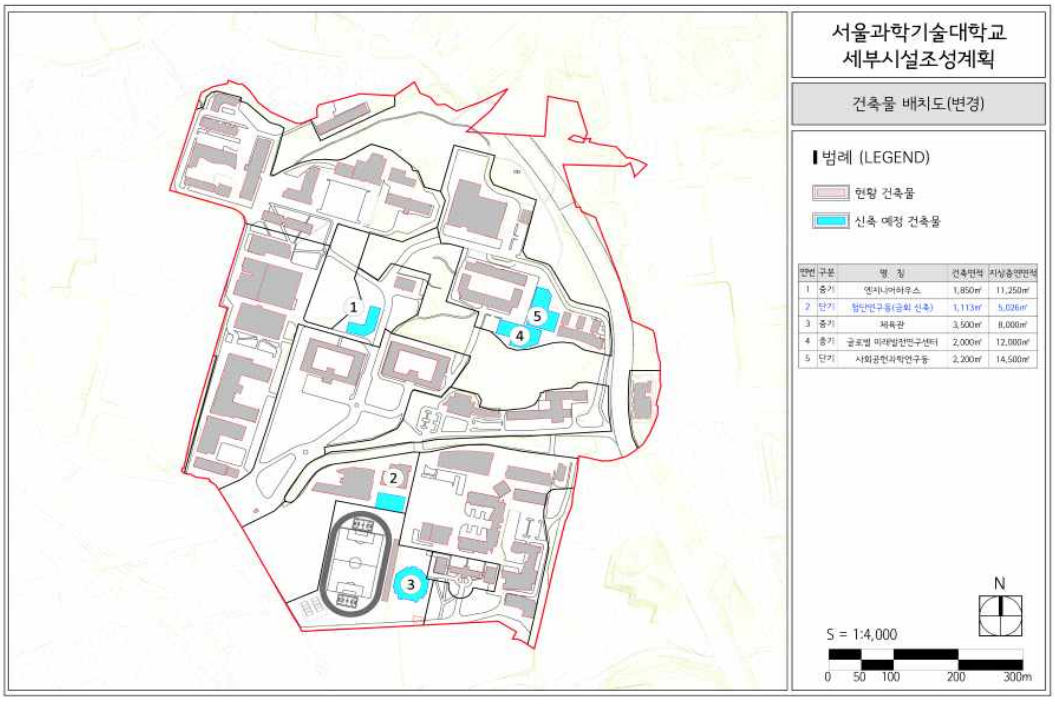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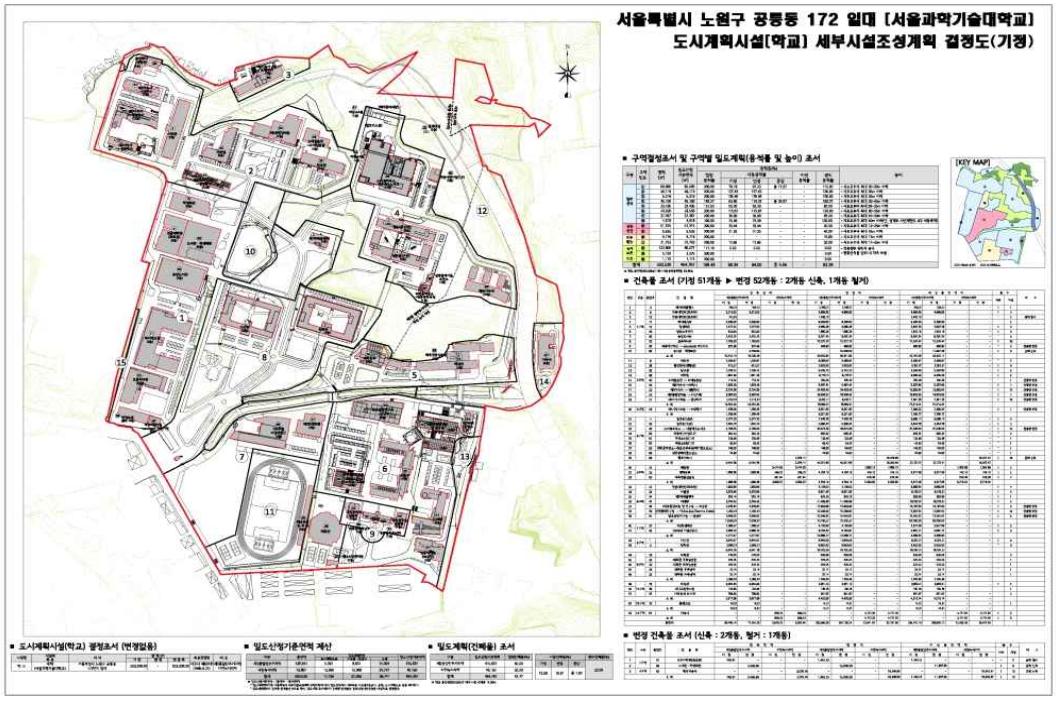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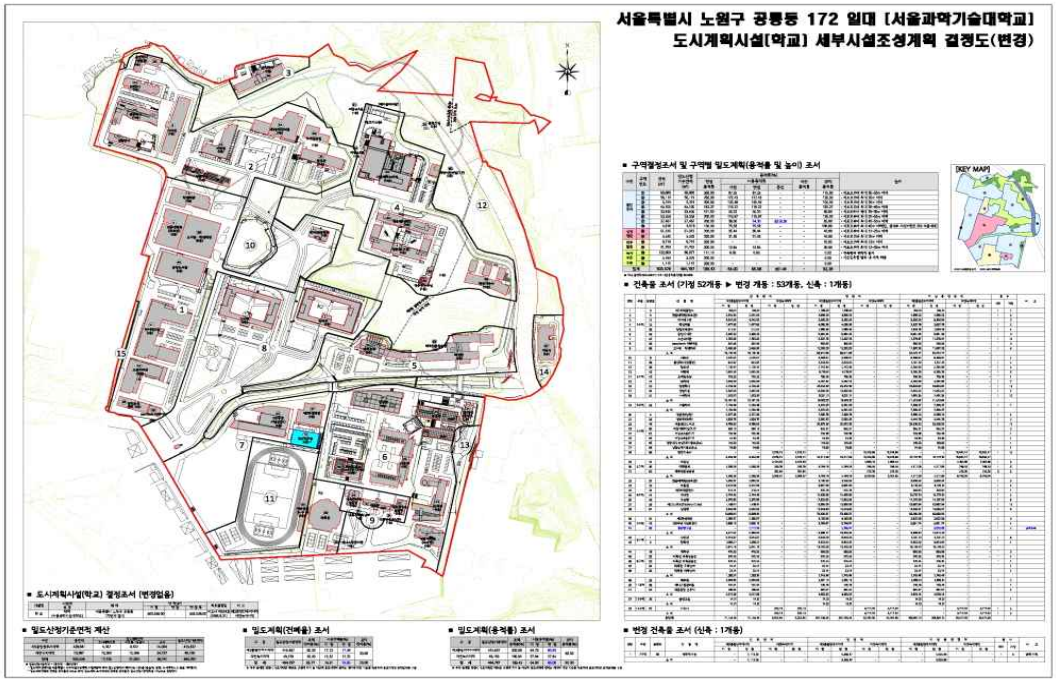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75호

성북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이하 '성북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1조의3,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6.5.)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건폐율	평균층수	추진 단계	시행방식	정비유형
기정	C	6	성북동	179-68	12.8	170%	60%	7층/ 12층이하	2	주택재개발	수복(전면)
변경	변경없음				11.0	175.4%	60%	-	2	주택재개발	수복(전면)

※ 예정구역 면적 14.3% 감소(도정법 제101조의3 ①항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 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없이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성북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	-	증) 109,639.7	109,639.7	-

※ 본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을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	증) 109,639.7	109,639.7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	증) 14,789.4	14,789.4	13.5	-
	도 로	-	증) 8,531.4	8,531.4	7.8	-
	공 원	-	증) 6,258.0	6,258.0	5.7	지상부 공공시설(도서관) 및 지하 공영주차장 중복결정
획 지		-	증) 94,850.3	94,850.3	86.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9,639.7	-	109,639.7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61,410.7	감) 37,312.1	24,098.6	22.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8,229.0	감) 21,022.1	27,206.9	24.8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8,334.2	58,334.2	53.2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변 경 사 유
성북동 168-23번지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8,389.2	◦ 지역 여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 용도지역 상향
성북동 167-9번지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2,939.3	◦ 지역 여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 용도지역 상향
성북동 173-14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4,016.4	◦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공원 신설 지역의 합리적 용도지역 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 하향
성북동 177-56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5,394.9	◦ 지역 여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 용도지역 상향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종류	위 치	면적(㎡)	연장(k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성북지구	자연경관지구	성북 · 동성 · 명륜 · 혜화동 일대	1,732,659 (2,543.5)	-	-	건설부고시 제235호 ('77.12.03)	-
기정	-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성북초교삼거리~한성대입구 (성북로)	24,708 (1,506.1)	0.9	양측15	서울시고시 제2019-129호 ('19.04.18)	성북로

※ 면적 중 ( )는 정비구역 내 편입 면적임

5.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토지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구역 지정도서 참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 분	항 목			금 액(천원)
수입	소 계			1,507,163,220
	분양주택	토지등소유자	1,450세대	1,181,834,650
		일반	218세대	172,348,190
	공공임대	재개발의무	383세대	128,191,290
		국민주택규모주택	35세대	4,172,350
	기타시설	근린생활시설		20,616,750
지출	소 계			860,425,900
	공사비			667,438,710
	보상비			23,607,860
	관리비			5,821,200
	설계비			9,582,150
	감리비			9,344,780
	부대경비			144,631,200
종전자산 추정액				717,359,530
추정비례율	90.16% = {수입(1,507,163,220천원) - 지출(860,425,900천원)} / 종전자산 추정액(717,359,530천원)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비례율변화표		변동률	공사비				
			-10%	-5%	0%	5%	10%
변동률		평균단가 (천원/3.3㎡)	5,580	5,890	6,200	6,510	6,820
분양가 (일반분양 기준)	10%	37,270	119.94%	115.55%	111.17%	106.78%	102.39%
	5%	35,570	109.43%	105.05%	100.66%	96.27%	91.89%

비례율변화표		변동률	공사비				
			-10%	-5%	0%	5%	10%
	0% (기준)	33,880	98.93%	94.54%	90.16%	85.77%	81.38%
	-5%	32,190	88.42%	84.04%	79.65%	75.26%	70.88%
	-10%	30,490	77.92%	73.53%	69.15%	64.76%	60.37%

다. 추정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39㎡형	4.94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90.16%)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49㎡형	6.17억		
전용59㎡형	7.42억		
전용84㎡형	9.46억		
전용115㎡형	12.0억		

※ 추정비례율 등은 '2021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 분석안(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였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소로	3	(A)	6	국지 도로	128	성북동 176-11	성북동 167-11	일반 도로	-	-	대상지외부 기타도로시설
기정	중로	2	(B)	15~20	국지 도로	261	동소문동1가 1-1	동소문동1가 140-1	일반 도로	-	-	대상지외부 기타도로시설
변경	중로	2	(B)	15~20	국지 도로	261	동소문동1가 1-1	동소문동1가 140-1	일반 도로	-	-	대상지외부 도로면적축소
기정	소로	3	(C)	7	국지 도로	125	성북동 179-79	성북동 179-145	일반 도로	-	-	대상지외부 기타도로시설
변경	중로	3	(2)	8~18	국지 도로	192 (146)	동소문동1가 140-114	성북동 179-145	일반 도로	-	-	내부포함 및 시설결정
신설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75	성북동 179-100	성북동 168-275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1)	6~8	국지 도로	121	성북동 163-11	성북동 163-3	일반 도로	-	-	대상지 외부 현황도로 확폭 (6m→6~8m)
신설	소로	2	(2)	8	국지 도로	286	성북동 173-44	성북동 184-92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20	동소문동1가 142-8	성북동 184-40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2)	6	특수 도로	103	성북동 173-28	성북동 170-47	보행자 우선도로	-	-	

※ ( )는 정비구역 내 연장 및 임시도로 번호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기타도로시설 소로3-(A)	-	• 도로 폐지 - B= 6m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로 폐지
기타도로시설 중로2-(B)	기타도로시설 중로2-(B)	• 도로 면적 축소 - B= 15~20m, L= 261m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로 면적 축소(도로 연장 및 폭원 변경없음)
기타도로시설 중로3-(C)	중로 3-(2)	• 일부구간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B= 7m→8~18m, L= 125m→192m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폭원 및 연장 변경, 도로 번호 부여
-	중로 3-(1)	• 도로 신설 - B= 12m, L= 175m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로 신설
-	소로 2-(1)	• 도로 신설 - B= 6~8m, L= 121m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현황도로 확폭 및 시설 결정
-	소로 2-(2)	• 도로 신설 - B= 8m, L= 286m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로 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 3-(1)	• 도로 신설 - B= 6m, L= 20m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로 신설
-	소로 3-(2)	•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 B= 6m, L= 103m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로 신설

나. 공영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성북동 173-1번지일원	-	증) 3,830.7	3,830.7	-	공원①,문화시설①과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 신설 - A= 증) 3,830.7㎡	• 사업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주차서비스 지원을 위해 주차장 설치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1	근린공원	성북동 173-1번지일원	-	증)3,830.7	3,830.7	-	주차장①,문화시설①과 중복결정
신설	②	공원2	소공원	성북동 179-191번지일원	-	증)2,427.3	2,427.3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원1	• 신설 - A= 증) 3,830.7㎡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공원 신설
②	공원2	• 신설 - A= 증) 2,427.3㎡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공원 신설

라.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도서관	-	성북동 173-1번지일원	-	증) 3,830.7	3,830.7	-	공원①,주차장①과 중복결정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①	도서관	20% 이하	150% 이하	3층 이하

■ 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도서관	• 신설 : 3,830.7㎡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서관 신설

마. 학교 결정(변경) 조서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중·고등학교 (홍익사대 부중·부고)	성북동 151번지일원	35,338	감) 370	34,968	서울시고시 제125호 (1977.04.27)	정비구역내 370㎡ 편입부분 변경

■ 건축범위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건축제한완화	비 고
-	학교	30%	120%	3층	높이(3→5층(20m)) 기존 5층이상 건축물 6층이하로 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학교	• 변경 - A= 감) 370㎡	• 정비계획 수립 및 현황토지이용 고려 학교면적 수정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계획면적(㎡)	비 고
			법 정			
			기 준	면적(㎡)		
주민공동시설	합 계	-	1,000세대 이상 (500㎡+[2.0㎡×2,086세대])×1.4	6,540.80	6,560.0	서울시 주택 조례 적용
	경로당	획지	2,000세대 이상	742.2	750.0	
	어린이집	획지		742.2	750.0	
	작은도서관	획지		306.6	310.0	
	다함께 돌봄센터	획지	-	-	150.0	-
	주민운동시설	획지	-	-	2,500.0	실내/실외
	어린이놀이터	획지	-	-	2,100.0	실외
경비실		획지	-	-	80.0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관리사무소		획지	10㎡+[(2,086-50)×0.05㎡]	111.8	150.0	

* 특별건축구역일 경우에 한하며, 미해당 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 1항에 따라 1.25 적용[{500㎡+(2.0x2,086)}x1.25]
※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 및 별표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8.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성북1	109,639.7	-	-	성북동 179-68번지 일대	471	-	-	471	-	-

9. 건축시설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법적상한초과 (건축계획)	
신설	성북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구역	109,639.70	획지 (제1종)	13,718.0	성북동 179-68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37.13)	150.00 이하	- (55.53)	최고20m (4층이하)
			획지 (제2종7층)	22,798.1			60이하 (45.72)	209.96 이하	- (203.96)	최고50m (평균10층, 최고13층이하)
			획지 (제2종)	58,334.2			60이하 (14.65)	230.33 이하	240.35이하 (240.35)	최고100m (30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2,086세대 (공공임대 418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313세대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 530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243세대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전용면적기준) : 418세대

건립규모	기 준	세대수	비율(%)
합 계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전체 세대수의 20%	418세대	100.0
40㎡ 이하		143세대	34.2
40㎡ 초과 ~ 50㎡ 이하		192세대	45.9
50㎡ 초과 ~ 60㎡ 이하		83세대	19.9

- 주택 규모별 건설계획 : 2,086세대

구분	전용면적 (㎡)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의무임대	국민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분양			
60㎡이하	30	69	-	-	70	6.66	62.94	-
	39	74	-	-	185	12.42		
	49	192	-	-	206	19.08		
	59	48	35	-	434	24.78		
60㎡초과~ 85㎡ 이하	74	-	-	-	169	8.10	25.40	-
	84	-	-	-	361	17.30		
85㎡초과	99	-	-	-	123	5.90	11.66	-
	115	-	-	-	60	2.88		
	135	-	-	-	60	2.88		
합 계		383	35	-	1,668	100.0		-
		2,086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 규정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심의완화 사항

- 기준용적률 20% 완화(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소형주택 확보)
- 허용용적률 9.0%(2종7층) 및 15.6%(2종)완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등 인센티브 적용)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법적상한초과 (건축계획)	
	• 용도지역 상향 : 제1종일반 → 제2종일반(7층이하), 제2종일반 제2종일반(7층이하) → 제2종일반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중로3-(1)호선, 중로3-(2)호선 도로변 : 3m 중로2-(2)호선 도로변 : 5m									
기타사항	•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 성북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해 성북로 이면도로변 지정									

※ 기준용적률 20%상향 및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 심의 완화사항은 획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적용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공공시설물 (도서관) 환산면적
			소계	토지 (도로,공원)	공영주차장 환산부지면적			
	109,639.7㎡	94,850.3㎡	15,778.2㎡	14,789.4㎡	988.8㎡	1,774.9㎡	1,951.1㎡	1,186.0㎡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 - 대지내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 + 공공시설물(도서관) 환산면적 = 15,778.2㎡ - 1,774.9㎡ - 1,951.1㎡ + 1,186.0㎡ = 13,238.2㎡							
공공시설물 환산면적	공영주차장 환산면적	• 환산부지면적 = 표준건축비(원/㎡) × 시설 연면적(㎡) / 부지가액(원/㎡) = 2,799,000 × 10/11 × 2,300.0 / 5,918,892 = 988.8㎡						
		표준건축비	2,799,000원/㎡	▹2022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공영주차장(1천㎡~3천㎡) 적용				
		시설연면적	2,300.0㎡	▹지하 2,300.0㎡				
		부지가액	5,918,892원/㎡	▹구역내 토지 평균공시지가(2,959,446원/㎡) × 2				
	공공시설 (도서관) 환산면적	• 환산부지면적 = 표준건축비(원/㎡) × 시설 연면적(㎡) / 부지가액(원/㎡) = 3,960,000 × 10/11 × 1,950.0 / 5,918,892 = 1,186.0㎡						
		표준건축비	3,960,000원/㎡	▹2022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도서관(1.5천㎡~2천㎡) 적용				
		시설연면적	1,950.0㎡	▹지상 1,950.0㎡				
		부지가액	5,918,892원/㎡	▹구역내 토지 평균공시지가(2,959,446원/㎡) × 2				
계획 (기준 및 허용) 용적률	기준 용적률	• 가중평균 용적률 175.4% [=(150%×13,718.0㎡+173.9%×22,798.1㎡+182.1%×58,334.2㎡)/94,850.3㎡]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73.9% [= 153.9% + 20%(소형주택 추가확보 완화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82.1% [= 162.1% + 20%(소형주택 추가확보 완화 적용)]						
	허용 용적률	• 가중평균 용적률 187.2% [=(150%×13,718.0㎡+182.9%×22,798.1㎡+197.7%×58,334.2㎡)/94,850.3㎡]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82.9% [= 173.9% + 9.0%(공공보행통로9.0%)]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4">산 정 내 용</td></tr>
<tr><td></td><td colspan="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7.7% [= 182.1% + 15.6%(공공보행통로7.7%+열린단지5.0%+공개공지2.9%)]</td></tr>
<tr><td>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4">• 가중평균 용적률 213.81%
[=(150%×13,718.0㎡+209.96%×22,798.1㎡+230.33%×58,334.2㎡)/94,850.3㎡]
•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α토지×가중치) + (0.7×α건축물))]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 × (1 + (1.3×0.0×1) + (0.7 × 0.0)) = 15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82.9% x {1 + (1.3 x 0.8201 x 0.1656 + 0.7 x 0.0} = 215.18%
[용도지역상향에따른 계획대지 용도지역 상한용적률= 18,253.0㎡(1종→2종(7)종상향) × 200% + 4,545.1㎡(기존2종(7)) × 250% = 209.96%]
→2종7층대지 정비계획상한용적률: 209.96%적용 (215.18% > 209.96%)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7.7% x {1 + (1.3 x 0.9154 x 0.1250 + 0.7 x 0.0373} = 232.25%
[용도지역상향에따른 계획대지 용도지역 상한용적률= 22,939.3㎡(1종→2종(7)종상향) × 200% + 35,394.9㎡(2종(7)종→2종종상향) × 250% = 230.33%]
→2종대지 정비계획상한용적률: 230.33%적용 (232.25% > 230.33%)</td></tr>
<tr><td></td><td>- 가중치등 산정식</td><td>- 제1종일반주거지역</td><td>-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td><td>- 제2종일반주거지역</td></tr>
<tr><td></td><td>· 가중치 : 기반시설부지 허용용적률 /사업부지 허용용적률</td><td>= 150%/150% = 1.0</td><td>= 150.0%/182.9% = 0.8201</td><td>= 180.96%/197.70% = 0.9154</td></tr>
<tr><td></td><td>· α(토지): 기반시설 토지제공 면적 /기반시설 토지제공 후 대지면적</td><td>= 0.0/13,718.0 = 0.0</td><td>= 3,774.5/22,798.1 = 0.1656</td><td>= 7,288.9/58,334.2 = 0.1250</td></tr>
<tr><td></td><td>· α(건축물) :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환산부지 /기반시설 토지제공 후 대지면적</td><td>= 0.0/13,718.0 = 0.0</td><td>= 0.0/22,798.1 = 0.0</td><td>= 2,174.8/58,334.2 = 0.0373</td></tr>
<tr><td>예정법적
상한용적률</td><td colspan="4">• 법적상한용적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해당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해당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40.35%</td></tr>
</table>

■ 계획용적률(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구 분	명 칭	인센티브				비 고
		합계	공공보행통로 조성	열린단지 조성	공개공지 조성	
신설	획지 (공동주택용지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9.0%	9.0%	-	-	-
	획지 (공동주택용지내 제2종일반주거지역)	15.6%	7.7%	5.0%	2.9%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은 획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적용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 계획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산출근거	• 전체세대수 : 2,016세대 {2,086-70(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 재개발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 383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 세대 수 {2,086-70(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 2,016세대 × 15% = 302.4세대 ∴ 383세대 계획 〉 302.4세대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로 건설계획 : - 임대주택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이상 : 383 × 30% = 114.9세대 이상 〈 143세대 계획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비율	임대주택비율
합 계	383	19.0%	100.0%
40㎡이하	143	7.1%	37.4%
40㎡초과~50㎡이하	192	9.5%	50.1%
50㎡초과~60㎡이하	48	2.4%	12.5%

■ 공공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 계획

계획기준	•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산출근거	• 전체세대수 : 2,086세대 • 공공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418세대 - 계획 전체 세대 수의 20% 이상 : 2,086세대 × 20% = 417.2세대 ∴ 418세대 계획 〉 417.2세대

■ 소형주택 건설 계획 (기준용적률 20% 상향)

계획기준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97호 (2010.03.18)「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의해 기준용적률 20% 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은 주택규모 60㎡ 이하로 건설
20% 상향 전		• 기준용적률 : 158.3% [150%(1종)/153.9%(2종7층)/162.1%(2종)] • 정비계획용적률 : 195.93%
20% 상향 후		• 기준용적률 : 175.4% [150%(1종)/173.9%(2종7층)/182.1%(2종)] • 정비계획용적률 : 213.81%
20% 상향에 따른 증가분	늘어난 용적률	• 17.88% (213.81% - 195.93%)
	늘어난 용적률에 대한 연면적	• 16,982.5671㎡ (획지면적 94,980.8㎡ × 17.88%)
60㎡ 이하 주택건설 규모		• 계획 225세대 (516.96㎡(43.08㎡(30형)×12세대) + 737.36㎡(56.72㎡(39형))×13세대 + 6,227.76㎡(70.77㎡(49형))×88세대 + 9,536.80㎡(85.15㎡(59형))×112세대) = 17,018.88㎡ (≥ 16,982.5671㎡))

※ 기준용적률 20%상향 및 소형주택 계획은 획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적용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계획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정비계획용적률		• 230.33%
예정법정상한용적률		• 240.35% (건축계획용적률 : 240.35%)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초과분	• 10.02% (240.35% - 230.33%)
	초과 용적률의 50%	• 5.01% (10.02% × 50%)
	초과 용적률에 대한 연면적	• 2,922.5435㎡ 이상 (획지면적 58,334.2㎡ × 5.01%)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규모		• 계획 : 35세대 • 연면적 : 2,980.25㎡ (용적률 5.11%) (2,980.25㎡(85.15㎡(59형)×35세대) = 2,980.25㎡ (≥ 2,922.5435㎡))

※ 법적상한용적률 달성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은 획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적용

10.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대상지 주위의 주요 조망축에서의 경관과 주변지역 간의 부조화 방지를 위하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	
환경보전	• 도시생태계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설치, 에너지절약형 단지계획 기법 채택 • 자연환경: 빗물의 지하침투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경면적 최대 반영 – 주변단지와 도로 Level에 맞게 계획 – 포장면적 축소 및 녹지 면적 증가 계획으로 지구내 녹지공간조성 • 생활환경: 대기질, 휴식공간를 고려한 계획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 녹지공간 등 오픈스페이스 최대 확보 및 거주민의 휴식·여가 공간 계획 • 공사 등 사업 시행 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 – 장비 분산투입, 작업장내 차속제한, 저소음·저진동 공사장비 투입, 야간작업 지양	
재난방지	• 화재, 수해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발생가능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 • 지반붕괴를 유발하거나 유수기능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절성토의 규제 •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 우·오수관로 개량 및 설치계획을 수립 • 단지내의 녹음시설을 통한 수해예방효과를 기대(우수의 침투 및 보수효과) • 건축법 및 주택법의 방화, 소방, 피난 등의 설치 기준을 준수	

나.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및 개별비오톱 평가제외로 조사됨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 향상	–
생태 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 일부 주거지역 내 식재 수목	◦ 공원녹지 및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
동·식물상	동·식물상보호	○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치 않음	◦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	–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 보전	–	◦ 계획지구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현황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 및 건축 계획 수립	–
토양	토양오염방지	○	◦ 토양측정망 자료 검토 결과 기준 만족	◦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

<표 계 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지형·지질	지형변화 최소화	○	◦ 기 조성부지로 지형변화 미미	◦ 현 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 인접지반 침하대책 수립	-
물순환, 수리 · 수문	생태면적률 30%	○	◦ 생태면적률 계획 확인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확인	◦ 인공 및 자연지반 녹지 확보 등 생태면적률 증가 계획 수립	-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수질 상태 확인 ◦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확인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 운영시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물질 유출 영향 예상	◦ 수질 등급 유지 또는 오염 최소화 되도록 저감방안 수립	-
바람	바람길 확보	○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열환경 취약지역 조사	◦ 열섬효과 최소화 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	-
대기질 미세먼지	비산먼지 저감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비산먼지 및 운영시 대기 오염물질 발생 예상	◦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능토록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 계획 특성상 과다한 에너지소비를 유발하지 않음	◦ 건축물 에너지수요 감축 및 녹색 건축물 활성화 ◦ 친환경 건축자재 선정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됨	◦ 성북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
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만족	○	◦ 공사시 소음 · 진동 영향 예상 ◦ 운영시 도로소음 영향 예상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저감방안 수립	-
경관	Skyline 보전	○	◦ 고층 건물 입지에 의한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계획지구 주변 휴식·여가공간 현황	◦ 휴식 및 여가공간을 확보·계획	-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계획지구 : 제1종 및 제2종(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계획지구 인근 : 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부 일조영향 예상	◦ 관련규정(건축법, 서울시 조례)을 준수한 건물 배치계획 수립	-
보행 친화공간	보행공간 계획수립	○	◦ 보행자 위한 공간 확보 계획	◦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보행연결성 강화	-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공공재개발 사업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 1,397세대 계획 : 2,086세대 (증) 689세대)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설 계 지 침	비 고
성북초, 혜화초, 돈암초	• 안전펜스(보행자 방호울타리), 도로표지, 안전표지판 및 험프 등 설치 • 보도는 학생들의 안전 및 통학 시 집중되는 통행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거리 500m 이내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 분	설 계 지 침
아파트 주출입구	• 단지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 • 출입구는 자연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개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 • 자연감시가 낮고 활동인자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경우 CCTV 설치 • 출입구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배치 • 출입차단기 등 기계정비를 통한 물리적 접근 통제 및 단지 상징물이나 게이트, 출입구 주변 영역적 패턴 적용을 통한 상징적 접근 통제 등 적용
아파트 주동 출입구	• 주동 출입구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계획 • 각 주동의 출입구로 들어가는 통로 주변에는 출입자가 쉽게 관찰되도록 높이가 낮은 관목을 설치 • 주동 출입문은 안전유리, 방범필름, 충격센서 등을 설치하고 투명한 재질을 사용하여 내부 상황이 자연스럽게 파악되도록 함 • 경비실이 없는 주동에서는 출입구에 자동방범키, CCTV, 자동출입문 등의 방범설비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방범설비 표지판(경고문구)을 설치
부대복리 시설	• 부대시설은 주변 공간에서 감시가 될 수 있는 밝고 개방된 공간에 배치 • 단지내 주 보행로와 연계하여 시설물을 설치, 이용빈도를 높혀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감시능력 향상 유도 •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으면서, 자연스러운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 통행이 많은 장소와 주동 출입구 주변 또는 각 주호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배치
경비실	• 경비실은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 • 경비실 주변 시설과 조경은 경비실 내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함 • 경비실 위치는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와 주동출입구의 출입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 • 경비실에 고립지역에 대한 방범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경비실이 없는 고립 또는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
주차장	• 주차장입구는 도로에서 명확히 보이는 곳에 설치하며, 모든 차량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CCTV와 차량출입 차단기를 설치, 야간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설치 • 차로에는 이동방향과 경로 및 진출입구 등을 바닥에 반드시 표시하고 벽면, 천장 등에도 안내판을 설치 • 지하주차장에는 자연채광과 시야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큰, 천창 등 설치를 권장하고,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

구 분	설 계 지 침
조 경	• 단지내 조경은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사람의 출입에 대한 자연감시가 가능하고 숨을 공간이 없도록 계획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동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식재하는 조경수는 보행자의 시야가 이동하는 동선이 차단되지 않도록 수종을 선택하고 식재함
담 장	• 단지 경계부에 영역성 확보를 위하여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형 담장, 조경 등을 설치하여 자연감시와 가시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단지 경계부를 시설물 담장 대신 관목이나 수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밀생하는 수종과 사계절 식생하는 수종을 선택하고, 내외부 관찰이 가능하도록 1m~1.5m 이내로 관리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사람의 출입에 대한 자연감시가 가능하고 숨을 공간이 없도록 계획 • 사각지대 형성을 방지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계획, 보행자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충분한 시야범위를 확보하여 이용자가 진행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 • 야간에도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한 방법용 CCTV 등 설치 권장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지정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성북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	-	증) 109,639.7	109,639.7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 구역 신설 - 성북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 109,639.7㎡	◦ 성북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9,639.7	-	109,639.7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61,410.7	감) 37,312.1	24,098.6	22.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8,229.0	감) 21,022.1	27,206.9	24.8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8,334.2	58,334.2	53.2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변 경 사 유
성북동 168-23번지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8,389.2	◦ 지역 여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 용도지역 상향
성북동 167-9번지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2,939.3	◦ 지역 여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 용도지역 상향
성북동 173-14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4,016.4	◦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공원 신설 지역의 합리적 용도지역 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 하향
성북동 177-56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5,394.9	◦ 지역 여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 용도지역 상향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종류	위 치	면적(㎡)	연장(k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성북지구	자연경관지구	성북 · 동성 · 명륜 · 혜화동 일대	1,732,659 (2,543.5)	-	-	건설부고시 제235호 ('77.12.03)	-
기정	-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성북초교삼거리~한성대입구 (성북로)	24,708 (1,506.1)	0.9	양측15	서울시고시 제2019-129호 ('19.04.18)	성북로

※ 면적 중 ( )는 정비구역 내 편입면적임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소로	3	(A)	6	국지 도로	128	성북동 176-11	성북동 167-11	일반 도로	-	-	대상지외부 기타도로시설
기정	중로	2	(B)	15~20	국지 도로	261	동소문동1가 1-1	동소문동1가 140-1	일반 도로	-	-	대상지외부 기타도로시설
변경	중로	2	(B)	15~20	국지 도로	261	동소문동1가 1-1	동소문동1가 140-1	일반 도로	-	-	대상지외부 도로면적축소
기정	소로	3	(C)	7	국지 도로	125	성북동 179-79	성북동 179-145	일반 도로	-	-	대상지외부 기타도로시설
변경	중로	3	(2)	8~18	국지 도로	192 (146)	동소문동1가 140-114	성북동 179-145	일반 도로	-	-	내부포함 및 시설결정
신설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75	성북동 179-100	성북동 168-275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1)	6~8	국지 도로	121	성북동 163-11	성북동 163-3	일반 도로	-	-	대상지 외부 현황도로 확폭 (6m→6~8m)
신설	소로	2	(2)	8	국지 도로	286	성북동 173-44	성북동 184-92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20	동소문동1가 142-8	성북동 184-40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2)	6	특수 도로	103	성북동 173-28	성북동 170-47	보행자 우선도로	-	-	

※ ( )는 정비구역 내 연장 및 임시도로 번호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기타도로시설 소로3-(A)	-	• 도로 폐지 - B= 6m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로 폐지
기타도로시설 중로2-(B)	기타도로시설 중로2-(B)	• 도로 면적 축소 - B= 15~20m, L= 261m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로 면적 축소(도로 연장 및 폭원 변경없음)
기타도로시설 중로3-(C)	중로 3-(2)	• 일부구간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B= 7m→8~18m, L= 125m→192m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폭원 및 연장 변경, 도로번호 부여
-	중로 3-(1)	• 도로 신설 - B= 12m, L= 175m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로 신설
-	소로 2-(1)	• 도로 신설 - B= 6~8m, L= 121m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현황도로 확폭 및 시설 결정
-	소로 2-(2)	• 도로 신설 - B= 8m, L= 286m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로 신설
-	소로 3-(1)	• 도로 신설 - B= 6m, L= 20m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로 신설
-	소로 3-(2)	•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 B= 6m, L= 103m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로 신설

2) 공영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성북동 173-1번지일원	-	증) 3,830.7	3,830.7	-	공원①,문화시설①과 중복결정

■ 공영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 신설 - A= 증) 3,830.7㎡	• 사업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주차서비스 지원을 위해 주차장 설치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1	근린공원	성북동 173-1번지일원	-	증)3,830.7	3,830.7	-	주차장①,문화시설①과 중복결정
신설	②	공원2	소공원	성북동 179-191번지일원	-	증)2,427.3	2,427.3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원1	• 신설 - A= 증) 3,830.7㎡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공원 신설
②	공원2	• 신설 - A= 증) 2,427.3㎡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공원 신설

4)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도서관	-	성북동 173-1번지일원	-	증) 3,830.7	3,830.7	-	공원①,주차장①과 중복결정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①	도서관	20% 이하	150% 이하	3층 이하

■ 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도서관	• 신설 : 3,830.7㎡	•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서관 신설

5)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중·고등학교 (홍익사대 부중·부고)	성북동 151번지일원	35,338	감) 370	34,968	서울시고시 제125호 (1977.04.27)	정비구역내 370㎡ 편입부분 변경

■ 건축범위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건축제한완화	비 고
-	학교	30%	120%	3층	높이(3→5층(20m)) 기존 5층이상 건축물 6층이하로 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학교	• 변경 - A= 감) 370㎡	• 정비계획 수립 및 현황토지이용 고려 학교면적 수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명칭	위 치	면 적(㎡)	
신설	성북동 179-68번지 일대	109,639.7	1	성북동 179-68번지 일대	94,850.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지정용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구 분		명 칭	용 도	비 고
신설	허용용도	획지 (공동주택용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명 칭	용 도 지 역	건 폐 율	비 고
신설	획지 (공동주택용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명 칭	용도지역	용 적 률(%)				비 고
			기 준	허 용	상 한		
					상한	법적상한	
신설	획지 (공동주택 용지)	가중평균	175.4	187.2	213.81 (204.87)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0	150.0	150.00 (55.53)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73.9	182.9	209.96 (203.9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82.1	197.7	230.33 (240.35)	240.35 이하	-

※ 기준용적률은 획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소형주택 추가확보 완화(+20%) 적용
※ 금회 계획용적률은 획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 상한용적률 내 ( )는 건축계획 용적률임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명 칭	인센티브				비 고
		합계	공공보행통로 조성	열린단지 조성	공개공지 조성	
신설	획지 (공동주택용지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9.0%	9.0%	-	-	-
	획지 (공동주택용지내 제2종일반주거지역)	15.6%	7.7%	5.0%	2.9%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은 획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적용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명 칭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제공	국민주택 건설	
신설	획지 (공동주택용지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1.06%	-	-
	획지 (공동주택용지내 제2종일반주거지역)	32.63%	10.02%	-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은 획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적용

■ 높이계획

구 분	명 칭	용 도 지 역	높 이 기 준	비 고
신설	획지 (공동주택 용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20m(4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최고50m(평균10층, 최고13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100m(30층이하)	-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중로3-(1)호선, 중로3-(2)호선 도로변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도면 참고
	소로 2-(2)호선 도로변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 (전면공지 중 1m는 차도형전면공지, 4m는 보도형전면공지로 활용)	도면 참고

라. 경관계획(배치 · 형태 포함)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방향성	획지 (공동주택용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구릉지 지형 특성을 고려한 지형 순응형 단지조성 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률적인 배치 지양, 가로경관을 고려한 입면계획 수립
근린생활시설	획지 (공동주택용지)	◦ 지형단차를 활용한 연도형 상가 계획 ◦ 단차 · 장애물 없이 보행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로활성화 유도 및 단지 개방
부대복리시설	획지 (공동주택용지)	◦ 공공보행통로 변에 주로 배치하여 접근성 향상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외부형태	획지 (공동주택용지)	◦ 저층, 중층, 고층부로 구분하여 리듬감있는 높이 계획 ◦ 고층부는 한성대입구역에 근접한 부분에 계획하며, 역세권 변 최고층수의 동 들은 외관 다자인 특화할 것 ◦ 타워형 및 판상형의 조합으로 다양한 주동 계획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저층부외관	획지 (공동주택용지)	◦ 인근 공원 및 조경시설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디자인 ◦ 주요 도로변에서의 조망 고려한 외관 디자인
재료 및 색채	획지 (공동주택용지)	◦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일 경우 조화를 고려할 것 ◦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계획 디자인
진입구 처리	획지 (공동주택용지)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최대한 지양 ◦ 보행약자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계획 ◦ 단지의 중심적인 성격의 공공보행통로 특화 방안 제시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개방감	남서-북동방향	◦ 단지 진입로에서 북악산으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통경축(폭25m이상) 계획 ◦ 간선변-성북공원, 신설공원 등으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통경축 이외 남북측 각각 1개소씩(총2개소) 통경축 계획 (폭10m이상)
조명계획	단지내 · 외부	◦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보행통로변 및 근린생활시설변 등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야간 조명 설치 계획 검토
스카이라인	단지내 · 외부	◦ 북악산 능선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스카이라인계획

■ 경관계획 지침도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공개공지	획지 (공동주택용지)	◦ 통경축 · 공공보행통로와 성북로 진입부가 만나는 보행 결절점 양측면에 공개공지 조성을 통해 주변지역과 소통 도모
전면공지	획지 경계부 도로변	◦ 도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는 보도와 연계하여 폭 2m 이상의 보도부속형 또는 차도부속형 공지로 조성하며 세부 폭원은 지침도를 따름 (폭원 : 3m, 5m) ◦ 보도와 연계되거나 보행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한계선 후퇴부 바닥은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 ◦ 포장 시 인접한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패턴 및 재료 사용을 고려하여 조성
공공보행통로	대상지내 남서-북동방향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건축세부 설계에 따라 시 · 종점 변경 없이 일부구간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유지 · 관리를 위해 사업계획승인시 지역권 등 설정이 조건으로 부여되며,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함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차량 진출입부	종로 3-(1)호선, 소로 2-(2)호선, 소로3-(1)호선 도로변	◦ 차량 진출입부 총 3개소 계획

3)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및 개별비오톱 평가제외로 조사됨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 향상	-
생태 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 일부 주거지역 내 식재 수목	◦ 공원녹지 및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
동·식물상	동·식물상보호	○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치 않음	◦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	-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 보전	-	◦ 계획지구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현황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 및 건축 계획 수립	-
토양	토양오염방지	○	◦ 토양측정망 자료 검토 결과 기준 만족	◦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지형·지질	지형변화 최소화	○	◦ 기 조성부지로 지형변화 미미	◦ 현 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 인접지반 침하대책 수립	-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 생태면적률 계획 확인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확인	◦ 인공 및 자연지반 녹지 확보 등 생태면적률 증가 계획 수립	-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수질 상태 확인 ◦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확인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 운영시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물질 유출 영향 예상	◦ 수질 등급 유지 또는 오염 최소화 되도록 저감방안 수립	-
바람	바람길 확보	○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열환경 취약지역 조사	◦ 열섬효과 최소화 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	-
대기질 미세먼지	비산먼지 저감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비산먼지 및 운영시 대기 오염물질 발생 예상	◦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 계획 특성상 과다한 에너지소비를 유발하지 않음	◦ 건축물 에너지수요 감축 및 녹색 건축물 활성화 ◦ 친환경 건축자재 선정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됨	◦ 성북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
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만족	○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 ◦ 운영시 도로소음 영향 예상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저감방안 수립	-
경관	Skyline 보전	○	◦ 고층 건물 입지에 의한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계획지구 주변 휴식·여가공간 현황	◦ 휴식 및 여가공간을 확보·계획	-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계획지구 : 제1종 및 제2종(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계획지구 인근 : 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부 일조영향 예상	◦ 관련규정(건축법, 서울시 조례)을 준수한 건물 배치계획 수립	-
보행 친화공간	보행공간 계획수립	○	◦ 보행자 위한 공간 확보 계획	◦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보행연결성 강화	-

4)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세대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할 것. 또한, 이때 건설·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건설비율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20호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공급해야 함.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 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기부채납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주택	전체 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 중 국민주택 규모 주택
합 계	2,086	100.0	418	383	-	35	20.0	100.0	8.4
전용 30㎡	139	6.7	69	69	-	-	3.3	16.5	-
전용 39㎡	259	12.4	74	74	-	-	3.5	17.7	-
전용 49㎡	398	19.1	192	192	-	-	9.2	45.9	-
전용 59㎡	517	24.7	83	48	-	35	4.0	19.9	8.4
전용 74㎡	169	8.1	-	-	-	-	-	-	-
전용 84㎡	361	17.3	-	-	-	-	-	-	-
전용 99㎡	123	5.9	-	-	-	-	-	-	-
전용 115㎡	60	2.9	-	-	-	-	-	-	-
전용 135㎡	60	2.9	-	-	-	-	-	-	-

□ 2024년 제5차(‘24. 6. 5.)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table>
<tr><th>구 분</th><th>심의
결과</th><th>심 의 의 견</th><th>조 치 계 획</th><th>비고</th></tr>
<tr><td rowspan="2">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td><td rowspan="2">수정
가결</td><td>○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4,098.6㎡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27,206.9㎡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8,334.2㎡

○ 획지계획 : 94,850.3㎡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3,718.0㎡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22,798.1㎡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8,334.2㎡

○ 용적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 이하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기준 173.9%, 허용 183.8%, 상한 209.96%, 법적상한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준 182.1%, 허용 197.7%, 상한 230.33%, 법적상한 240.35%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table><tr><td>제2종7층</td><td>공공보행통로 9.9%</td></tr><tr><td>제2종</td><td>공공보행통로 7.7%, 열린단지 5%, 공개공지 2.9%</td></tr></table>
○ 공공기여 : 13,238.2㎡ (12.0%)
※ 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도서관

○ 높이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m 이하 (최고4층)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50m 이하 (최고 13층, 평균 10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m 이하 (최고 30층)

○ 세대수 : 전체 2,086세대 (임대 418세대 포함)
※ 임대주택 : 재개발의무 383, 법적상한 35</td><td>▸ 반영

(조건사항에 따른 추가 변경)
○ 용적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 이하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기준 173.9%, 허용 182.9%, 상한 209.96%, 법적상한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준 182.1%, 허용 197.7%, 상한 230.33%, 법적상한 240.35%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table><tr><td>제2종
7층</td><td>공공보행통로 9.9%→9.0%</td></tr><tr><td>제2종</td><td>공공보행통로 7.7%,
열린단지 5%, 공개공지 2.9%</td></tr></table>
※ 공공보행통로계획 변경(조건사항 반영)에 따라 허용용적률인센티브 변경됨</td><td>수정
사항</td></tr>
<tr><td>○ 건축배치계획 관련 통경축(폭 25m) 구간 내 배치계획한 테라스하우스는 개방감 확보 차원에서 북서측으로 조정할 것

○ 공공보행통로계획(폭 6m)은 대지조성계획 상 단차(약 60m)를 고려하여 사선형의 단조롭지 않은 보행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폭원을 확대(폭 8~10m)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공공보행통로 선형은 상기한 테라스하우스 위치 조정을 반영하여 조정할 것
○ 통경축계획은 금회 주관부서수정가결 요청(안)의 통경축(1개소) 이외 남측 및 북측으로 추가하여 총 3개를 계획할 것

○ 문화예술인 흔적남기기(김광섭 집터 등)는 신설계획한 공개공지 내에 조성 검토할 것</td><td>▸ (반영) 통경축구간 내 배치된 테라스 하우스는 북서측으로 배치 조정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음

▸ (반영)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을 6m에서 8m로 확대 변경 하였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공공보행통로의 선형을 조정하였음

▸ (반영) 금회 수정가결 요청(안)의 기존 통경축 외 남측 및 북측으로 2개소 통경축(폭원10m이상) 추가 확보하여 총 3개소 계획하였음

▸ (반영) 김광섭 집터 등 문화예술인 흔적 관련하여 신설 계획된 공개공지 내에 조성토록 하겠음</td><td>조건
사항</td></tr>
</table>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3.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2),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02-2241-2783)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서 등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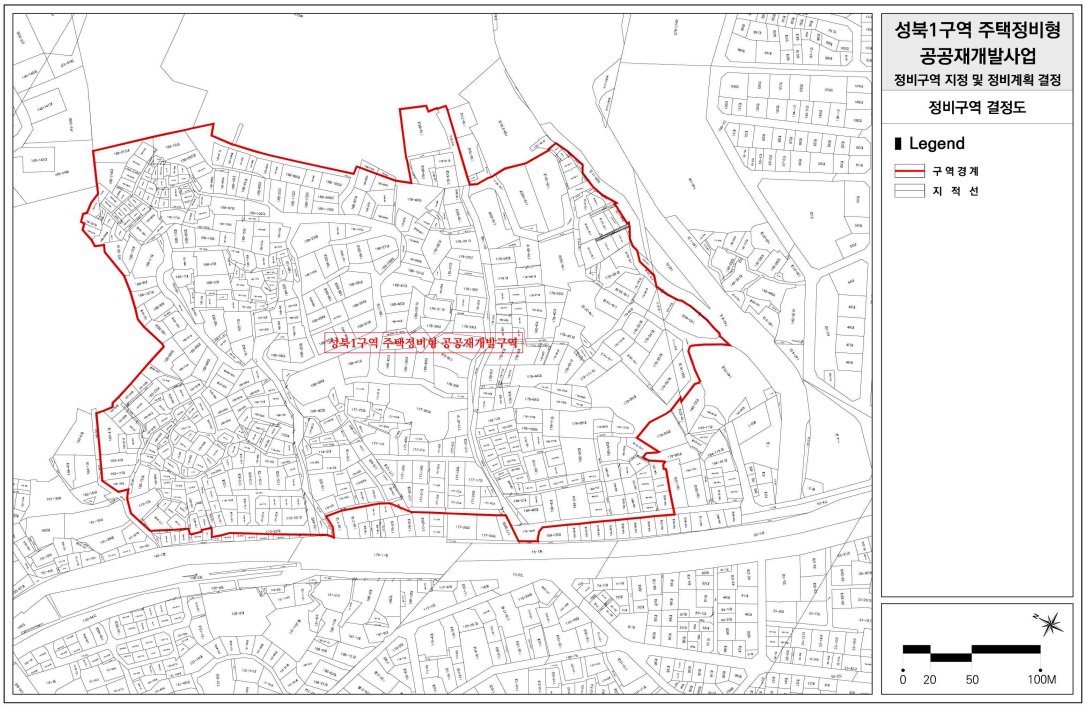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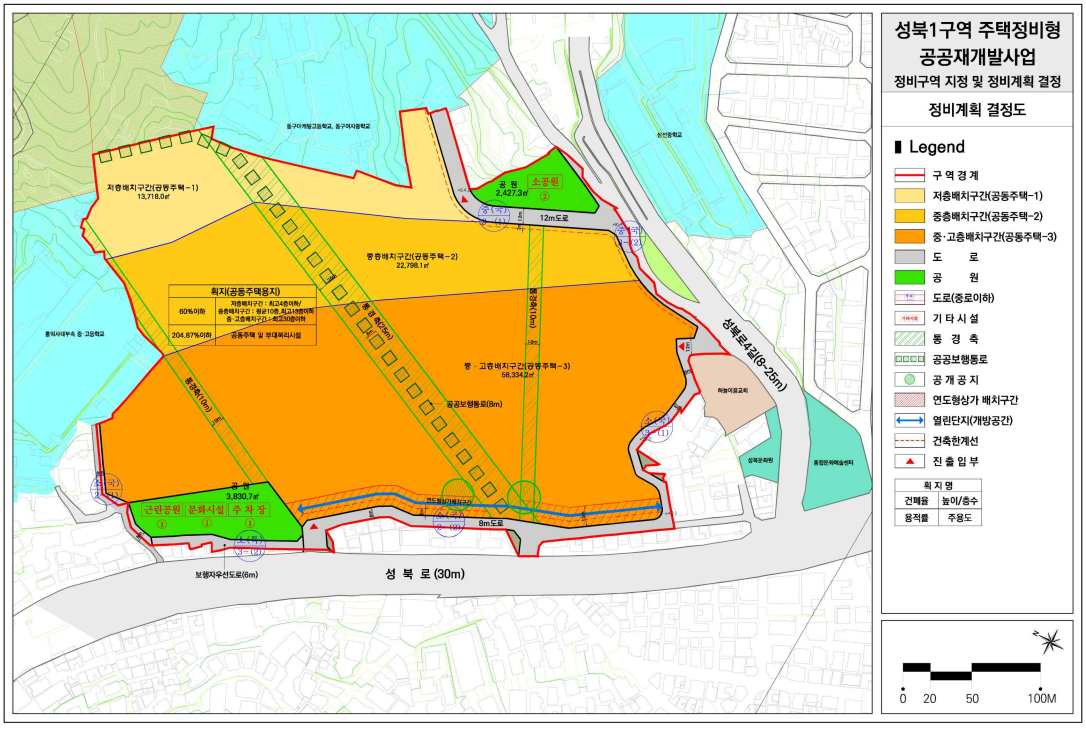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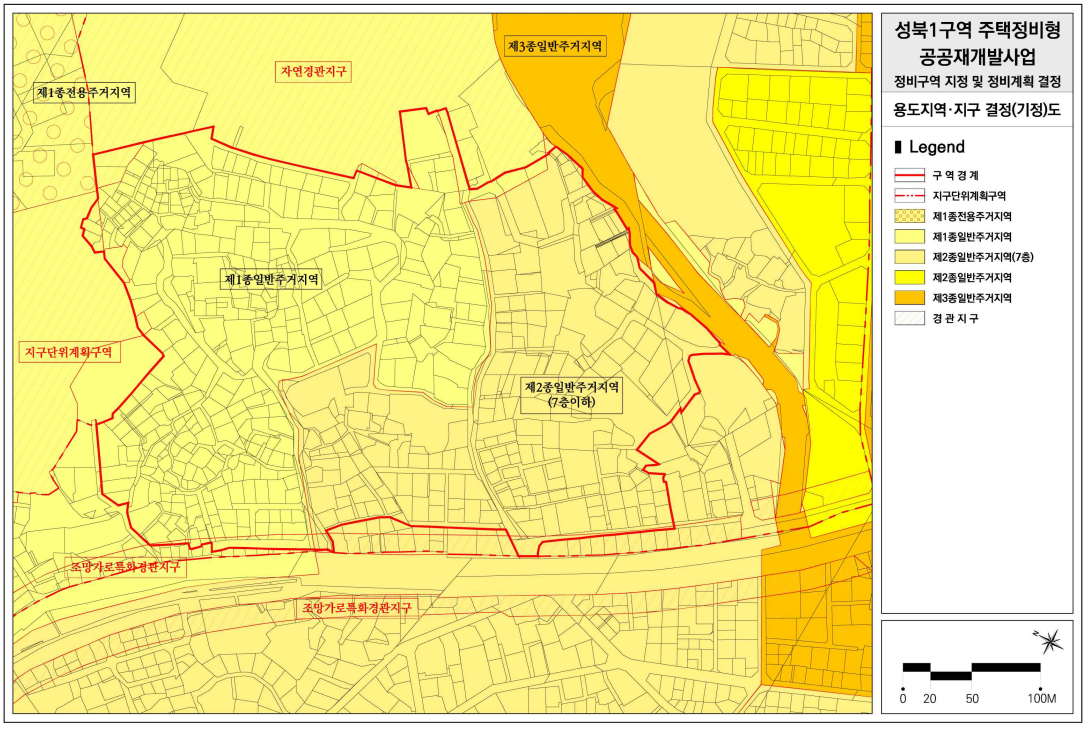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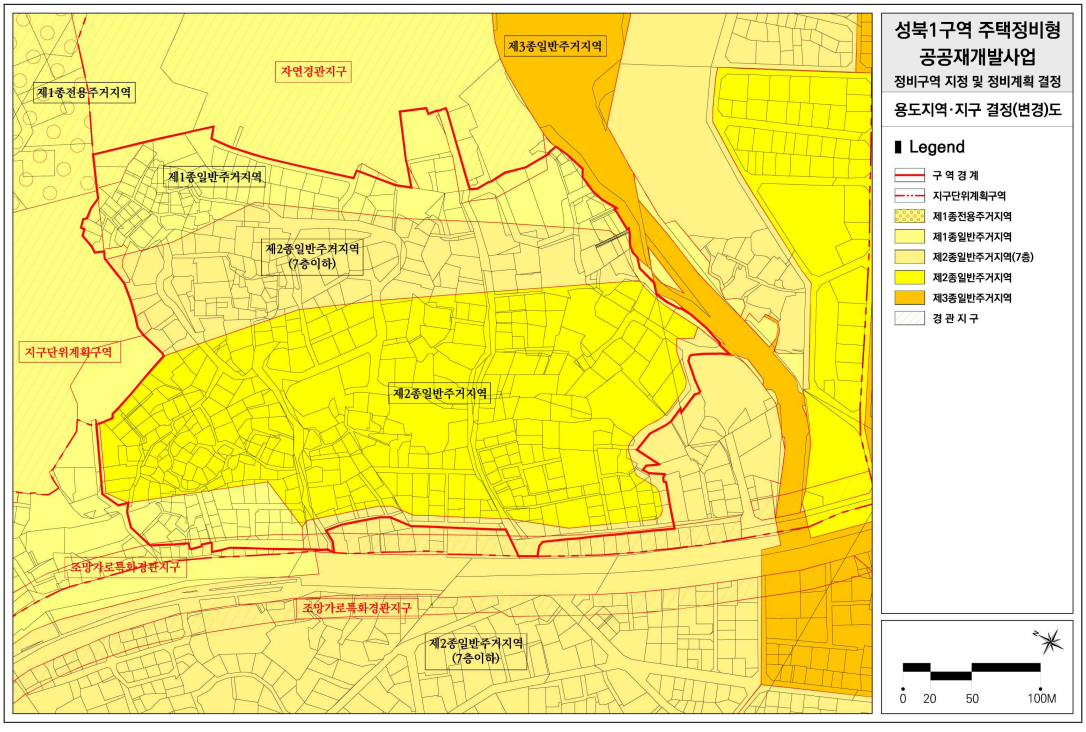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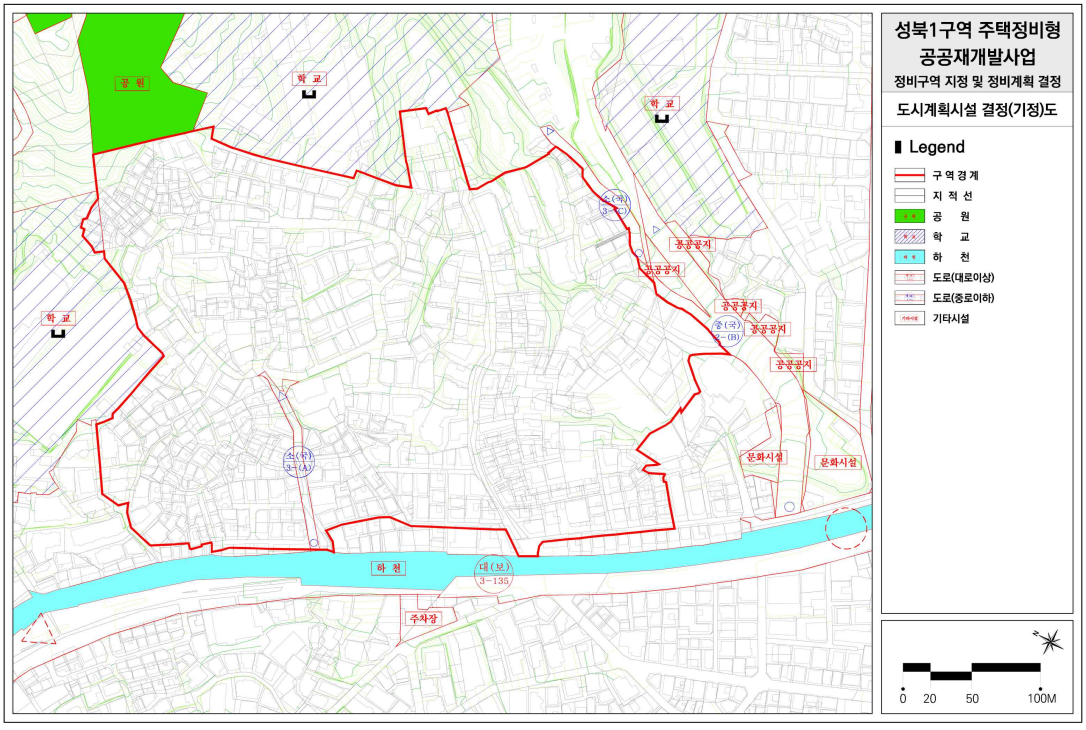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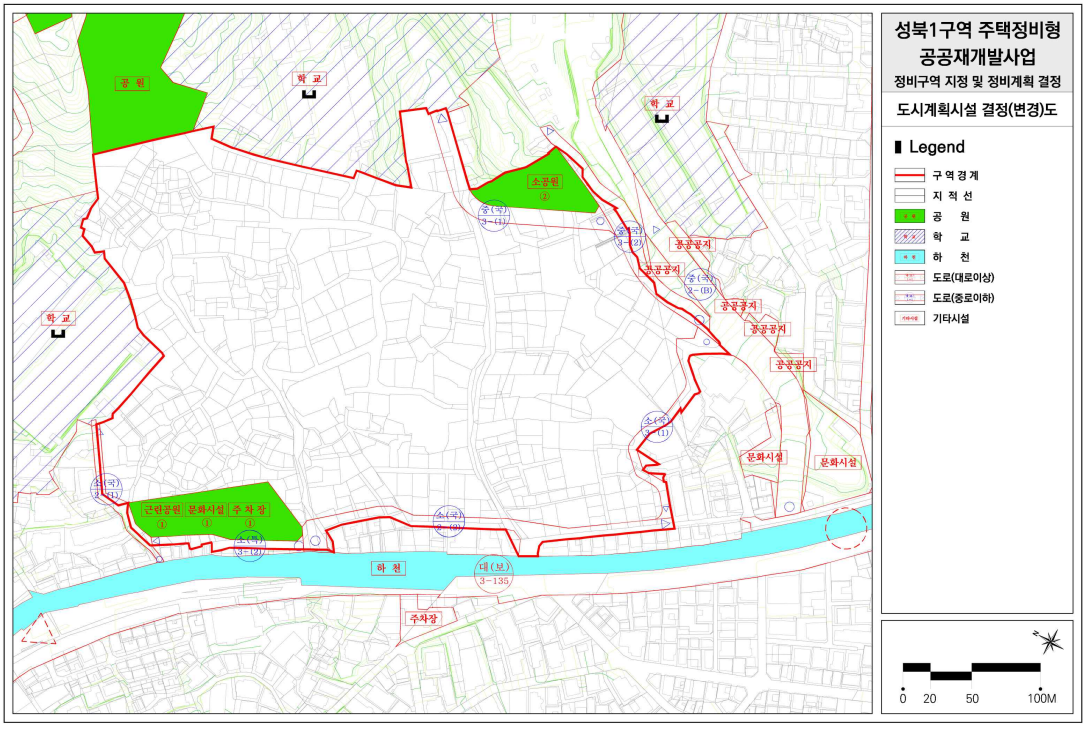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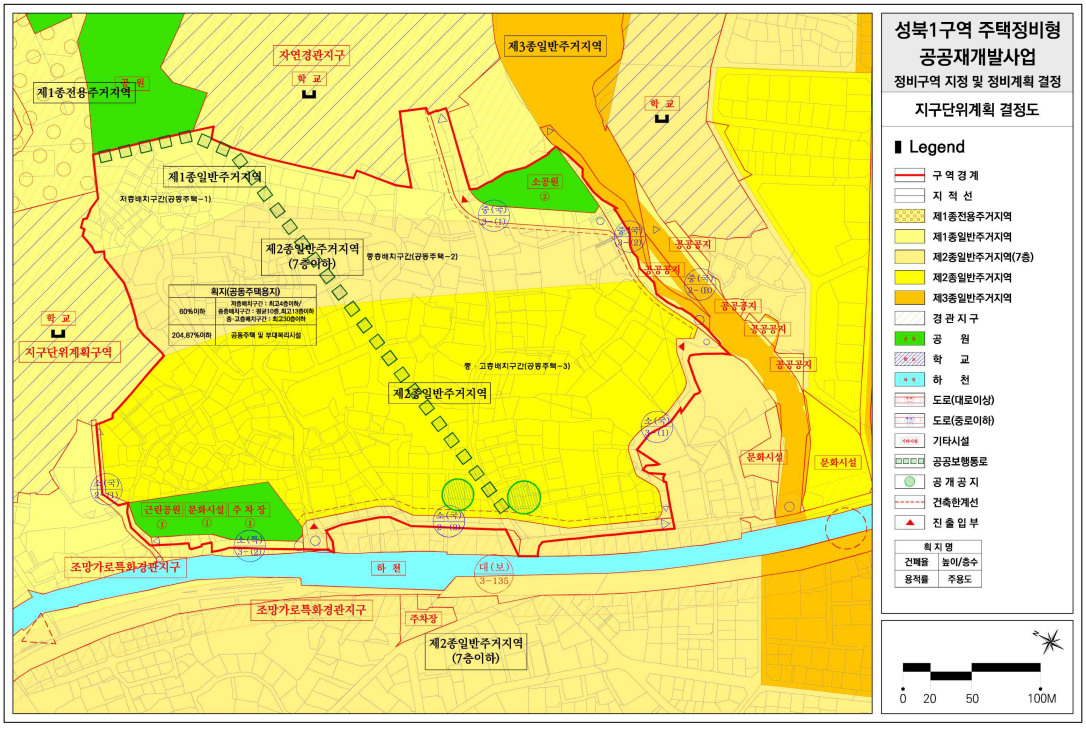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67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소재지
1	주식회사 제이에이치 솔루션	제6110000-20-2024-00015호	’24.09.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35, 1동 17층 1701~1703호
2	주식회사 리드원엔지니어링	제6110000-20-2024-00016호	’24.09.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15, 가산하우스디와이즈타워 1013~101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698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04-005636)	㈜시스테크 (107-87-47966)	박성진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37, 1206호 (상암동, 디엠씨산학협력연구센터)	2024. 9.2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02-2133-7914) 또는 토지관리과(☎02-2133-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03호

도시계획시설(공공도서관) 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실시계획(안)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74호(2007.3.22.)로 정비구역(가재울뉴타운제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대문구 고시 제2007-92호(2007.9.4.)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5호(2014.4.3.)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도서관)사업 실시계획(안)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오니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서울특별시 문화시설과 ☎ 02-2133-4229)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개요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47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도서관 :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건립)사업
3) 사업시행지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3,486.8㎡(지목: 대)
- 건축규모 : 9,109㎡(지하1층/지상5층)
- 용 도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5) 공사 착수예정 및 준공예정일 : 2024년 8월 ~ 2027년 2월(착공일로부터 30개월)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18:00)

다.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시설과(☎02-2133-422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1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주)지정이앤씨]

소방시설업 관련법령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해당 소방시설업체로 통보하여야 하나 현재 영업소재지 불명 및 대표자 연락두절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4. 10. 4.(금) ~ 2024. 10. 18.(금)

2.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6">행정처분(2차 – 영업정지3개월)</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 명</td><td colspan="5">대표 박동진 [(주)지정이앤씨 – 전문소방시설공사업]</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1길 81, 4층(종암동, 성은빌딩)</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6">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6">행정처분(2차 – 영업정지3개월)</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6">○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2.개별기준 나목 2차
– 예방과-7759(2024.9.2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청문 계획 보고[(주)지○○○○]”</td></tr>
<tr><td rowspan="5">청문실시</td><td>기관명</td><td>성북소방서</td><td>부서명</td><td>예방과</td><td>담당자</td><td>박사랑</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td><td>전화 번호</td><td>02-6981-7292</td></tr>
<tr><td>일 시</td><td colspan="3">2024년 11월 1일(금) 14:00</td><td>장소</td><td>성북소방서 3층 담소방</td></tr>
<tr><td rowspan="2">주재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3">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장</td></tr>
<tr><td>성 명</td><td colspan="3">박남진</td></tr>
</table>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섬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문회 미참석 또는 의견서 미제출시 예정된 처분인 (행정처분 2차 – 영업정지3개월)가 청문실시일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서식 7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8>

기피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8>

청문공개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공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7.28>

증거조사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증명할 사실		
	증거조사의 방법		

「행정절차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7. 11.>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7. 11.>

문서 [ ] 열람 [ ] 복사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① 처분 또는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서의 열람(복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위 처분 또는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복사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복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13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10. 5. ~ 2024. 10. 19.(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연번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1	양지종합건설㈜ (임종희)	건축공사업 13-0147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3, 3층(압구정동, 뉴타운빌딩)	○ 실태조사 자료 제출 미이행(2022년 자본금 및 기술인력) - 2022년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하여 2024.5.24자 영업정지(시정명령/지시불응(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 처분 종료일인 2024.6.23.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말소	2024.10.21.(월) 11: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변호사 한민구	법 제83조 제8의2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14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19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	75더1281	남*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4-08-02 14:54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4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2	01너8195	김*덕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4-08-04 20:01	중랑04_사가정역(사가정로) 2차로	〃	〃
3	70도5219	주-*리에프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4-08-05 15:07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3차로	〃	〃
4	04우6820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4-08-09 16:36	마포01_강변북로(서울) 5차로	〃	〃
5	80저4403	유*열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08-16 13:45	인천광역시 천상교앞 계양구 서운동 143-22(2차로)	〃	〃
6	04더8181	주-*솔에이치에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4-08-18 17:19	노원05_화랑로(화랑대역) 5차로	〃	〃
7	49부1279	신*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4-08-21 16:19	광진04_잠실대교북단(자양로) 1차로	〃	〃
8	09오5219	송*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4-08-22 10:29	강남08_수서IC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9	03보4145	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4-08-26 21:09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3차로	〃	〃
10	01모1993	㈜*엔에스씨오알피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4-08-27 11:05	인천광역시 간석사거리 3차로	〃	〃
11	01버6507	김*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4-08-27 09:33	노원04_삼육대입구 2차로	〃	〃
12	04러3985	LIN *ING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4-08-27 10:15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4차로	〃	〃
13	38서9258	정*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4-08-28 12:38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초등학교 화도방면 1차로	〃	〃
14	01보6885	㈜*조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4-08-29 12:53	마포01_강변북로(서울) 5차로	〃	〃
15	28부5917	임*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4-08-30 17:42	광진01_동일로(군자교 지하차도) 2차로	〃	〃
16	34소5609	유한회사 *스유엑스씨티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4-08-30 17:36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중구 운서동 2818(4차로)	〃	〃
17	01너3943	서*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4-08-31 10:53	노원05_화랑로(화랑대역) 2차로	〃	〃
18	02도1970	현*캐피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2024-08-31 10:27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1차로	〃	〃
19	05우8927	채*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4-08-31 20:53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2차로	〃	〃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김석근(Tel 02-2133-3659)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핸드폰번호 :(010-9615-3659)로 사진파일을 문자 접수하셔도 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15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1회차 위반 경고안내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2건)
경고 대상차량 차주분께서는 본 고지일로부터 2024년 10월 31일(목)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24년 10월 31일(목)이후에는 위반시 월 1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를 완료하거나,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여 차량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1	32라8486	박*혁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4-08-20 13:19	금천01_가마산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	33머4461	강*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4-08-25 10:57	경기도 부천시 소사고교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 공 고 기 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나. 본 경고조치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김석근(Tel 02-2133-3659)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핸드폰번호 - (010-9615-3659)로 사진파일 문자접수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16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4. 10. 4. ~ 2024. 10. 18.(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 기간 :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간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6건																
1	20224589	45구4309	Model Y Long Range	000047339214201 20240625002983	천호역	0001:00	2024-05-14	19:21	2024-05-14	20:21	700	0	700	글*리*이*퍼*	서울특별시광진구광나루로556	이사불명	2024-10-21
2	20224658	07호7037	EV6	000047339214201 20240725003207	사당노외	0004:34	2024-06-01	10:01	2024-06-01	14:35	8,600	0	8,600	㈜*구*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일로99	수취인불명	2024-10-21
3	20225007	170하4420	BMW 520d Luxury	000047339214201 20240725002388	마포유수지	0003:28	2024-06-17	17:43	2024-06-17	21:11	9,200	0	9,200	안*진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66길21	폐문부재	2024-10-21
4	20225011	125호8647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 20240725002341	훈련원공원	0000:25	2024-06-18	17:30	2024-06-18	17:55	1,300	0	1,300	한*우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40길11	폐문부재	2024-10-21
5	20225029	154호8850	G80	000047339214201 20240725002167	마포유수지	0001:05	2024-06-19	11:22	2024-06-19	12:27	2,800	0	2,800	구*서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6-16	이사불명	2024-10-21
6	20225234	253나2881	BMW X1 xDrive20i	000047339214201 20240725000927	동대문	0005:15	2024-06-03	06:09	2024-06-03	11:24	11,300	0	11,300	주*회*엠*오*퍼*	서울종로구종로56길42-10	폐문부재	2024-10-2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17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따라 부과한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재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한 사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4. ~ 2024. 10. 17. (14일간)

3. 안내사항
   - 납부기한 : 2024. 10. 31.
   - 공고대상자는 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운영팀(031-960-0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대상 : 따로붙임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	봉안	19940602-006	12-20-13388	정문효	정*환	2024-08-26 13:0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00,000
2	봉안	19940604-002	11-17-09840	한상만	한*권	2024-08-27 12:4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백범로45길	100,000
3	봉안	19940606-004	11-17-09839	김형국	김*윤	2024-08-26 10:1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래미안상도3차아파트	100,000
4	봉안	19940607-005	11-18-09927	정갑철	정*식	2024-08-27 10:1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둔촌동	100,000
5	봉안	19940616-007	12-20-13393	이강훈	이*재	2024-08-27 09:2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광평로10길	180,000
6	봉안	19940627-008	11-18-09945	김춘희	김*익	2024-08-27 11: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제주 서귀포시 사계남로84번길	100,000
7	봉안	19960901-008	11-08-03744	윤상례	김*태	2024-08-27 10:0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미라2길	180,000
8	봉안	19990602-011	41-01-07441	안종원	안*식	2024-08-27 12:5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198번길	100,000
9	봉안	19990602-016	41-01-07446	유남상	유*옥	2024-08-27 09:5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안성시 대학1길	100,000
10	봉안	19990602-018	41-01-07448	남익남	남*우	2024-08-27 14: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신림9동	100,000
11	봉안	19990602-044	41-01-05895	강채영	이*길	2024-08-27 09:4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0,000
12	봉안	19990603-028	41-01-07495	권왈주	권*원	2024-08-27 09:5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42번길	180,000
13	봉안	19990604-013	41-01-07510	이금순	전*웅	2024-08-27 11:3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서구 솔빛로	180,000
14	봉안	19990604-017	41-01-07514	강규수	오*석	2024-08-27 11:2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0,000
15	봉안	19990605-004	41-01-07522	정석금	김*길	2024-08-26 11:36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00,000
16	봉안	19990605-022	41-01-07540	전영자	이*용	2024-08-27 13:5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오안여내길	100,000
17	봉안	19990605-023	41-01-07541	윤무영	김*일	2024-08-27 11:5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양천로62길	9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8	봉안	19990606-021	41-01-07561	김경만	최*묵	2024-08-27 13:0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면목로	100,000
19	봉안	19990606-024	41-01-07564	유공술	박*규	2024-08-26 11:04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성동구 살곶이길	50,000
20	봉안	19990607-005	41-01-07569	최병훈	진*호	2024-08-27 09:1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374번길	180,000
21	봉안	19990608-002	41-01-07592	박병태	김*수	2024-08-26 14:50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80,000
22	봉안	19990608-006	41-01-07596	진윤선	류*웅	2024-08-26 08:35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관악구 신림7동	100,000
23	봉안	19990609-002	41-01-07615	박금분	최*기	2024-08-27 13:2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백운길	180,000
24	봉안	19990609-008	41-01-07621	황경화	박*하	2024-08-27 11:4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11길	100,000
25	봉안	19990609-016	41-01-07628	최수용	박*식	2024-08-27 13:1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도농로	180,000
26	봉안	19990610-001	41-01-05999	장문석	박*식	2024-08-26 09:0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27번길	100,000
27	봉안	19990610-013	41-01-07646	이정자	전*	2024-08-27 09:4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장위로11가길	100,000
28	봉안	19990610-028	41-01-07661	김병준	정*영	2024-08-27 11: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180,000
29	봉안	19990611-003	41-01-07668	박효일	유*명	2024-08-27 15:1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서초구 언남14길	100,000
30	봉안	19990611-022	41-01-06653	전세헌	김*자	2024-08-27 11:5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효창목5길	180,000
31	봉안	19990611-027	41-01-07689	정성찬	김*남	2024-08-26 11:33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45,000
32	봉안	19990612-008	41-01-07700	송보부	손*식	2024-08-27 14:0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동남로2길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33	봉안	19990612-021	41-01-07713	박억석	이*성	2024-08-26 12:37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마포구 동교동	50,000
34	봉안	19990613-016	41-01-07738	김영득	최*오	2024-08-27 09:0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180,000
35	봉안	19990614-012	41-01-07756	손영철	온*철	2024-08-26 10:58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인천 부평구 부평6동	45,000
36	봉안	19990614-014	41-01-07759	유인원	최*배	2024-08-26 13:15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100,000
37	봉안	19990614-021	41-01-07766	이형기	남*헌	2024-08-27 11:0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군포시 곡란로	90,000
38	봉안	19990615-002	41-01-07771	최승호	김*수	2024-08-27 09:5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갈현로23길	100,000
39	봉안	19990615-007	41-01-07776	방복련	안*선	2024-08-27 10:1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32길	100,000
40	봉안	19990615-017	41-01-07786	최순용	이*현	2024-08-27 14:0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4길	180,000
41	봉안	19990616-011	41-01-07798	남기호	김*경	2024-08-27 11:09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180,000
42	봉안	19990616-012	41-01-07799	고성녀	김*문	2024-08-27 10:0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겸재로7길	100,000
43	봉안	19990616-016	41-01-07803	박태순	신*훈	2024-08-27 09:3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서구 승학로287번길	100,000
44	봉안	19990616-018	41-01-07805	이용우	한*석	2024-08-27 13:0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290번길	100,000
45	봉안	19990616-020	41-01-07807	김갑윤	현*주	2024-08-27 13:3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충남 아산시 고불로	180,000
46	봉안	19990617-021	41-01-07840	김영기	노*호	2024-08-27 11:5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전북 고창군 교흥교촌길	25,000
47	봉안	19990617-025	41-01-07784	신동화	박*건	2024-08-27 10:0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대전 중구 성산로19번길	180,000
48	봉안	19990618-009	41-01-07858	전화명	이*배	2024-08-26 13:33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남 창원시 소답동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49	봉안	19990618-027	41-01-07873	김명순	박*열	2024-08-26 13:52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강원 동해시 감추5길	180,000
50	봉안	19990620-001	41-01-07894	노점룡	문*호	2024-08-27 11:2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100,000
51	봉안	19990620-005	41-01-07898	양정옥	최*규	2024-08-23 08:32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00,000
52	봉안	19990621-002	41-01-07918	신씨	정*희	2024-08-26 11:41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은평구 신사2동	100,000
53	봉안	19990621-015	41-01-07931	박문수	전*용	2024-08-26 08:15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송파구 송이로31길	100,000
54	봉안	19990621-016	41-01-07936	윤광희	윤*진	2024-08-26 13:06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강원 정선군 정선로	100,000
55	봉안	19990622-005	41-01-07945	문찬식	박*자	2024-08-27 12: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100,000
56	봉안	19990622-009	41-01-07949	최기만	김*환	2024-08-27 13:3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3길	180,000
57	봉안	19990622-016	41-01-07956	박연욱	곽*화	2024-08-29 09:27	미배달 기타(반송함)(반송 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100,000
58	봉안	19990623-012	41-01-07980	전덕흥	김*무	2024-08-26 09:09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20길	180,000
59	봉안	19990623-050	41-01-08012	윤세진	김*태	2024-08-27 12:2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44번길	180,000
60	봉안	19990624-023	41-01-08035	김광철	정*섭	2024-08-27 11:0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구 다산로36나길	100,000
61	봉안	19990624-024	41-01-08036	김흥수	강*영	2024-08-27 10:1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58번길	100,000
62	봉안	19990625-001	41-01-07954	박정숙	윤*의	2024-08-27 10:1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서초구 태봉로2길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63	봉안	19990626-024	41-01-08086	육진무	조*정	2024-08-26 10:49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35번길	100,000
64	봉안	19990627-001	41-01-06929	김유제	김*철	2024-08-27 1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자양번영로4길	50,000
65	봉안	19990627-003	41-01-08093	최영희	이*호	2024-08-27 11:0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63길	100,000
66	봉안	19990627-021	10-12-02109	홍화숙개장	김*홍	2024-08-28 11:2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하남시 아리수로	90,000
67	봉안	19990627-028	11-03-02783	박일순	홍*철	2024-08-27 10:5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96번길	50,000
68	봉안	19990628-036	11-21-10493	이영분	김*미	2024-08-27 13:2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10번길	180,000
69	봉안	19990629-008	51-01-00008	신영	윤*배	2024-08-27 12:2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둘레19길	180,000
70	봉안	19990629-017	51-01-00016	조동임	박*국	2024-08-27 10:1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지양로14길	25,000
71	봉안	20010807-007	63-01-22200	정옥순	이*례	2024-08-26 10:14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강서구 강서로68길	200,000
72	봉안	20020104-025	41-01-01440	홍사덕	전*환	2024-08-27 13:1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9길	480,000
73	봉안	20021120-033	73-01-15817	홍훈	이*성	2024-08-26 10:11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10길	200,000
74	봉안	20040604-003	73-04-23689	김영두	김*숙	2024-09-12 17:09	미배달 기타(반송함)(반송불요, 1개월 보관)	전남 순천시 삼산로	25,000
75	봉안	20040605-002	73-04-23691	민병옥	이*성	2024-08-26 10:39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인천 부평구 장제로257번길	25,000
76	봉안	20040606-006	73-04-23698	박은경	이*훈	2024-08-27 14:0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상원10가길	75,000
77	봉안	20040607-005	73-04-23703	정주일	임*명	2024-08-27 11:1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75,000
78	봉안	20040609-001	73-04-23710	전성대	김*영	2024-08-27 11:0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동두천시 못골로49번길	7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79	봉안	20040610-004	73-04-23717	이갑종	백*민	2024-08-27 11:1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75,000
80	봉안	20040610-006	73-04-23719	이윤이	문*모	2024-08-27 11:5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동일로100길	75,000
81	봉안	20040612-004	73-04-23727	이정숙	염*석	2024-08-27 08:5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충남 아산시 매곡로	75,000
82	봉안	20040618-003	73-04-23740	심영숙	신*희	2024-08-27 11:2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연북로	25,000
83	봉안	20040620-002	73-04-23745	유봉만	정*호	2024-08-27 10:1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1길	75,000
84	봉안	20040620-006	73-04-23748	신금순	윤*희	2024-08-27 11:4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은성로	75,000
85	봉안	20040621-001	73-04-23750	김경숙	조*구	2024-08-27 11:0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9길	75,000
86	봉안	20040623-003	73-04-23759	문윤호	정*석	2024-08-27 10:3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부평구 부일로9번길	25,000
87	봉안	20040628-003	73-04-23771	신현찬	노*호	2024-08-26 10:3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인천 남동구 구월로336번길	75,000
88	봉안	20040628-006	73-04-23773	신현섭	이*성	2024-08-26 13:04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경기 파주시 한마음2길	75,000
89	봉안	20090605-001	71-07-05181	정성만	표*영	2024-08-28 10:0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44길	75,000
90	봉안	20090606-003	71-07-05259	양인석	유*미	2024-08-26 11:52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경기 평택시 근내1길	75,000
91	봉안	20090611-003	71-08-05416	강경심	박*자	2024-08-27 11:2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대구 서구 북비산로45길	75,000
92	봉안	20090618-002	71-08-05585	정소례	조*경	2024-08-27 10: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국회단지5길	75,000
93	봉안	20090621-003	71-08-05711	정호상	최*숙	2024-08-27 10:1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8길	75,000
94	봉안	20090623-001	71-08-05811	김옥분	이*오	2024-08-27 10:5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77길	75,000
95	봉안	20140604-009	63-01-18485	이정식	박*자	2024-08-26 10:04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은평구 연서로	5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96	봉안	20140608-002	63-01-19207	표창혁	양*승	2024-08-27 11:0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도봉로177길	50,000
97	봉안	20140612-003	63-01-20029	안복자	정*호	2024-08-27 10:1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35길	25,000
98	봉안	20140616-003	63-01-20243	정정순	이*권	2024-08-27 14:02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25,000
99	봉안	20140617-006	63-01-20314	이창기	김*훈	2024-08-27 10:5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802번길	25,000
100	봉안	20140621-002	63-01-20702	강금엽	임*빈	2024-08-26 11:4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휴암로635번길	50,000
101	봉안	20140629-005	63-01-21351	이수연	최*훈	2024-08-27 12:53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25,000
102	봉안	20180403-002	66-01-31690	김영수	김*영	2024-08-27 11: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131번길	75,000
103	봉안	20190605-011	60-01-28447	이병태	홍*희	2024-08-27 11:5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77번길	25,000
104	봉안	20190607-002	60-01-28479	임귀애	임*호	2024-08-27 11:0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57번길	25,000
105	봉안	20190609-001	60-01-28528	남양순	윤*건	2024-08-27 10:5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38가길	25,000
106	봉안	20190611-012	60-01-28591	정태식	이*환	2024-08-26 09:5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50,000
107	봉안	20190613-010	60-01-28668	김순이	김*기	2024-08-26 11:38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경기도 시흥시 봉우재로11번길	25,000
108	봉안	20190614-002	60-01-28679	지말례	김*수	2024-08-27 10:3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24길	25,000
109	봉안	20190614-006	60-01-28693	김건수	김*례	2024-08-27 11:4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25,000
110	봉안	20190616-006	41-01-03997	최범무	이*호	2024-08-26 11:4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25,000
111	봉안	20190616-009	60-01-28751	김시현	양*원	2024-08-27 12:4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0길	25,000
112	봉안	20190624-008	11-23-10682	박정혁	조*숙	2024-08-27 10:5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9길	2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13	봉안	20190625-011	61-01-03766	임민호	한*준	2024-08-27 10:4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24번길	25,000
114	분묘	19940602-006	19010171	심영숙	이*우	2024-08-27 10:1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성내동	181,500
115	분묘	19940604-008	19010188	이용규	현*조	2024-08-27 11:0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27다길	181,500
116	분묘	19940607-001	19010195	김홍래	윤*원	2024-08-29 12:16	미배달 기타(반송함수거)(반송불요, 1개월 보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181,500
117	분묘	19940608-002	19010199	김삼래	최*용	2024-08-27 12:5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계양구 병방동	181,500
118	분묘	19940608-005	19010202	이창섭	곽*호	2024-08-26 14:09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경기 평택시 중앙2로	181,500
119	분묘	19940608-006	19010203	이복재	강*규	2024-08-27 11:5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충남 당진군 송악면	181,500
120	분묘	19940610-005	19010216	이복명	백*순	2024-08-27 13:0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강원 춘천시 영서로	181,500
121	분묘	19940611-001	19010217	홍승우	소*성	2024-08-27 10:4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5길	181,500
122	분묘	19940611-004	19010220	송왈현	김*호	2024-08-27 09:2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181,500
123	분묘	19940616-005	19010250	박명동	김*재	2024-08-27 11:2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62길	181,500
124	분묘	19940617-003	19010252	이만종	이*우	2024-08-26 14:08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경기 안성시 신계길	181,500
125	분묘	19940618-003	19010258	현능재	현*조	2024-08-27 09: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4길	181,500
126	분묘	19940618-006	19010261	윤명천	윤*원	2024-08-26 11:42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관악구 원신길	181,500
127	분묘	19940620-003	19010271	유정월	최*용	2024-08-26 09:0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옻우물로 3	181,500
128	분묘	19940625-006	19010303	박은순	곽*호	2024-08-27 16:2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81,5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29	분묘	19940626-008	19010314	변인순	강*규	2024-08-27 12:31	미배달 기타(반송함발견)(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광명시 도덕로	181,500
130	분묘	19940628-012	2010159	강주연	백*순	2024-08-27 12:1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48번길	228,250
131	분묘	19990622-003	18190077	이귀순	소*성	2024-08-26 16:28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충남 아산시 염치로63번길	137,500
132	분묘	19990623-002	18190078	김성준	김*호	2024-08-26 11:16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22길	137,500
133	분묘	19990623-003	18190079	이왕주	이*집	2024-08-26 12:1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137,500
134	분묘	19971114-001	11111835	김옥경	김*재	2024-08-28 11:3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784번길	141,6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23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96(2023.1.19.)호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되었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행정처분 재개 대상 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처분내용	행정처분 재개 내용	재개 사유
주식회사 예일기술단 건축사사무소 (舊 ㈜삼호기술단건축사사무소) (2021-14)	임수현, 한충국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잔여기간 ' 24.11.01.~' 25.02.21. *기 정지기간 210일 제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2023구합17599) 원고패소에 따른 효력 재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2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9월)

연번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1	204056	'24. 9. 25.	주식회사 유니디오 (UNIDIO.Co.Ltd) 박상훈 (110111-6727220)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30, 에이스하이테크시티3 11층 1104호 (양평동3가)
2	204055	'24. 9. 25.	주식회사 에스텍에이스 이현성 (110111-1827819)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07, 백영빌딩 4층 (신사동)
3	204054	'24. 9. 25.	주식회사 한결기술단 신웅철 (110111-8398954)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28길 72, 주연빌딩 4층 (미아동)
4	204053	'24. 9. 24.	주식회사 한창기전 임창순 (110111-216304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43, 엘동 901호 (구로동)
5	204052	'24. 9. 24.	주식회사 로딕스 이승우 (110111-3668435)	서울시 성동구 상원4길 6-1, 태양빌딩 3층 (성수동1가)
6	204051	'24. 9. 23.	반디에스앤씨 주식회사 (BANDI S&C Co.,Ltd.) 김봉석 (110111-5293123)	서울시 성동구 상원12길 34, 서울숲에이원센터 908호 (성수동1가)
7	204050	'24. 9. 11.	주식회사 아이피코어 김희정 (110111-7790549)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생각공장당산 씨동 906호 (당산동1가)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8	204049	'24. 9. 11.	대한에프에이시스템 주식회사 강영근 (110111-0562193)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70, 석천빌딩 3층 (삼성동)
9	204048	'24. 9. 06.	주식회사 쓰리에스엔지니어링 정현진 (110111-2396334)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0길 10, 샹제리제센터 비동 402호 (대치동)
10	204047	'24. 9. 05.	주식회사 엠투아이티 신승환 (110111-6111241)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1131, 신목동역 엘티삼보 지식산업센터 501호 (목동)
11	204046	'24. 9. 03.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유광열 (110111-3371989)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18, 10층, 11층(마곡동)
12	204045	'24. 8. 27.	주식회사 비플 이상범 (110111-4242840)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6길 5, 2층 (충무로2가)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18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28호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의 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목적
      - 서울 동남권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혼잡도 완화
      - 위례신도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다. 사업구간: 송파구 위례신도시~강남구 신사동
   라. 연장: 14.7km(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년(시운전기간 포함)
   바. 사업추진방식: 위험분담형(BTO-rs)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사.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나.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라. 사업제안자는 최소운영수입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마. 사업제안자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바. 사업제안자는 주무관청에 건설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건설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음.
   사. 건설출자자 지분율의 합을 5%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함.
   아.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는 없음.

3.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서울시: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 · 공고)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http://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제3자 제안공고)

4.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가. 질의: 2024.10.14.(월) 17: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접수 및 전화문의는 불가함.)
   나. 답변: 2024.10.29.(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

5. 사업제안서 제출
   가. 일시
      ○ 1단계 평가서류: 2024. 11. 4.(월) 10:00~17:00
      ○ 2단계 평가서류: 2025. 1. 2.(목) 10:00~17:00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서류 접수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
   나. 장소: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6.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PQ)' 평가와 2단계 '기술부문과 가격 및 출자자 부문'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나.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함.

7. 기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정책과(전화: 02-2133-2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ment Number 2024-2728

Announcement of Request for Proposal to Construct and Operate a Wirye-Sinsa Urban Railwa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vites third-party private investors to tender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Wirye-Sinsa Urban Railway pursuant to Article 9 of the Act on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October 4, 2024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 Project Overview
   a. Project Name: Wirye-Sinsa Urban Railway Private Investment Project
   b. Project Purposes
      - to improve access to public transport system and relieve traffic congestion in the southeastern area of Seoul
      -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growth and Improving transit services in Wirye New Town
   c. Sections: Wirye-dong Songpa-gu ~ Sinsa-dong Gangnam-gu
   d. Project Scale: 14.7km (Including 11 stations, 1 rolling stock depot)
   e. Construction Period: 6 years from construction start date (Including trial-run period)
   f. Project Scheme: Build Transfer Operate-risk sharing ("BTO-rs") scheme
   g. Operation Period: 30years from operation start date (Potential offerors may propose the length of the operation period when submitting their project proposals)

2. Project Terms and Conditions
   a. The project proposer should be submitted by a representative of each incorporation or expected incorporation.
   b. If an offeror or offeror's consortium consists of more than five (5) equity investors, three (3) of its largest investors must invest more than 50% of the proposed total equity, and the largest shareholder must invest greater than 25% of the proposed total equity.
   c. The proposed total equity must be more than 15% of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d. The project proposer cannot request a minimum revenue guarantee.
   e. The project proposer cannot bid higher than the public announced project cost.

f. The project proposer cannot bid a construction subsidy for an amount greater than 50% of the public announced project cost.

g. Construction investors must invest more than 5 percent of the proposed total equity.

h. There are no bonus points for the original project proposer

3. Perusal of Request for Proposal ("RFP") documents

a. Published on the website of Seoul Metropolitan City and KDI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 Seoul City: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 KDI PIMAC: http://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4. Q&A about the preparation of The project proposer

a. Question Submission Due Date: Monday, October 14, 2024 at 17:00 (Submission by post and telephone inquiry will not be acceptable.)

b. Response Date: Tuesday, October 29, 2024

5. Project Proposal Submission Date

a. Submission Due Date

- the first stage evaluation documents: Monday, November 4, 2024 between 10:00~17:00
- the second stage evaluation documents: Thursday, January 2, 2025 between 10:00~17:00
- Only offerors who pass the first stage evaluation can submit the second stage evaluation documents.

  * Submission by post will not be acceptable.

b. Place of Submission: Transportation Policy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7th Floor, 15, Deoksugung-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6. Evaluation of Project Proposal and Selection of a Preferred Bidder

a. Project proposals submitted by the offerors will be evaluated in two stages.

- First stage: Pre-Qualification ("PQ")
- Second stage: Evaluation of 'technical sector' and 'the price and investor sector'.

  * Only the project proposer who has passed the first stage evaluation will conduct the second stage evaluation.

b. The offeror who receives the highest score at the second stage of the evaluation will be selected as a preferred bidder.

7. Other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Transportation Policy Divis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ransportation Office at 02-2133-223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29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을 미달한 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사전통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10.4. ~ 2024.10.17.

2. 처분대상 및 내용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04-3-0362	태경상사 (김*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3개월 무실적 (2024.5월~2024.7월)	중도매업 허가취소

3. 처분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 동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호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4. 이의제기 안내
-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담당관 ☎02)2133-4466으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30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헬로인셀덤	서울 후 제2896호	곽경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21길 31, 1층(송파동)	소재지 ('24.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220, 5504동 1003호 (창곡동, 위례더힐5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21길 31, 1층(송파동)
2	인셀덤 살롬대리점	서울 후 제2895호	김희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7가길 44, 5층(사당동)	소재지 ('24.9.1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88, 285동 701호 (상현동, 상현마을 현대성우3차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7가길 44, 5층(사당동)
3	메가후르츠 후암점	서울 후 제1418호	정예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8-1, 2층 인셀덤더빛나라(후암동)	상호 ('24.9.11)	인셀덤더빛나라	메가후르츠 후암점
4	남구로지사	서울 후 제648호	조경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43, 제엘동 4층 413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8차)	소재지 ('24.9.12)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9, 304-1호(에이스테크노타워1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43, 제엘동 4층 413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8차)
5	인셀덤 베네스트 용산본점	서울 후 제2172호	이성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0-11, 2층(한강로3가)	폐업 ('24.8.20)		
6	셀럽인셀덤	서울 후 제1954호	이수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10길 15, 207동 102호(일원동, 상록수아파트)	폐업 ('24.8.31)		
7	오라마 (ORAMA) 인셀덤	서울 후 제2601호	한정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107, 2층 15-1호 (신림동)	폐업 ('24.9.23)		
8	인셀덤 연제	서울 후 제2238호	CUICHUN SHI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0길 32, 301호(광희동2가)	폐업 ('24.9.24)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9	한남인셀덤	서울 후 제1556호	배기웅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46, 1층 116호 (한남동, 한남아이파크)	폐업 ('24.9.26)		
10	위드쉘리	서울 후 제886호	소의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12, 502호 (군자동, 군자빌딩)	폐업 ('24.9.26)		
11	인셀덤 글로벌	서울 후 제2560호	고혜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22길 45, 301호(삼성동)	폐업 ('24.9.2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34호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나. 위 치 : 서울시 행정구역(605..㎢)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4. 10. 4 ~ 2024. 10.18(14일간)
   나. 공개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붙임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붙임서식으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정원도시정책과, 팩스02-2133-1080)로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정원도시정책과(☎02-2133-2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24. 9.

서울특별시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서울시를 공원 속의 도시로 변화시켜 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방향 정립

○ 기후변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

○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공간배분을 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면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공원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제시

○ 서울시의 공원녹지축을 완성하여 생태적 기능 향상과 도시민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고 녹도의 질적 제고 방향 제시

○ 공원녹지에 대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의 기본구상·기본계획·관리 및 이용계획·집행계획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서울시가 지향하여야 할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

○ 물적·공간적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 등의 측면을 포괄하여 서울시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보전·관리·이용의 지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하위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이자, 서울시의 공원녹지 조성 및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침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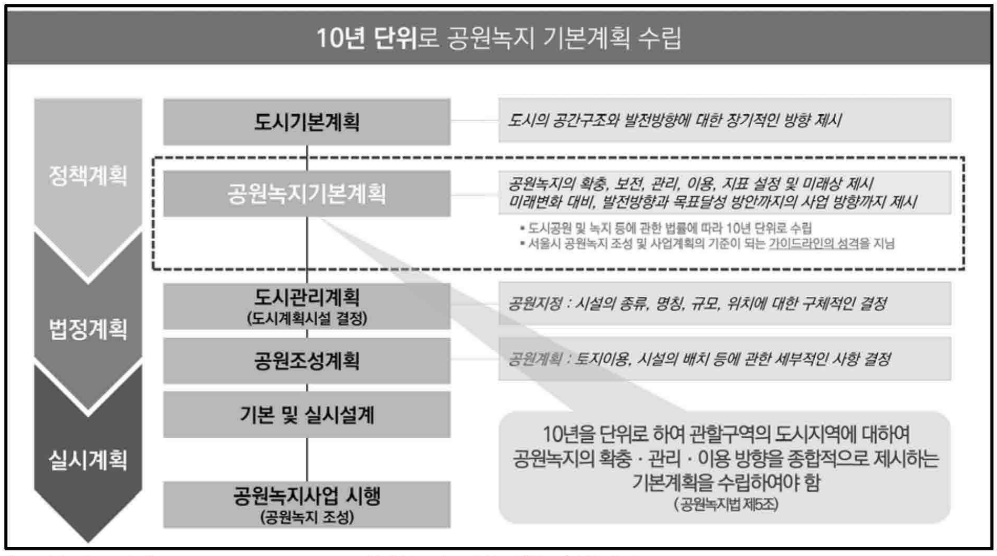

(그림 1 - 1)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체계

1.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별표2의2]』에 의거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라.관광단지의 개발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의2]

1.3 계획의 추진경위

○ 2021. 03.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착수보고

○ 2021. 12.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1차 중간보고

○ 2022. 04.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2차 중간보고

○ 2022. 05. 주민대상 설문조사(1,500명)

○ 2023. 05. 중점녹화지구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2023. 07. : 서울시의회 보고

○ 2023. 08. : 주민공청회

○ 2023. 09.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회의

1.4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나.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다. 시간적 범위

- 1단계 2024년~2030년, 2단계 2031년~2040년

라. 계획시행자 : 서울특별시

마. 승인기관 :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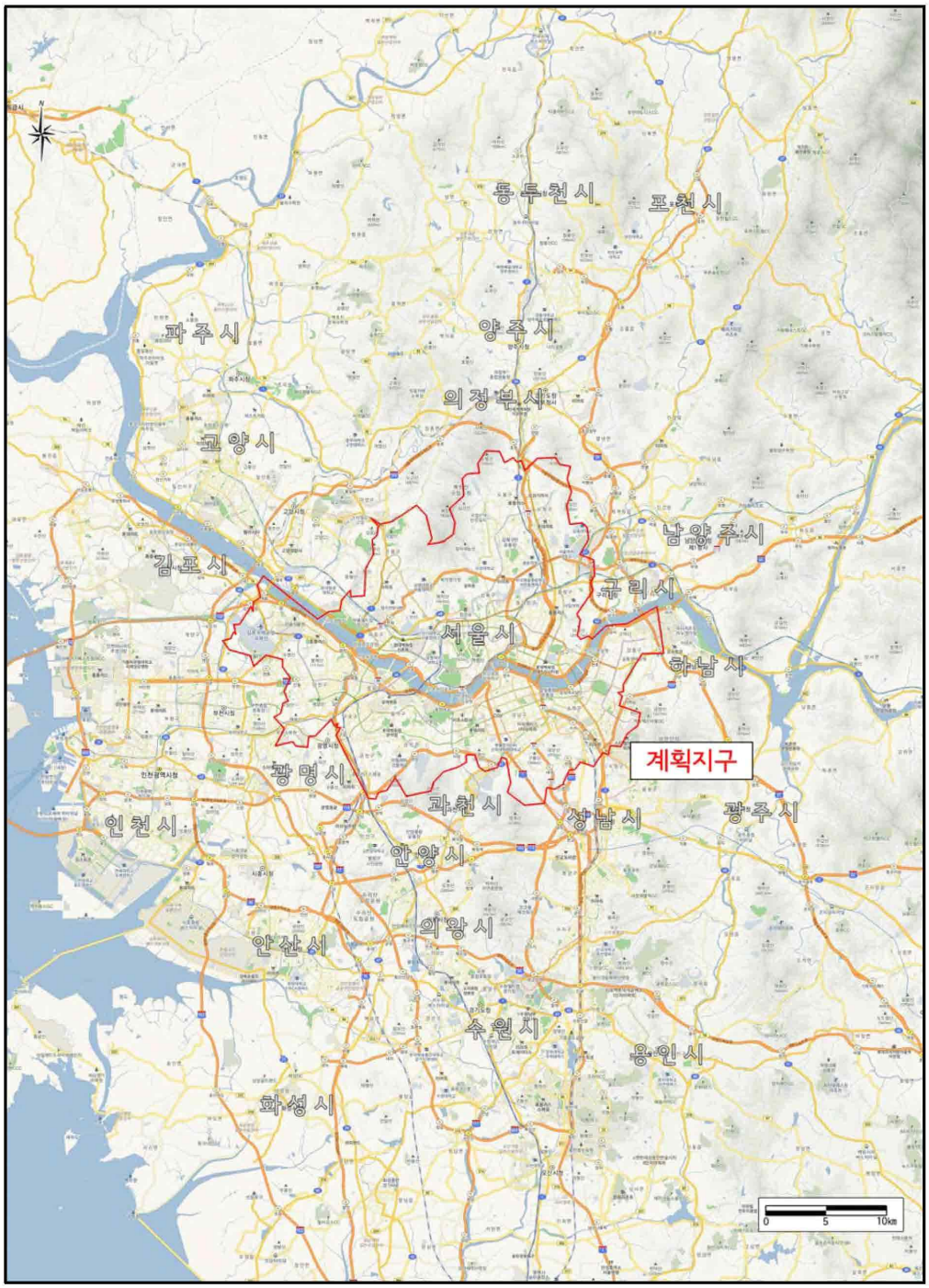

(그림 1 - 2) 계획지구 위치도(서울특별시 전역)

1.5 계획의 주요내용

2040 서울 공원녹지 기본계획
조성방향
공원녹지 이슈
여가형태의 다변화,
정신건강 관심 고조 팬데믹 대비 필요
여가 및 정서적 활동을 위한
공원녹지 제공
도시 과밀화 및
신규부지 확보 여력 부족
입체적·통합적인
공간 발굴
시민의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기후변화, 방재를 위한
공원녹지 기능 강화
목표
맞춤형
녹색 이용
도시의 작은 틈까지
녹색 채움
지속가능한
녹색 회복

광역에서 생활권까지 녹색의 가치를 더하는
녹색우선도시 서울
열섬현상 완화
주거환경 개선 효과
여가공간 제공
우수한 경관형성
도심 생태계 복원
미세먼지 저감
공원 주변 지가상승

2040 서울 공원녹지 기본계획
주요목표
광역에서 생활권까지 녹색의 가치를 더하는
녹색우선도시 서울
광역에서 연결한 그린 네트워크 & 생활권 단위에서 상향식 계획 수립
GOAL 1
맞춤형 녹색 이용
공원유형 다양화
지역과 함께 가는 공원
녹색여가 증진
정신건강 지원
디지털기술 활용
GOAL 2
도시의 작은 틈에도 녹색 채움
공원녹지 복합화
상부 공원화
재개발·재건축과 상생화
중점녹화지구 활성화
GOAL 3
지속가능한 녹색 회복
탄소중립 대응
방재기능강화
미세먼지 저감
생물다양성 증진

< 공원기본계획 기본방향 >

○공원기본계획은 앞서 공원녹지 기본구상 부문에서 설정하였던 계획의 목표 및 지표, 배치의 구상에 따라 공원확충계획과 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공원기본계획은 1단계 2024년~2030년, 2단계 2031년~2040년으로 단계별로 수립하도록 함

○공원기본계획에서는 시설복합화, 상부공원화, 재건축·재개발과의 상생, 초록길 등의 선형자원을 활용하여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공원녹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공원기본계획에서는 서울시 공원의 분류체계를 인문사회의 변화 및 수요의 다양화 등을 고려해 유형의 다양화를 꾀하며 새로운 유형의 공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도록 추진함

기 본 방 향

▌계획목표 및 지표, 배치구상에 따라 공원의 확충 및 정비계획 수립

▌단계별 공원기본계획 수립

▌시설복합화 및 기존 자원 활용을 통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서울시 공원 분류체계 다양화 및 제도적 근거 제공

공 원 확 충	공 원 정 비
• 서울시 미래상, 계획목표, 공원 수요 등에 대응 • 기존 공원녹지 등과 연계 및 확충 •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를 통한 확충 • 시설복합화 등의 기존자원 활용 • 공원 확충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확충	• 기존 공원의 유형 다양화 및 재정비 기준 및 공원 명소화 추진방향 제시 •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 및 정비원칙과 도시공원으로의 변경기준 마련 • 신규 공원 및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공원 유형과 정비 방향 제시 • 탄소중립 및 방재에 이바지하는 공원정비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정비 우선순위 마련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본 정책시행계획에 대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계획의 특성, 지역적 특성 및 환경인자들을 고려하여 설정

○ 금회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서울시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바 평가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전역으로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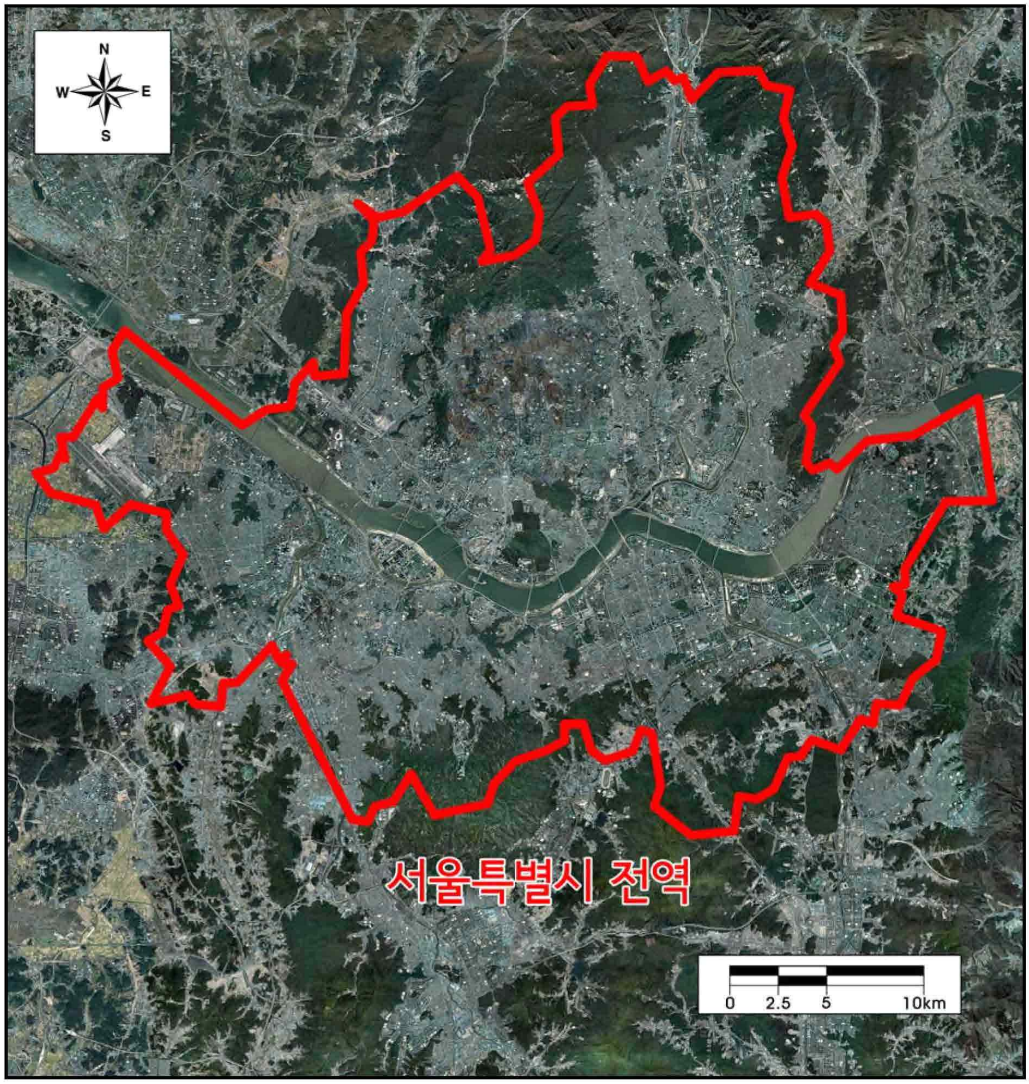

(그림 2 - 1) 검토대상지역 설정도

제3장 대안의 설정 및 검토

○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검토함

○ 대안의 종류는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기타 등 6개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음

< 표 3 - 1 >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①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②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③ 수요·공급	◦ 정책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④ 입 지	◦ 정책의 시행 시기 및 정책 수요의 충족을 위한 단계별 충족 방안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
⑤ 시기·순서	◦ 공간 구상 및 전략, 입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대안 설정 ◦ 입지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한 개발 가용지 설정과 관련된 대안 설정	-
⑥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3.2 대안의 설정

3.2.1 대안의 설정안

○ 본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안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대안1)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대안2)를 비교하였음

< 표 3 - 2 >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구분	대안의 설정	
대안의 종류	공원녹지기본계획 미시행시(No Action)	공원녹지기본계획 시행시(Action)
	대안1	대안2

3.3 대안별 비교 및 검토

가. 계획비교

< 표 3 - 3 > 계획비교 대안검토

구분	미시행(No action)	시행(Action)
	대안 1	대안 2
대안별 개요	◦ 현 상태를 유지함으로 공원녹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이 없음	◦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녹색우선 서울이라는 서울시의 공원녹지 정책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
도시계획 측면	◦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불가 및 공원녹지 조성보다 개발압력이 강한 곳에 대한 대처 불가 ◦ 공원과 유사한 기능의 공간(상부공원 등)에 대한 대처 불가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체계적인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도시시설과의 상생 추구 ◦ 도시계획 시설과의 복합화 및 통합 등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생활밀착형 공원녹지 서비스 제공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최근 화두인 탄소중립에 대한 대처가 어려움 ◦ 공원녹지 훼손 우려	◦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탄소흡수 및 식생환경을 고려한 식재계획 수립과 저탄소배출 소재를 사용한 공원시설 조성, 공원 디자인에 어울리는 재생에너지 도입 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안정성	◦ 공원리노베이션시 통합적인 방향성 및 가이드라인 부재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원녹지 조성이 어려움 ◦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방향성 부재로 공존보다는 인간 위주의 공간계획 수립 가능성이 높음	◦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홍수 등의 재해 및 화재 등에 대한 방재기능 강화 ◦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까지 고려한 녹색여가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공존을 위한 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공원녹지 조성 ◦ 원헬스로 대표되는 종다양성 및 생태성 회복을 위한 공원녹지의 생물다양성 등의 자연친화적인 기능성 강화
선정안		◎
선정사유	◦ 대규모 공사가 수반되는 재개발재건축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양질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전적지 활용 등의 비교적 규모가 큰 공원녹지 조성과 더불어 시설복합화 등의 틈새까지도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생활권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잡히고 체계적인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생활밀착형 공원녹지 서비스제공 및 정신건강 지원 등의 다양한 기능성 부여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대안 2안을 선정	

나. 수단·방법

< 표 3 - 4 > 수단·방법 대안검토

구분	미시행(No action)	시행(Action)
	대안 1(기존 법정 공원유형 유지)	대안 2(공원유형의 다양화)
장·단점	◦ 획일적인 공원조성 현황 유지 ◦ 시설복합화 등의 새로운 유형의 공원형태의 대응 곤란	◦ 지역여건 및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공원유형 결정 ◦ 새로운 유형의 공원을 제도권에 포함시킬 수 있어 양질의 공원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가 가능
선정안		◎
선정사유	◦ 지역현황을 고려하며 다양한 이용수요에 맞춰 공원유형을 결정할 수 있어 이용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공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공원유형을 제도권에 도입하여 양질의 공원으로 조성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제공이 가능	

다. 수요·공급

< 표 3 - 5 > 수요·공급 대안검토

구분	미시행(No action)	시행(Action)
	대안 1(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대안 2(재개발·재건축 상생)
장·단점	◦ 부지선정에 우선권이 없어 양질의 공원녹지 확보 곤란 ◦ 공원녹지 유지관리가 어려움	◦ 주변현황과의 고려 및 녹지축 형성 등을 우선 고려한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이용만족도가 높은 공원녹지 제공 가능
선정안		◎
선정사유	◦ 공원녹지의 신규조성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신규부지 확보에 좋은 기회이며 기존의 면적확보에 더해 공원녹지 조성 위치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원녹지 제공 가능	

제4장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계획의 상위계획과 현황조사를 통하여 대상지역 및 주변 인접지역의 지역특성을 파악한 후 계획시행시 영향이 예상되는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전반에 걸쳐 사업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으며, 환경에 미칠 영향과 중요도가 큰 항목에 관하여는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음

4.1 평가항목

가. 평가항목의 설정 흐름도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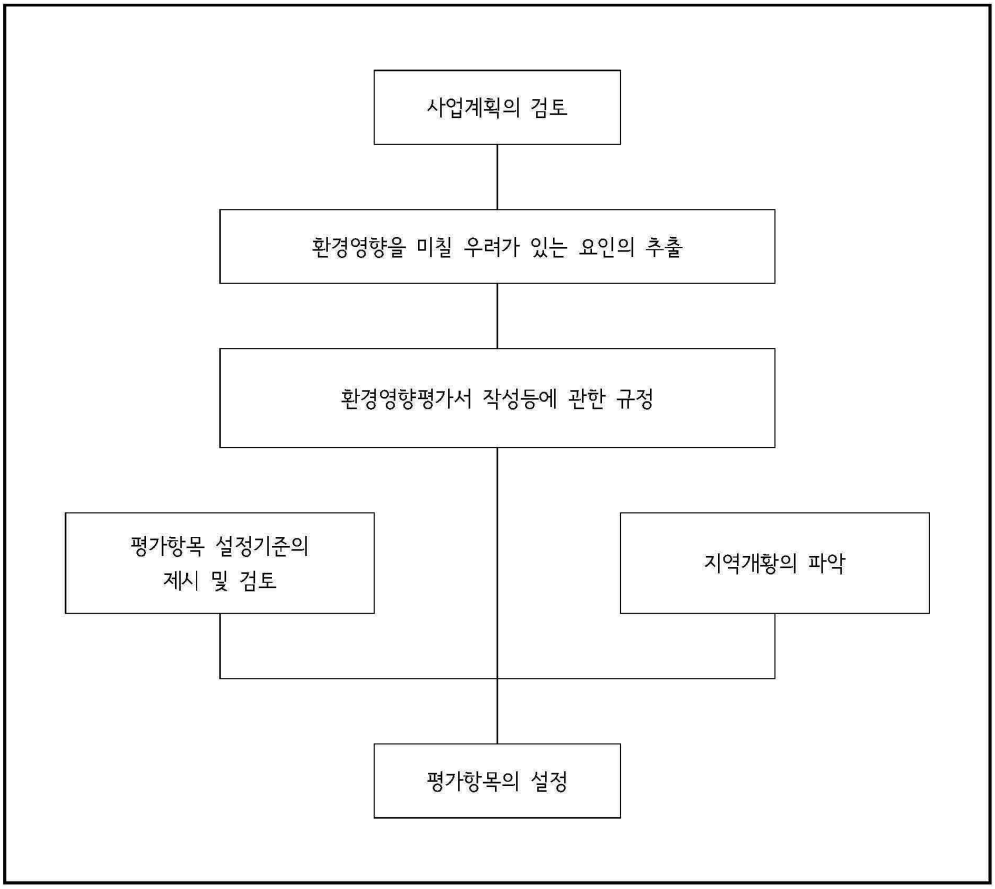

(그림 4 - 1) 평가항목의 설정 흐름도

다. 평가항목 설정(제외)사유

< 표 4 - 1 > 평가항목의 설정(제외)사유

평가항목			선정여부	설정(제외)사유
계획의 적정성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국가환경정책	○	◦ 국가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 여부 검토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 등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한 계획 수립여부 확인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계획목표와 반영내용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 계획목표와 계획 분야별 내용과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검토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	◦ 보호지역 등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검토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 공원녹지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검토
		환경용량의 지속성	○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용량 검토
입지의 타당성[주]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 생태계보전지역 및 보호종 영향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 지형보전가치 높은지역 영향 검토 ◦ 생태축 연결성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 계획수립 시 주변 자연경관에미치는 영향여부 검토
		수환경의 보전	○	◦ 계획수립 시 주변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여부 검토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 대기 및 소음·진동의 환경기준 검토 ◦ 온실가스 저장·흡수량 변화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없음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 자원·에너지 이용 현황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검토
		인구 및 주거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없음
		산업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없음

4.2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 표 4 - 2 >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현황조사 범위	현황조사방법
계획의 적정성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국가환경정책	서울특별시 전역	◦ 기존 관련보고서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서울특별시 전역	◦ 기존 관련보고서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서울특별시 전역	◦ 기존 관련보고서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서울특별시 전역	◦ 기존 관련보고서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서울특별시 전역	◦ 문헌자료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서울특별시 전역	◦ 문헌자료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환경용량의 지속성	서울특별시 전역	◦ 문헌자료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서울특별시 전역	◦ 문헌자료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서울특별시 전역	◦ 문헌자료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 전역	◦ 문헌자료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수환경의 보전	서울특별시 전역	◦ 문헌자료, 통계연보,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서울특별시 전역	◦ 문헌자료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서울특별시 전역	◦ 문헌자료, 통계연보,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서울특별시 전역	◦ 문헌자료, 통계연보,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4.3 평가방법

< 표 4 - 3 > 환경영향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방법(예측·분석기법)
계획의 적정성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국가환경정책	◦ 문헌자료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분석 ◦ 본 계획시행과 관련된 국가환경정책과의 부합여부 검토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 문헌자료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분석 ◦ 국제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여부 검토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문헌자료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분석 ◦ 본 계획시행에 따른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문헌자료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분석 ◦ 계획 목표와 계획의 세부내용 일관성 검토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 문헌자료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분석 등을 통한 공간계획 수립검토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문헌자료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분석 ◦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따른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검토
		환경용량의 지속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용량 등 환경적 요소 고려 여부 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문헌자료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분석 ◦ 생태적 보전가치 높은 지역 및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 여부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문헌자료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분석 ◦ 지질현황, 보전가치 있는 지형지질 현황 등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문헌자료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자료 분석 ◦ 계획시행 시 주변 자연경관에미치는 영향여부 검토
		수환경의 보전	◦ 문헌자료 등을 통한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 등 영향여부 검토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대기 및 소음·진동의 환경기준 조사 ◦ 온실가스 저장·흡수량 변화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폐기물 발생 예상지역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 계획 등에 따른 환경변화 및 개선방안 검토

제5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심의

5.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수렴

○ 본 행정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였음

(1) 협의회 구성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2) 협의회 구성 목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실시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

(3) 협의회의 구성 방법

○ 민간전문가, 협의기관 공무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지방차지 공무원, 주민대표나 시민대표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5.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결과

가. 협의회 개요

○ 계획명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 일시 : 2024.8.28. ~ 2024.9.13.

○ 방법 : 서면심의

○ 위원 : 8명(의견제출자 : 7명)

< 표 5 - 1 > 협의회 위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1	위원장	서울시 정원도시정책과	과장	박○○
2	위원	서울시 정원도시정책과	공원녹지 기획팀장	박○○
3	위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박○○
4	위원	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	서○○
5	위원	환경평가본부 국토정책평가실	선임연구원	사○○
6	위원	건국대학교	교수	주○○
7	위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연구관	박○○
8	위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남○○

나. 협의회 개최문서

서 울 특 별 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요청

1.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3. 해당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평가실시 전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4. 이에,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등에 따라 붙임1 명단과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평가준비서 및 심의의견서 서식을 송부하오니 검토 후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4.9.13.(금)까지 공문 또는 이메일(kmh0708@seoul.g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면심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울시 정원도시정책과(강명환 주무관, ☎02-2133-202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개요
- 심의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평가 실시 전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위원구성 : 8명(공무원,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
- 심의의견서 요청기간 : '24.08.28.(수) ~ '24.09.13.(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붙임: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명단 1부.
2. 평가준비서 1부.
3. 심의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redacted]

주무관 [redacted] 공원녹지기획팀장 [redacted] 정원도시정책과장 08/29 代 [redacted]

협조자

시행 정원도시정책과-3180 (2024. 8. 29.)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7 /전송 02-2133-1081 / kmh0708@seoul.go.kr / 비공개(6)

다. 협의회 심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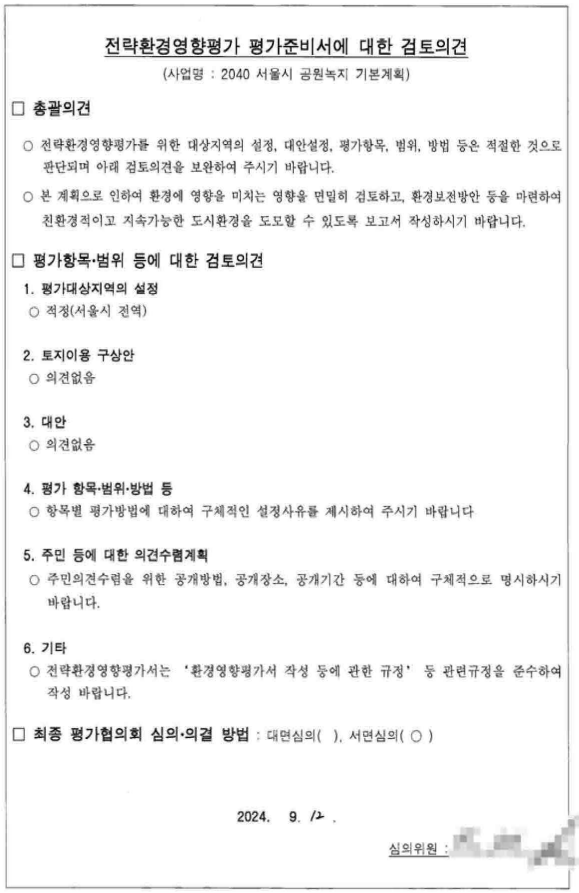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 총괄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대상지역의 설정, 대안설정,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 검토의견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획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서울시 전역)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항목별 평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정사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개방법, 공개장소, 공개기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작성 바랍니다.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2024. 9. 12.

심의위원 : [redacted]

서울시 정원도시정책과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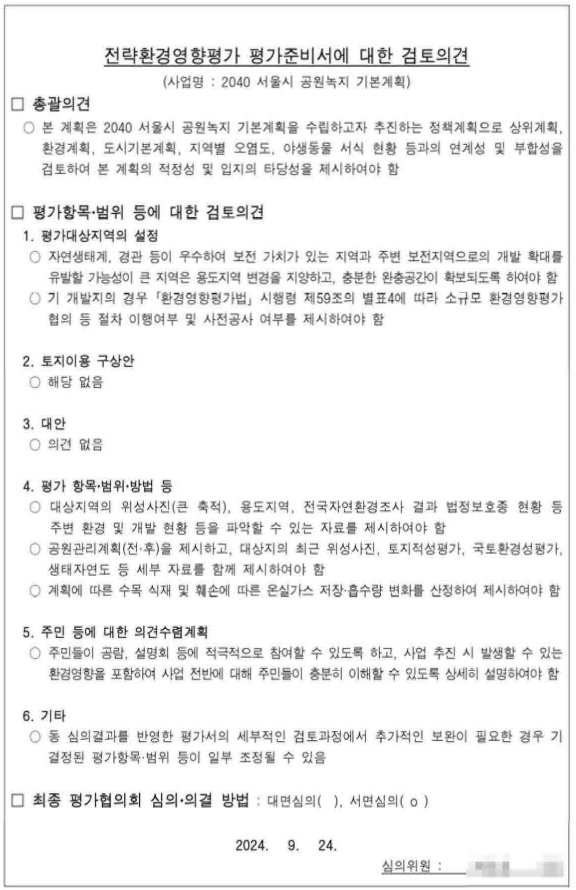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정책계획으로 상위계획, 환경계획, 도시기본계획, 지역별 오염도, 야생동물 서식 현황 등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을 검토하여 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자연생태계, 경관 등이 우수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과 주변 보전지역으로의 개발 확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을 지양하고, 충분한 완충공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 기 개발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의 별표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절차 이행여부 및 사전공사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해당 없음

3. 대안
○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대상지역의 위성사진(큰 축적), 용도지역,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현황 등 주변 환경 및 개발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공원관리계획(전·후)을 제시하고, 대상지의 최근 위성사진, 토지적성평가, 국토환경성평가, 생태자연도 등 세부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 계획에 따른 수목 식재 및 훼손에 따른 온실가스 저장·흡수량 변화를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6. 기타
○ 동 심의결과를 반영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2024. 9. 24.

심의위원 : [redacted]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박○○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 **총괄의견**

○ 악식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이기는 하나 대체로 내용이 명이하고 개괄적인 수준으로 보임. 중요한 사안, 혹은 2040 기본계획의 목표나 방향성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예컨대 기후변화, 탄소중립 대응 관련 등)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북한산, 관악산 등 서울시경계와 맞닿은 산지의 경우, 한강에 영향을 미치는 상류부분의 환경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명확한 서울시 경계와 산, 강의 환경 영향을 좀 더 폭넓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 현황이 아닌 구상에 대한 제시가 없어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움

3. 대안

○ 대안 설정을 미시행시와 시행시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듦. 10년 만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니 만큼 비교 대상은 10년 전의 상황이나, 10년간의 변화 혹은 평균값과 비교한 다던지 하는 실효성 있는 판단의 근거가 필요해보임.

4. 평가 항목·방법 등

○ 평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움. 정량적 평가 방법 이외에 정성적 평가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수렴 방법과 과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6. 기타

○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2024. 9 . 12 .

심의위원 : [redacted]

기술사무소 이수 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 **총괄의견**

○ 환경보전목표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상기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대안들의 비율을 변경한 대안을 설정하여 수요·공급 대안을 검토하여 계획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공원녹지가 도시 보전축과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녹지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원녹지가 공급되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적절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공원녹지가 도시 보전축과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녹지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원녹지가 공급되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개별 공원·녹지의 입지가 있으므로 향후 평가서 작성 시 지정 현황 등의 공간정보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공원의 지정 현황, 실효대상 공원 및 조성우선순위 공원 현황, 신규 확충공원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함

3. 대안

○ 대안검토 시 시행과 미시행의 두 가지 대안으로 한정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계획의 비교에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수단방법, 수요공급 등 다른 대안 검토시에는 3개 이상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요·공급 대안으로 검토된 '기부채납'과 '상생' 대안은 신규 공원 확충에 대한 수단·방법 대안의 하나로 검토되는 것이 적절함

환경평가본부 국토정책평가실 사○○(1/2)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공간계획의 적정성) 공원녹지 보전체계와 도시기본계획 상 보전축과 부합하는지, 기조성 및 지정된 공원 및 신규 공원이 보전체계와 공간적으로 정합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장기미집행공원이 있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상 보전축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지역에서 제외하여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관리방안(용도지역의 설정, 개발행위허가권)를 통한 난개발 방지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생활권을 구분하고 지역별로 공원지정 및 조성면적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 공원 및 녹지공간의 형평성을 분석하여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원녹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6. 기타

○ 의견없음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2024. 09 . 05 .

심의위원 : [redacted]

환경평가본부 국토정책평가실 사○○(2/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 **총괄의견**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전 평가항목 ·범위 등에 대해 별도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2. 토지이용 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6. 기타

○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2024. 09. 13.

심의위원 : [redacted]

건국대학교 주○○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 **총괄의견**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서울시의 공원 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임.

- 최근 도시환경의 지속가능한 건강성 확보와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의 녹색 인프라 확충과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서울시 전체늬 녹색 연결성을 구축·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획이므로 서울시 환경의 건강성을 회복·유지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현재 서울시의 녹색 벨트와 녹색 공간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 평가하여 목표별,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지역 선정과, 다양한 접근방법을 함께 고려할 필요 있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서울시 녹색 인프라 회복 및 개선을 위한 기본구상으로서 적정하나, 녹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물관리 계획이 필요하며, 지표면을 뛰어 넘어 옥상, 건물 외벽, 거리,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까지 입체적으로 고려한 이용 구상과 적정 식물 공급 방안이 필요

3. 대안

○ 계획 대비 대안은 NbS(Nature based Solution), One Health 등을 고려한 도시의 건강성 증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새대와 미래 세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행방안임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서울시의 환경 건강성을 유희하고 도시 생물다양성 향상성 유지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항목, 범위m 방법이 제시 되었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 절차와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시되었음

6. 기타

○ NbS(Nature based Solution), One Health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녹지연결성 강화, 노인 복지와 빈곤지역의 녹색활동 증진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도시열섬현상 개선을 위한 정량적 목표 설정과 효과적 이행, 도시 빗물 수확 및 활용을 위한 지하솔루션 개선, 공실 도시지역을 임대형 녹색정원으로 제공 등의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실행 과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O)

2024. 9. 12.

심의위원 : [redacted]

국립생물자원관 박○○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 **총괄의견**

○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서울시 공원녹지의 확충, 이용, 관리, 보전을 위한 정책 계획이자 전략계획이며, 서울시의 공원녹지 조성 및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침계획이므로,

○ 본 협의회 검토의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바람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서울특별시 전역을 대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

2. **토지이용 구상안**

○ "녹색우선도시, 서울" 미래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게 공원녹지가 확보 및 연결되고,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함

○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증진 등 공원녹지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함

3. **대안**

○ "미시행(No action)"과 "시행(Action)"을 비교 검토한 사항으로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평가항목, 조사범위 및 방법 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유 제시 바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절차에 따라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 바람

6. **기타**

○ 의견없음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2024. 9. 12.

심의위원 : [redacted]

서울시의회 남○○

라. 협의회 심의결과 반영계획

(1) 평가항목

협의회 심의결과 중 평가항목 추가의견	반영계획	비고
평가 항목 추가의견	◦ 온실가스 저장·흡수량 변화 검토	-

(2) 평가범위

협의회 심의결과 중 평가범위 추가의견	반영계획	비고
-	-	-

(3) 대안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중 대안검토 추가의견	반영계획	비고
추가 대안 설정검토	◦ 3개 이상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	-

주민의견 제출서

계획명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위 치	서울특별시 전역	
계획수립기관	서울특별시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36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지적측량업 (02-000449)	이우지적측량기술단 (204-05-574206)	박병성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54길 10, 302호(목동, 영보빌딩)	2024. 9.2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02-2133-7914) 또는 토지관리과(☎02-2133-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37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의거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민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내용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가. 목표연도 : 2030년 (변경없음)
   나.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역(605.96㎢) (변경없음)
   다. 변경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지정 및 변경(해제)
        · 기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2개소
        · 변경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2개소
          *신규지정(2개소), 지역해제(2개소), 기정 활성화지역 구역변경(1개소)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및
   서울균형발전포털(https://uri.seoul.go.kr)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02-2133-8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 내역

– 유형별 현황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2	52	–
경제기반형	4	5	김포공항 일대(신규)
중심시가지형	16	17	남산 일대(신규)
일반근린형	32	30	구로2, 독산2(해제)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번	구분	유형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	서울역 일대	경제기반형/ 일반근린형	1,955,333	1,842,600	구역변경 (감 112,733㎡)
2	창동 · 상계	경제기반형	982,839	982,839	
3	영등포 경인로 일대		524,409	524,409	
4	홍릉 일대		497,154	497,154	
5	김포공항 일대		–	1,067,713	신규지정
6	세운상가 일대	중심시가지형	439,356.4	439,365.4	
7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403,000	403,000	
8	장안평 일대		508,390	508,390	
9	용산전자상가 일대		212,123	212,123	
10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576,971	576,971	
11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420,892	420,892	
12	안암동 캠퍼스타운		171,000	171,000	
13	4.19사거리 일대		628,000	628,000	
14	독산동 우시장 일대		232,000	232,000	
15	정동 일대		603,000	603,000	
16	홍제역 일대		167,663	167,663	
17	효창공원 일대		203,377	203,377	
18	북촌		273,867	273,867	

연번	구분	유형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9	구의역 일대		180,000	180,000	
20	풍납동 토성 일대		246,940.7	246,940.7	
21	면목패션특구 일대		292,000	292,000	
22	남산 일대		-	3,295,806	신규지정
23	창신숭인	일반근린형	830,130	830,130	
24	성수동		886,560	886,560	
25	신촌동		432,628.9	432,628.9	
26	암사동		634,885	634,885	
27	장위		318,415	318,415	
28	상도4동		745,000	745,000	
29	가리봉		331,844.1	331,844.1	
30	해방촌		332,472	332,472	
31	창3동		346,000	346,000	
32	천연 · 충현동		294,590	294,590	
33	묵2동		493,219	493,219	
34	수유1동		518,718.2	518,718.2	
35	불광2동		586,400	586,400	
36	난곡 · 난향		270,795	270,795	
37	송정동		295,000	295,000	
38	인수동		366,551	366,551	
39	사당4동		380,000	380,000	
40	성내2동		388,500	388,500	
41	도봉2동		96,615	96,615	
42	사근동		154,000	154,000	
43	응암3동		168,362	168,362	
44	목3동		159,620	159,620	
45	공항동		149,976	149,976	
46	중화2동		144,426	144,426	
47	경복궁 서측		155,484.5	155,484.5	

연번	구분	유형	면적(㎡)		비고
			기정	변경	
48	신월3동		106,023	106,023	
49	신월1동		148,000	148,000	
50	망우본동		154,000	154,000	
51	용답상가시장 일대		149,107	149,107	
52	화곡중앙시장 일대		156,989	156,989	
-	구로2동		101,828	-	기정 활성화지역 해제
-	독산2동		103,000	-	기정 활성화지역 해제

김포공항 일대 (신규)

· 위치 : 강서구 공항동 1373일대
· 면적 : 1,067,713㎡
· 유형 : 경제기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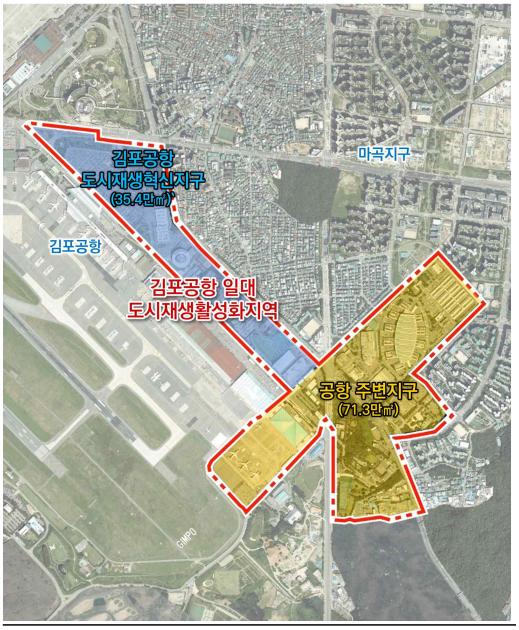

남산 일대 (신규)

· 위치 : 중구 · 용산구 남산 일대
· 면적 : 3,295,806㎡
· 유형 : 중심시가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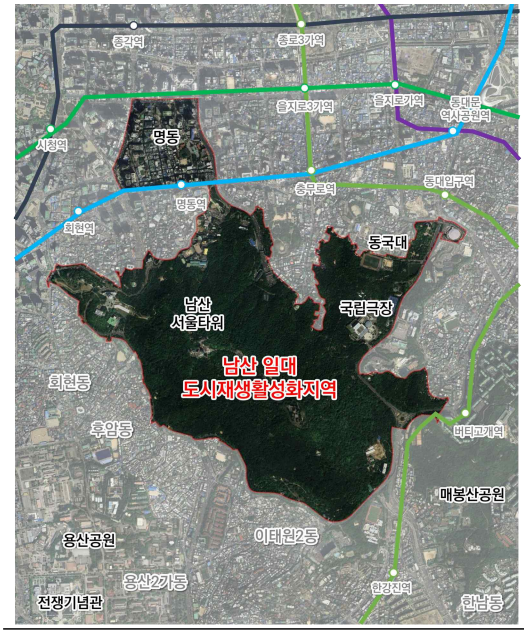

서울역 일대 (변경)

〈 기정 〉
· 위치 : 서울역, 남대문시장, 중림동, 회현동 일대
· 면적 : 경제기반형 1,812,969㎡
일반근린형 142,364㎡

〈 변경 〉
· 위치 : 서울역, 남대문시장, 중림동, 회현동 일대
· 면적 : 경제기반형 1,700,236㎡
일반근린형 142,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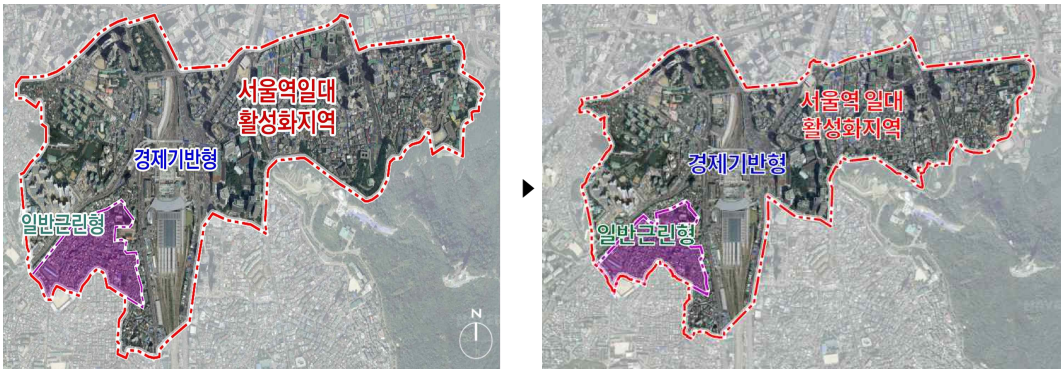

구로2동 일대 (해제)

· 위치 : 구로구 구로2동 일대
· 면적 : 101,828㎡
· 유형 : 일반근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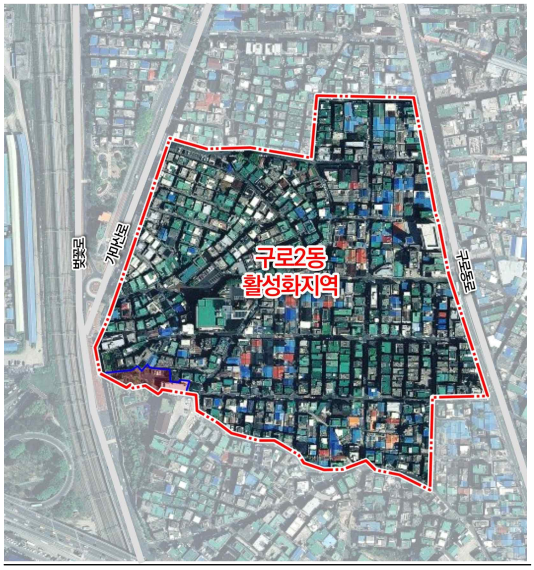

독산2동 일대 (해제)

· 위치 : 금천구 독산2동 일대
· 면적 : 103,000㎡
· 유형 : 일반근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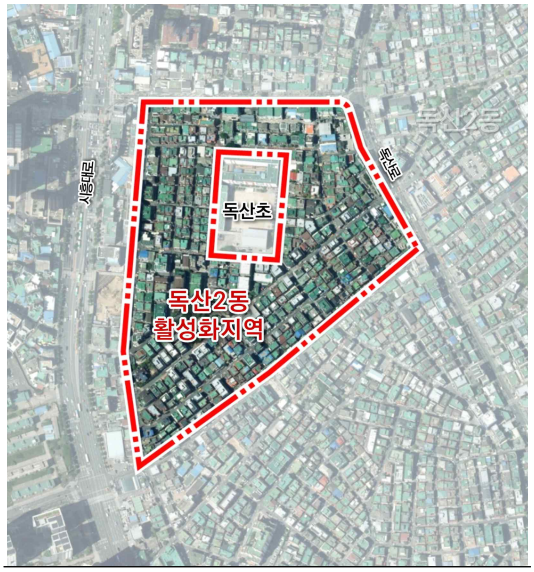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39호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공유재산사용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공영주차장 부대시설(DDP패션몰, 훈련원공원, 남산예장, 마포유수지) 공유재산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공유재산사용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4. ~ 2024. 10. 18.(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내역 참조
4. 유의사항
   가.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붙임의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한 내 체납금액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7조에 따른 체납처분 등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3405-4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 내역 1부.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공유재산	수허가자	배달시도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	DDP패션몰 2층 115호	김*현	2024-09-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구 다산로46길 17, ****호	7,128,310원
2	DDP패션몰 1층 39호	배*윤	2024-09-12	반송 (수취인불명)	서울 노원구 섬밭로 229, *동 ****호	101,113,960원
3	DDP패션몰 3층 86호	서*운	2024-09-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136 *동 ***호	6,361,640원
4	DDP패션몰 2층 53호	이*란	2024-09-12	반송 (이사/미거주)	서울 중구 다산로46길 17, ****호	62,397,450원
5	DDP패션몰 3층 121호	이*주	2024-09-1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별내4로 63 ****동 ***호	7,214,150원
6	DDP패션몰 3층 19호	전*덕	2024-09-1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12길 6 ***동 ****호	4,307,730원
7	DDP패션몰 3층 132호	전*범	2024-09-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뚝섬로33길 42 ***동 ***호	8,424,900원
8	DDP패션몰 1층 33호	지*규	2024-09-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9, ***동 ***호	1,469,020원
9	DDP패션몰 3층 88호	최*영	2024-09-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광신길 86 ***동 ****호	3,499,350원
10	DDP패션몰 3층 13호	최*정	2024-09-1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부산 기장군 일광읍 해송1로 33 ***동 ****호	4,456,750원
11	마포유수지 1호, 2호	㈜케센스코리아 (대표: 안*란)	2024-09-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동 ****호	1,675,090원
12	중곡1동 1호	㈜두리마트 (대표 : 이*선)	2024-09-23 2024-09-2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동 ****호	13,010,470원
13	중곡1동 2호	이*선	2024-09-23 2024-09-2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동 ****호	3,589,270원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4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도시자연 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9,008,975.0			69,008,975.0	100.0%	
주거지역	소계	11,883,610.0	감)	4,783,970.5	7,099,639.5	10.3%	
	제1종일반주거지역	11,811,405.2	감)	4,724,470.6	7,086,934.6	10.3%	
	제2종일반주거지역	48,535.1	감)	36,344.1	12,190.9	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3,669.7	감)	23,155.7	514.0	0.0%	
상업지역	소계	67.2	감)	67.2	0.0	0.0%	
	일반상업지역	67.2	감)	67.2	0.0	0.0%	
공업지역	소계	21,210.0	감)	165.6	21,044.4	0.0%	
	준공업지역	21,210.0	감)	165.6	21,044.4	0.0%	
녹지지역	소계	57,104,087.8	증)	4,784,203.3	61,888,291.1	89.7%	
	보전녹지지역	1,843.4		-	1,843.4	0.0%	
	자연녹지지역	57,102,244.4	증)	4,784,203.3	61,886,447.7	89.7%	

※ 금회 경계조정으로 변경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국·공유지)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함

2. 용도구역 결정(변경) (안)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북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8개소구역	성북구 성북동 산25-1일대 외 38개소구역	69,297,374.0	감) 288,399.0	69,008.975.0	증)29,537.6㎡ 감)317,936.6㎡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02-2133-8457~9), 각 구청 공원녹지과

5.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6.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 제출

7. 기타 안내사항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관계도서 및 의견서 제출 서식 등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는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44호

행정심판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 관련, 청구인의 주소로 행정심판 재결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및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행정심판 재결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심판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및 제195조,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3. 대상 및 내용
   - 대 상: 서행심 2024-307 과태료 미부과답변 취소청구 청구인 조○○
   - 내 용: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
   - 사 유: 청구서 기재 주소(송달장소)등에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
4. 공고기간: 2024. 10. 4.(금)~2024. 10. 18.(금) (14일간)
5. 송달방법: 서울특별시 시보 게재
6.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02-2133-67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 용산구고시 제2024-116호

꿈나무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꿈나무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구 도시계획법」 부칙(제2435호, 1972.12.30.) 및 동법 시행령 부칙(1973.03.21.) 공원결정(의제) 및 서울시 고시 제2023-392호(2023.09.07.)로 공원결정(변경) 되고, 용산구 고시 제2023-186호(2023.11.2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해 용산구 고시 제2020-126호(2020.07.09.)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용산구 고시 제2024-12호(2024.02.08.)로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3. 사업내용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4. 사업 관계서류 및 도서는 용산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업문의는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02-2199-76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용 산 구 청 장

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 원 명 : 꿈나무어린이공원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다. 면　　적 : 1,352.4㎡
라.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시행 중 발생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함

마. 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 별첨1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바.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청 7층 공원녹지과)

Ⅱ. 도시계획시설사업(꿈나무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꿈나무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면적)
  1) (변경없음) 공원조성(1,352.4㎡)
    ※ 세부사업내용(설계도서) 경미한 변경 : 별첨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청 7층 공원녹지과)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사. 고시방법 : 서울시보(구 홈페이지)에 게재

별첨 1

꿈나무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구 분		변 경 전(어린이공원)						변 경 후(어린이공원)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1,352.40	702.57	1동	59.40	137.47	33	1,352.40	741.75	1동	59.40	137.47	34	시설면적 증)39.18㎡
기반시설	소 계	358.44	358.44					386.65	386.65					증)28.21㎡
	도 로	(146.49)	(146.49)					(148.35)	(148.35)					증)1.86㎡
	광 장	(211.95)	(211.95)					(238.30)	(238.30)					증)26.35㎡
조경시설														
휴양시설		33.00	33.00				9	33.00	33.00				9	
유희시설		249.53	249.53				2	260.00	260.00				2	증)10.47㎡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61.60	61.60	1동	59.40	137.47	22	62.10	62.10	1동	59.40	137.47	23	증)0.50㎡

구 분	변 경 전(어린이공원)						변 경 후(어린이공원)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녹지 및 기타	649.83						610.65						감)39.18㎡
시 설 률 (법정60%)	(702.57㎡ / 1,352.40㎡) x 100 = 51.95%						(741.75㎡ / 1,352.40㎡) x 100 = 54.85%						증)2.90%
건폐율 (법정 5%)	(59.4㎡ / 1,352.40㎡) x 100 = 4.39%						(59.4㎡ / 1,352.40㎡) x 100 = 4.39%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352.40	702.57		1동	59.40	137.47	33			1,352.40	741.75		1동	59.40	137.47	34	시설면적 감:39.18㎡
기반시설	소계			358.44	358.44								386.65	386.65						증:28.21㎡
	도로			146.49	146.49								148.35	148.35						증:1.86㎡
	광장	가	이촌동 301-86대	211.95	211.95						가	이촌동 301-86대	238.30	238.30						증:26.35㎡
휴양시설	소계			33.00	33.00					9			33.00	33.00					9	
	파고라	①	이촌동 301-86대	(14.96)	(14.96)					(1)	①	이촌동 301-86대	(14.96)	(14.96)					(1)	
	앉음벽	②	이촌동 301-86대	(18.04)	(18.04)					(4)	②	이촌동 301-86대	(18.04)	(18.04)					(4)	
	등의자	③	이촌동 301-86대							(4)	③	이촌동 301-86대							(4)	
유희시설	소계			249.53	249.53					2			260.00	260.00					2	증:10.47㎡
	어린이놀이터	나	이촌동 301-86대	249.53	249.53						나	이촌동 301-86대	260.00	260.00						증:10.47㎡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조합 놀이대	④	이촌동 301-86대							(1)	④	이촌동 301-86대							(1)	
	그네	⑤	이촌동 301-86대							(1)	⑤	이촌동 301-86대							(1)	
관리 시설	소계			61.60	61.60		1동	59.40	137.47	22			62.10	62.10		1동	59.40	137.47	23	증: 0.50㎡
	관리 사무소	1	이촌동 301-86대	(59.40)	(59.40)		1동	59.40	137.47		1	이촌동 301-86대	(59.40)	(59.40)			59.40	137.47		
	음수대	⑥	이촌동 301-86대	(2.20)	(2.20)					(1)	⑥	이촌동 301-86대	(2.70)	(2.70)					(1)	증:0.50㎡
	공원등	⑦	이촌동 301-86대							(7)	⑦	이촌동 301-86대							(7)	
	안내판	⑧	이촌동 301-86대							(4)	⑧	이촌동 301-86대							(4)	
	배수시설	⑨	이촌동 301-86대							(6)	⑨	이촌동 301-86대							(7)	
	볼라드	⑩	이촌동 301-86대							(3)	⑩	이촌동 301-86대							(3)	
	CCTV	⑪	이촌동 301-86대							(1)	⑪	이촌동 301-86대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녹지 및 기타	소계			649.83									610.65							감: 39.18㎡
	녹지		이촌동 301-86대	649.83								이촌동 301-86대	610.65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68.5	146.49				
변경					73.5	148.35				
당초	산책로	소 계			68.5	146.49				
변경					73.5	148.35				
당초			1	2.0	7.0	22.16	진입동선	동측입구	산책로 3	
변경			1	2.0	7.0	22.81	진입동선	동측입구	산책로 3	
당초			2	2.0	6.5	14.79	진입동선	서측입구	산책로 3	
변경			2	2.0	6.5	14.79	진입동선	서측입구	산책로 3	
당초			3	1.8	55.0	109.54	산책로	광장 가	광장 가	
변경			3	1.8	55.0	105.65	산책로	광장 가	광장 가	
신설			4	1.0	5.0	5.10	산책로	관리사무소	산책로 3	

꿈나무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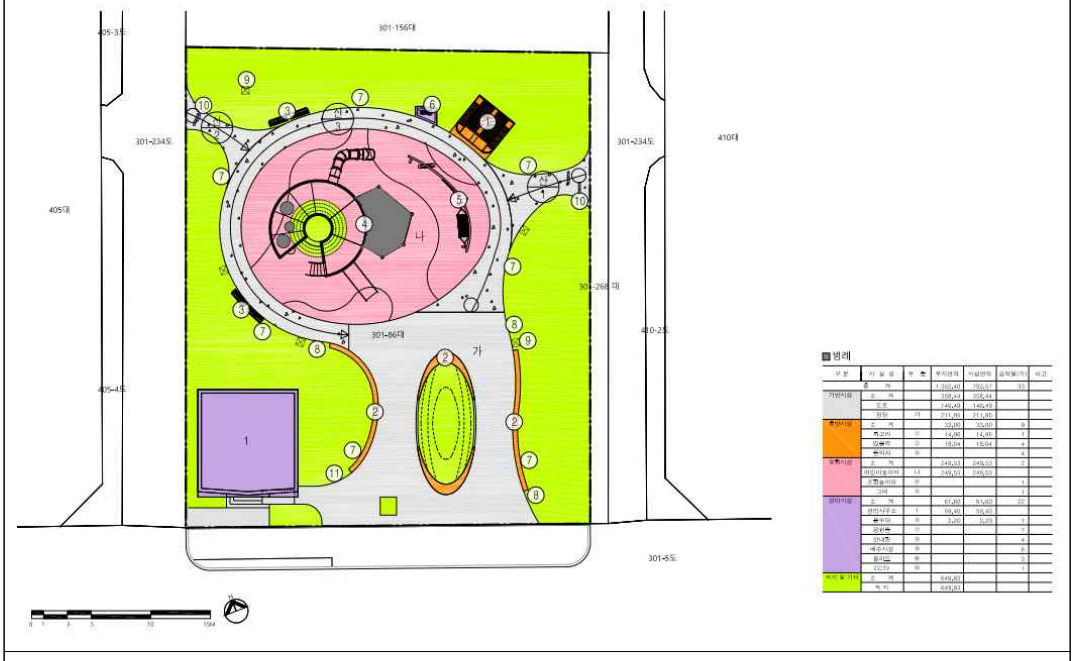

꿈나무어린이공원 조성계획도(당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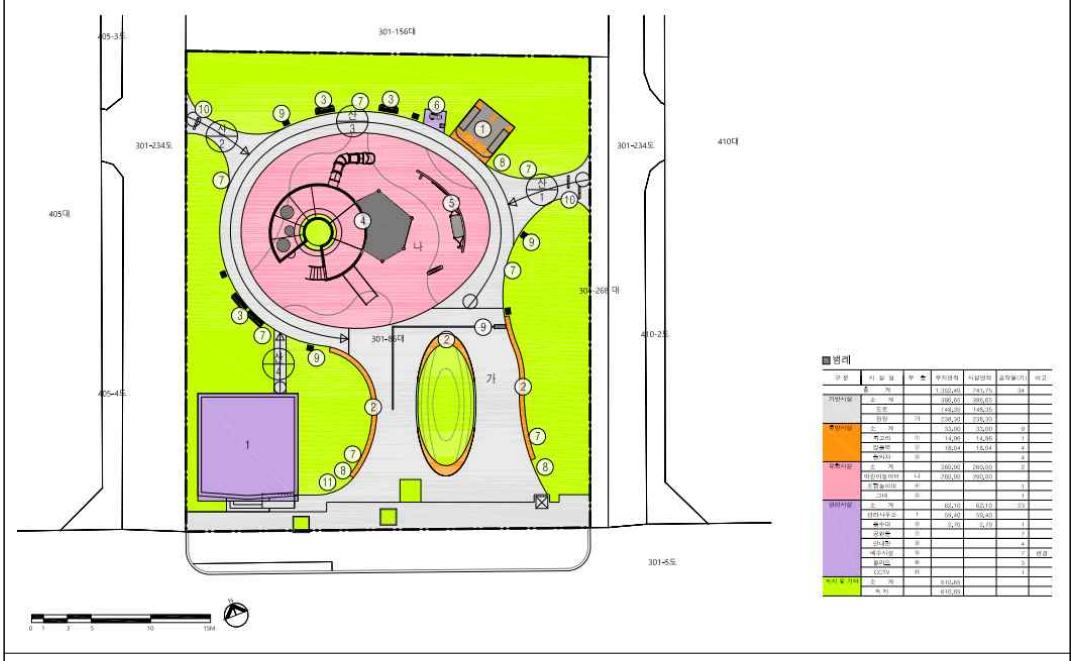

꿈나무어린이공원 조성계획도(변경)

별첨 2

공사설계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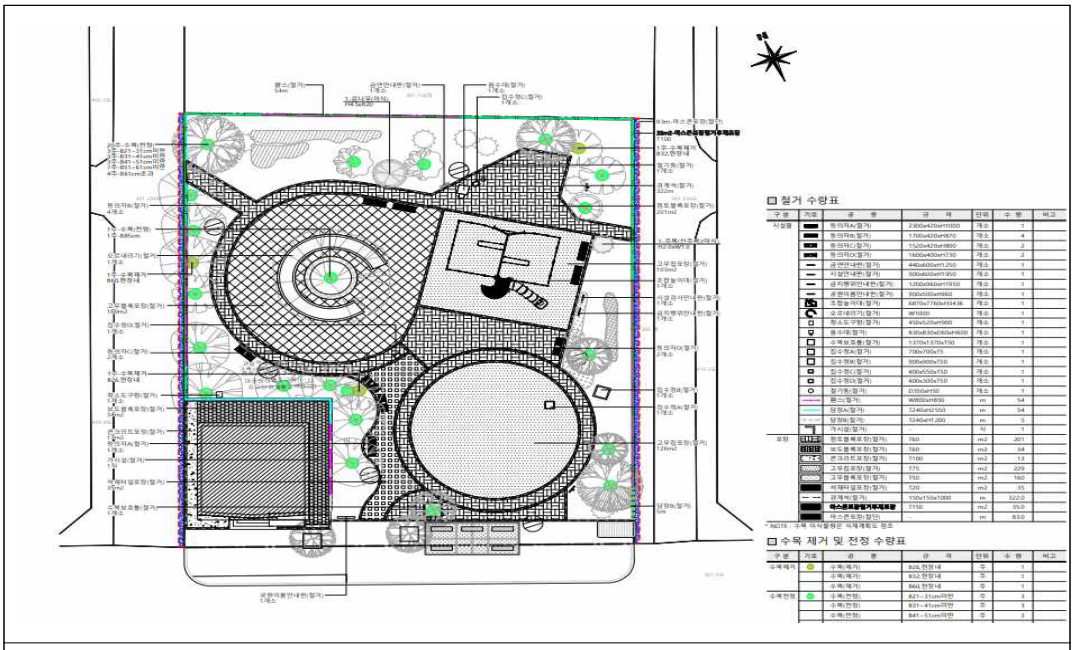

공사설계도서(현황 및 철거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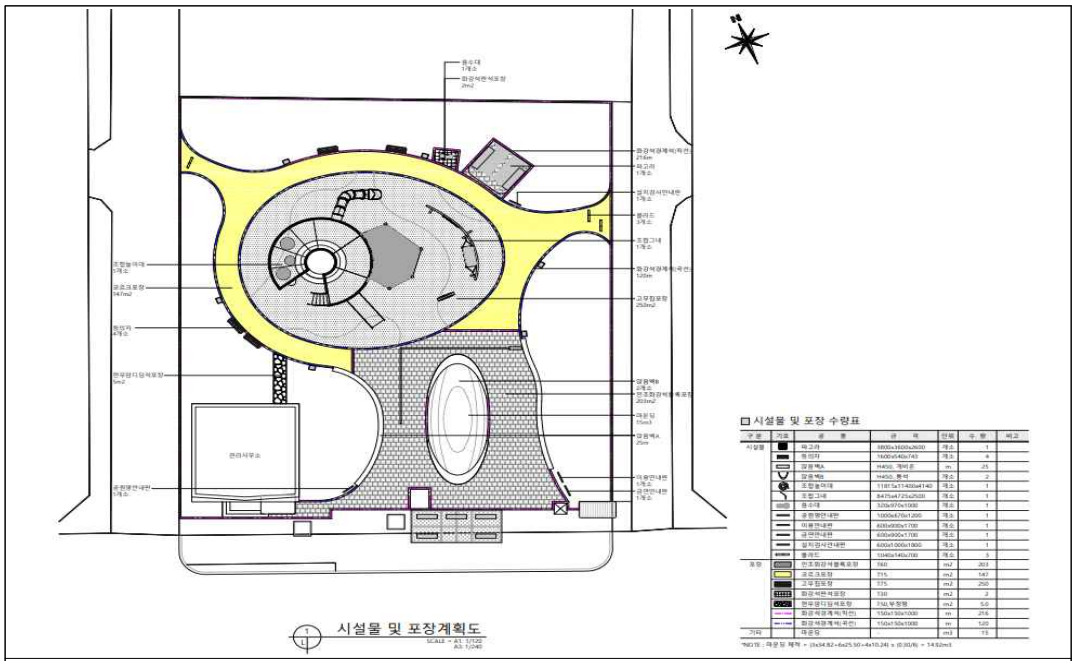

공사설계도서(시설물/포장정비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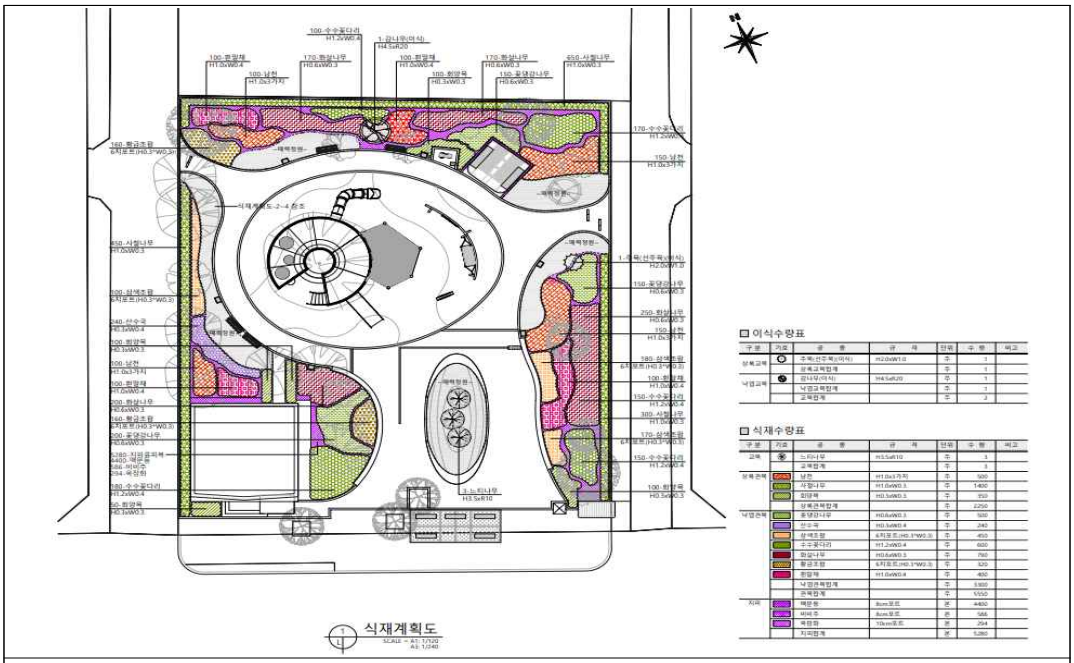

공사설계도서(식재계획도)

◈ 용산구고시 제2024-117호

이촌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이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구 도시계획법」 부칙(제2435호, 1972.12.30.) 및 동법 시행령 부칙(1973.03.21.) 공원결정(의제) 및 서울시 고시 제2023-392호(2023.09.07.)로 공원결정(변경) 되고, 용산구 고시 제2023-185호(2023.11.2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용산구 이촌동 301-60번지, 이촌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해 용산구 고시 제2020-9호(2020.01.16.)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용산구 고시 제2024-13호(2024.02.08.)로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3. 사업내용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4. 사업 관계서류 및 도서는 용산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업문의는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02-2199-76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용 산 구 청 장

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 원 명 : 이촌어린이공원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60번지
다. 면 적 : 1,736.9㎡
라.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시행 중 발생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함

마. 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 별첨1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바.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청 7층 공원녹지과)

Ⅱ. 도시계획시설사업(꿈나무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6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이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면적)

1) (변경없음) 공원조성(1,736.9㎡)

※ 세부사업내용(설계도서) 경미한 변경 : 별첨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청 7층 공원녹지과)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사. 고시방법 : 서울시보(구 홈페이지)에 게재

별첨 1

이촌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60번지)

구 분		변 경 전(어린이공원)						변 경 후(어린이공원)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736.90	818.38				38	1,736.90	821.56				40	시설면적 증)3.18㎡
기반시설	소 계	366.98	366.98					369.53	369.53					증) 2.55㎡
	도 로	(225.57)	(225.57)					(228.12)	(228.12)					증)2.55㎡
	광 장	(141.41)	(141.41)					(141.41)	(141.41)					
조경시설														
휴양시설		46.48	46.48				6	46.48	46.48				4	
유희시설		297.31	297.31				5	297.31	297.31				5	
운동시설		105.27	105.27				3	105.27	105.27				6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2.34	2.34				24	2.97	2.97				25	증)0.63㎡

구 분	변 경 전(어린이공원)						변 경 후(어린이공원)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녹지 및 기타	918.52						915.34						감)3.18㎡
시 설 률 (법정60%)	(818.38㎡ / 1,736.90㎡) x 100 = 47.12%						(821.56㎡ / 1,736.90㎡) x 100 = 47.30%						증)0.18%
건폐율 (법정 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합계				1,736.90	818.38					38			1,736.90	821.56					40	시설면적 증:3.18㎡
기반시설	소계			366.98	366.98								369.53	369.53						증:2.55㎡
	도로	가	공원입구	225.57	225.57								228.12	228.12						증:2.55㎡
	광장	가	2개소	141.41	141.41						가	2개소	141.41	141.41						
		가-1		(59.93)	(59.93)						가-1		(59.93)	(59.93)						
		가-2		(81.48)	(81.48)						가-2		(81.48)	(81.48)						
휴양시설	소계			46.48	46.48					6			46.48	46.48					4	
	조형파고라	①	부지중앙	25.20	25.20					(1)	①	부지중앙	25.20	25.20					(1)	
	사각파고라	②	부지서측	13.47	13.47					(1)	②	부지서측	13.47	13.47					(1)	
	앉음벽	③	부지서측	7.81	7.81					(2)	③	부지서측	7.81	7.81					(2)	
	야외테이블	④	부지중앙							(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유희시설	소계			297.31	297.31					5			297.31	297.31					5	
	어린이놀이터	나	부지 북측	297.31	297.31						나	부지 북측	297.31	297.31						
	그물놀이대	⑤	부지 북측							(1)	④	부지 북측							(1)	부호변경 (⑤→④)
	그네	⑥								(1)	⑤								(1)	부호변경 (⑥→⑤)
	트램폴린	⑦								(1)	⑥								(1)	부호변경 (⑦→⑥)
	그늘막	⑧								(2)	⑦								(2)	부호변경 (⑧→⑦)
운동시설	소계			105.27	105.27					3			105.27	105.27					6	
	운동공간	다	부지남측	105.27	105.27						다	부지남측	105.27	105.27						
	어린이 체력단련시설	⑨								(3)	⑧								(3)	부호변경 (⑨→⑧)
	체력단련시설										⑨								(3)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관리시설	소계			2.34	2.34					24			2.97	2.97					25	증:0.63㎡
	공원등	⑩	부지전체							(6)	⑩	부지전체							(6)	
	공원안내판	⑪	공원입구							(4)	⑪	공원입구							(4)	
	배수시설	⑫	부지전체							(7)	⑫	부지전체							(8)	
	음수대	⑬	부지서측	2.34	2.34					(1)	⑬	부지서측	2.97	2.97					(1)	
	볼라드	⑭	공원입구							(5)	⑭	공원입구							(5)	
	CCTV	⑮	공원입구							(1)	⑮	공원입구							(1)	
녹지 및 기타	소계			918.52									915.34							감:3.18㎡
	녹지			918.52									915.34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25.0	225.57				
변경					125.0	228.12				
당초	소로	소 계			125.0	225.57				
변경					125.0	228.12				
당초		3	1	2.5	4.0	12.92	진입동선	동측입구	산책로 4	
변경		3	1	2.5	4.0	12.14	진입동선	동측입구	산책로 4	
당초		3	2	2.0	14.0	27.79	진입동선	서측입구	산책로 4	
변경		3	3	2.0	6.0	29.68	산책로	서측출구 (안내판)	놀이공간 (조합놀이)	
당초		3	3	3.0	6.0	17.60	진입동선	서측입구	산책로 4	
변경		3	3	3.0	6.0	19.04	진입동선	서측입구	산책로 4	
당초		3	4	1.8	101.0	167.26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 1	
변경		3	4	1.8	101.0	167.26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 1	

이촌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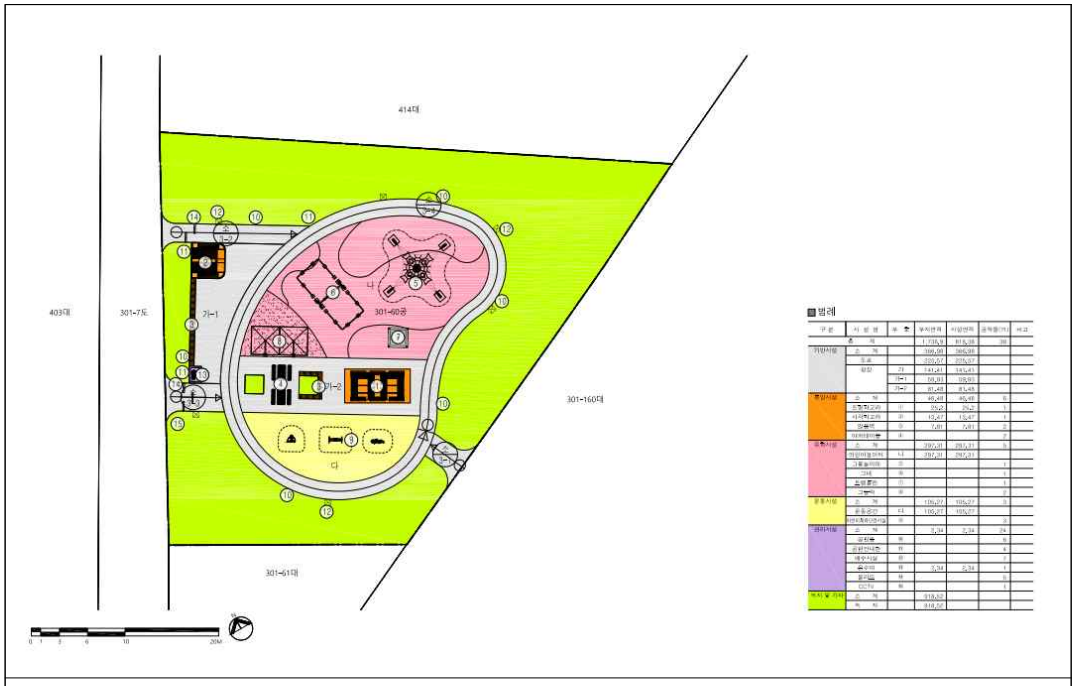

이촌어린이공원 조성계획도(당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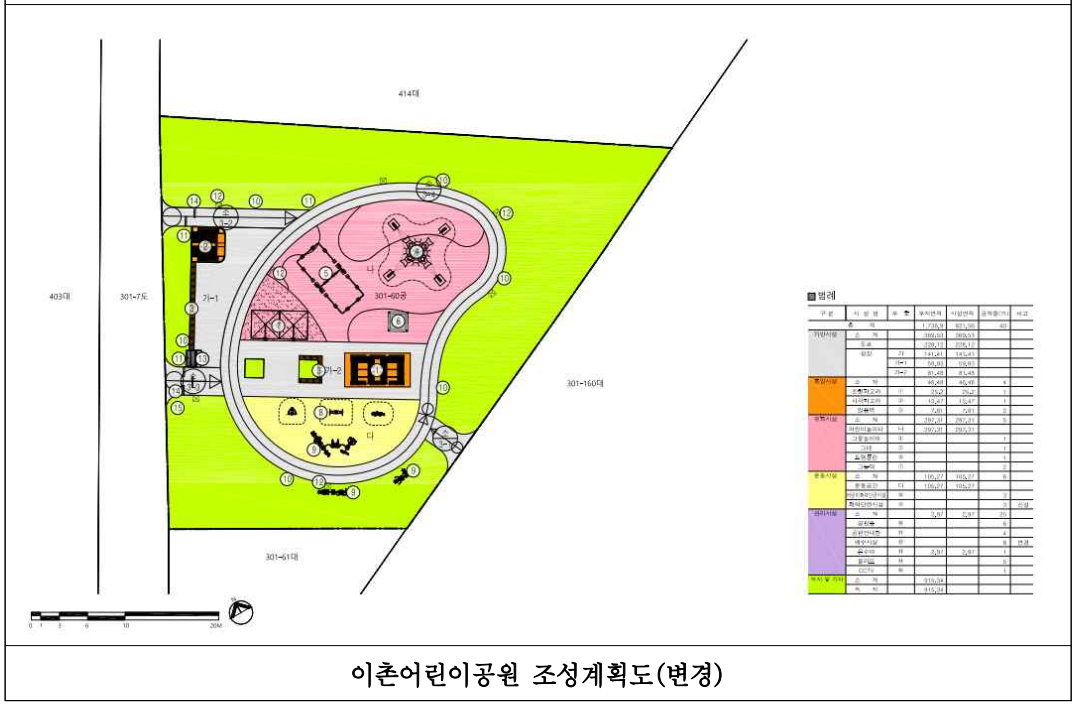

이촌어린이공원 조성계획도(변경)

별첨 2

공사설계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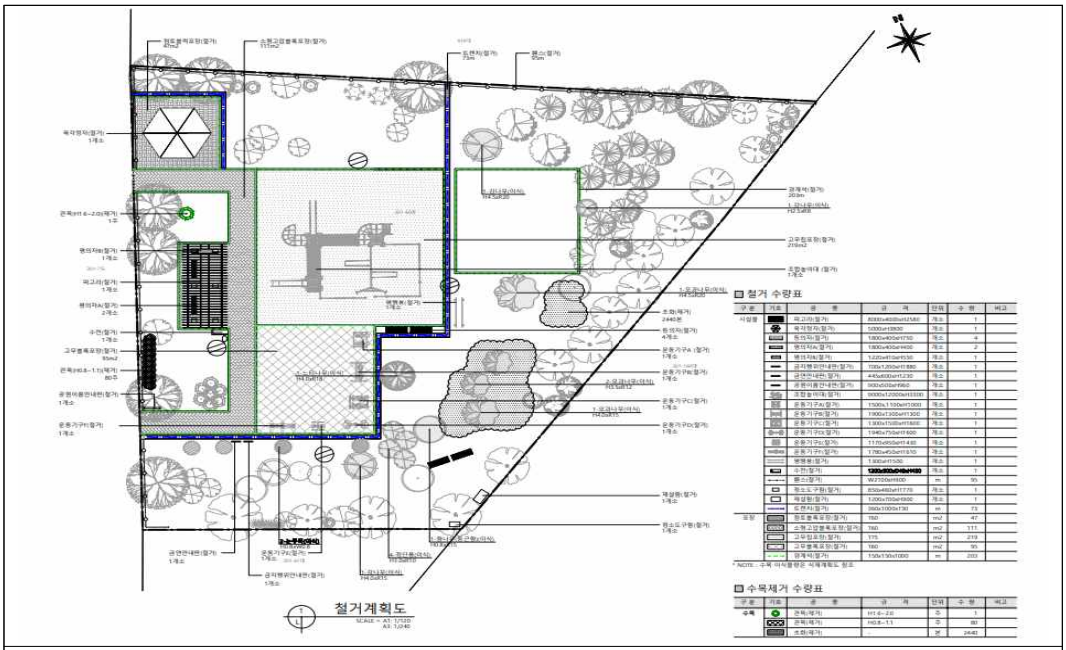

공사설계도서(현황 및 철거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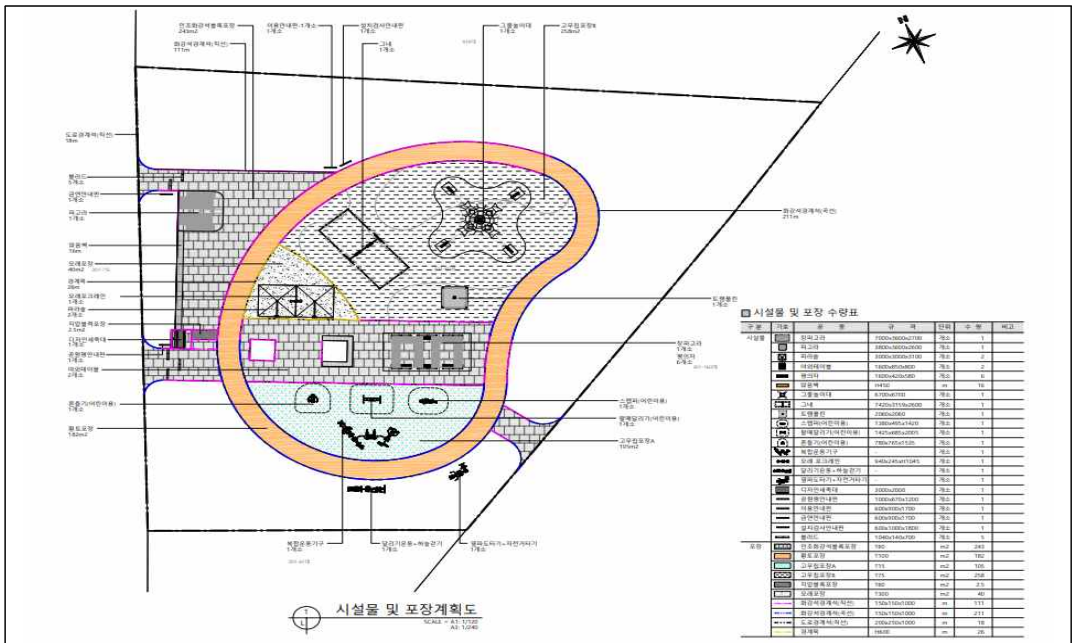

공사설계도서(시설물/포장정비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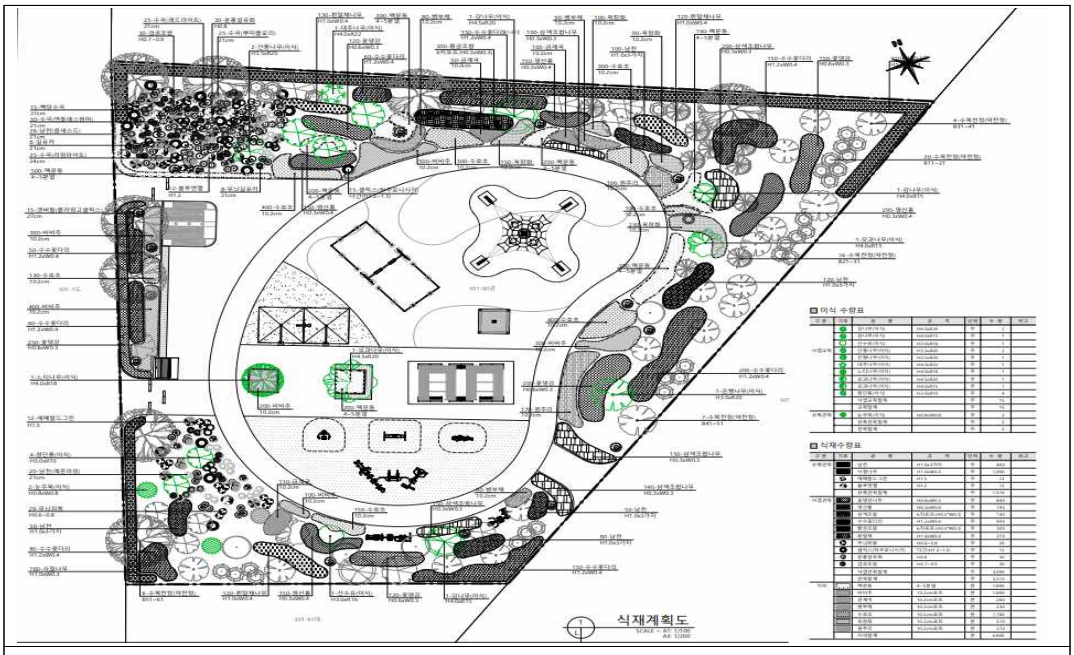

공사설계도서(식재계획도)

◈ 성동구고시 제2024-1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0-47호(2020. 5. 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성동구고시 제2020-65호(2020.6.1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성수동1가 33-17~33-5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33-81~33-5(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사업의 명칭: 성수동1가 33-17~33-5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의 규모: 폭 6m, 연장 150m(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성동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붙임(변경)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토목과(☎2286-57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유현황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변경없음	성수동1가 33-81	도	25	8.2	성동구						
2	변경없음	성수동1가 33-80	대	164	164	㈜대*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9-**					
3	변경없음	성수동1가 33-47	전	155	153.4	문*표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33-*					
4	변경없음	성수동1가 33-61	대	10	10	문*표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197-*		주식회사****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11-*	지상권	
5	변경없음	성수동1가 33-58	대	66	66	문*표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197-*					
6	변경없음	성수동1가 33-20	대	93	93	문*표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197-*					
7	변경없음	성수동1가 33-63	대	17	17	문*표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197-*					
8	변경없음	성수동1가 33-103	대	82	82	문*미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	1/2				
						문*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0**	1/2				
9	변경없음	성수동1가 33-70	대	258	14.6	신*우	서울 양천구 신정로7길 60-*					
10	변경없음	성수동1가 33-22	대	122	13.4	이*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		중***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	근저당권	
11	변경없음	성수동1가 31-26	대	165	3.7	오*선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31-**					

일련번호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유현황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2	변경없음	성수동1가 31-27	도	33	33	문*표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197-*	8/20				
						정*동	인천 서구 검암동 522-*	6/20				
						정*권	서울 성동구 뚝섬로3나길 **	6/20				
13	변경없음	성수동1가 33-7	대	383	77.6	이*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		중***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	근저당권	
14	변경없음	성수동1가 31-15	대	40	8.2	문*표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197-*					
15	변경없음	성수동1가 31-16	대	83	8.1	강*섭	서울 성동구 뚝섬로3나길 **		주식회사 한**********은행	서울 종로구 공평동 ***	근저당권	
16	변경없음	성수동1가 31-23	대	10	4.7	문*표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197-*					
17	변경없음	성수동1가 31-24	대	17	17	문*표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197-*					
18	변경없음	성수동1가 31-25	대	3	3	문*표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197-*					
19	변경없음	성수동1가 31-39	대	10	10	유*의	서울 종로구 수표로28길 21-**	1/2				
						오*석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	1/2	주식회사**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	근저당권	

일련번호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유현황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0	기정	성수동1가 31-17	대	106	47.6	유*의	서울 종로구 수표로28길 21-**	1/2				
						오*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	1/2	주식회사**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	근저당권	
	변경	성수동1가 31-42	대	43	43	유*의	서울 종로구 수표로28길 21-**	1/2				
						오*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	1/2	주식회사**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	근저당권	
21	변경 없음	성수동1가 33-4	대	23	23	문*표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33-*					
22	변경 없음	성수동1가 33-90	대	4	4	천*룡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					
23	기정	성수동1가 33-1	대	46	19.7	유*의	서울 종로구 수표로28길 21-**	1/2				
						오*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	1/2	주식회사**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	근저당권	
	변경	성수동1가 33-111	대	24	24	유*의	서울 종로구 수표로28길 21-**	1/2				
						오*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	1/2	주식회사**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	근저당권	

※ 본 조서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토지보상 시 지번, 면적, 소유자(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서초구고시 제2024-191호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 9. 21.)로 결정 고시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3차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 9. 12.)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초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 획지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잠원동 68 및 68-1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지정) [도면 참조]	공동개발(지정) 해제 [도면 참조]

4. 관계도면: 붙임 도면(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도) 참조
 ※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81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고시정보(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잠원동 68 및 68-1

기 정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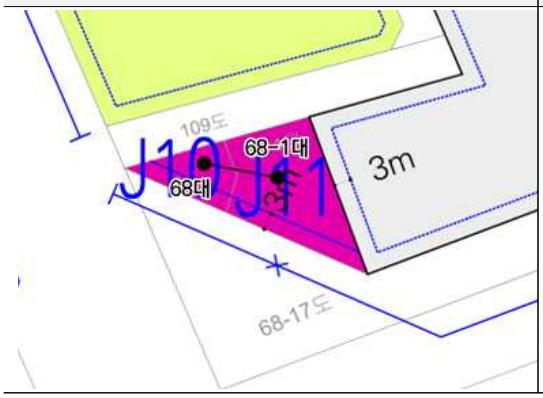	

◈ 강동구고시 제2024-15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21호(2013. 12. 12.)로『천호뉴타운3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3호(2021. 12. 2.)로『「천호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96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천호 재정비촉진구역 소공원2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 분 류			
공 원	소공원	천호동 423-96 일원	2,306.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천호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봉수)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88, 3층(천호동, 강동빌딩)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인가 고시일~2026. 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근저당권 등 말소 후 강동구에 무상으로 귀속
아.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재건축재개발과 ☎ 02-3425-59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토 지 조 서

연번	동명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계		25필지		3,042.0	2,306.0						
1	천호동	422-1	대	356.0	295.0	천호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88, 3층				
2	천호동	422-11	대	63.0	63.0	상동	상동				
3	천호동	423-285	대	211.0	211.0	상동	상동				
4	천호동	423-86	대	106.0	28.0	상동	상동				
5	천호동	423-91	대	123.0	25.0	상동	상동				
6	천호동	423-92	대	96.0	35.0	상동	상동				
7	천호동	423-93	대	96.0	49.0	상동	상동				
8	천호동	423-94	대	109.0	71.0	상동	상동				
9	천호동	423-95	대	119.0	119.0	상동	상동				
10	천호동	423-96	대	129.0	129.0	상동	상동				
11	천호동	423-97	대	126.0	126.0	상동	상동				
12	천호동	423-98	대	165.0	165.0	상동	상동				
13	천호동	423-100	대	157.0	157.0	상동	상동				
14	천호동	423-132	대	116.0	116.0	상동	상동				
15	천호동	423-133	대	89.0	24.0	상동	상동				
16	천호동	423-134	대	96.0	16.0	상동	상동				
17	천호동	423-135	대	86.0	86.0	상동	상동				
18	천호동	423-136	대	86.0	86.0	상동	상동				
19	천호동	423-137	대	96.0	6.0	상동	상동				
20	천호동	423-138	대	96.0	1.0	상동	상동				
21	천호동	423-139	대	182.0	159.0	상동	상동				
22	천호동	423-142	대	99.0	99.0	상동	상동				
23	천호동	423-143	대	106.0	106.0	상동	상동				
24	천호동	423-144	대	126.0	126.0	상동	상동				
25	천호동	423-250	도	8.0	8.0	강 동 구	-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24-1220호

도시관리계획(부암동 지구단위계획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2004.4.20.)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48호(2011.6.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55호(2021.6.3.)로 결정(변경)되고, 종로구 공고 제2024-631호(2024.05.23.)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최초 열람공고된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암동 261-9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결정(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을 중복결정(신설)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건축물의 배치 및 교통처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종 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종로구청 건축과 (☎02-2148-2813), 주차관리과(☎02-2148-3348)
다. 열람내용 :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 : 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 변경없음
2) 주차장 :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⑤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암동 261-9	-	증)3,193	3,193	-	중복결정 - 주 차 장 - 공공청사 - 사회복지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⑤	주차장	•주차장 신설 - 위치 : 부암동 261-9 - 면적 : 3,193㎡	•부암동 일원의 주차난 해소 및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방문 편의증진	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 건축물 규모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건축물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⑤	주차장	노외 주차장	50% 이하	100% 이하	24m 이하 (지상 3층 이하)	-

3) 철도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 변경

1) 문화시설 : 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②	문화 시설	미술관	부암동 261-9	3,193	감) 3,193	-	2021.6.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55호)	학고재 미술관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②	문화시설	미술관	•문화시설 폐지 - 위치: 부암동 261-9 - 면적: 감) 3,193㎡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문화시설 폐지	-

▶ 건축물 규모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건축물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폐지	②	문화시설	미술관	-	-	-	-

▶ 문화시설 조성 지침 : 폐지

2) 공공청사 : 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 청사	동 주민센터	부암동 261-9	-	증) 3,193	3,193	-	중복결정 - 주 차 장 - 공공청사 - 사회복지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①	공공청사	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신설 - 위치: 부암동 261-9 - 면적: 증) 3,193㎡	•동 청사 신설을 통해 개선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노후 동 청사 이전설치

▶ 건축물 규모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건축물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①	공공청사	동 주민센터	50% 이하	100% 이하	24m 이하 (지상 3층 이하)	-

3)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 복지 시설	노인 복지센터	부암동 261-9	-	증)3,193	3,193	-	•중복결정 - 주 차 장 - 공공청사 - 사회복지시설

※ 편익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제1항에 따른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①	사회 복지시설	노인 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신설 - 위치: 부암동 261-9 - 면적: 증) 3,193㎡	•부암동, 평창동 일대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거점공간 마련	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 건축물 규모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축물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50% 이하	100% 이하	24m 이하 (지상 3층 이하)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건축물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축물 용도계획 결정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밀도 결정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1) 건축물의 배치 : 변경

▶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구역			적용기준	계획내용	변경사유
벽면 한계선	인왕 구역	기정	261-9번지 문화시설	10m	•정연한 가로경관 관리 •필지경계선 기준 고층부 벽면한계선 10m	•문화시설 : 폐지 •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신설
		변경	261-9번지 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 :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나.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다.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

▶ 교통처리계획 변경(주차출입구에 관한 사항)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변경사유
주차 출입구	부암동 261-9	기정	•창의문로 변 차량진출입구 폭원 6m이하 조성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한 차량 진출입구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주차 동선계획에 따른 주차출입구 위치 및 폭원 변경 ※ 결정도 참고
		변경	•창의문로 변 차량진출입구 폭원 8m이하 조성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한 차량 진출입구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라. 경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적용의 완화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라. 관련 도서 : 생략(종로구청 건축과 및 주차관리과 비치 도서와 같음)

마. 기타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안)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 건축과(☎02-2148-2813) 및 주차관리과(☎02-2148-3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향후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기정

변경(안)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교통처리계획)

기정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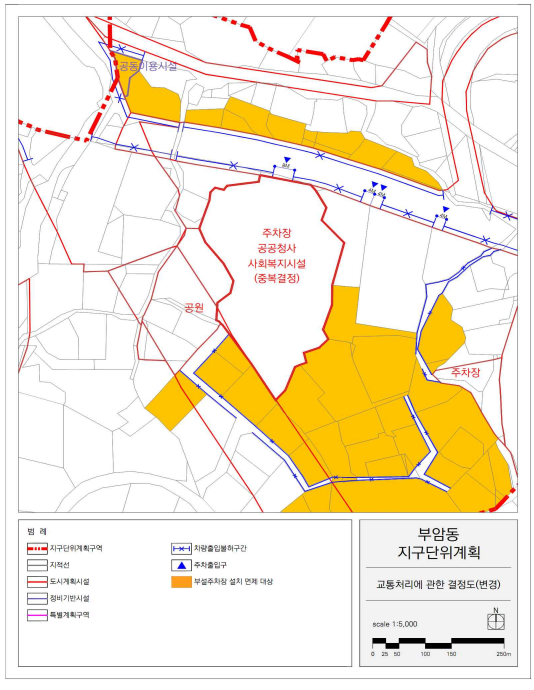

◈ 중구공고 제2024-948호

도시관리계획(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37호(2020.11.05.)로 구역 및 계획이 결정된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중 구 청 장

○ 공 고 명 : 도시관리계획(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공고
○ 열람기간 : 2024.10.04. ~ 2024.10.18. (14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중구청 도심정비과
(☎02-3396-5782 / 전자우편 : kevinkh3223@junggu.seoul.kr)
○ 열람사항 :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 참조)
○ 주요내용 : 변경 결정조서 참조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

가) 공공청사 : 변경없음

나) 학교 : 변경없음

다) 문화시설 : 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문화시설	문화시설	중구 정동 8-11 외 1필지	1,634.18	-	-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문화시설 신설	· 現 국립정동극장 재건축을 통한 공연장 확대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신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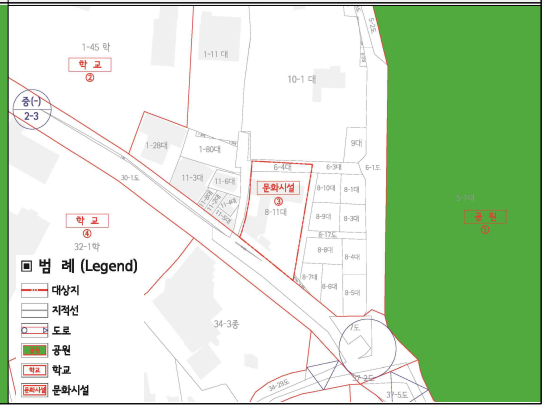

4)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
 ■ 계획내용 : 변경

구 분		적 용 지 역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 변 · 덕수궁길(서소문청사 주변)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부지 · 세종대로21길 (태평로1가 73-1 주변)	· 도로에서 대지 내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
변경		· 간선도로변 · 덕수궁길(서소문청사 주변)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부지 · 국립정동극장 부지 · 세종대로21길 (태평로1가 73-1 주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해당지역	· 구역 내 주차장 설치 금지(기 조성 주차장 제외) · 당해 건물의 주차장설치의무 면제(비용납부로 대신) · 공공기여에 따라 당해 건물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공기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
보행자 우선도로		· 중로 2-999, 소로 3-998 (서소문청사 주변) · 소로 3-995 · 소로 3-994	·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계획 : 변경

구 분		적 용 지 역	위 치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기정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 새문안로-정동길 주변 · 서소문로 주변 · 구 국세청별관부지 · 세종대로21길 (태평로1가 73-1 주변)	도면에 표기	· 개방화장실 설치 시	50% 완화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9조 참조
				· 가로지장물을 건물 내 수용 시		
				· 공공에게 공간제공 시(택 1) - 구분지상권 설정 - 무상임대계약체결	100% 완화	
변경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 새문안로-정동길 주변 · 서소문로 주변 · 구 국세청별관 부지 · 국립정동극장 부지 · 세종대로21길 (태평로1가 73-1 주변)	도면에 표기	· 개방화장실 설치 시	50% 완화	
				· 가로지장물을 건물 내 수용 시		
				· 공공에게 공간제공 시(택 1) - 구분지상권 설정 - 무상임대계약체결	100% 완화	

※ 개방화장실 설치 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및 자치구 관련 조례에 따라 적합한 시설로 설치 할 것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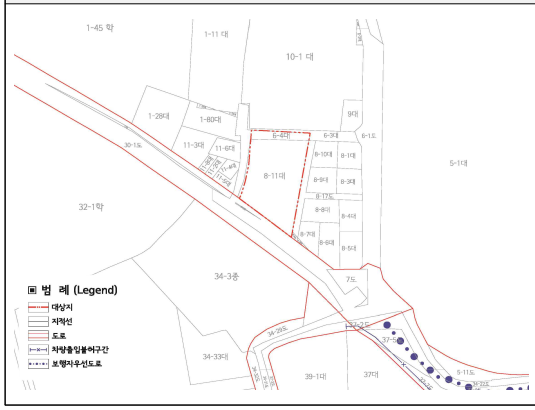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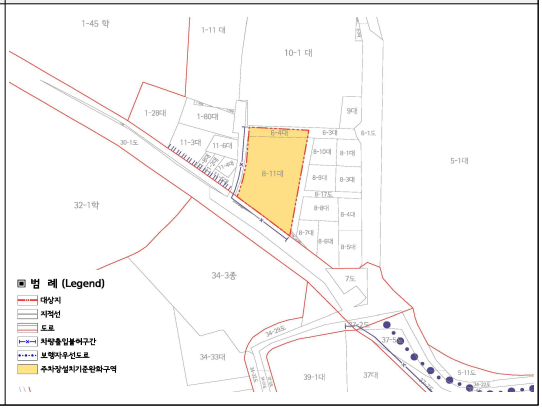

다.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구로구공고 제2024-1737호

도시계획시설 시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304호(1997.9.29.)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05호(2022.03.10.)호로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구로구 고시 제2023-41호(2023.03.16.)로 인가된 구로구 구로동 584-12번지에 신설되는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도서관)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860-2827)에 비치되어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84-1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1)당 초 :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도서관)
(2)변 경 :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청소년이용시설)
2) 명 칭
(1)당 초 : 구로동 584- 12 도서관 신축
(2)변 경 : 구로동 584- 12 청소년이용시설 신축

다. 사업의 규모
1) 면 적
(1) 당 초
· 대지 : 651.60㎡ , 연면적 : 587.54㎡ , 건축면적 : 147.17㎡
(2) 변 경
· 대지 : 651.60㎡ , 연면적 : 588.84㎡ , 건축면적 : 153.16㎡
2)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청소년이용시설)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문화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구로동 584-12	-	증) 651,6	651,6		

라. 사업시행자의 법인명 및 대표자

1) 당 초

· 법인명 : 리앤리어드바이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강복)

2) 변 경

· 법인명 : 리앤리어드바이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정재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기 간 : 실시계획인가변경일로부터 3년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권리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계			18,089	651.6			
1	구로동 584-12	대지	18,089	651.6	리앤리어드바이저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62, 19층 (역삼동, 대륭강남타워)	

·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조서

연번	지번	건축물 용도	건축물 구조	건축물 연면적 (㎡)	소유자·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계				16,449.68			
1	구로동 584-12	정비 공장	철근 콘크리트 등	16,449.68	리앤리어드바이저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62, 19층 (역삼동, 대륭강남타워)	

사. 열람기간 및 공고기간 : 2024. 10. 4. ~ 2024. 10. 18.(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자.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860-282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도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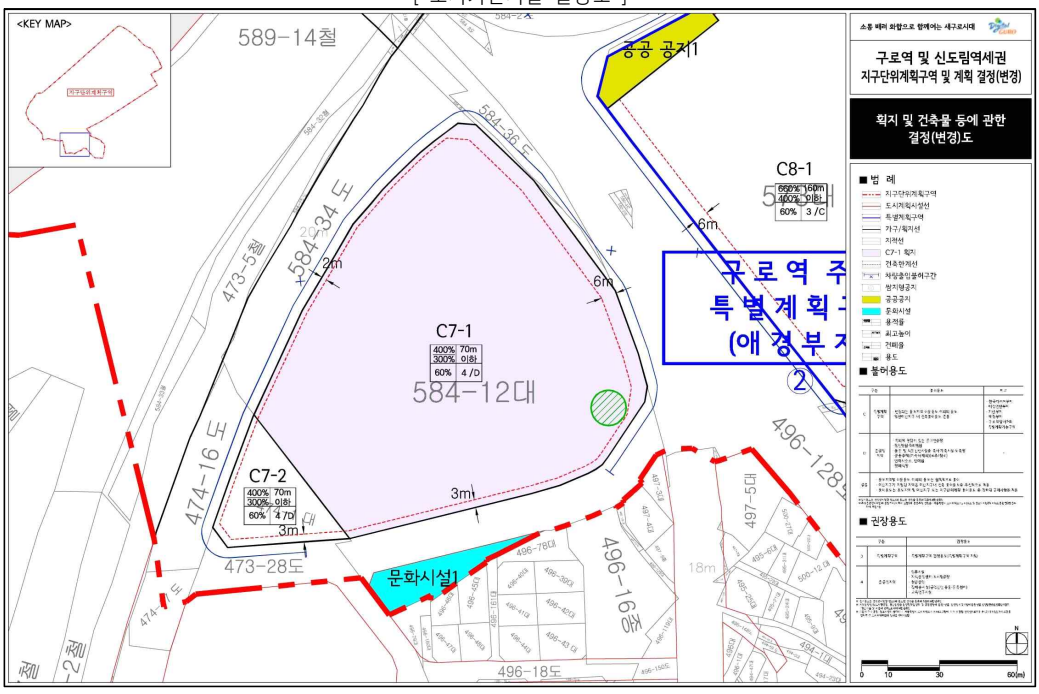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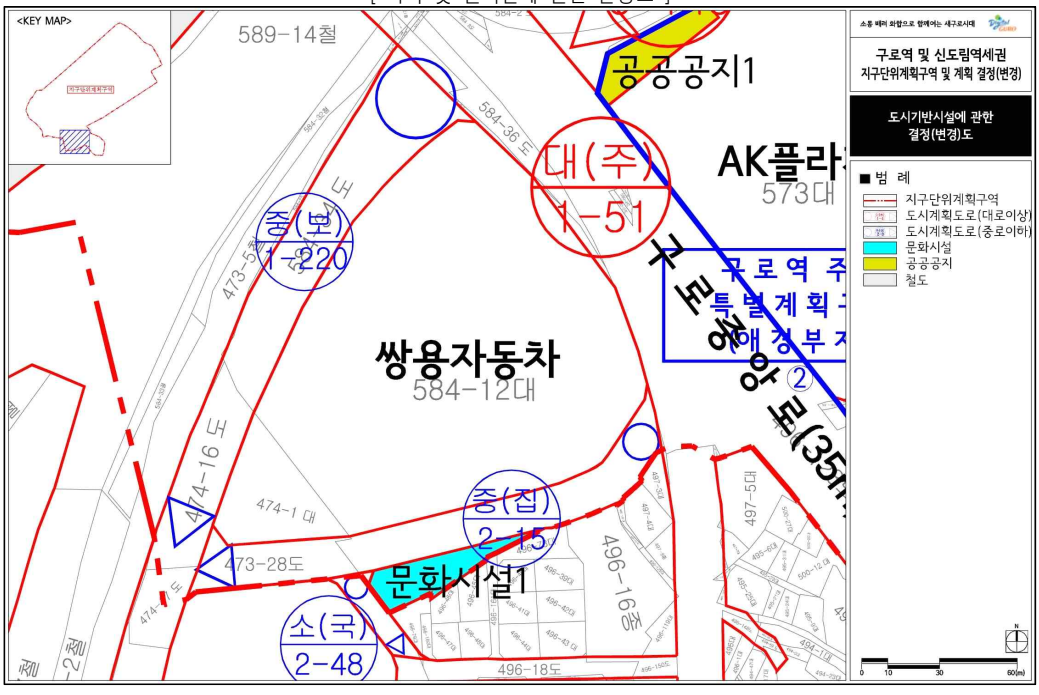

□ 위치도(1)

구로중앙로(30m)
구로역
벚꽃로(20m)
0.5km
NC 신구로점
(7층)
사업대상지
신동아 미래지움
(13층)
NC 신구로점
(7층)
구로중앙로(30m)
구로중앙로2길(20m)
구로중앙로5길
구로 중앙하이츠
(24층)
구로
초등학교
범례
학교
주거시설
상업시설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장지역

□ 위치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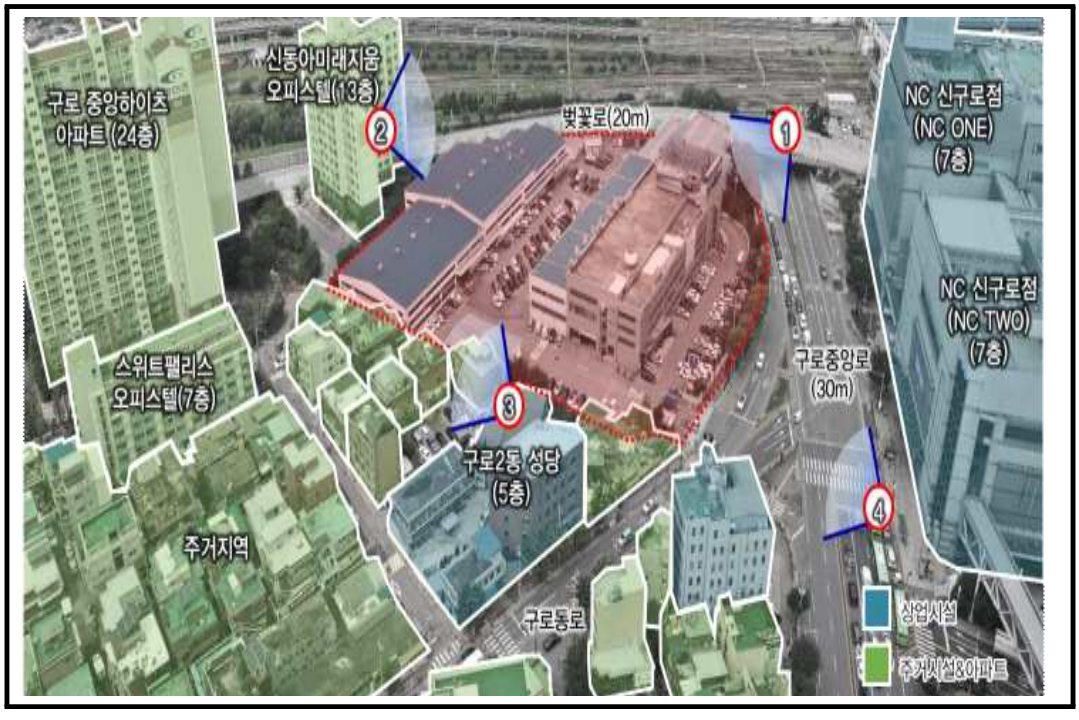
구로 중앙하이츠
아파트(24층)
신동아미래지움
오피스텔(13층)
벚꽃로(20m)
NC 신구로점
(NC ONE)
(7층)
NC 신구로점
(NC TWO)
(7층)
스위트팰리스
오피스텔(7층)
구로중앙로
(30m)
구로2동 성당
(5층)
주거지역
구로동로
상업시설
주거시설&아파트

◈ 영등포구공고 제2024-1716호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BY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28호(1996. 12. 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고, 제2000-310호(2000. 11. 6.) 및 제2020-288호(2020. 7. 9.)로 결정된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및 2024년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조건부수용) 결과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4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33)

3.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대림동 1104-1 일대	49,480	증) 24	49,504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면적 변경 - 증) 24㎡	• BYC 특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국공유지 일부 편입)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9,480	증) 24	49,504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810	증) 20	9,830	19.8	-
	제3종일반주거지역	101	-	101	0.2	-
	준주거지역	18,826	증) 4	18,830	38.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0,743	-	20,743	42.0	-

※ 구역 편입에 대한 면적 증가사항이며, 용도지역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은 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증) 20㎡	• 구역편입에 대한 면적 증가 (BYC부지 관련)
	준주거지역	증) 4㎡	• 구역편입에 대한 면적 증가 (BYC부지 관련)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9	1,112	11,926	1	102	1,055	5	605	6,576	3	405	4,295
	변경	9	1,118	11,274	2	208	1,416	4	422	5,038	3	488	4,820
중로	기정	3	619	8,210	-	-	-	2	327	4,676	1	292	3,534
	변경	2	538	7,291	-	-	-	1	259	3,847	1	279	3,444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소로	기정	6	493	3,716	1	102	1,055	3	278	1,900	2	113	761
	변경	7	580	3,983	2	208	1,416	3	163	1,191	2	209	1,376

■ 도로 결정(변경)조서(실효)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2	1	12~15	보조간선	252	대림동 994-26	대림동 1104-4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중로	2	1	13~15	보조간선	186	대림동 994-26	대림동 1104-4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미집행 구간 실효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75	대림동 995-4	대림동 1103-16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폐지	중로	2	2	15	집산도로	75	대림동 995-4	대림동 1103-16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실효
기정	중로	3	1	12	보조간선	292	대림동 994-28	대림동 994-25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중로	3	1	8~12	보조간선	292	대림동 994-28	대림동 994-25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미집행 구간 실효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2	대림동 1104-1	대림동 1101-16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소로	1	1	6	국지도로	57	대림동 1104-1	대림동 1101-16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미집행 구간 실효
기정	소로	2	1	6~8	국지도로	157	대림동 1095-1	대림동 1123-7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45	대림동 1095-1	대림동 1123-7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51	대림동 994-25	대림동 992-22	일반도로	2020.07.09. (서고 제2020-288호)	-
기정	소로	2	220	8	국지도로	70	대림동 1117-6	대림동 1103-15	일반도로	1970.07.25. (서고 제1970-32호)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3	대림동 1101-23	대림동 1101-11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23	대림동 1101-23	대림동 1101-11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미집행 구간 실효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90	대림동 1094-2	대림동 1094-15	일반도로	2020.07.09. (서고 제2020-288호)	-

■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2	1	13~15	보조간선	186	대림동 994-26	대림동 1104-4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중로	2	1	14~15	보조간선	252	대림동 994-26	대림동 1104-4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기정	중로	3	1	8~12	보조간선	292	대림동 994-28	대림동 994-25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중로	3	1	12	보조간선	292	대림동 994-28	대림동 994-25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방수설비중복결정
기정	소로	1	1	6	국지도로	57	대림동 1104-1	대림동 1101-16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90	대림동 1104-1	대림동 1101-11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신설	소로	1	A	4~10	국지도로	122	대림동 995-1	대림동 1104-1	일반도로	-	방수설비중복결정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5	대림동 1095-1	대림동 1123-7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40	대림동 1101-16	대림동 1123-7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51	대림동 994-25	대림동 992-22	일반도로	2020.07.09. (서고 제2020-288호)	-
기정	소로	2	220	8	국지도로	70	대림동 1117-6	대림동 1103-15	일반도로	1970.07.25. (서고 제1970-320호)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3	대림동 1101-23	대림동 1101-11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23	대림동 1101-23	대림동 1101-11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90	대림동 1094-2	대림동 1094-15	일반도로	2020.07.09. (서고 제2020-288호)	-
신설	소로	3	A	6	국지도로	100	대림동 1104-1	대림동 1101-3	일반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	• 변경 - 폭원 : 13~15m → 14m~15m - 연장 : 186m → 252m	• 중로 2-1호선 실효된 미집행구간 도로 재결정
중로3-1	• 변경 - 폭원 : 8~12m → 12m • 방수설비 중복결정	• 중로 3-1호선 실효된 미집행구간 도로 재결정 • 방수설비 중복결정
소로1-1	• 변경 - 폭원 : 6m → 10m - 연장 : 57m → 90m	• 소로 1-1호선 실효된 미집행구간 도로 재결정 및 도로 폭원, 연장 변경
소로1-A	• 신설 - 폭원 : 4~10m, 연장 : 122m	•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한 신설
소로2-1	• 변경 - 연장 : 45m → 40m	• 도로선형 변경 및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한 연장 변경
소로3-1	• 폐지	•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한 폐지
소로3-A	• 신설 - 폭원 : 6m, 연장 : 100m	•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한 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소공원	대림동 1104-1일대	-	증)1,159	1,159 (1,159)	-	방수설비Ⓐ 중복결정

※ ( )는 중복결정 면적임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공원	• 신설 및 중복결정 - 증) 1,159㎡	•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신설 • 지하부 방수설비(저류조) 중복결정

(2)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대림동 1122-1	894.4	-	894.4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다. 방재시설

(1) 방수설비

■ 방수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방수설비	대림동 1104-1번지 일대	1,527	감)1,527	-	2020.07.09. (서고 제2020-288호)	-
신설	Ⓐ	방수설비	대림동 1104-1번지 일대	-	증)1,421	1,421 (755)	-	- 방수설비부지 666㎡ 도로 중복결정 755㎡
신설	Ⓑ	방수설비	대림동 1104-1번지 일대	-	증)1,159	1,159 (1,159)	-	- 소공원Ⓐ 중복결정

※ ( )는 중복결정 면적임

■ 방수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방수설비	• 폐지	• 방수설비 현 위치 존치에 따른 이전부지 시설 폐지
Ⓐ	방수설비	• 신설 및 중복결정 – 증) 1,421㎡ • 중복결정 : 중로3-1, 소로1-A 중복결정 755㎡	• 방수설비 존치에 따른 시설 결정
Ⓑ	방수설비	• 신설 및 중복결정 – 증) 1,159㎡	• 방수설비 신설

■ 방수설비 건축물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구분	계획내용
Ⓐ	방수설비	용도	방수설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높이	2층 이하(12m 이하)
		배치	도면 참조
		형태	•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소재를 적용 • 건축물 외부 공간은 공원화 조성 • 주변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개발여부	면적			재정비 방향
			기정	변경	변경후	
Ⅰ	대림동 1126번지	기개발	3,681	-	3,681	-
Ⅱ	대림동 994-4번지 일원(동서식품)	미개발	3,241.6	-	3,241.6	-
Ⅲ	대림동 1121번지 (신대림자이1단지)	기개발	3,814	-	3,814	-
Ⅳ	대림동 1122번지 (신대림자이2단지)	기개발	4,179	-	4,179	-
Ⅴ	대림동 1104-1번지 일원(BYC)(특별계획구역)	미개발	12,182	감) 817	11,365	-
Ⅵ	대림동 1101-7번지	기개발	2,967	-	2,967	-
Ⅶ	대림동 1101-1번지 (유탑유블레스)	기개발	964	-	964	-
Ⅷ	대림동 1005-3번지 일원(BYC마트)	기개발	4,184	-	4,184	-

※ 면적은 향후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없음)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 조서

적용구역	전층 불허용도
공통	• 해당 용도지역 내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장례식장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 조서

구분	전층 권장용도	1층 권장용도
1 (특별계획구역)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2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
3	• 판매시설 중 상점(1,000㎡ 미만) • 공동주택	-
4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5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

(3) 건축물의 용도완화 결정 조서

구분	내용		비고
가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단,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 근린생활시설 확보	BYC 마트부지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 조서

(1) 건폐율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용적률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용적률 계획(%)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조례용적률 2배 이하	※ 기 개발지에 한하여 기정용적률 계획 유지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630% 이하		

주) 1.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관리방안 수립」(2020.11.9.)에 따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3-4-2(3)에 따라 지상부 용적률 10% 이상으로 함
2.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 용도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3항(별표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2호」(2019.09.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호」(2019.09.19.)를 준수하여 용도비율 및 용적률을 적용
3.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4. 장기전세주택 및 관광숙박시설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름
5. 상한용적률은 공공기여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0항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19.01.16.)」 적용

(3)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
준주거지역	60m 이하	-
일반상업지역	75~120m 이하	동서식품 : 88m 이하 BYC(특별계획구역) : 120m 이하 (단, 평균높이 88m 이하 적용)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
준주거지역	60m 이하	-
일반상업지역	75~120m 이하	동서식품 : 88m 이하 BYC(특별계획구역) : 120m 이하 (완화높이 144m 이하 적용)

■ 높이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간선부	• 평균높이(88m 이하)계획 폐지 • 일부 지역 높이 완화 – 특별계획구역(BYC) : 120m → 144m 이하	• 완화높이 적용을 통한 광역중심기능 강화 및 적정개발 규모 유도

※ 완화높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시 완화(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는 높이와 용적률 중복 적용 가능)

다. 건축물 배치 · 형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2">적용기준</th><th>비고</th></tr>
<tr><td rowspan="6">건축
한계선</td><td colspan="2">시흥대로변
도림천로변</td><td colspan="2">건축한계선 5m</td><td rowspan="6">• 가로경관의 향상
• 유효한 전면공지 확보
•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 일조권 및 보행환경 확보</td></tr>
<tr><td rowspan="2">12~15m
도로변</td><td>중로2-1</td><td colspan="2">건축한계선 3~5m</td></tr>
<tr><td>중로3-1</td><td colspan="2">건축한계선 6m</td></tr>
<tr><td colspan="2" rowspan="2">BYC마트부지</td><td>소로3-2</td><td>건축한계선 2m</td></tr>
<tr><td>중로2-1,
소로2-2</td><td>건축한계선 3m</td></tr>
<tr><td colspan="2">공공공지①</td><td colspan="2">건축한계선 3~5m</td></tr>
<tr><td colspan="2">그 외 구간</td><td colspan="2">건축한계선 1~2m</td><td></td></tr>
<tr><td colspan="3">벽면한계선</td><td colspan="2">벽면한계선 2~8m</td><td>• 불합리한 보행동선 개선
• 공원녹지공간과 연계 강화</td></tr>
</table>

■ 변경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2">적용기준</th><th>비고</th></tr>
<tr><td rowspan="6">건축
한계선</td><td colspan="2">시흥대로변
도림천로변</td><td colspan="2">건축한계선 5m</td><td rowspan="6">• 가로경관의 향상
• 유효한 전면공지 확보
•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 일조권 및 보행환경 확보</td></tr>
<tr><td rowspan="2">12~15m
도로변</td><td>중로2-1</td><td colspan="2">건축한계선 3m</td></tr>
<tr><td>중로3-1</td><td colspan="2">건축한계선 6m</td></tr>
<tr><td colspan="2" rowspan="2">BYC마트부지</td><td>소로3-2</td><td>건축한계선 2m</td></tr>
<tr><td>중로2-1,
소로2-2</td><td>건축한계선 3m</td></tr>
</table>

구분		적용기준	비고
	공공공지①	건축한계선 3~5m	
	그 외 구간	건축한계선 1~2m	
벽면한계선		벽면한계선 2~8m	• 불합리한 보행동선 개선 • 공원녹지공간과 연계 강화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한계선	• 중로2-1 - 건축한계선 : 3~5m → 3m	• BYC부지 공원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 폐지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체벽 면적의 50% 이상을 투시형벽으로 설치, 셔터는 투시형셔터를 사용 • 폭 25m 이상 도로에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외) • 건축물 바닥높이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 건축물의 1층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고층부 형태	• 지역의 랜드마크적 기능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폭 25m 이상 도로변에 대하여 탑상형 건축물을 권장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롭게 하고, 원색의 사용은 금하도록 한다.	
	담장 및 옹벽처리	• 담장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함(설치 시 식재 담장, 투시형 담장 권장) • 옹벽 등의 조성은 가급적 지양함(설치시 자연적 소재사용 권장 및 주변과 조합 도모)	

구분		계획내용	비고
	야간조명	• 투시형 벽면설치 시 내·외부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함 •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 전면도로변, 도로가각부에 경관 조명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	• 외부에 노출이 심하거나 건축물과의 이질감이 심한 옥외 광고물에 대한 규제 • 통합간판 설치 유도 • 「옥외광고물 등 설치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구역 내 5개소(위치지정) ※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별도지침준수	-
쌈지형공지	구역 내 4개소	-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구역 내 5개소(위치지정) ※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별도지침 준수	• BYC특별계획구역 공개공지 위치변경(도면참조)
쌈지형공지	구역 내 4개소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개공지	• BYC특별계획구역 공개공지 위치변경	• Open Space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한 공개공지 위치 변경

나. 차량출입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구역 내 5개소(지정)	특별계획구역(BYC) 외 3개소 지정 특별계획구역(BYC) 내 2개소 지정 (동서 방향 폭 6m, 남북 방향 폭 4m)
입체보행통로	구역 내 2개소 (위치 권장 / 지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	시흥대로변	-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구역 내 5개소(지정)	특별계획구역(BYC) 외 3개소 지정 특별계획구역(BYC) 내 2개소 지정 (동서 방향 폭 6~6.3m, 남북 방향 폭 6m)
입체보행통로	구역 내 2개소 (위치 권장 / 지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	시흥대로변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보행통로	• 특별계획구역(BYC) 내 공공보행통로 폭원 변경 - 동서 방향 : 6m → 6m~6.3m - 남북 방향 : 4m → 6m	•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 폭원 변경

다. 환경친화요소(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에 따라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법령'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의 기준에 따라 설치 권장	-
중수도시설설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서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 권장	-
빗물관리시설 설치	• '서울시 저영향 사전협의제도(2014.1.)'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빗물관리시설 도입 권장	-
옥상녹화	• '서울시 옥상녹화 시스템 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지침(2013.5.)'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자연지반보존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 순환이 가능한 흙, 자갈, 잔디 등의 자연재료 및 투수성 포장	-
녹색주차장	• '서울시 녹색주차장 활성화계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

4. 인센티브 운영계획(변경없음)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1) 계획유도 인센티브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단, 기 개발지에 한하여 기정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지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유도 및 규제항목 준수 시(70% 이내)	친환경 계획 준수 시(30% 이상)	공공시설부지 제공 시

2.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친환경 인센티브를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친환경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4. 전층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 당해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바닥면적 산정 시 주차장 제외)
5. 조경면적,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 부분 등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예 : 공개공지와 전면공지 등)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 A (일반상업지역)

구분	계획내용
위치특성	• 일반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BYC) 공통 적용
기준/허용용적률	• 일반상업지역(300% 이하 / 630% 이하)

구분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70%이내)	획지계획		획지단위 개발 시	기준용적률 X 0.2	
	권장용도	전층	50% 이상 설치 시 (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면적 ÷ 건축연면적) X 기준용적률	
		1층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2 이내	
	공개공지		설치 시	(설치면적 - 의무면적)÷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4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초과시	쌈지형공지 포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및 벽면선이 지정되어 조성지침에 따라 조성하는 경우로 의무면적 초과 시 (공공보행통로와 중복결정 불가)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4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 필로티구조 시 : 조성면적/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7	
	입체보행통로		입체보행통로 조성 시	기준용적률 X 0.6 이내	※ 특벽계획구역(BYC)은 지하철 출입구와 직접 연결되는 데크 조성 시

구분		계획내용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2 이내	
	건축물 개방	입체보행통로와 연계한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시	제공면적 / 연면적 X 기준용적률 X 0.5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 B (준주거지역)

구분			계획내용		
위치특성			• 준주거지역 ※ 특별계획구역(BYC) 공통 적용		
기준/허용용적률			• 준주거지역(300% 이하 / 360% 이하)		
구분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70%이내)	획지계획		획지단위 개발 시	기준용적률 X 0.1	
	권장용도	전층	50% 이상 설치 시 (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면적 ÷ 건축연면적) X 기준용적률	
		1층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2 이내	
	공개공지		설치 시	(설치면적 - 의무면적)÷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4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초과 시	쌈지형공지 포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및 벽면선이 지정되어 조성지침에 따라 조성하는 경우로 의무면적 초과 시 (공공보행통로와 중복결정 불가)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4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 필로티구조 시 : 조성면적/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7	

구분		계획내용		
	입체보행통로	입체보행통로 조성 시	기준용적률 X 0.3 이내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15 이내	
	건축물 개방	입체보행통로와 연계한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시	제공면적 / 연면적 X 기준용적률 X 0.5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전체 인센티브의 30% 이상) – 공통사항

구분	완화기준			세부내용	비고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기준용적률 X 0.12	3기준 모두 1등급 만족 시: 기준용적률X 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우수(그린2등급)	기준용적률 X 0.08			
	우량(그린3등급)	기준용적률 X 0.04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에너지효율1등급	기준용적률 X 0.08			
	에너지효율2등급	기준용적률 X 0.06			
	에너지효율3등급	기준용적률 X 0.04			
신재생 에너지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공급률 20% 초과	기준용적률 X 0.12		• 신 ·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별표1)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신재생에너지공급률 15% 초과 20% 이하	기준용적률 X 0.10			
	신재생에너지공급률 10% 초과 15% 이하	기준용적률 X 0.08			
	신재생에너지공급률 5% 초과 10% 이하	기준용적률 X 0.06			
	신재생에너지공급률 3% 초과 5% 이하	기준용적률 X 0.04			

구분	완화기준	세부내용	비고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m/hr)의 합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 시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2	• 기준용적률 ×0.05 이내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대림동 1104-1번지 일대	16,275	최초결정일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변경			16,302	

■ 계획기준(기정)

구분		계획기준		비고
위치		• 대림동 1104-1 일대		
토지이용		• 광역중심지 기능수행을 위한 상업·업무 복합개발		
용도지역·지구계획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구 및 획지	가구	• 가구(V)	• 16,275㎡(BYC부지)	
건축물 밀도	건폐율	일반상업/준주거지역	• 60% 이하	
	용적률	일반상업지역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630% 이하 / 조례용적률 2배 이하	
		준주거지역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360% 이하 / 조례용적률 2배 이하	
최고높이		• 일반상업지역 : 120m 이하 (단, 평균높이 88m 이하 적용) • 준주거지역 : 60m 이하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전층	• 해당 용도지역 내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단, 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권장용도	전층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층	•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 도림천변, 구역 북측 : 5m /구역 서측 : 3m / 구역 동측 : 6m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 3m)		
공공시설 확보계획	공공기여 계획	• 도로 및 건축물 공공기여 ⇒ 대지면적의 26% 이상 - 도로 : 중로2-1(B=12m), 중로2-2,(B=15m) 중로3-1(B=12m), 소로2-1(B=6~8m), 소로1-1(B=10m) ※ 중로2-1, 중로2-2, 중로3-1, 소로2-1, 소로1-1가 실효될 경우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 건축물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 허용용적률 중복적용 불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로 계획에 대한 교통량조사 및 교통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검토

구분		계획기준	비고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계획(2015.08.25.)」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영등포구 및 서울시 통합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 공공기여량 산정(연면적 등)은 세부개발계획 시점에 재산정하고, 건축허가 시점에 확정됨
		• 방수설비(기존 10년 빈도) 설치 및 이설은 개발주체 의무부담 -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2)와 방수설비 중복결정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위치 · 규모 등 세부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 • 방수설비의 용량(빈도수 등)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 현재 설비기준(10년 빈도)에서 증설(30년 빈도)할 경우 등 - 빈도수 증가에 따른 증대부분(추가비용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와 협의 결정 - 방수설비 증가에 따른 증대부분(빈도수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시 증대 부분에 대해 공공기여 인정으로 상한용적률 적용 가능 ※ 방수설비는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 인정 여부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개발계획과 연계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 결정하도록 함 - 방수설비 용량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기여량 재산정 검토 등	
기타 계획지침		• 공개공지 : 3개소(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포함) ① 서측 도로(소로2-1) 가각부 ② 입체보행통로 주변 ③ 북측 교차로 • 공공보행통로(지정) : 2개소 ① 구역 내 동서 방향(6m) ② 구역 내 남북 방향(4m)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하며 필로티형으로 할 경우 높이 6m 이상으로 할 것 • 입체보행통로(지정) : 1개소(구로디지털단지 ↔ BYC 연결)	※ 공개공지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설치 ※ 입체보행통로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도록 설치

■ 계획기준(변경)

구분		계획기준		비고
위치		• 대림동 1104-1 일대		
토지이용		• 광역중심지 기능수행을 위한 상업 · 업무 복합개발		
용도지역 · 지구계획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구 및 획지	가구	• 가구(V)	• 16,302㎡(BYC부지)	
건축물 밀도	건폐율	일반상업/준주거지역	• 60% 이하	
	용적률	일반상업지역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630% 이하 / 조례용적률 2배 이하	
		준주거지역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360% 이하 / 조례용적률 2배 이하	

구분		계획기준		비고
최고높이		• 일반상업지역 : 120m 이하 (완화높이 : 144m 이하 적용) • 준주거지역 : 60m 이하		완화높이 적용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과 중복 적용)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전층	• 해당 용도지역 내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단, 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권장용도	전층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층	•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 도림천변 : 5m(일부 구간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 2m) / 구역 서측 : 3m / 구역 동측 : 6m(보도 부속형 전면공지 3m)		
공공시설 확보계획	공공기여 계획	• 도로 및 건축물 공공기여 ⇒ 대지면적의 26% 이상 - 도로 : 중로2-1(B=14~15m), 중로3-1(B=12m), 소로1-1(B=10m), 소로1-A(B=4~10m), 소로3-A(B=6m) - 공원(1,159㎡) - 방수설비 부지(2,143㎡ : 방수설비부지 656㎡, 중복결정_도로 328㎡/소공원 1,159㎡)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계획(2015.08.25.)」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영등포구 및 서울시 통합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로 계획에 대한 교통량조사 및 교통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검토 ※ 공공기여량 산정(연면적 등)은 세부개발계획 시점에 재산정하고, 건축허가 시점에 확정됨
기타 계획지침		• 공개공지 : 3개소(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포함) ① 서측 교차로 주변 ② 입체보행통로 주변 ③ 소공원 주변 • 공공보행통로(지정) : 2개소 ① 구역 내 동서 방향(6m~6.3m) ② 구역 내 남북 방향(6m)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하며 필로티형으로 할 경우 높이 6m 이상으로 할 것 • 입체보행통로(지정) : 1개소(구로디지털단지 ↔ BYC 연결)		※ 공개공지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설치 ※ 입체보행통로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도록 설치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변경없음) : 변경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및 상한 용적률을 따름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및 부칙 제4조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음

1. 대지의 분할 · 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필지분할 가능선의 변경
7. 법령이나 지침의 제 ·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민간 부문 시행지침의 변경

5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	영등포구 대림동 1104-1 일대	16,275	증) 27	16,302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특별계획구역	• 구역면적 변경 - 증) 27㎡	•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실현 가능한 계획을 위해 구역계 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275	증) 27	16,302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97	증) 22	659	3.6	-
	준주거지역	3,532	증) 5	3,537	21.9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046	-	12,046	74.5	-

※ 구역 편입에 대한 면적 증가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증) 22㎡	• 특별계획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준주거지역	증) 5㎡	• 특별계획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6	517	3,774	1	106	652	3	251	2,445	2	160	677
	변경	5	523	3,093	2	212	1,013	1	68	907	2	243	1,173
중로	기정	3	292	2,405	-	-	-	2	136	1,736	1	156	669
	변경	2	211	1486	-	-	-	1	68	907	1	143	579
소로	기정	3	225	1,369	1	106	652	1	115	709	1	4	8
	변경	3	312	1,607	2	212	1,013	-	-	-	1	100	594

※ 중복결정 연장 및 면적 제외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2	1	13~15	보조간선	186	대림동 994-26	대림동 1104-4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중로	2	1	14~15	보조간선	252	대림동 994-26	대림동 1104-4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1	8~12	보조간선	292	대림동 994-28	대림동 994-25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중로	3	1	12	보조간선	292	대림동 994-28	대림동 994-25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방수설비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1	6	국지도로	57	대림동 1104-1	대림동 1101-16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90	대림동 1104-1	대림동 1101-11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신설	소로	1	A	4~10	국지도로	122	대림동 995-1	대림동 1104-1	일반도로	-	방수설비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5	대림동 1095-1	대림동 1123-7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40	대림동 1101-16	대림동 1123-7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51	대림동 994-25	대림동 992-22	일반도로	2020.07.09. (서고 제2020-288호)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	• 변경 - 폭원 : 13~15m → 14m~15m - 연장 : 186m → 252m	• 중로 2-1호선 실효된 미집행구간 도로 재결정
중로3-1	• 변경 - 폭원 : 8~12m → 12m • 방수설비 중복결정	• 중로 3-1호선 실효된 미집행구간 도로 재결정 • 방수설비 중복결정
소로1-1	• 변경 - 폭원 : 6m → 10m - 연장 : 57m → 90m	• 소로 1-1호선 실효권 미집행구간 도로 재결정 및 도로 폭원, 연장 변경
소로1-A	• 신설 - 폭원 : 4~10m, 연장 : 122m	• 도로 선형 변경 및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한 신설
소로3-1	• 폐지	•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한 폐지
소로3-A	• 신설 - 폭원 : 6m, 연장 : 100m	•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한 신설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소공원	대림동 1104-1일대	-	증) 1,159	1,159 (1,159)	-	방수설비Ⓐ 중복결정

※ ( )는 중복결정 면적임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공원	• 신설 및 중복결정 - 증) 1,159㎡	•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신설 • 지하부 방수설비(저류조) 중복결정

(3) 방재시설

(가) 방수설비

■ 방수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방수설비	대림동 1104-1번지 일대	1,527	감) 1,527	-	2020.07.09. (서고 제2020-288호)	-
신설	Ⓐ	방수설비	대림동 1104-1번지 일대	-	증) 1,421	1,421 (984)	-	- 방수설비부지 666㎡(656㎡) 도로중복결정 755㎡(328㎡)
신설	Ⓑ	방수설비	대림동 1104-1번지 일대	-	증) 1,159	1,159 (1,159)	-	소공원Ⓐ 중복결정

※ ( )는 특별계획구역 내 포함 면적임

※ "서울시 대림2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대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에 따라 공원 지하부에 방수설비(저류조) 설치가 계획 중으로 지하 방수설비(저류조) 설치 및 조성은 공공에서 별도 사업 시행 예정임.

■ 방수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방수설비	•폐지	• 방수설비 현 위치 존치에 따른 이전부지 시설 폐지
Ⓐ	방수설비	• 신설 및 중복결정 - 증) 1,421㎡ • 중복결정 : 중로3-1, 소로1-A 중복결정 755㎡	• 방수설비 존치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	방수설비	• 신설 및 중복결정 - 증) 1,159㎡	• 방수설비 신설

■ 방수설비 건축물계획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구분	계획내용
Ⓐ	방수설비	용도	방수설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높이	2층 이하(12m 이하)
		배치	도면 참조
		형태	•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소재를 적용 • 건축물 외부 공간은 공원화 조성 • 주변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개발여부	면적			재정비 방향
			기정	변경	변경후	
V	대림동1104-1 일대 (BYC)(특별계획구역)	미개발	12,182	감) 817	11,365	

※ 면적은 향후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 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전층	• 해당 용도지역 내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단, 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좌동	-
	권장용도	전층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좌동	-
		1층	• 판매시설 중 상점	좌동	

(2) 건축물의 밀도 결정 조서

(가) 건폐율 결정 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건폐율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60% 이하	좌동	-

(나) 용적률 결정 조서

구분	용도지역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적률	일반상업지역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630% 이하 / 조례용적률 2배 이하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630% 이하 / 883% 이하	836% 이하 (대지 전체 가중평균 적용)
	준주거지역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360% 이하 / 조례용적률 2배 이하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360% 이하 / 360% 이하	

(다)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 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높이	일반상업지역	• 120m 이하 (평균높이 88m 이하)	• 120m 이하 ※ 완화높이: 144m 이하	좌동	완화높이 적용
	준주거지역	• 60m 이하	• 60m 이하	좌동	-

※ 완화높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시 완화(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는 높이와 용적률 중복 적용 가능)

(3) 건축물 배치 · 형태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건축한계선	• 도림천변, 구역 북측 : 5m / 구역 서측 : 3m / 구역 동측 : 6m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 3m)	• 도림천변 : 5m(일부 구간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 2m 포함) / 구역 서측 : 3m / 구역 동측 : 6m(보도 부속형 전면공지 3m 포함)	좌동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공개공지	• 3개소(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포함) ① 서측 도로(소로2-1) 가각부 ② 입체보행통로 주변 ③ 북측 교차로	• 3개소(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포함) ① 서측 교차로 주변 ② 입체보행통로 주변 ③ 소공원 주변	좌동	-

(2) 차량출입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공공보행통로	• 2개소(지정) ①구역 내 동서 방향(6m) ②구역 내 남북 방향(4m)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하며 필로티형으로 할 경우 높이 6m 이상으로 할 것	• 2개소(지정) ①구역 내 동서 방향(6m~6.3m) ②구역 내 남북 방향(6m)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하며 필로티형으로 할 경우 높이 6m 이상으로 할 것	좌동	-
입체보행통로	• 1개소(구로디지털단지 ↔ BYC 연결)	• 1개소(구로디지털단지 ↔ BYC 연결)	좌동	-

(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공공기여계획	• 도로 및 건축물 공공기여 ⇒ 대지면적의 26% 이상 - 도로 : 중로2-1(B=12m), 중로2-2,(B=15m) 중로3-1(B=12m), 소로2-1(B=6~8m), 소로1-1(B=10m) ※ 중로2-1, 중로2-2, 중로3-1, 소로2-1, 소로1-1가 실효될 경우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 건축물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 허용용적률 중복적용 불가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계획(2015.08.25.)」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영등포구 및 서울시 통합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 도로 및 건축물 공공기여 ⇒ 대지면적의 26% 이상 - 도로 : 중로2-1(B=14~15m), 중로3-1(B=12m), 소로1-1(B=10m), 소로1-A(B=4~10m), 소로3-A(B=6m) - 공원(1,159㎡) - 공공공지(29㎡) - 방수설비 부지(2,143㎡ : 방수설비부지 656㎡, 중복결정_도로 328㎡/소공원 1,159㎡)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계획(2015.08.25.)」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영등포구 및 서울시 통합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 대지면적의 28.58%계획 (방수설비 부지포함) - 도로(설치 3,217㎡, 순부담 2,694㎡) : 중로2-1(B=14~15m), 중로3-1(B=12m), 소로1-1(B=10m), 소로1-A(B=4~10m), 소로3-A(B=6m), - 소공원(설치 및 순부담 1,159㎡) - 방수설비부지(설치 2,143㎡, 순부담 656㎡) (방수설비부지 656㎡, 중복결정_도로 328㎡ /	-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 방수설비(기존 10년 빈도) 설치 및 이설은 개발주체 의무부담 -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2)와 방수설비 중복결정 - 세부개발 수립 시 위치·규모 등 세부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 • 방수설비의 용량(빈도수 등)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 현재 설비기준(10년 빈도)에서 증설(30년 빈도)할 경우 등 - 빈도수 증가에 따른 증대부분(추가비용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와 협의 결정 - 방수설비 증가에 따른 증대부분(빈도수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시 증대 부분에 대해 공공기여 인정으로 상한용적률 적용 가능 ※ 방수설비는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 인정 여부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개발계획과 연계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 결정하도록 함 - 방수설비 용량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기여량 재산정 검토 등		소공원 1,159㎡)	

※ 향후 측량성과, 건축심의 등 절차 진행 시 공공기여율, 면적 등은 공공기여 기준(26%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라. 인센티브 운영계획(특별계획구역)

(1) 계획유도 인센티브(70% 이내)(변경없음)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 A (일반상업지역)

구분	계획내용
위치특성	• 일반상업지역 ※ 특별계획구역(BYC) 공통 적용
기준/허용용적률	• 일반상업지역(300% 이하 / 630% 이하)

구분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70% 이내)	획지계획		획지단위 개발 시	기준용적률 X 0.2	60%p 적용
	권장용도	전층	50% 이상 설치 시 (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면적 ÷ 건축연면적) X 기준용적률	
		1층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2 이내	
	공개공지		설치 시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4 ※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초과 시	쌈지형공지 포함

구분		계획내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및 벽면선이 지정되어 조성지침에 따라 조성하는 경우로 의무면적 초과 시 (공공보행통로와 중복결정 불가)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4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 필로티구조 시 :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7	16.26%p 적용
	입체보행통로	입체보행통로 조성 시	기준용적률 X 0.6 이내	180%p 적용 ※ 특별계획구역(BYC)은 지하철 출입구와 직접 연결되는 데크 조성 시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2 이내	
	건축물 개방	입체보행통로와 연계한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시	제공면적 / 연면적 X 기준용적률 X 0.5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 B (준주거지역)

구분	계획내용
위치특성	• 준주거지역 ※ 특별계획구역(BYC) 공통 적용
기준/허용용적률	• 준주거지역(300% 이하 / 360% 이하)

구분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70% 이내)	획지계획		획지단위 개발 시	기준용적률 X 0.1	30%p 적용
	권장 용도	전층	50% 이상 설치 시 (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면적 ÷ 건축연면적) X 기준용적률	

구분			계획내용		
		1층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2 이내	
	공개공지		설치 시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4 ※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초과 시	쌈지형공지 포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및 벽면선이 지정되어 조성지침에 따라 조성하는 경우로 의무면적 초과 시 (공공보행통로와 중복결정 불가)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4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 필로티구조 시 :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7	
	입체보행통로		입체보행통로 조성 시	기준용적률 X 0.3 이내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15 이내	
	건축물 개방		입체보행통로와 연계한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시	제공면적 / 연면적 X 기준용적률 X 0.5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전체 인센티브의 30% 이상) – 공통사항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완화기준</th><th>세부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3">녹색건축
인증</td><td>최우수(그린1등급)</td><td>기준용적률 X 0.12</td><td rowspan="11">3기준 모두 1등급
만족 시:
기준용적률 X
0.4</td><td rowspan="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td><td>36%p 적용</td></tr>
<tr><td>우수(그린2등급)</td><td>기준용적률 X 0.08</td><td></td></tr>
<tr><td>우량(그린3등급)</td><td>기준용적률 X 0.04</td><td></td></tr>
<tr><td rowspan="3">에너지효율
등급인증</td><td>에너지효율1등급</td><td>기준용적률 X 0.08</td><td>24%p 적용</td></tr>
<tr><td>에너지효율2등급</td><td>기준용적률 X 0.06</td><td></td></tr>
<tr><td>에너지효율3등급</td><td>기준용적률 X 0.04</td><td></td></tr>
<tr><td rowspan="5">신재생
에너지보급
확대</td><td>신재생에너지공급률
20% 초과</td><td>기준용적률 X 0.12</td><td rowspan="5">•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별표1)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td><td>36%p 적용</td></tr>
<tr><td>신재생에너지공급률
15% 초과 20% 이하</td><td>기준용적률 X 0.10</td><td></td></tr>
<tr><td>신재생에너지공급률
10% 초과 15% 이하</td><td>기준용적률 X 0.08</td><td></td></tr>
<tr><td>신재생에너지공급률
5% 초과 10% 이하</td><td>기준용적률 X 0.06</td><td></td></tr>
<tr><td>신재생에너지공급률
3% 초과 5% 이하</td><td>기준용적률 X 0.04</td><td></td></tr>
<tr><td>중수도시설 설치</td><td colspan="3">기준용적률 X 0.04</td><td>•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td><td></td></tr>
<tr><td>빗물관리 시설설치</td><td colspan="3">기준용적률 X 0.04</td><td>• 빗물저류이용시설 요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m/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td><td></td></tr>
<tr><td>옥상녹화</td><td colspan="3">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1</td><td>•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td><td></td></tr>
</table>

구분	완화기준	세부내용	비고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 시	6%p 적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2	• 기준용적률 X 0.05 이내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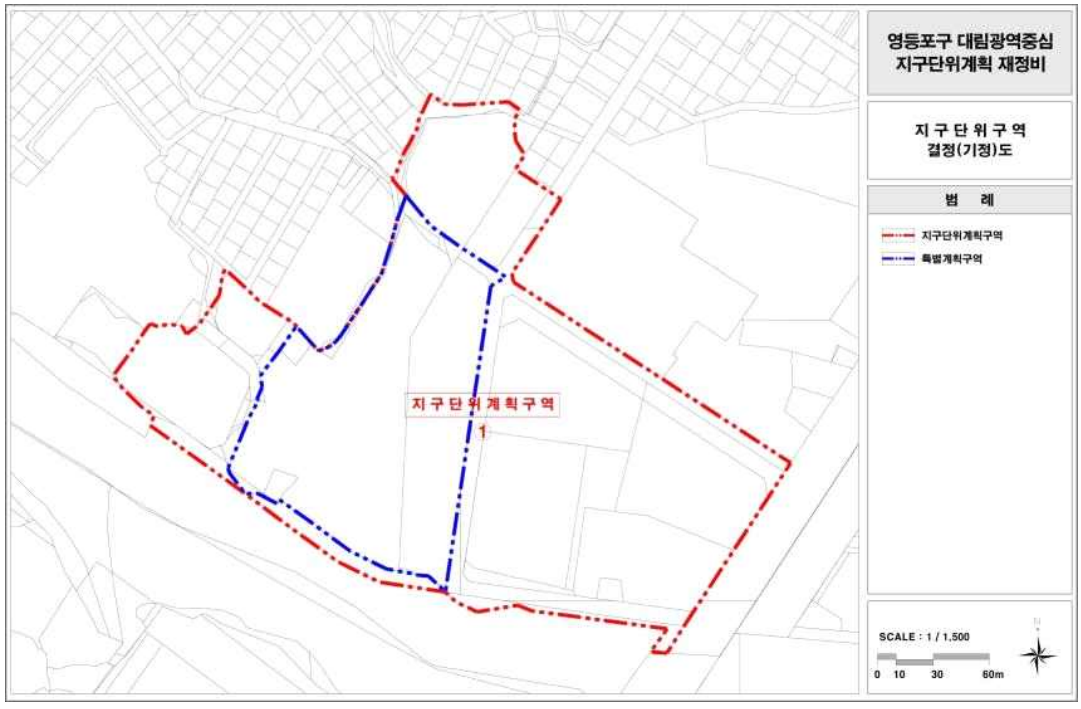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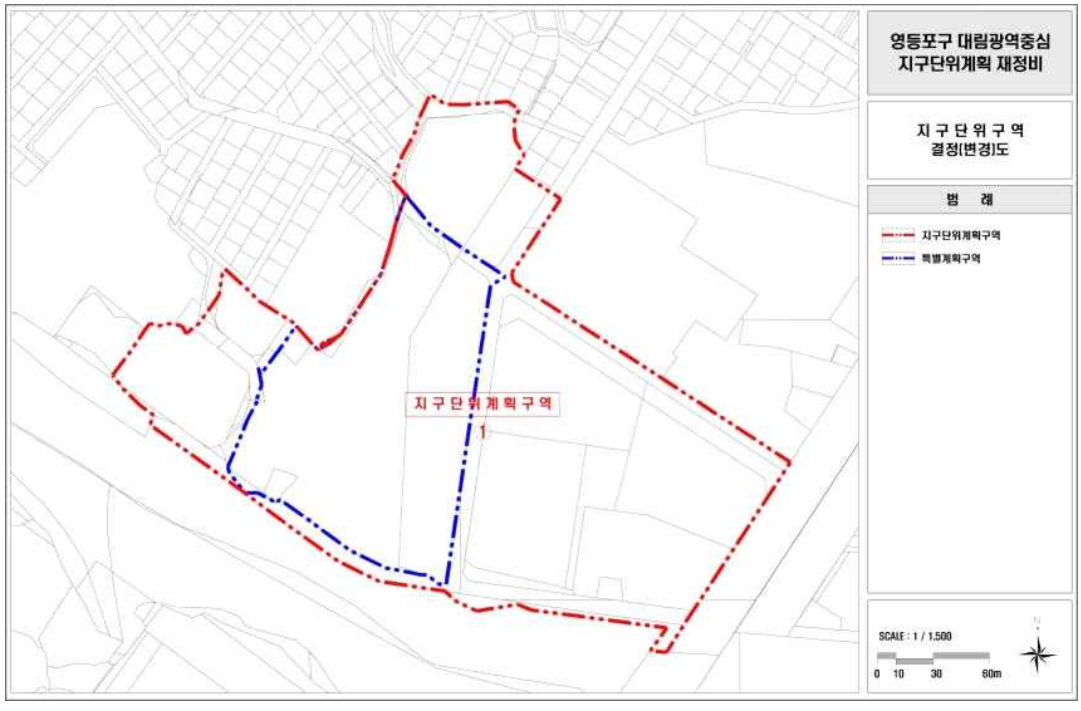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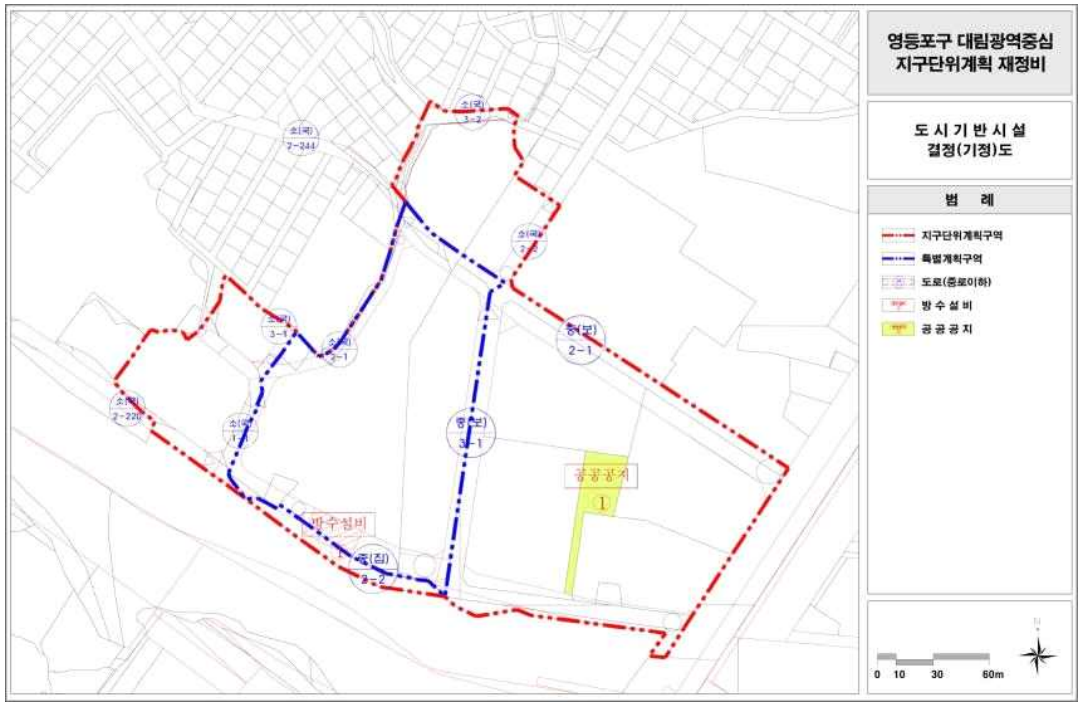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실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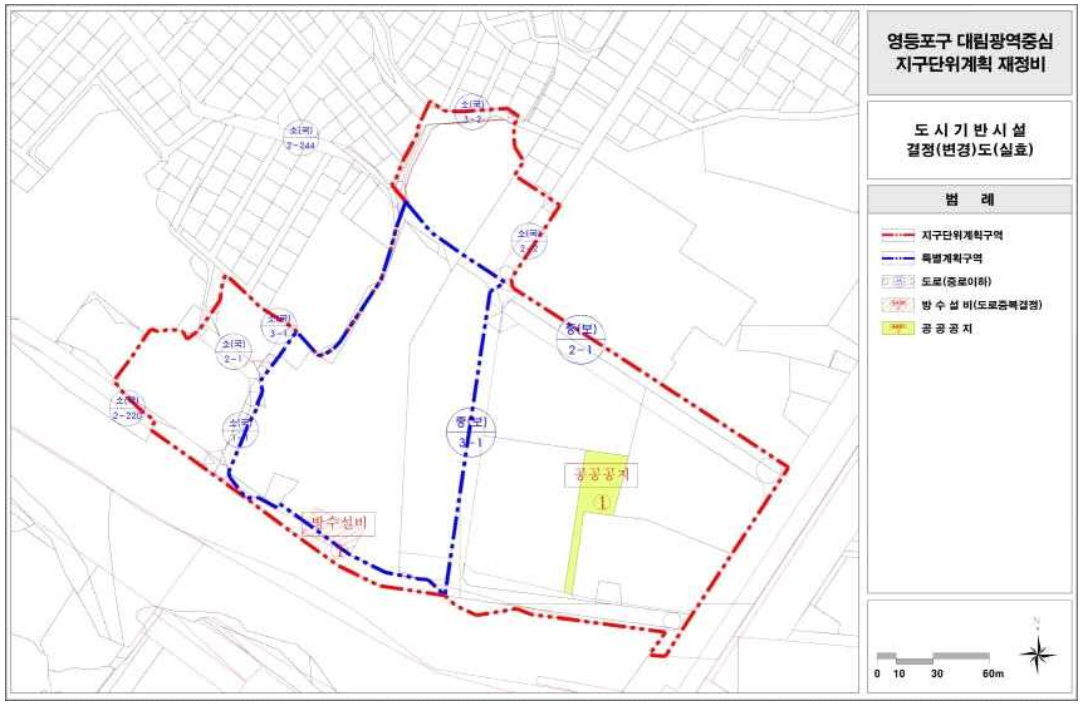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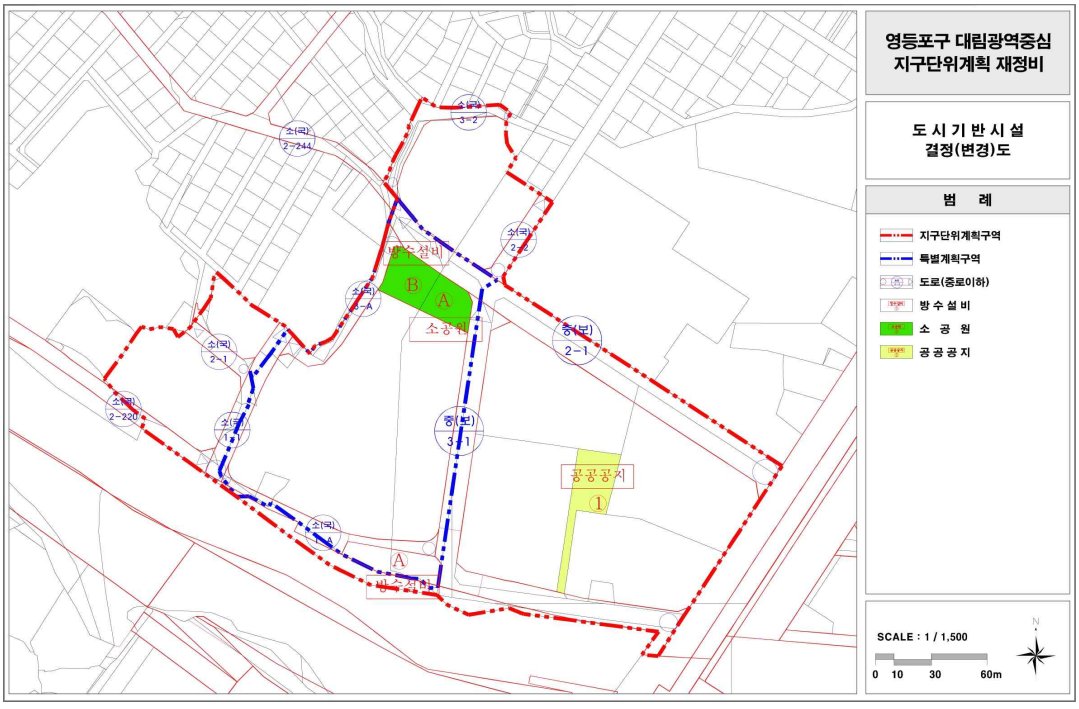

(이하여백)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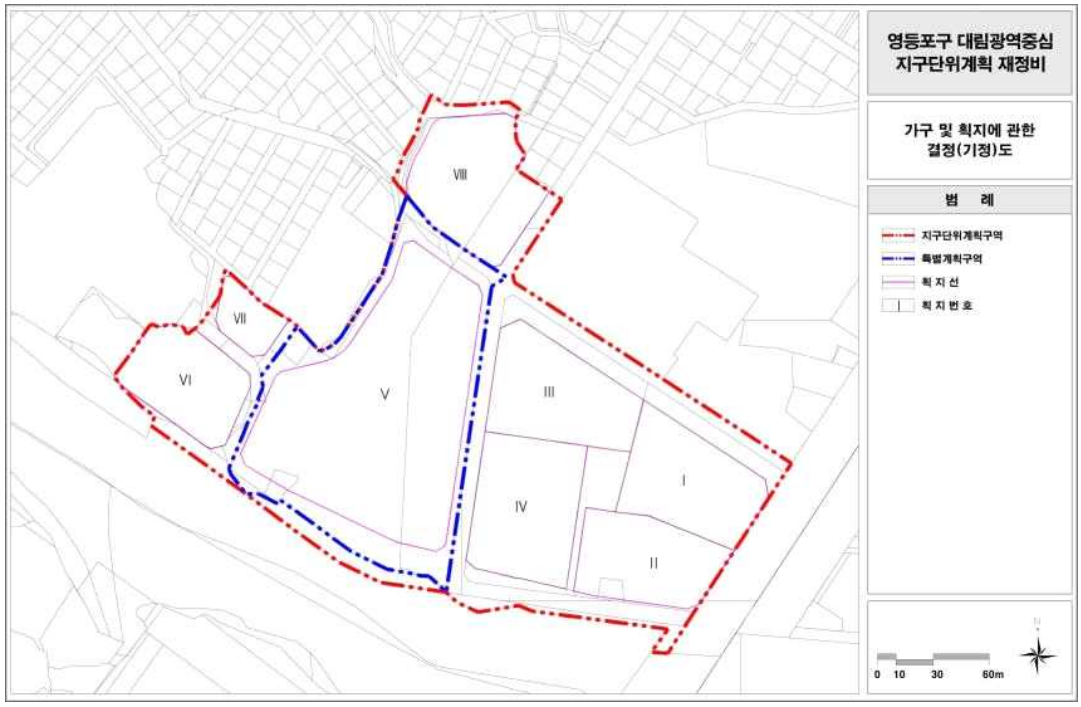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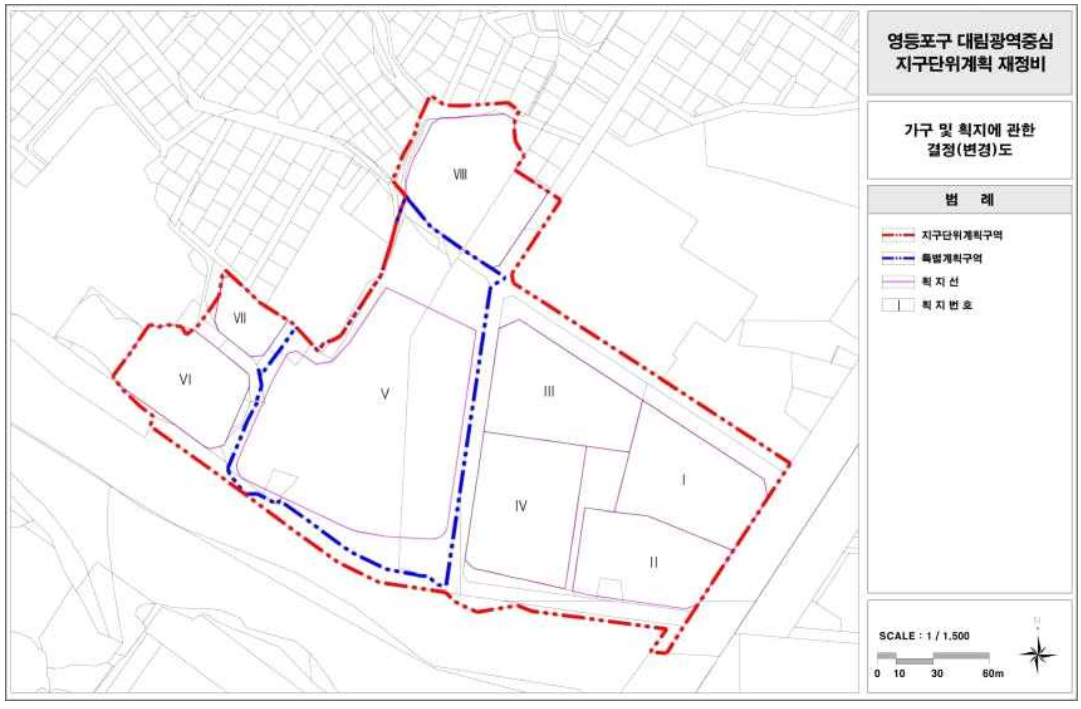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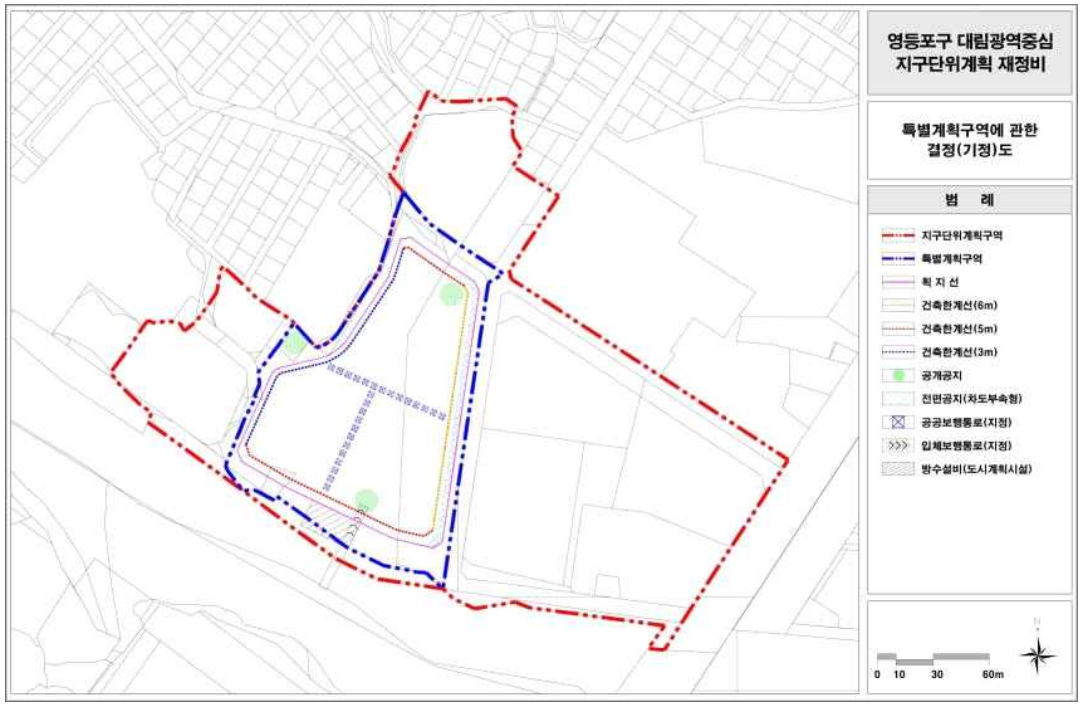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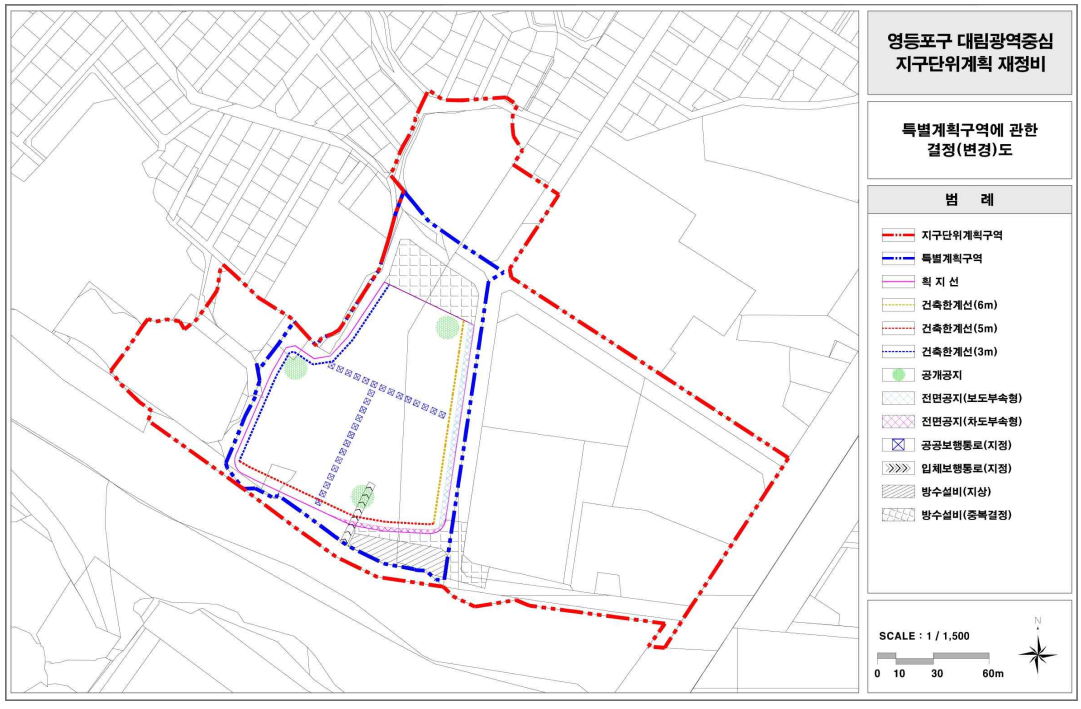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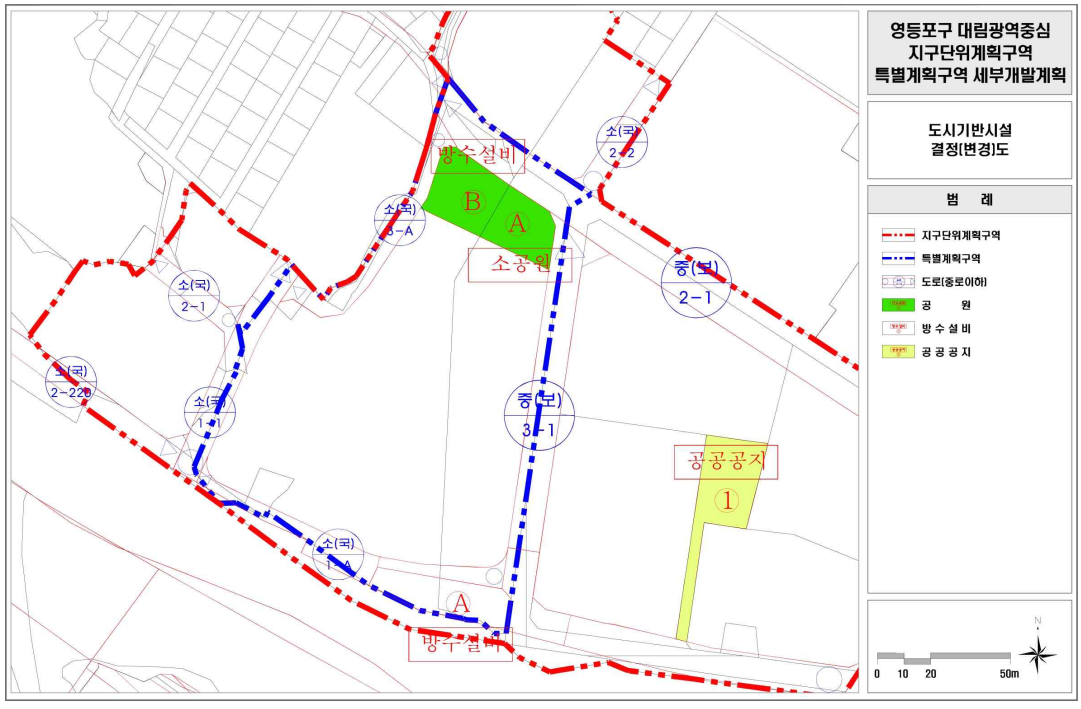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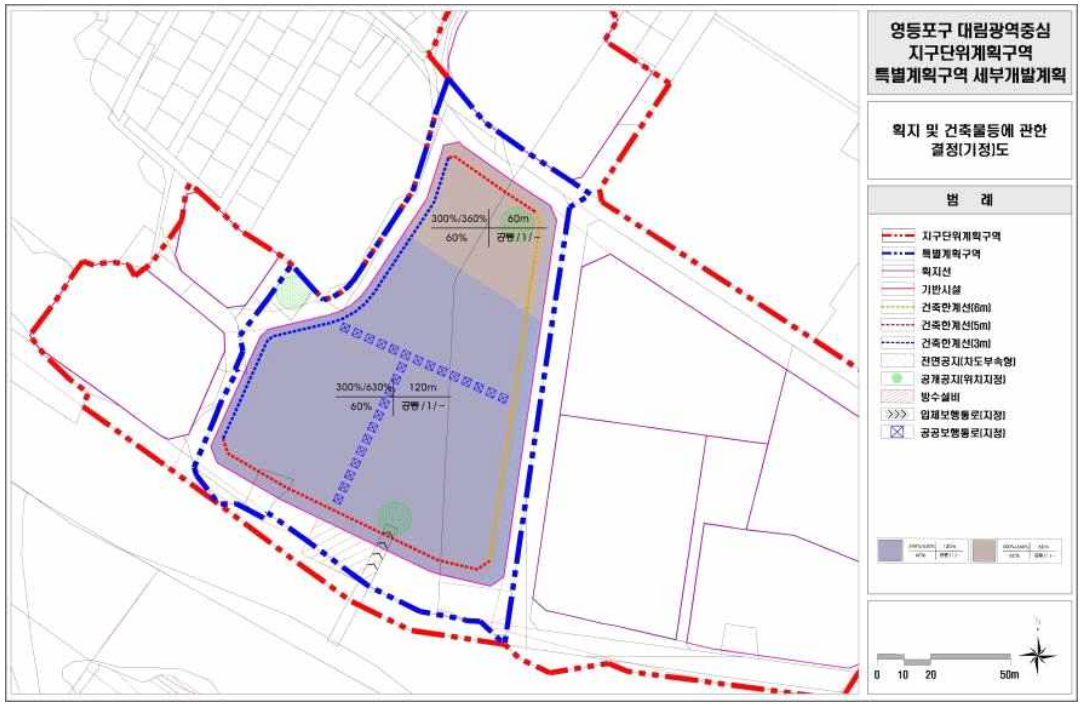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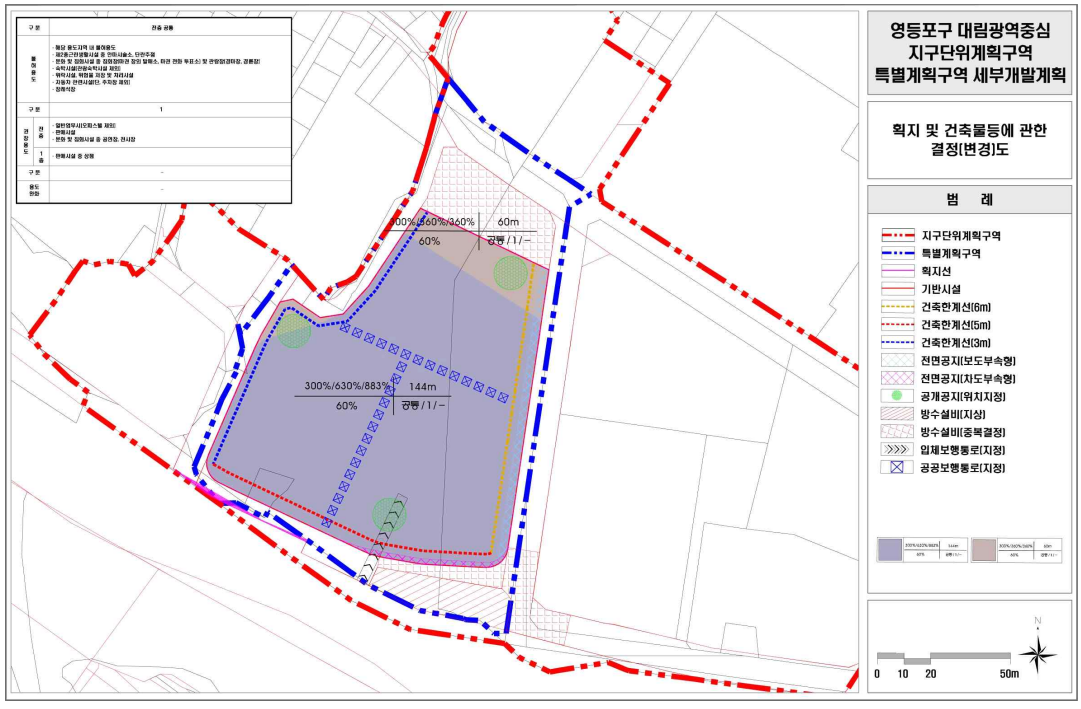

◈ 서초구공고 제2024-2104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경부고속도로변 녹지)

1. 건설부고시 제64호(1978.03.29.)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75호(1979.08.22.)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74호(2020.05.07.)로 실시계획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105호(2022.05.06.)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한남I.C ~ 양재I.C 만남의 광장간 6.9㎞)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녹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초구청(공원녹지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잠원동 6-3번지 외 9필지
    가) 위치의 변경: (기정)양재동 산69-3 (변경)양재동 산69-4
    나) 변경사유: 토지분할에 따른 소재지(1필지) 지번 변경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내용(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나) 사업의 명칭: 경부고속도로변 녹지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 토지보상
  3) 사업의 면적: 2,519.39㎡⇒2,837.4㎡
    가) 면적의 변경: (기정)2,519.39㎡ (변경)2,837.4㎡
    나) 변경사유: 편입필지 및 면적의 기재 오류 정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나.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다. 열람장소: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93)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합 계			9,987.4	2,837.4						
1	잠원동 6-3	대	130	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6(잠원동, 더리버사이드호텔)	주식회사가우**		주식회사국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근저당권설정
2	잠원동 7-1	대	1,594	1,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6(잠원동, 더리버사이드호텔)	주식회사가우**		주식회사국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근저당권설정
3	양재동 산70-4	임	7,832	682	캐나다 온타리오주 버링톤 크로스윈즈 코트2***	신충*	3,575/7,832			
					캐나다 온타리오주 버링톤 크로스윈즈 코트2***	신재*	3,575/7,832			
					서울시	서울시	682/7,832			
4	양재동 산69-4	임야	35	3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9가길 36, 1층(사당동)	**개발주식회사				
5	양재동 192-2	구	23	23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216-*	김경*		박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882-7	근저당권설정
								정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16-38	근저당권설정
6	양재동 산71-34	임	10	10	캐나다 온타리오주 버링톤 크로스윈즈 코트 214*	신충*	1/2			
					캐나다 온타리오주 버링톤 크로스윈즈 코트 214*	신재*	1/2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7	서초동 1681-3	대	1.8	1.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아파트 1동 50*호	양낙*	21.15/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1-6 삼호아파트 13-10*	이응*	19.523/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아파트 4-30*	백창*	11.388/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아파트 4-10*	김창*	11.388/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아파트 2-40*	최창*	15.943/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아파트 2-10*	조규*	15.943/3561.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2-7 원흥아파트 50*	심외*	11.388/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아파트 1-10*	지태*	21.15/3561.2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329번길 7*	김영*	15.943/3561.2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 13동 50*호	김규*	15.943/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아파트 2-90*	김정*	15.943/3561.2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5-10 신반포16차아파트 119-71*	김성*	11.388/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아파트 1-20*	김수*	20.824/3561.2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아파트 3-110*	윤재*	11.388/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5*(서초동)	삼익건설아파트재건축조합	3299.6/356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06, 105동 170*호(주엽동,강선마을)	이도*	42.298/3561.2			
8	서초동 1311-3	대	269.2	269.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0-100*	강성*	327240/3079440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파트 4동 7*호	금홍*	386820/307944000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97 대림2차아파트 102동 30*호	김건*	44631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6-120*	김동*	44631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8-40*	김동*	386820/307944000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군자리길 4*	김방*	386820/307944000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927-*	김영*	446310/307944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4 롯데아파트 7동 50*호	김예*	112400/30794400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51 한신아파트 5-41*	김우*	223155/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08, 3동 90*호(서초동, 삼호아파트)	김종*	257958/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3-120*	김종*	112400/3079440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3-120*	김종*	112400/307944000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3층(수원지점)	가압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8-140*	김태*	386820/307944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99-*	김형*	386820/30794400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63 롯데아파트 111-180*	라애*	32724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0-100*	맹주형	32724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85 7동 80*호(서초동 진흥아파트)	박경*	16362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37 1동 100*호(서초동, 신동아아파트)	박경*	163620/307944000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7 대림아파트 6-60*	박귀*	327240/307944000			
8	서초동 1311-3	대	269.2	269.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10*	박사*	38682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7길 52-1*(서초동)	박성*	327240/307944000	주식회사 한국스텐다드차타드은행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소매여신운영부)	근저당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926번길 78-*(와부읍,레스토랑파크)	박운*	327240/307944000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게이트시 칼몬트에비뉴 1000*	박태*	38682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5-111*	서재*	327240/307944000			
					서울시 도봉구 창동 38 주공아파트 1701동 100*호	석손*	327240/3079440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7 유원서초아파트 102-11*	소병*	223155/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7 유원서초아파트 102-11*	손경*	223155/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0 삼호아파트 9-110*	신창*	386820/307944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9-60*	안우*	252900/307944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4 강촌마을 803-90*	우경*	223155/307944000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201-20*	윤태*	327240/307944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4 롯데아파트 7-50*	이경*	168600/307944000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19 703동 170*호(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이창*	38682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08 3동 90*호(서초동 삼호아파트)	이현*	247842/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8-70*	임미*	1080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20*	장심*	20430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5 진흥아파트 3-40*	전광*	38682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110*	전유*	50580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2-80*	정상*	44631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4-70*	정지*	505800/307944000			
8	서초동 1311-3	대	269.2	269.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18-*	조성*	327240/3079440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495 장미마을 삼성래미안2차아파트 215-190*	조용*	386820/3079440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21 주공아파트 234-50*	조철*	505800/307944000			
					인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15*	최경*	446310/307944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9-60*	한나*	252900/307944000			
					미합중국 뉴욕 1050 이스트 80 핫스테일아베뉴아파트 20*	황영*	446310/307944000			
					서울시	서울특별시	297713070/307944000			
9	서초동 1311-6	대	55.8	5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0-100*	강성*	32724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0-150*	권영*	257877/307944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 삼호아파트 2-80*	권태*	446310/307944000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97 대림2차아파트 102동 30*호	김건*	44631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2-90*	김기*	446310/307944000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군자리길 4*	김방*	386820/307944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4 롯데아파트 7동 50*호	김예원	112400/30794400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51 한신아파트 5-41*	김우*	223155/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08, 3동 90*호(서초동, 삼호아파트)	김종*	257958/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3-120*	김종*	112400/3079440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3-120*	김종*	112400/307944000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3층(수원지점)	가압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8-140*	김태*	386820/307944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99-*	김형*	386820/30794400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63 롯데아파트 111-180*	라애*	327240/307944000			
9	서초동 1311-6	대	55.8	5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0-10*6	맹* 형	32724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85 7동 8*4호(서초동 진흥아파트)	박* 희	16362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37 1동 10*9호(서초동, 신동아아파트)	박* 희	163620/307944000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7 대림아파트 6-6*7	박* 연	32724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1*3	박* 임	386820/30794400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926번길 7*-0(와부읍,레스토랑파크)	박* 좌	327240/307944000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게이트시 칼몬트 에비뉴 100*9	박* 경	38682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5-11*1	서* 명	327240/307944000			
					서울시 도봉구 창동 38 주공아파트 1701동 10*1호	석* 숙	32724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0 삼호아파트 9-11*7	신* 수	386820/3079440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4-*	안* 숙	386820/307944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9-6*1	안* 석	252900/307944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4 강촌마을 803-9*1	우* 은	223155/307944000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201-2*9	윤* 경	327240/307944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4 롯데아파트 7-5*4	이* 희	168600/307944000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62 주공아파트 401동 2*2호	이* 섭	327240/307944000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19 703동 17*8호(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이* 하	38682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08 3동 9*2호(서초동 삼호아파트)	이* 종	247842/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8-7*8	임* 건	1080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2*3	장* 덕	20430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11*2	전* 열	505800/307944000			
9	서초동 1311-6	대	55.8	5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2-8*4	정* 우	44631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4-70*	정* 태	505800/3079440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18-*	조* 재	327240/307944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2-120*	조* 준	386820/3079440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21 주공아파트 234-5*5	조* 주	505800/307944000			
					인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15*	최* 숙	446310/3079440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9-6*1	한* 영	252900/307944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4*8	현* 상	446310/307944000			
					미합중국 뉴욕 1050 이스트 80 핫스테일아베뉴아파트 2*9	황* 희	446310/307944000			
					서울시	서울특별시	297831213/3079440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133 동작삼성래미안 105-20*1	강* 매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11*5	강* 수	224838689760/808528792984800			
					경기 용인시 백암면 가좌리 *9	고* 남	427193510544/808528792984800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60-*6	고* 민	427193510544/808528792984800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쿠 토도로키 1-34-16-3*3	고* 란	16435667267232/808528792984800			
					경상북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1가 613 신세계타운 10-4*1	권* 호	569591347392/8085287929848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2 정든마을 809-1*4	권* 숙	71198918424/808528792984800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281-176 삼환맨션 가-2*2	권* 락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2-1 우성아파트 21-10*2	김* 란	66965712648/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2 극동아파트 14-2*7	김* 숙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52-105 동양빌라 에이동 3*2호	김* 하	71198918424/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6*2	김* 일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3-2*6	김* 호	1138417115016/8085287929848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80*	김* 영	237329728080/808528792984800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13*	김* 기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0-3 신반포8차아파트 312-61*	김영	142397836848/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9 주공아파트 317-20*	김* 숙	854387021088/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11*2	김* 숙	284795673696/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4 삼호아파트 9-13*4	김* 진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15-3 영광연립 10*	김* 만	711989184240/808528792984800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9 한국아파트 102-4*2	김* 희	711989184240/808528792984800			
					경기 광명시 하안동 13 고층주공아파트 907-90*	김* 순	355994592120/80852879298480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11 4*5호	김* 익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1*09	김* 성	1138417115016/8085287929848800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28-3 군인아파트 가-3*4	김* 민	142397836848/808528792984800			
					서울 중랑구 목동 2*9-1	김* 우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3-4*1	김수*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2-3*2	김수익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3*7	김* 인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6*5	김* 옥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3-1*1	김* 월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0-24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114-90*	김* 현	356377382004/80852879298480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아파트 59-40*	김* 애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8-*8	김* 철	284795673696/808528792984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시 도봉구 번동 98-*	김* 숙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3-40*	김* 칠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82 홍제한양아파트 106-10*	김* 미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전북 군산시 나운동 401 삼성아파트 103-160*	김* 수	569591347392/808528792984800			
					경북 경산군 진량면 부기리 126-6 에덴타운 50*	김* 수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6 신동아아파트 702-50*	김* 덕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일원동 735 가람아아파트 111-30*	김* 봉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60-4 반포미도아파트 306-110*	김* 웅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8-100*	김* 완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5-*	김* 희	189863782464/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57 동아아파트 107-14*3	김* 현	142397836848/808528792984800			
					경기 미금시 호평동 133-*	김* 건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6-1*5	김* 문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도봉구 창동 26 동아아파트 6-4*7	김* 배	669657126480/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4 주공아파트 334-1*7	김* 집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성동구 광장동 453-1 삼성아파트 나동 6*2호	김* 정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6 현대아파트 101-50*	김* 연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1-110*	김* 림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경기 의왕시 오전동 21 진달래아파트 103-50*	나* 옥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1*1	남* 란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70*	남* 환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88-*	대한예수교장로회	2849487896496/808528792984800			
					광주 북구 문흥동 996-3 라인아파트 102-60*	마* 희	711989184240/808528792984800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83-13 동인빌라 비-10*	문* 례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평택시 합정동 829 주공아파트 308-40*	민* 연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8-2*	민* 기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동 91*호	민* 식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4 개포한신아파트 6동 70*호	박* 일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936 은빛마을 606-10*	박* 이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일본국 대판시 중앙구 삼노궁 중앙 1-19-*	박* 수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110*	박* 호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710 경남교수아파트 104-50*	박* 숙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1-8 서초빌라 20*호	박* 근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5동 80*호	박* 욱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21동 90*호	박* 훈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5 사당우성아프트 204-50*	박* 섭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1동 100*호	박* 숙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5-13 신도곡아파트 가동 20*호	박* 민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1-6 삼호아파트 12동 80*호	박* 선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 994-110*호	박* 웅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5 무지개아파트 8-10*	박* 원	711989184240/808528792984800			
					경주시 황남동 318-*	박훈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80*	배* 순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재*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2 신반포6차 아파트 216동 215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0 하얀마을 501-90*	백* 순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285-8 럭키우아아파트2동 120*호	백* 기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5*	사회복지법인능인선원	3701578178280/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동 80*호	서* 원	142397836848/808528792984800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93-27*	서* 임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 경남아파트 3동 80*호	서* 호	569591347392/808528792984800			
					대전시 서구 관저동 990 대자연마을 아파트 108-170*	송* 호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3-80*	신* 덕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18-1*	신* 자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1-10*	신* 수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8-50*	신* 우	427193510544/808528792984800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203-*	신* 수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4 현대아파트 102-120*	신* 철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4 현대아파트 213동 10*호	심* 민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5동 20*호	안* 미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미합중국 11355 뉴욕프루씽 62 에브뉴샌포드 144-6*	안* 주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2-80*	안* 균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1-3*	양* 식	142397836848/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50*	양* 성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4 현대아파트 202-40*	염* 순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2-80*	오* 영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27-13 로얄빌라 에이-30*	왕* 자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95-8 역삼한신아파트 1동 30*호	원* 주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1동 20*호	유* 하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86-1*	유* 열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40*	유* 호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경기 구리시 토평동 955 영풍아파트 107-130*	유* 희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70*	유* 례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성동구 옥수동 250 옥수삼성아파트 108-140*	유* 선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31-20*	유* 주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강동구 하일동 304-*	윤* 갑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광진구 중곡동 294-10 동산빌라 30*	윤* 기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0-24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114-90*	윤* 은	356377382004/808528792984800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320 동아아파트 13-2*5	윤* 성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2동 10*7호	이* 준	426906418131/808528792984800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5-*	이* 윤	126575854976/80852879298480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629 대우사원주택 3동 10*호	이* 철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4-1 2*1호	이* 년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0-68 한강맨션 34-1*3	이* 희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아파트 371-21*	이* 원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27 양지마을 304-1*3	이* 분	711989184240/808528792984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26 삼성래미안아파트 204-14*3	이* 수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 9-4브럭 미리내마을 935-1*03	이* 주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511 한보미도맨션 206-12*2호	이* 미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6-1 4*1호	이* 형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5-*	이* 윤	126575854976/8085287929848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8-1*	이소* 명	569591347392/808528792984800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13 고층주공아파트 907동 90*호	이* 숙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6-4 금호아파트 다-21*	이* 자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아파트 16동 90*호	이* 재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3*0	이* 훈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동 13*1호	이* 희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동 2*7호	이* 섭	427193510544/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0-1*	이* 택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1동 8*3호	이* 덕	711989184240/808528792984800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78-4 삼성아파트 106-20*2	이* 주	349705867392/808528792984800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7 우성아파트 5-60*	이* 계	711989184240/808528792984800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4122 샌프란시스코34가아베뉴 15*3번지	이* 모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1*07	이* 찬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인천 계양구 효성동 200-1 현대아파트 402동 70*호	이* 숙	427193510544/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6-7*0	이* 아	355994592120/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2동 10*7호	이* 은	284604278754/808528792984800			
					서울 도봉구 쌍문동 122-2*	이* 순	427193510544/80852879298480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66-1 거성고속맨션 2차 10*1호	이* 희	569591347392/808528792984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6-7*0	이준*	355994592120/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2 신반포6차아파트 216-40*	이* 기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지구아파트 110-30*	이* 현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논현동214 논현베르빌 101-3*6	이* 남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569 진흥아파트 5동 50*호	이* 휘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6-13 목화하이츠빌라 가-10*	이* 부	219885480000/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5 진흥아파트 2-10*	이* 철	142397836848/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80*	이* 석	474659456160/808528792984800			
					제천시 의림동 12-1*	이* 우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강남신용지원단)	가압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5-*	이* 윤	126575854976/8085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마포구 도화동 61-*	임* 철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12*	임* 철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83 한강맨션 24동 10*호	임* 영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60 한강맨션 13동 50*호	임* 일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2-4*0	임* 근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1-130*	장* 숙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송파구 신천동7 장미아파트 2동 10*호	정* 순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3-37 40*호	장* 희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강서구 화곡동 869-3*	장* 자	142397836848/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10*	장혁	427193510544/808528792984800			
					서울 도봉구 쌍문동 199-1 금호아파트 1동 90*호	전* 숙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 양천구 신월동 987-1 신월시영아파트 18-120*	정경*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0-4 세종아파트 110*	정영*	142397836848/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7-20 파크빌 30*	정용*	142397836848/808528792984800	서초삼익아파트재건축조합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312 삼익아파트 구성서	가처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6-70*	정재*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양재동 154-2 우성아파트 110-120*	정정*	711989184240/808528792984800			
					부산 사상구 주례동 75*	정지*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7-39 30*호	정진*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성동구 마장동 817 삼성아파트 103-60*	정창*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2*	정혜*	854387021088/808528792984800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70 반도아파트 2동 90*호	조경*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62 현대아파트 56동 20*호	조상*	149892459840/808528792984800			
					미합중국 뉴욕주 10583 수카스데일시 게이로로우드 17*	조상*	224838689760/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동 120*호	조선*	569591347392/808528792984800			
					미합중국 뉴욕주 13045 코드란드시 크레스크우쎈타*	조정*	37473114960/808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 동현아파트 6동 20*호	조정*	37473114960/808528792984800			
					서울 강동구 명일동 29-5 삼익아파트 509동 90*호	조정*	37473114960/808528792984800			
					서울 동작구 상도동 299-5*	조종*	284795673696/808528792984800			
					경기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373-*	조철*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2동 100*호	조태*	426906418131/8085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7*	조형*	711989184240/808528792984800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14-1 원미동풍림아파트 102-15*4	주덕*	711989184240/808528792984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 노원구 상계동 652 주공아파트 1103-10*3	주병*	284795673696/808528792984800	㈜동원에프앤비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반포동 18-1 주공아파트 218-10*	주영*	569591347392/808528792984800			
					경남 통영시 정량동 1125-7 프린스빌리지-30*	지건*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62-10 신미주아파트 2동 180*호	지영*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원지동 238-1*	차종*	142397836848/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171*	채맹*	569591347392/808528792984800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79-2*	채민*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1-130*	천호*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883-1 대진수지2차아파트 102-100*	최길*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 우성아파트 223동 30*호	최립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 삼호가든맨션 11-30*	최병*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서울 은평구 녹번동 35-3*	최인*	711989184240/808528792984800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5-17 삼익아파트 101-50*	최인*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잠원동 58-16 신반포10차아파트 315-120*	최재*	142397836848/808528792984800			
					미국 워싱톤주 98040 머셔아일랜드 사우스이스트풀81가 2949번지 아파트 시-*	최정*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31-70*	한기*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9-2*	한익*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2-1*	한자*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928 현대아파트 106동 50*호	한호*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8-101 천명빌라 10*호	한희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2 극동아파트 5동 50*호	허* 형	569591347392/808528792984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1-2*	허복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0-12 현대연립 비동 20*호	허인*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2-2*	현설*	401794275888/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81*	현영*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3-303	홍관*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1-2*	홍남*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신용보증기금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동대문재기지원단)	가압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0-4 세종아파트 60*	홍남*	142397836848/8085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강남구 삼성동 25-10 30*호	홍* 철	142397836848/808528792984800			
					경남 창원시 신촌동 23-5 동성빌라아파트 1동 20*호	홍상*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90*	홍성*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773 반포아파트 61동 40*호	홍영*	569591347392/808528792984800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285-13 현주프라자 40*	홍희*	284795673696/808528792984800			
					수원시 권선동 구운동 462 삼환아파트 5-100*	황선*	711989184240/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울특별시	808528792984800/808528792984800			

◈ 송파구공고 제2024-1762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09호(2021.3.4.)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3-78호(2023.5.25.)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 일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송파구 전략개발과(☎02-2147-217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송 파 구 청 장

1. 사업 시행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88-2)
2. 사업 종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3. 사업 명칭: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
4. 사업 시행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5. 사업 시행기간: 2023.8.1.~2024.12.31.
6. 사업의 규모
   - 구 분: 체육연구 · 문화구역
   - 사 업 면 적: 75,326.0㎡(변경없음)
   - 건축연면적: 10,116.4㎡(변경없음)

◈ 강동구공고 제2024-1934호

도시공원(고덕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도시공원(고덕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강 동 구 청 장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내역

도시공원	위치(소재지)	지목	부지사용계약면적(㎡)	비고
고덕 도시자연공원구역	강동구 고덕동 산93-1	임야	1,191.2	

2. 부지사용 계약일: 2024. 9. 5.
3. 부지사용 계약기간: 2024. 9. 5. ~ 2027. 9. 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공고 제2024-1950호

「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강 동 구 청 장

1. 공청회 개최목적
   ○ 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 10. 25.(금) 19:00~21:00
   ○ 장소: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본관 5층 대강당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
   ○ 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내 건축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지하공공보도) 규모 변경 등 성내5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52, 6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엘지 유플러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한강로3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649-1	3㎡	뚜벅뚜벅 축제 행사 관련 중계기 임시 설치	2024.9.4. ~ 2024.10.28..	2024. 9.4.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상하수도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6	1,873㎡	한강 상수원 수중 쓰레기 정화활동을 위한 하천 임시점용 1. 현장 운영본부 설치(MQ텐트 3m*3m-3개, 구급차 1대 등) 2. 수거 쓰레기 적치	2024.9.20. ~ 2024.10.10.	2024. 09.1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312-1 일원	400㎡	서강대교 보수공사를 위한 컨테이너 공사용 자재 임시적치	2024.9.19. ~ 2024.10.15.	2024. 9.1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치수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64-2 행주대교 남단 야적장	60㎡ (2개소× 30㎡	한강 지천합류부 주변 준설공사를 위한 근로자 휴게실 및 가설창고 임시 설치	2024.9.19. ~ 2025.3.4.	2024. 09.1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케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4번지 등 7필지 (128.4㎡)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173-3번지 등 8필지(59.4㎡)	187.8㎡	세계불꽃축제 기간 중 이동통신용 분산풀 21대 및 기지국 4대 설치	2024.9.23. ~ 2024.10.10.	2024. 9.2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sk텔리콤(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65 (을지로2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6-7번지 등 15필지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76번지 등 11필지	145.2m²	이동통신용 분산폴 28대 및 이동차량 기지국 4대 및 발전차 4대 설치	2024.9.23. ~ 2024.10.10.	2024. 9.2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엘지 유플러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한강로3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70-1번지 등 9필지 (132㎡)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93-3번지 등 11필지(79.2㎡)	211.2㎡	세계불꽃축제 기간 중 이동통신용 분산폴 21대 및 기지국 4대 설치	2024.9.23. ~ 2024.10.10.	2024. 9.2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치수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9-2번지	5,700㎡	한강 취수장 주변 준설공사를 위한 준설토 야적	2024.9.23. ~ 2024.12.31.	2024. 09.1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케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435(뚝섬한강공원 내 배달존2구역, 수변무대 서쪽)	16㎡	드론라이트쇼 행사 기간 이동통신용 분산풀 설치	2024.9.23. ~ 2024.11.2.	2024. 9.2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6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sk텔리콤(주)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678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435(뚝섬한강공원 내 배달존2구역, 수변무대 서쪽)	16㎡	드론라이트쇼 행사 기간 이동통신용 분산풀 설치	2024.9.23. ~ 2024.10.26.	2024. 9.2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6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서울항조성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4-4, 85-6 일원	60㎡ (2개소× 30㎡	여의도한강공원 접근성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현장조사용 지반조사(일시점용)	2024.9.13. ~ 2024.10.9. 중 1일	2024. 09.12.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38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아리수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3번지 등 5개 필지
 - 면 적 : 일시 6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반굴착

5. 점용기간 : 2024.10.1.~2024.11.30.

정 정

◈ 송파구고시 제2024-80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6호(2015.09.24.)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당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파출소)] 최초 결정된 잠실동 230-3에 대하여, 송파구 고시 제2024-77호(2024.09.26.)로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였으나, 결정도 내 오기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정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송 파 구 청 장

Ⅰ. 정정 사유

■ 송파구 고시 제2024-77호(2024.09.26.)로 결정(변경)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 중 결정도 내 오기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정정 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다. 공공시설

1) 사회복지시설: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③	사회복지시설	잠실동 230-3	-	증) 328.6	328.6	-	◦용적률: 145%이하 ◦건폐율: 60%이하 ◦높 이: 15m이하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비 고
③	사회복지시설	◦ 0㎡→328.6㎡ (증: 328.6㎡)	◦ 경찰 공무원 보육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직장 어린이집) 신설

2) 공공청사: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①	공공청사	파출소	잠실동 230-3	328.6	감) 328.6	-	서고 2015-296 (2015.9.24.)	· 용적률: 200%이하 · 건폐율: 60%이하 · 높 이: 15m이하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비 고
①	공공청사 (파출소)	◦ 328.6㎡→0㎡ (감: 328.6㎡)	◦ 경찰청 치안센터 폐지계획('23.9.)에 따른 잠실치안센터 운영종료('24.2.) 및 활용계획 변경 반영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2147-300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정 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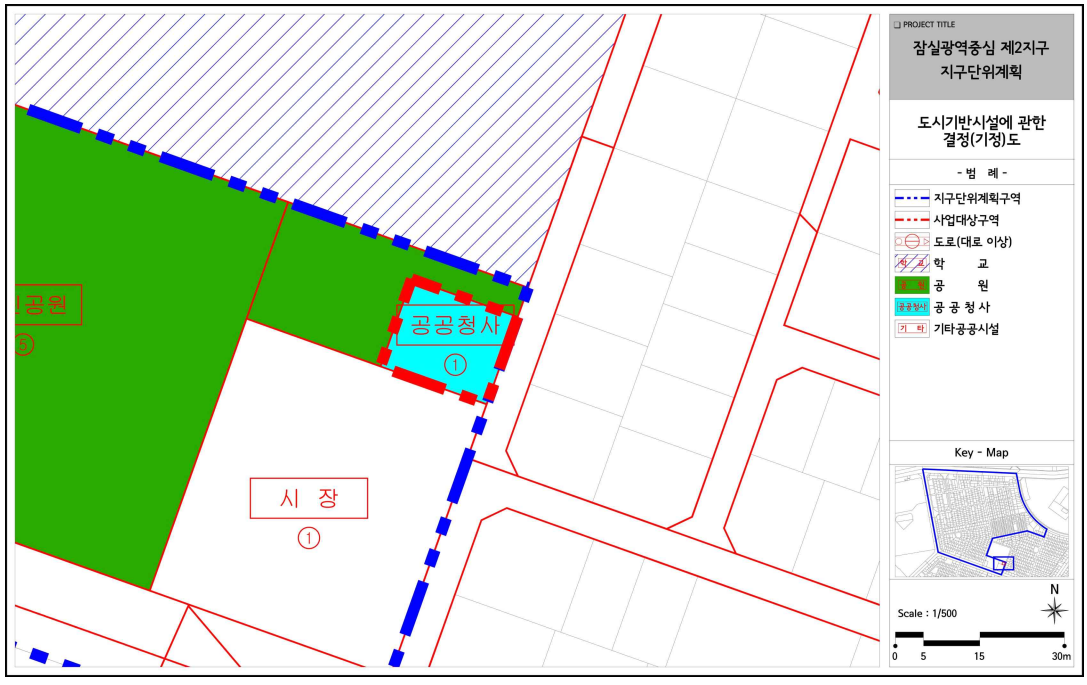

[정정 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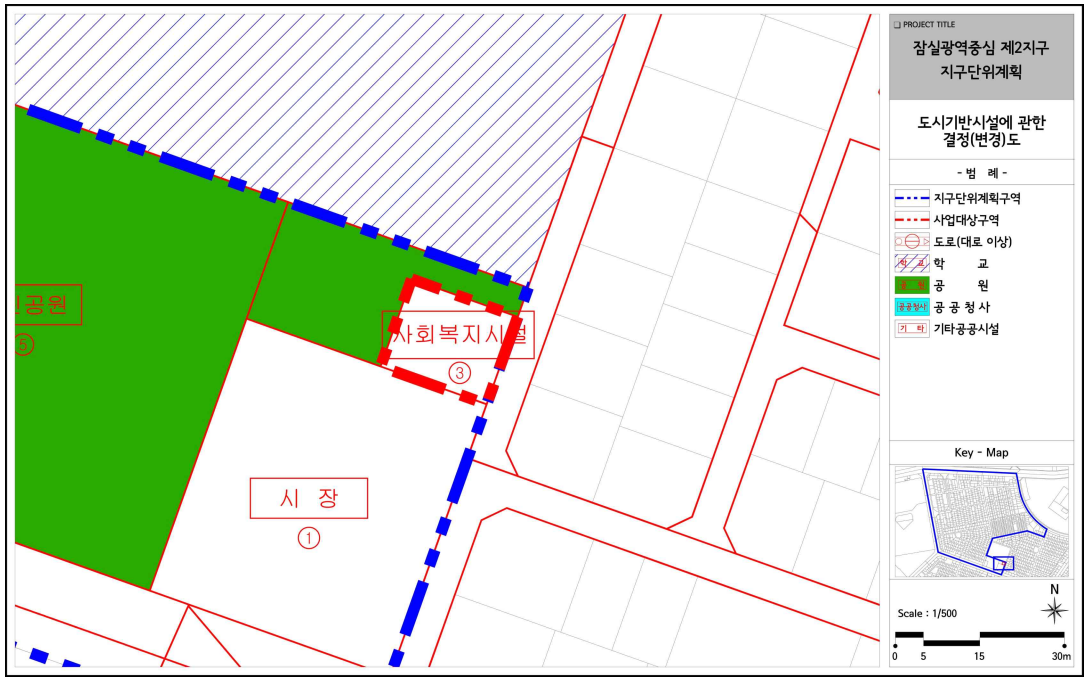

끝.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